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25-10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 수칙

I.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발간사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지 못하고, 학대에 방치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일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2월 아동학대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협동으로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책 수립 이후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아동학대 신고가 대폭 증가하였고, 교직원·아동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증가하는 등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대책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와 모든 직원들의 업무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열다섯 번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기초 자료로서, 보다 발전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에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다하여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받지 않고,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머리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정착되어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은 보다 촘촘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하여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한 시스템이 확고히 구축되고 아동학대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 정책들이 잘 추진되어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발간하는 현황보고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현황보고서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이후,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국가 공식 승인 통계지표로 공표됨으로써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히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관련 공무원 및 관련단체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9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목 차

요 약	25
제1장 서 론	45
1. 발간목적 및 배경	47
2. 주요내용	48
3. 자료수집 과정	49
4. 자료분석	49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1
1. 신고접수	53
1) 신고접수	53
2) 기관별 신고접수	56
3) 시군구별 신고접수	59
2. 신고자 유형	65
1) 신고자 유형	65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71
3) 경찰통보건수	89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90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3
1. 현장조사	95
1) 현장조사 횟수	95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6
2. 사례판단	98
1) 사례판단 결과	98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99
3) 피해아동 보호수	101
3. 피해아동 발견율	101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0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05
1) 피해아동	105
가. 피해아동 성별	105
나. 피해아동 연령	106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07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8
마. 피해아동 특성	109
2) 학대행위자	111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1
나. 학대행위자 연령	112
다.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113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5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5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6
사. 학대행위자 특성	117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19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19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21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21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21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22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23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3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4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5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7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8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29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29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9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6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140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3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3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5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148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48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49
다. 임시조치 현황	151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154
5. 서비스 제공 현황	157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57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157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59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0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	160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	161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2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15년 이전/2015년)	162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65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67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167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7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6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9

3)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170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0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1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3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4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6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177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7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8
2. 재학대 사례	179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79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79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9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0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0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1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83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3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4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4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5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6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7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8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189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9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0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0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2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94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	194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95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196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6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7
8) 2014/2015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198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198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199
다. 가족유형 비교	200
3. 사망아동 사례	201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201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1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2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3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04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4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5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6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7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208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08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10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10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12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14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4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5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6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7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17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18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19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9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21
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23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	227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29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29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1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2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4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235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5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37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9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1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242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242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44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45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6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7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48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8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49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0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51
1) 시도/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51
2) 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52
부 록	255
1. 용어집	257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65
3. 2014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69

[표 목차]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48
〈표 2-1〉 신고접수 건수	54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6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7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59
〈표 2-6〉 신고자 유형	66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67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71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3
〈표 2-10〉 경찰통보건수	89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	90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91
〈표 3-1〉 현장조사 횟수	95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96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6
〈표 3-4〉 사례판단 결과	98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99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1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102
〈표 4-1〉 피해아동 성별	105
〈표 4-2〉 피해아동 연령	106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7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8
〈표 4-5〉 피해아동 특성	110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11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112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3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5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6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6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18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19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22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23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4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5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6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7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8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0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1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1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132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3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5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36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8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9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 현황	140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0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1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1
〈표 4-3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2
〈표 4-3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3
〈표 4-3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4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6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7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48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49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150
〈표 4-43〉 제14조 임시조치와 제15조 임시조치 실건수	151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	152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152
〈표 4-46〉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153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154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155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156
〈표 4-5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157
〈표 4-5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158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59
〈표 4-5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160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1
〈표 4-55〉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15년 이전/2015년)	163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4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7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9
〈표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1
〈표 5-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2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3
〈표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4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표 5-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6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7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8
〈표 5-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79
〈표 5-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9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0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1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2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3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4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5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6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6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7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8
〈표 5-24〉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9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0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1
〈표 5-27〉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2
〈표 5-28〉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표 5-2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4
〈표 5-3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95
〈표 5-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6
〈표 5-3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7
〈표 5-33〉 2014/2015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	198
〈표 5-34〉 2014/2015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199
〈표 5-35〉 2014/2015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200
〈표 5-36〉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01
〈표 5-3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1
〈표 5-3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2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4
〈표 5-40〉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4
〈표 5-41〉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5
〈표 5-42〉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6
〈표 5-4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7
〈표 5-4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08
〈표 5-4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0
〈표 5-4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11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12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4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5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6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17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218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9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표 6-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224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30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1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3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4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5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236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37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238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9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1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3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4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45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6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7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8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9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0
〈표 7-19〉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51
〈표 7-20〉 연도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53

[그림 목차]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54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6
〈그림 2-4〉 신고자 유형	66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유형	90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98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105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107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8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8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111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111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112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4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5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7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22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23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4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5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7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0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130
〈그림 4-19〉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1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5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8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9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1
〈그림 4-2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2
〈그림 4-2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3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4
〈그림 4-27〉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149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0
〈그림 4-29〉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4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156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7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0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3
〈그림 5-4〉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4
〈그림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7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8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9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0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1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3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3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4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5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6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7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8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89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0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1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4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5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95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6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7
〈그림 5-2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2
〈그림 5-2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2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5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6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7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7
〈그림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0
〈그림 5-3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11
〈그림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13
〈그림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4
〈그림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5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	217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18
〈그림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9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30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31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2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4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5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36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8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239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0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2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3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 비율	243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4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45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6
〈그림 7-16〉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7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49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50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0
〈그림 7-20〉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52
〈그림 7-21〉 연도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53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요약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2001~2015년)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요약

- _ 본 보고서는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5년 기준) 직원들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거).
- _ 본 보고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_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5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수집된 자료는 2015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행 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서비스 제공,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 _ 2015년,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9,214건에 해당됨.
 - 아동학대 신고접수 19,214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6,651건 (86.7%), 동일신고는 87건(0.5%), 일반상담은 2,465건(12.8%), 해외발생사례는 11건 (0.1%)임.
 - 아동학대 신고접수 19,214건 중 재신고 사례는 2,379건(12.4%)이며, 2015년 신규신고는 16,835건(87.6%)임.

- 2015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 1,841건(9.6%), 3월 1,731건 (9.0%), 7월 1,716건(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_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71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1건,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9건, 전라북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5건 순으로 나타남.
- _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3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310건, 강원 원주시 279건, 경북 포항시 남구 271건 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 _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4%(4,900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0.6%(11,751건)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초·중·고교 직원으로 13.0%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6%, 보육교직원 1.9%,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1.8% 순으로 나타남.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2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 18.3%, 아동본인 9.0% 순으로 나타남.

신고접수 경로 유형

- _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11,208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112는 7,781건(40.5%), 1366 185건(1.0%), 119 29건(0.2%) 순으로 나타남.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 _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16,651건을 대상으로 총 35,379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됨.
- _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 당 약 2.1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22,890건(64.7%), 상담원·경찰 8,927건(25.2%), 경찰 단독 1,755건(5.0%), 상담원·경찰·공무원 1,203건(3.4%) 순으로 나타남.

사례판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6,651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1,715건으로 70.4%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 1,742건(10.5%), 일반사례 3,194건(19.2%)임.
- 아동학대사례 11,715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8,978명으로 나타남.

피해아동 발견율

-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5년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은 1.32%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2.78%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가 0.7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는 -0.74로 유의미하게 도출됨.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62,877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02,459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가 290,866명, 울산광역시 221,250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1개 기관 당 약 60,078명이었음.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5,745건(49.0%), 여아 5,970건(51.0%)으로 남아랑 여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19.5%,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8.1%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5,779건(49.3%), 친부모가족 외 형태 5,177건(44.2%), 파악안됨과 대리양육형태는 각각 481건(4.1%), 220건(1.9%)의 양상을 나타냄.
 -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15.8%, 12.7%, 2.0%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0.5%에 해당함.
 - 한편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31건(0.3%), 34건(0.3%), 155건(1.3%)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2,335건(19.9%), 비수급권 대상 7,857건(67.1%), 그리고 파악안됨이 1,523건(13.0%)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신체·정신적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행동이 전체 35.0%인 8,382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7,279건(30.4%), 특성없음 4,150건(17.3%), 발달·신체건강 2,667건(11.1%), 장애 838건(3.5%), 기타 647건(2.7%)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6,736건(57.5%), 여성 4,967건(42.4%)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4배 많았으며, 파악안됨은 12건(0.1%)임.
-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5,044건(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481건(29.7%) 이었는데 피해아동 연령 중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9,348건(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 경우 1,431건(12.2%)으로 나타남.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은 427건(3.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296건(2.5%)이었음.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8,901건으로 전체의 76.0%에 해당하였고, 비동거와 파악안됨은 각각 2,754건(23.5%), 60건(0.5%)임.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3,530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 1,783건(15.2%)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는 전체의 약 25.9% 정도를 차지함.

- _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1,866건(15.9%)인 반면 비수급권 7,993건(68.2%)에 달하였으며, 파악안됨은 1,856건(15.8%)에 해당함.
- _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3.7%에 해당하는 11,171건이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6,296건(19.0%), 부부 및 가족 갈등 3,607건(10.9%)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_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2.3%에 해당하는 9,641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432건(3.7%), 258건(2.2%), 207건(1.8%)으로 전체 사례 중 7.7%에 해당하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331건(2.8%), 기타복지시설 31건(0.3%)으로 3.1%에 해당함.
- _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24.3%인 2,845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1,546건(13.2%), 일주일에 한 번 인 경우가 1,361건(11.6%)으로 나타남.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49.1%로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아동학대사례 유형

- _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5,347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2,046건(17.5%), 방임 2,010건(17.2%), 신체학대 1,884건(16.1%), 성학대 428건(3.7%)의 순으로 나타남.
- _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7,19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6,661건(37.7%), 3,175건(18.0%)으로 나타났으며, 성학대는 629건(3.6%)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_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고,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음.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90.5%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음.
- _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연령분포가 전체 아동 학대사례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만 13~15세와 만 10~12세 구간에 많은 피해아동이 집중됨. 방임의 경우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_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반항·충동·공격성·거짓말, 약물·흡연·음주, 가출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특성없음, 발달·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으로 나타남. 방임의 경우 불안, 주의산만 등과 같은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_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성학대의 경우 40.1%로 나타남.
- _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성학대의 경우 성문제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음.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_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 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8,588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3,110건(26.6%), 사망 17건(0.1%)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이 초기에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1,790건(15.3%), 친족(친인척)보호 807건(6.9%), 장기보호 234건(2.0%), 연고자에 의한 보호 161건(1.4%), 병원입원 107건(0.9%), 가정위탁 11건(0.1%) 순으로 나타남.
- 초기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035건(33.3%)이었으며, 가정 복귀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분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가 469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3개월 사이 248건(24.0%), 3개월~6개월 사이 186건(18.0%), 6개월~1년 사이 130건(12.6%)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초기 분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8.7%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35.4%, 대구광역시 30.8% 순으로 조사됨.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치는 원가정보호로 약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 59.1%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됨.
- _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2015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함.
- 2015년 아동학대사례 11,71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48건으로 전체의 20.0%에 해당함.

-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7,760건(66.2%), 분리보호 2,772건(23.7%), 사망 19건(0.2%), 가정복귀 1,164건(9.9%)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친족(친인척)보호 1,030건(8.8%), 장기보호 899건(7.7%), 일시보호 636건(5.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4건(1.0%), 병원입원 63건(0.5%), 가정위탁 30건(0.3%) 순으로 나타남.
 - 2015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보호 가 6,381건(68.1%)이나 분리보호는 2,072건(22.1%)으로 파악되며,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1,379건(58.7%), 분리보호 700건(29.8%)으로 파악됨.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총 40개가 운영 중이며, 상근 보육사 117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36명, 프리랜서 심리치료전문인력 13명임.
- 2015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830명의 아동 중 2015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5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169명(20.4%), 2015년에 입소한 아동은 661명(79.6%)임.
 -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830명 중 2015년에 퇴소한 아동은 78.1%인 648명, 2016년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82명(21.9%)임.
 -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은 1개월 미만이 382명(59.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116명(17.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3명(8.2%), 1년 이상 50명(7.7%), 6개월 이상~1년 미만 47명(7.3%) 순으로 나타남.
 -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로 원가정 복귀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고, 타 시설 입소 비율은 34.0%임.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7,270건(6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처리 3,564건(30.4%)이고, 아동과의 분리 460건(3.9%),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421건(3.6%)임.
- 학대행위자에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성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고소·고발 조치한 경우가 77.4%로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사례 유형에서는 60%이상 지속관찰 조치함.
 -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2,549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수사가 722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수사 1,134건(44.5%), 판결과 재판진행 중인 사례는 각각 452건(17.7%), 234건(9.2%)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고발의 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복학대로 총 1,129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520건, 정서학대 319건, 방임 292건, 성학대 289건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처벌법(2014.9.29. 시행)으로 조치된 사례는 2015년도 아동학대사례 11,715건 중 10.4%에 해당하는 1,214건이며, 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응급조치는 상담원이 실시한 건수가 571건, 경찰이 실시한 건수가 324건으로 총 895건이 이루어졌으며, 3호(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가 739건(6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긴급임시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20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8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건이 결정되었음. 세부 내용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26건(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22건(34.4%), 1호(퇴거 등 격리)가 16건(25.0%) 순으로 나타남.
 - 임시조치는 청구신청(요청)되거나 청구(요청)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실건수는 제14조 임시조치 284건(25.2%), 제15조 임시조치 845건(74.8%)으로 총 1,129건임. 제15조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후속절차로 필요적으로 진행되는 임시조치이며, 이는 응급조치 대비 94.4%가 진행됨.
 - 피해아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360건이고, 이 중 257건(71.4%)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으며, 103건(28.6%)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지 않았음.
 - 피해아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청구한 경우를 모두 종합하면 196건이고, 이 중 174건(88.8%)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22건(11.2%)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음.
 -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625건(95.4%)이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30건(4.6%)임.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512건(36.4%),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306건(21.8%),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304건(2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282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174건, 변호사가 97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11건을 청구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88건 중 79건, 변호사는 총 76건 중 68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4건을 청구하여 4건 모두 결정되었으며, 판사 직권으로 2건이 결정됨.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으로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127건(42.8%)으로 가장 높았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71건(23.9%),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51건(17.2%),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25건(8.4%) 순으로 나타남.

서비스 제공 현황

–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5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492,415회임.

-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5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5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각각 117,253회(54.4%), 138,999회(50.2%)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보호서비스는 2015년 이전 신고사례 52,218회(24.2%), 2015년 신고사례 83,279회(30.1%)로 나타남.
-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50.7%, 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됨.

–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5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31,836회임.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5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5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5년 이전 신고사례 47,873회(83.7%), 2015년 신고사례 59,907회(80.3%)의 서비스가 제공됨.
-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18,562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13,274회 제공되었고, 상담서비스가 모두 80% 이상 높은 비율로 제공됨.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5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42,535회임.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5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5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5년 이전 신고사례는 55,553회(89.7%), 2015년 신고사례는 71,454회(88.7%)인 것으로 파악됨.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111,278회(89.2%), 사후관리 사례는 15,729회(88.5%)에 해당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결과는 신고의무자 76.1%, 비신고의무자 68.0%로 신고의무자의 사례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보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율이 가장 높은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높은 신고율을 보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은 각각 63.3%, 68.6%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의무자 83.7%, 비신고의무자 78.0%로 신고의무자 비율이 더 높았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고의무자 7.0%, 비신고의무자가 14.6%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분포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6.9%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등의 아동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각각 1,124건(30.2%), 1,721건(21.5%)으로 가장 높았음.
-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음.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중 1년~3년 전이 신고의무자 37.3%, 비신고의무자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아동학대사례의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의무자 여부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36.0%로 가장 높았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각 학대 유형별로 발견율이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체학대 발견율은 유치원교직원·강사 60.7%, 정서학대 발견율은 아이돌보미 75.0%, 성학대 발견율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9.8%, 방임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0.0%로 나타남.
- _ 피해아동 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 _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높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67.4%,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59.6%로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더 높았음. 고소·고발·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24.1%, 비신고의무자 33.4%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

- _ 2015년에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1,24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11,715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10.6%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실제 재학대 아동 수는 1,072명임.
- _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623건(50.2%), 남아 617건(49.8%)으로 나타남.
- _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 281건(22.7%), 만 13~15세 279건(22.5%), 만 7~9세 277건(22.3%)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67.5%로 높은 분포를 보임.
- _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519건(41.9%), 친부모가족 외 형태 695건(56.0%), 대리 양육형태 14건(1.1%), 기타와 파악안됨은 각각 7건(0.6%), 5건(0.4%)임.
- _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행동이 1,224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정신건강이 1,066건(32.5%)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
- _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732건(59.0%), 남성 508건(41.0%)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음.
- _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564건(45.5%)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401건(32.3%), 50대 151건(12.2%), 20대 82건(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_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561건으로 전체 45.2%의 높은 분포를 차지함.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60건(21.0%), 서비스 및 판매직 148건(11.9%) 순으로 나타남.
- _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218건(17.6%),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84건(14.8%), 50만 원 미만이 174건(14.0%)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6.4%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수급권 대상자 694건(56.0%), 비수급권 대상자 444건(35.8%)이었고, 파악이 되지 않은 사례는 102건(8.2%)임.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587건(3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008건(21.4%), 알콜 및 약물·게임 등의 중독문제 406건(8.6%), 부부 및 가족 갈등 396건(8.4%) 순임.
-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1,153건(93.0%)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43건(3.5%), 27건(2.2%)로 나타남.
- 재학대 사례가 가정 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1,156건(93.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집근처 또는 길가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23건(1.9%)이었음.
- 재학대 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372건(3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180건(14.5%), 일주일에 한 번 162건(13.1%)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발생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311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17건(17.5%), 2년~3년 사이가 215건(17.3%), 3년 이상이 190건(15.3%)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생시기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2년~3년 사이를 제외하고 모든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발생시기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음.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32%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중독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복 학대가 629건(50.7%), 방임 253건(20.4%), 정서학대 182건(14.7%), 신체학대 146건(11.8%), 성학대 30건(2.4%) 순으로 나타남. 중복학대를 미분류하였을 경우 정서학대가 785건(40.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신체학대 676건(34.6%), 방임 439건(22.5%), 성학대 51건(2.6%) 순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697건(56.2%), 분리보호 543건(43.8%)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없었음. 최종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580건(46.8%), 분리보호 470건(37.9%),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89건(15.2%)이었음.

- _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736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 387건(31.2%), 아동과의 분리 68건(5.5%),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49건(4.0%) 순으로 나타남.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695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처리 443건(35.7%), 아동과의 분리 68건(5.5%),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34건(2.7%) 순으로 나타남.
- _ 2014/2015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를 비교하여 아동학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율이 재학대 미발생 사례의 분리보호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높게 나타남.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한부모가정 등 친부모가족 외 형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

- _ 2015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11,715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19건이며, 전체 사례의 0.2%를 차지함. 실제 사망아동 수는 16명임.
- _ 총 19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10건(52.6%), 여아 9건(47.4%)으로 나타남.
- _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9건의 사례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6건(31.6%), 13건(68.4%)으로 여성 학대행위자가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_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4건과 12건, 계부와 친조모, 부모의 동거인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연령 중 만 1세미만이 7건, 만 1세가 2건, 만 2세가 4건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13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건, 20대 3건이었음.
- _ 사망아동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13건, 68.4%), 학대행위자 가정 내, 친척집, 학교, 숙박업소(찜질방, 여관 등)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각각 1건(5.3%)으로 나타났고, 기타 발생 사례(주유소)는 2건(10.5%)이었음.

- _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대가 14건으로 73.7%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_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10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복학대가 6건(31.6%), 방임 3건(15.8%)으로 나타남.
- _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소 · 고발 · 사건처리가 13건(68.4%),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5건(26.3%), 지속관찰 1건(5.3%)이었음.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 _ 2015년 아동학대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1,189건으로 전체의 10.1%에 해당함.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427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시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296건(24.9%), 초 · 중 · 고교 직원 234건(19.7%), 유치원교직원 203건(17.1%), 기타시설 종사자 222건(1.9%),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7건(0.6%) 순으로 나타남.
 - 각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4건(1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143건(12.0%), 경상북도 142건(11.9%) 순으로 나타남.
- _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아동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671건(56.4%), 여아 518건(43.6%)이었음.
- _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 중 · 고교 직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_ 시설 종사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없음이 894건(62.4%)으로 기타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_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중 여성 875건(73.6%), 남성 314건(26.4%)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_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은 20대가 363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07건(25.8%), 30대 301건(25.3%), 50대 199건(16.7%) 순으로 나타남.
- _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보육교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297건(51.6%), 유치원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성없음이 각각 165건(75.3%), 161건(40.0%), 4건(57.1%), 초 · 중 · 고교 직원과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각각 147건(36.7%), 9건(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임.
 -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중복학대가 각각 183건(42.9%), 137건(6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정서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64건(27.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방임이 134건(45.3%),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 중복학대가 각각 7건(31.8%),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4건(57.1%)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신체학대 688건(41.6%), 정서학대 656건 (39.7%), 방임 225건(13.6%), 성학대 84건(5.1%) 순으로 나타남. 보육교직원과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신체학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치원교직원과 초·중·고교 직원은 정서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방임, 기타시설 종사자는 신체학대와 정서 학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939건(79.0%), 지속관찰 220건(18.5%), 아동과의 분리 30건(2.5%) 순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2016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 보고서¹⁾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을 일부 발췌하여 제시함.
- 2015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약 1,315,575시간(상담원 1인당 약 2,520시간, 315일), 1인당 업무소실(L)은 약 148시간(18.6일)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이 수행한 치료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약 256,727시간(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약 4,208시간, 526일), 1인당 업무소실(L)은 약 148시간(18.5일)으로 추정되었음.
-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L_{yo})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약 231일 (1,851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약 231일(1,852시간)이었음.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¹⁾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경찰대학교 정웅 연구관이 수행한 연구결과임.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231일(1,851시간) 대비 84일(669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231일(1,852시간) 대비 295일(2,356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H_p = T$)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L_{yo})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710.7명¹⁾으로 나타남.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5년 기준 총 138.6명²⁾이 치료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2001~2015년)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6.0%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8.0%로 상승함.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을 살펴보면 2001년 0.5%에서 2013년까지 14.1%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3.1%, 12.4%로 2015년엔 전년 대비 1%포인트 가량 낮아진 비율을 보임.

연도별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5년 4,900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7배 이상 증가함.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약 0.4%포인트 증가함.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2015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된 비율이 55.7%로 전년 대비 24.5%포인트가 감소 함. 반면 112를 통한 신고접수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27.1%포인트가 증가함.

1)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상담원 수는 522명임.

2)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1명임.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2001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8%가 증가함.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 처음으로 80% 미만인 79.8%로 나타남.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12.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친부모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2015년 1,2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2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4.3%에 해당하였으나 2015년에는 10.6%로 다소 감소함.
- 연도별 재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2013년까지 매년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성학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까지 최초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재학대 발생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2014년까지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70% 이내 수준이었고, 분리보호는 30% 이내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5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원가정보호율은 9.8%포인트가 감소하였고, 분리보호율은 9.7%포인트가 증가함.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에는 전년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약 19%포인트 이상 증가함.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는 총 155건으로 집계됨.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과반수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5년에는 신체학대가 52.6%로 가장 많이 발생함.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해마다 지속관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의 경우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68.4%의 높은 비율을 보임.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 2015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656회, 수강 인원수는 총 212,503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남 304회(18.4%), 서울 257회(15.5%), 울산 179회(10.8%) 순으로 높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강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36,106명(17.0%), 경기 32,367명(15.2%), 서울 23,604명(11.1%) 순으로 나타남.
- 2015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372회, 수강 인원수는 총 214,941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205회(14.9%), 충남 162회(11.8%), 부산 152회(11.1%) 순으로 높았고, 신고의무자 수강 인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34,066명(15.8%), 충남 24,183명(11.3%), 서울 23,379명(10.9%) 순으로 나타남.

제1장

서 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2. 주요내용
3. 자료수집 과정
4. 자료분석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01 서 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증대되었다. 2014년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이 마련되었고,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인 112로 통합하여 신고전화번호를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이전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56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례슈퍼비전 및 모니터링, 법

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활동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거). 이러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학대사례로 신고접수 되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2015년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분 류	내 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 서비스 제공 현황

분 류	내 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 재학대 사례 • 사망아동 사례 •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3. 자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5년 12월 말 기준 기관장 제외 522명 상담원)에서 아동학대사례가 신고접수된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계자료는 2016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중 백분율의 경우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2장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자 유형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02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하여 24시간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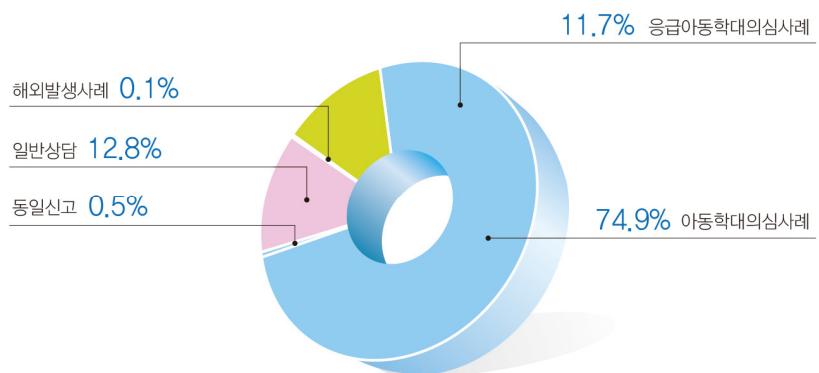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다음으로 동일신고는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례는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

2015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포함한 신고접수 건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9,214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2,252건, 14,39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6.7%를 차지하였다. 동일신고는 전체의 0.5%에 해당하는 87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2,465건으로 12.8%에 해당하였다.

〈표 2-1〉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252 (11.7)	14,399 (74.9)	16,651 (86.7)	87 (0.5)	2,465 (12.8)	11 (0.1)	19,214 (100.0)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또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이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규 및 재신고 사례^{*}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이며, 사례진행 중 재신고는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 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이며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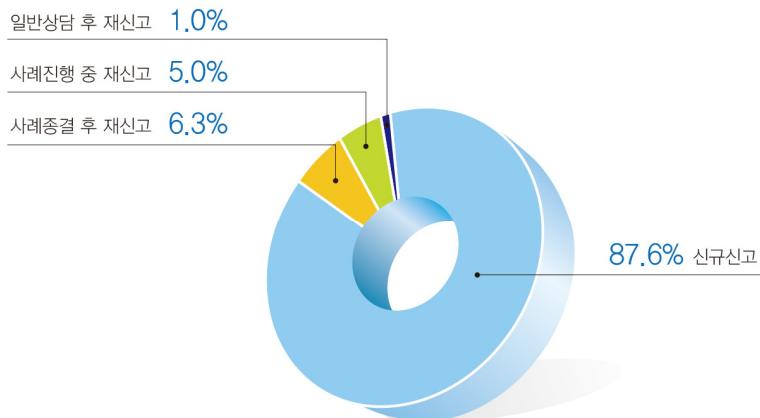
2015년에 신고접수된 19,214건 중 재신고 사례는 12.4%에 해당하는 2,379건이며, 이 외의 16,835건(87.6%)은 2015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된 사례이다. 재신고 사례 유형에 따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는 1,215건(6.3%)이었으며,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는 각각 969건(5.0%), 195건(1.0%)으로 집계되었다.

* 재신고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 된 사례를 말하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재신고 사례				신규신고 사례	계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1,215 (6.3)	969 (5.0)	195 (1.0)	2,379 (12.4)	16,835 (87.6)	19,2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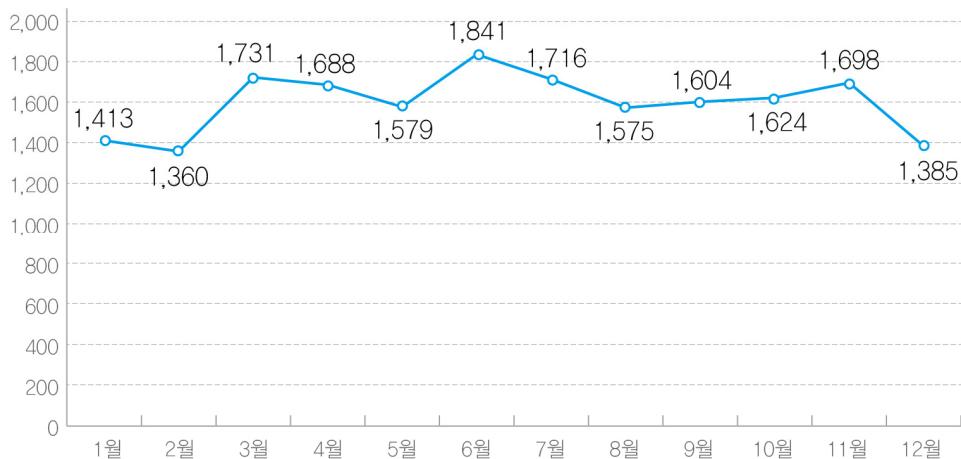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표 2-3〉은 2015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사례 건수를 월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6월에 총 1,841건(9.6%), 3월에 총 1,731건(9.0%), 7월에 총 1,716건(8.9%) 순으로 월별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신고접수 되었다. 작년에는 4월·5월·6월에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3월·6월·7월에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사회적 인식 및 민감성이 높아졌으며, 정부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접수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고접수가 적게 들어온 시기는 2월 총 1,360건(7.1%), 12월 총 1,385건(7.2%), 1월 총 1,413건(7.4%) 순이다. 12월·1월·2월은 추운 날씨에 옷차림이 두터워져서 외관상 학대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학 시기와 추운 날씨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 인에게 학대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13 (7.4)	1,360 (7.1)	1,731 (9.0)	1,688 (8.8)	1,579 (8.2)	1,841 (9.6)	1,716 (8.9)	1,575 (8.2)	1,604 (8.3)	1,624 (8.5)	1,698 (8.8)	1,385 (7.2)	19,214 (100.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접수

〈표 2-4〉와 같이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746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71건(3.5%),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1건(3.1%),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9건(2.9%),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555건(2.9%)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중앙*	—	—	—	—	—	—	4 (100.0)	4 (100.0)
서울	서울특별시	21 (7.0)	265 (88.0)	286 (95.0)	15 (5.0)	0 (0.0)	0 (0.0)	301 (100.0)
	서울특별시동부	74 (13.2)	387 (69.2)	461 (82.5)	97 (17.4)	1 (0.2)	0 (0.0)	559 (100.0)
	서울강서	38 (12.8)	218 (73.4)	256 (86.2)	36 (12.1)	5 (1.7)	0 (0.0)	297 (100.0)
	서울은평	42 (13.3)	206 (65.2)	248 (78.5)	67 (21.2)	1 (0.3)	0 (0.0)	316 (100.0)
	서울영등포	26 (8.8)	210 (70.9)	236 (79.7)	57 (19.3)	0 (0.0)	3 (1.0)	296 (100.0)
	서울성북	47 (17.8)	202 (76.5)	249 (94.3)	14 (5.3)	1 (0.4)	0 (0.0)	264 (100.0)
	서울마포	22 (7.5)	195 (66.8)	217 (74.3)	75 (25.7)	0 (0.0)	0 (0.0)	292 (100.0)
	서울동남권**	—	—	—	—	—	—	—
	소 계	270 (11.6)	1,683 (72.4)	1,953 (84.0)	361 (15.5)	8 (0.3)	3 (0.1)	2,325 (100.0)
부산	부산광역시	21 (6.9)	225 (73.5)	246 (80.4)	59 (19.3)	1 (0.3)	0 (0.0)	306 (100.0)
	부산동부	16 (3.8)	358 (85.0)	374 (88.8)	46 (10.9)	1 (0.2)	0 (0.0)	421 (100.0)
	부산서부***	23 (13.3)	121 (69.9)	144 (83.2)	29 (16.8)	0 (0.0)	0 (0.0)	173 (100.0)
	소 계	60 (6.7)	704 (78.2)	764 (84.9)	134 (14.9)	2 (0.2)	0 (0.0)	900 (100.0)
대구	대구광역시	36 (10.5)	261 (76.1)	297 (86.6)	46 (13.4)	0 (0.0)	0 (0.0)	343 (100.0)
	대구남부	39 (13.2)	186 (62.8)	225 (76.0)	68 (23.0)	3 (1.0)	0 (0.0)	296 (100.0)
	소 계	75 (11.7)	447 (70.0)	522 (81.7)	114 (17.8)	3 (0.5)	0 (0.0)	639 (100.0)
인천	인천광역시	31 (7.3)	297 (70.4)	328 (77.7)	94 (22.3)	0 (0.0)	0 (0.0)	422 (100.0)
	인천북부	47 (18.1)	165 (63.7)	212 (81.9)	45 (17.4)	2 (0.8)	0 (0.0)	259 (100.0)
	인천미추홀****	0 (0.0)	8 (100.0)	8 (100.0)	0 (0.0)	0 (0.0)	0 (0.0)	8 (100.0)
	인천남부***	17 (7.3)	168 (71.8)	185 (79.1)	47 (20.1)	2 (0.9)	0 (0.0)	234 (100.0)
	소 계	95 (10.3)	638 (69.1)	733 (79.4)	186 (20.2)	4 (0.4)	0 (0.0)	923 (100.0)
광주	광주광역시	54 (14.1)	297 (77.3)	351 (91.4)	32 (8.3)	1 (0.3)	0 (0.0)	384 (100.0)
대전	대전광역시	27 (5.3)	374 (73.0)	401 (78.3)	108 (21.1)	1 (0.2)	2 (0.4)	512 (100.0)
울산	울산광역시	93 (13.9)	433 (64.5)	526 (78.4)	141 (21.0)	4 (0.6)	0 (0.0)	671 (100.0)
경기	경기도	88 (16.2)	430 (79.0)	518 (95.2)	26 (4.8)	0 (0.0)	0 (0.0)	544 (100.0)
	경기북부	31 (6.6)	391 (83.0)	422 (89.6)	38 (8.1)	11 (2.3)	0 (0.0)	471 (100.0)
	경기성남	24 (4.8)	452 (90.2)	476 (95.0)	22 (4.4)	3 (0.6)	0 (0.0)	501 (100.0)
	경기고양	27 (6.0)	301 (66.9)	328 (72.9)	109 (24.2)	13 (2.9)	0 (0.0)	450 (100.0)
	경기부천	35 (10.1)	269 (78.0)	304 (88.1)	40 (11.6)	1 (0.3)	0 (0.0)	345 (100.0)
	경기화성	97 (20.8)	326 (70.0)	423 (90.8)	42 (9.0)	1 (0.2)	0 (0.0)	466 (100.0)
	경기남양주	39 (11.1)	270 (76.9)	309 (88.0)	38 (10.8)	3 (0.9)	1 (0.3)	351 (100.0)
	안산시	112 (15.0)	542 (72.7)	654 (87.7)	85 (11.4)	7 (0.9)	0 (0.0)	746 (100.0)
	경기용인	35 (9.2)	309 (81.3)	344 (90.5)	35 (9.2)	1 (0.3)	0 (0.0)	380 (100.0)
	경기시흥	113 (32.7)	182 (52.6)	295 (85.3)	51 (14.7)	0 (0.0)	0 (0.0)	346 (100.0)
	경기평택***	15 (9.0)	129 (77.2)	144 (86.2)	23 (13.8)	0 (0.0)	0 (0.0)	167 (100.0)
	소 계	616 (12.9)	3,601 (75.5)	4,217 (88.5)	509 (10.7)	40 (0.8)	1 (0.0)	4,767 (100.0)
강원	강원도	25 (8.9)	241 (85.5)	266 (94.3)	16 (5.7)	0 (0.0)	0 (0.0)	282 (100.0)
	강원동부	17 (6.2)	239 (86.9)	256 (93.1)	19 (6.9)	0 (0.0)	0 (0.0)	275 (100.0)
	원주시	56 (17.7)	223 (70.3)	279 (88.0)	36 (11.4)	2 (0.6)	0 (0.0)	317 (100.0)
	강원남부***	2 (66.7)	1 (33.3)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소 계	100 (11.4)	704 (80.3)	804 (91.7)	71 (8.1)	2 (0.2)	0 (0.0)	877 (100.0)

(계속)

(단위 : 건, %)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중북	충청북도	61 (12.1)	384 (76.2)	445 (88.3)	59 (11.7)	0 (0.0)	504 (100.0)	
	충북북부	15 (5.2)	231 (79.7)	246 (84.8)	43 (14.8)	1 (0.3)	290 (100.0)	
	충북남부	17 (11.3)	109 (72.2)	126 (83.4)	24 (15.9)	1 (0.7)	151 (100.0)	
	소 계	93 (9.8)	724 (76.6)	817 (86.5)	126 (13.3)	2 (0.2)	945 (100.0)	
충남	충청남도	77 (14.3)	405 (75.3)	482 (89.6)	56 (10.4)	0 (0.0)	538 (100.0)	
	충청남도남부	22 (7.1)	249 (80.8)	271 (88.0)	33 (10.7)	4 (1.3)	308 (100.0)	
	충청남도서부	35 (16.0)	151 (68.9)	186 (84.9)	32 (14.6)	1 (0.5)	219 (100.0)	
	소 계	134 (12.6)	805 (75.6)	939 (88.2)	121 (11.4)	5 (0.5)	1,065 (100.0)	
전북	전라북도	71 (13.8)	367 (71.4)	438 (85.2)	76 (14.8)	0 (0.0)	514 (100.0)	
	전라북도서부	81 (14.6)	414 (74.6)	495 (89.2)	60 (10.8)	0 (0.0)	555 (100.0)	
	전라북도동부	34 (13.1)	198 (76.4)	232 (89.6)	26 (10.0)	1 (0.4)	259 (100.0)	
	소 계	186 (14.0)	979 (73.7)	1,165 (87.7)	162 (12.2)	1 (0.1)	1,328 (100.0)	
전남	전라남도	21 (6.4)	282 (85.5)	303 (91.8)	27 (8.2)	0 (0.0)	330 (100.0)	
	전남서부권	32 (8.4)	307 (81.0)	339 (89.4)	39 (10.3)	1 (0.3)	379 (100.0)	
	전남중부권	72 (21.0)	265 (77.3)	337 (98.3)	5 (1.5)	1 (0.3)	343 (100.0)	
	소 계	125 (11.9)	854 (81.2)	979 (93.1)	71 (6.7)	2 (0.2)	1,052 (100.0)	
경북	경북남부	21 (9.3)	158 (69.6)	179 (78.9)	47 (20.7)	1 (0.4)	227 (100.0)	
	경북북부	46 (14.8)	225 (72.6)	271 (87.4)	36 (11.6)	2 (0.6)	310 (100.0)	
	경북동부	34 (6.3)	449 (83.3)	483 (89.6)	52 (9.6)	4 (0.7)	539 (100.0)	
	경북서부	35 (10.5)	231 (69.4)	266 (79.9)	63 (18.9)	4 (1.2)	333 (100.0)	
	소 계	136 (9.7)	1,063 (75.4)	1,199 (85.1)	198 (14.1)	11 (0.8)	1,409 (100.0)	
경남	경상남도	89 (14.8)	495 (82.4)	584 (97.2)	17 (2.8)	0 (0.0)	601 (100.0)	
	경남서부	39 (17.0)	186 (80.9)	225 (97.8)	5 (2.2)	0 (0.0)	230 (100.0)	
	김해시***	19 (16.5)	89 (77.4)	108 (93.9)	7 (6.1)	0 (0.0)	115 (100.0)	
	소 계	147 (15.5)	770 (81.4)	917 (96.9)	29 (3.1)	0 (0.0)	946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6 (11.2)	225 (69.9)	261 (81.1)	61 (18.9)	0 (0.0)	322 (100.0)	
	서귀포시	5 (3.4)	98 (67.6)	103 (71.0)	41 (28.3)	1 (0.7)	145 (100.0)	
	소 계	41 (8.8)	323 (69.2)	364 (77.9)	102 (21.8)	1 (0.2)	467 (100.0)	
계		2,252 (11.7)	14,399 (74.9)	16,651 (86.7)	2,465 (12.8)	87 (0.5)	11 (0.1)	19,214 (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외발생사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되는 사례만 신고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접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또는 일반상담을 실시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5일 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4월 1일 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7월 1일 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11월 9일 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3월 27일 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일자로 폐쇄됨.

3) 시군구별 신고접수

〈표 2-5〉와 같이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343건(2.1%), 경기 안산시 단원구 310건(1.9%), 강원 원주시 279건(1.7%), 경북 포항시 남구 271건(1.6%)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달리 전남 곡성군 2건(0.0%), 인천 옹진군 3건(0.0%), 강원 양구군 3건(0.0%), 경남 합천군 3건(0.0%) 순으로 신고접수 건수가 낮았다.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이동학대의심사례	이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중구	3 (0.1)	17 (0.1)	20 (0.1)
	종로구	3 (0.1)	24 (0.2)	27 (0.2)
	서대문구	8 (0.4)	61 (0.4)	69 (0.4)
	마포구	7 (0.3)	89 (0.6)	96 (0.6)
	은평구	23 (1.0)	130 (0.9)	153 (0.9)
	동대문구	12 (0.5)	73 (0.5)	85 (0.5)
	중랑구	20 (0.9)	160 (1.1)	180 (1.1)
	도봉구	18 (0.8)	62 (0.4)	80 (0.5)
	성동구	10 (0.4)	22 (0.2)	32 (0.2)
	강동구	8 (0.4)	69 (0.5)	77 (0.5)
	강남구	4 (0.2)	48 (0.3)	52 (0.3)
	성북구	29 (1.3)	140 (1.0)	169 (1.0)
	서초구	1 (0.0)	43 (0.3)	44 (0.3)
	송파구	6 (0.3)	31 (0.2)	37 (0.2)
	노원구	20 (0.9)	74 (0.5)	94 (0.6)
	용산구	7 (0.3)	47 (0.3)	54 (0.3)
	강북구	16 (0.7)	50 (0.3)	66 (0.4)
	광진구	9 (0.4)	42 (0.3)	51 (0.3)
	영등포구	12 (0.5)	69 (0.5)	81 (0.5)
	관악구	1 (0.0)	52 (0.4)	53 (0.3)
	구로구	12 (0.5)	52 (0.4)	64 (0.4)
	금천구	2 (0.1)	90 (0.6)	92 (0.6)
	동작구	3 (0.1)	22 (0.2)	25 (0.2)
	강서구	18 (0.8)	115 (0.8)	133 (0.8)
	양천구	20 (0.9)	103 (0.7)	123 (0.7)
	소 계	272 (12.1)	1,685 (11.7)	1,957 (11.8)
부산	중구	1 (0.0)	6 (0.0)	7 (0.0)
	동구	9 (0.4)	31 (0.2)	40 (0.2)
	서구	0 (0.0)	17 (0.1)	17 (0.1)
	사하구	7 (0.3)	67 (0.5)	74 (0.4)
	영도구	0 (0.0)	28 (0.2)	28 (0.2)
	동래구	3 (0.1)	51 (0.4)	54 (0.3)
	남구	3 (0.1)	52 (0.4)	55 (0.3)
	금정구	2 (0.1)	47 (0.3)	49 (0.3)
	연제구	4 (0.2)	66 (0.5)	70 (0.4)
	해운대구	3 (0.1)	116 (0.8)	119 (0.7)
	수영구	3 (0.1)	38 (0.3)	41 (0.2)
	부산진구	7 (0.3)	55 (0.4)	62 (0.4)
	북구	8 (0.4)	21 (0.1)	29 (0.2)
	사상구	5 (0.2)	44 (0.3)	49 (0.3)
	강서구	5 (0.2)	14 (0.1)	19 (0.1)
	기장군	1 (0.0)	51 (0.4)	52 (0.3)
	소 계	61 (2.7)	704 (4.9)	765 (4.6)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대구	중구	2 (0.1)	12 (0.1)	14 (0.1)
	동구	5 (0.2)	60 (0.4)	65 (0.4)
	북구	6 (0.3)	82 (0.6)	88 (0.5)
	서구	20 (0.9)	60 (0.4)	80 (0.5)
	달서구	20 (0.9)	101 (0.7)	121 (0.7)
	남구	15 (0.7)	50 (0.3)	65 (0.4)
	수성구	5 (0.2)	46 (0.3)	51 (0.3)
	달성군	4 (0.2)	36 (0.3)	40 (0.2)
	소 계	77 (3.4)	447 (3.1)	524 (3.1)
인천	중구	5 (0.2)	36 (0.3)	41 (0.2)
	동구	0 (0.0)	21 (0.1)	21 (0.1)
	남구	11 (0.5)	82 (0.6)	93 (0.6)
	부평구	13 (0.6)	138 (1.0)	151 (0.9)
	서구	24 (1.1)	106 (0.7)	130 (0.8)
	남동구	10 (0.4)	136 (0.9)	146 (0.9)
	연수구	9 (0.4)	65 (0.5)	74 (0.4)
	계양구	16 (0.7)	42 (0.3)	58 (0.3)
	강화군	7 (0.3)	9 (0.1)	16 (0.1)
	옹진군	0 (0.0)	3 (0.0)	3 (0.0)
	소 계	95 (4.2)	638 (4.4)	733 (4.4)
광주	북구	20 (0.9)	65 (0.5)	85 (0.5)
	동구	2 (0.1)	24 (0.2)	26 (0.2)
	서구	14 (0.6)	75 (0.5)	89 (0.5)
	남구	6 (0.3)	54 (0.4)	60 (0.4)
	광산구	12 (0.5)	79 (0.5)	91 (0.5)
	소 계	54 (2.4)	297 (2.1)	351 (2.1)
대전	동구	5 (0.2)	67 (0.5)	72 (0.4)
	중구	1 (0.0)	66 (0.5)	67 (0.4)
	서구	11 (0.5)	118 (0.8)	129 (0.8)
	유성구	5 (0.2)	55 (0.4)	60 (0.4)
	대덕구	5 (0.2)	67 (0.5)	72 (0.4)
	소 계	27 (1.2)	373 (2.6)	400 (2.4)
울산	남구	19 (0.8)	118 (0.8)	137 (0.8)
	종구	16 (0.7)	92 (0.6)	108 (0.6)
	동구	15 (0.7)	73 (0.5)	88 (0.5)
	북구	20 (0.9)	77 (0.5)	97 (0.6)
	울주군	23 (1.0)	73 (0.5)	96 (0.6)
	소 계	93 (4.1)	433 (3.0)	526 (3.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6 (0.3)	54 (0.4)	60 (0.4)
	고양시 일산서구	4 (0.2)	61 (0.4)	65 (0.4)
	고양시 덕양구	6 (0.3)	93 (0.6)	99 (0.6)
	파주시	11 (0.5)	96 (0.7)	107 (0.6)
	김포시	6 (0.3)	80 (0.6)	86 (0.5)
	부천시 원미구	10 (0.4)	80 (0.6)	90 (0.5)
	부천시 오정구	10 (0.4)	66 (0.5)	76 (0.5)
	부천시 소사구	9 (0.4)	43 (0.3)	52 (0.3)
	광명시	28 (1.2)	76 (0.5)	104 (0.6)
	안산시 단원구	63 (2.8)	247 (1.7)	310 (1.9)
	안산시 상록구	49 (2.2)	294 (2.0)	343 (2.1)
	과천시	0 (0.0)	10 (0.1)	10 (0.1)
	시흥시	85 (3.8)	106 (0.7)	191 (1.1)
	안양시 만안구	1 (0.0)	28 (0.2)	29 (0.2)
	안양시 동안구	9 (0.4)	20 (0.1)	29 (0.2)
	군포시	3 (0.1)	33 (0.2)	36 (0.2)
	의왕시	4 (0.2)	35 (0.2)	39 (0.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경기	수원시 장안구	22 (1.0)	68 (0.5)	90 (0.5)
	수원시 권선구	24 (1.1)	118 (0.8)	142 (0.9)
	수원시 팔달구	17 (0.8)	61 (0.4)	78 (0.5)
	수원시 영통구	8 (0.4)	56 (0.4)	64 (0.4)
	화성시	56 (2.5)	177 (1.2)	233 (1.4)
	용인시 기흥구	2 (0.1)	89 (0.6)	91 (0.5)
	오산시	15 (0.7)	58 (0.4)	73 (0.4)
	용인시 수지구	3 (0.1)	79 (0.5)	82 (0.5)
	용인시 처인구	7 (0.3)	56 (0.4)	63 (0.4)
	평택시	34 (1.5)	164 (1.1)	198 (1.2)
	안성시	5 (0.2)	56 (0.4)	61 (0.4)
	성남시 수정구	3 (0.1)	117 (0.8)	120 (0.7)
	성남시 중원구	5 (0.2)	91 (0.6)	96 (0.6)
	성남시 분당구	5 (0.2)	93 (0.6)	98 (0.6)
	광주시	7 (0.3)	107 (0.7)	114 (0.7)
	하남시	3 (0.1)	31 (0.2)	34 (0.2)
	이천시	13 (0.6)	47 (0.3)	60 (0.4)
	여주시	10 (0.4)	38 (0.3)	48 (0.3)
	구리시	9 (0.4)	90 (0.6)	99 (0.6)
	남양주시	29 (1.3)	164 (1.1)	193 (1.2)
	양평군	0 (0.0)	12 (0.1)	12 (0.1)
	가평군	1 (0.0)	17 (0.1)	18 (0.1)
	의정부시	12 (0.5)	152 (1.1)	164 (1.0)
	양주시	2 (0.1)	62 (0.4)	64 (0.4)
	동두천시	8 (0.4)	47 (0.3)	55 (0.3)
	연천군	3 (0.1)	12 (0.1)	15 (0.1)
	포천시	6 (0.3)	118 (0.8)	124 (0.7)
	소 계	613 (27.2)	3,602 (25.0)	4,215 (25.3)
강원	춘천시	16 (0.7)	127 (0.9)	143 (0.9)
	화천군	1 (0.0)	5 (0.0)	6 (0.0)
	강릉시	7 (0.3)	88 (0.6)	95 (0.6)
	양양군	0 (0.0)	5 (0.0)	5 (0.0)
	속초시	2 (0.1)	26 (0.2)	28 (0.2)
	고성군	0 (0.0)	6 (0.0)	6 (0.0)
	원주시	56 (2.5)	223 (1.5)	279 (1.7)
	횡성군	0 (0.0)	23 (0.2)	23 (0.1)
	영월군	5 (0.2)	18 (0.1)	23 (0.1)
	평창군	2 (0.1)	23 (0.2)	25 (0.2)
	정선군	0 (0.0)	12 (0.1)	12 (0.1)
	태백시	2 (0.1)	11 (0.1)	13 (0.1)
	동해시	3 (0.1)	39 (0.3)	42 (0.3)
	삼척시	5 (0.2)	53 (0.4)	58 (0.3)
	홍천군	1 (0.0)	20 (0.1)	21 (0.1)
	인제군	0 (0.0)	13 (0.1)	13 (0.1)
	양구군	0 (0.0)	3 (0.0)	3 (0.0)
	철원군	0 (0.0)	10 (0.1)	10 (0.1)
	소 계	100 (4.4)	705 (4.9)	805 (4.8)

(계속)

시도	시군구	응급이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단위 : 건, %)
계				
충북	청주시 상당구	6 (0.3)	40 (0.3)	46 (0.3)
	청주시 흥덕구	17 (0.8)	95 (0.7)	112 (0.7)
	청주시 서원구	4 (0.2)	38 (0.3)	42 (0.3)
	청주시 청원구	22 (1.0)	156 (1.1)	178 (1.1)
	진천군	1 (0.0)	15 (0.1)	16 (0.1)
	괴산군	1 (0.0)	8 (0.1)	9 (0.1)
	증평군	4 (0.2)	6 (0.0)	10 (0.1)
	음성군	5 (0.2)	26 (0.2)	31 (0.2)
	영동군	4 (0.2)	57 (0.4)	61 (0.4)
	옥천군	8 (0.4)	34 (0.2)	42 (0.3)
	보은군	6 (0.3)	17 (0.1)	23 (0.1)
	충주시	13 (0.6)	126 (0.9)	139 (0.8)
	제천시	2 (0.1)	85 (0.6)	87 (0.5)
	단양군	0 (0.0)	20 (0.1)	20 (0.1)
	소 계	93 (4.1)	723 (5.0)	816 (4.9)
충남	금산군	0 (0.0)	31 (0.2)	31 (0.2)
	공주시	4 (0.2)	47 (0.3)	51 (0.3)
	논산시	5 (0.2)	117 (0.8)	122 (0.7)
	계룡시	0 (0.0)	5 (0.0)	5 (0.0)
	부여군	8 (0.4)	40 (0.3)	48 (0.3)
	서천군	5 (0.2)	10 (0.1)	15 (0.1)
	천안시 동남구	32 (1.4)	92 (0.6)	124 (0.7)
	천안시 서북구	15 (0.7)	103 (0.7)	118 (0.7)
	아산시	18 (0.8)	129 (0.9)	147 (0.9)
	예산군	5 (0.2)	24 (0.2)	29 (0.2)
	당진시	8 (0.4)	41 (0.3)	49 (0.3)
	청양군	0 (0.0)	7 (0.0)	7 (0.0)
	홍성군	6 (0.3)	15 (0.1)	21 (0.1)
	보령시	7 (0.3)	50 (0.3)	57 (0.3)
	서산시	15 (0.7)	47 (0.3)	62 (0.4)
	태안군	2 (0.1)	7 (0.0)	9 (0.1)
	세종특별자치시	4 (0.2)	37 (0.3)	41 (0.2)
	소 계	134 (6.0)	802 (5.6)	936 (5.6)
전북	전주시 완산구	33 (1.5)	155 (1.1)	188 (1.1)
	전주시 덕진구	15 (0.7)	81 (0.6)	96 (0.6)
	완주군	9 (0.4)	35 (0.2)	44 (0.3)
	임실군	3 (0.1)	50 (0.3)	53 (0.3)
	진안군	4 (0.2)	12 (0.1)	16 (0.1)
	무주군	10 (0.4)	9 (0.1)	19 (0.1)
	익산시	37 (1.6)	213 (1.5)	250 (1.5)
	군산시	35 (1.6)	129 (0.9)	164 (1.0)
	김제시	3 (0.1)	37 (0.3)	40 (0.2)
	부안군	4 (0.2)	9 (0.1)	13 (0.1)
	정읍시	10 (0.4)	84 (0.6)	94 (0.6)
	고창군	2 (0.1)	26 (0.2)	28 (0.2)
	남원시	14 (0.6)	105 (0.7)	119 (0.7)
	순창군	7 (0.3)	20 (0.1)	27 (0.2)
	장수군	0 (0.0)	14 (0.1)	14 (0.1)
	소 계	186 (8.3)	979 (6.8)	1,165 (7.0)

(계속)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전남	영광군	6 (0.3)	36 (0.3)	42 (0.3)
	장성군	6 (0.3)	28 (0.2)	34 (0.2)
	곡성군	2 (0.1)	0 (0.0)	2 (0.0)
	담양군	3 (0.1)	13 (0.1)	16 (0.1)
	화순군	10 (0.4)	42 (0.3)	52 (0.3)
	나주시	24 (1.1)	67 (0.5)	91 (0.5)
	함평군	7 (0.3)	16 (0.1)	23 (0.1)
	영암군	2 (0.1)	16 (0.1)	18 (0.1)
	강진군	6 (0.3)	16 (0.1)	22 (0.1)
	장흥군	10 (0.4)	47 (0.3)	57 (0.3)
	목포시	17 (0.8)	150 (1.0)	167 (1.0)
	무안군	2 (0.1)	28 (0.2)	30 (0.2)
	신안군	3 (0.1)	9 (0.1)	12 (0.1)
	해남군	2 (0.1)	42 (0.3)	44 (0.3)
	완도군	3 (0.1)	21 (0.1)	24 (0.1)
	진도군	3 (0.1)	41 (0.3)	44 (0.3)
	순천시	10 (0.4)	113 (0.8)	123 (0.7)
	구례군	0 (0.0)	6 (0.0)	6 (0.0)
	광양시	2 (0.1)	82 (0.6)	84 (0.5)
	보성군	2 (0.1)	12 (0.1)	14 (0.1)
	고흥군	0 (0.0)	6 (0.0)	6 (0.0)
	여수시	5 (0.2)	63 (0.4)	68 (0.4)
	소 계	125 (5.6)	854 (5.9)	979 (5.9)
경북	경산시	8 (0.4)	37 (0.3)	45 (0.3)
	청도군	1 (0.0)	5 (0.0)	6 (0.0)
	군위군	3 (0.1)	5 (0.0)	8 (0.0)
	고령군	3 (0.1)	12 (0.1)	15 (0.1)
	칠곡군	8 (0.4)	41 (0.3)	49 (0.3)
	성주군	0 (0.0)	10 (0.1)	10 (0.1)
	구미시	19 (0.8)	101 (0.7)	120 (0.7)
	김천시	3 (0.1)	47 (0.3)	50 (0.3)
	상주시	0 (0.0)	21 (0.1)	21 (0.1)
	문경시	0 (0.0)	24 (0.2)	24 (0.1)
	영주시	11 (0.5)	32 (0.2)	43 (0.3)
	봉화군	2 (0.1)	9 (0.1)	11 (0.1)
	예천군	3 (0.1)	15 (0.1)	18 (0.1)
	인동시	28 (1.2)	134 (0.9)	162 (1.0)
	청송군	1 (0.0)	6 (0.0)	7 (0.0)
	영양군	2 (0.1)	11 (0.1)	13 (0.1)
	영덕군	3 (0.1)	7 (0.0)	10 (0.1)
	울진군	5 (0.2)	10 (0.1)	15 (0.1)
	의성군	0 (0.0)	30 (0.2)	30 (0.2)
	영천시	1 (0.0)	25 (0.2)	26 (0.2)
	경주시	8 (0.4)	56 (0.4)	64 (0.4)
	포항시 남구	7 (0.3)	264 (1.8)	271 (1.6)
	포항시 북구	18 (0.8)	163 (1.1)	181 (1.1)
	소 계	134 (6.0)	1,065 (7.4)	1,199 (7.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경남	김해시	20 (0.9)	111 (0.8)	131 (0.8)
	양산시	27 (1.2)	61 (0.4)	88 (0.5)
	밀양시	7 (0.3)	12 (0.1)	19 (0.1)
	창원시 마산회원구	6 (0.3)	40 (0.3)	46 (0.3)
	창원시 마산합포구	3 (0.1)	22 (0.2)	25 (0.2)
	창녕군	0 (0.0)	5 (0.0)	5 (0.0)
	의령군	0 (0.0)	16 (0.1)	16 (0.1)
	함안군	2 (0.1)	6 (0.0)	8 (0.0)
	고성군	2 (0.1)	47 (0.3)	49 (0.3)
	창원시 의창구	9 (0.4)	62 (0.4)	71 (0.4)
	창원시 성산구	2 (0.1)	7 (0.0)	9 (0.1)
	창원시 진해구	8 (0.4)	94 (0.7)	102 (0.6)
	통영시	2 (0.1)	12 (0.1)	14 (0.1)
	거제시	20 (0.9)	86 (0.6)	106 (0.6)
	진주시	14 (0.6)	89 (0.6)	103 (0.6)
	사천시	19 (0.8)	52 (0.4)	71 (0.4)
	산청군	1 (0.0)	9 (0.1)	10 (0.1)
	하동군	0 (0.0)	8 (0.1)	8 (0.0)
	남해군	2 (0.1)	10 (0.1)	12 (0.1)
	거창군	1 (0.0)	10 (0.1)	11 (0.1)
	함양군	2 (0.1)	7 (0.0)	9 (0.1)
	합천군	0 (0.0)	3 (0.0)	3 (0.0)
소 계		147 (6.5)	769 (5.3)	916 (5.5)
제주	제주시	36 (1.6)	225 (1.6)	261 (1.6)
	서귀포시	5 (0.2)	98 (0.7)	103 (0.6)
	소 계	41 (1.8)	323 (2.2)	364 (2.2)
총 계		2,252 (100.0)	14,399 (100.0)	16,651 (100.0)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 인력이 추가되어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었다.

〈표 2-6〉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900건(29.4%)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이 2,172건(13.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건(3.6%), 보육교직원 309건(1.9%),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98건(1.8%) 순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11,751건(70.6%)으로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3,590건(21.6%)으로 가장 높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 3,048건(18.3%), 아동본인 1,500건(9.0%) 순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신고건수는 2014년 628건(4.2%)에서 2015년 1,500건(9.0%)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착한신고 캠페인, 아이지킴콜 112 앱 등을 통하여 아동이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 · 중 · 고교 직원	2,172 (13.0)	아동본인	1,500 (9.0)
의료인	137 (0.8)	부모	3,048 (18.3)
이동복지시설종사자	257 (1.5)	형제·자매	231 (1.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46 (0.3)	친인척	452 (2.7)
보육교직원	309 (1.9)	이웃·친구	1,040 (6.2)
유치원교직원·강사	68 (0.4)	경찰	846 (5.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1 (0.2)	종교인	27 (0.2)
소방구급대원	22 (0.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3,590 (21.6)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2 (0.1)	낯선 사람	305 (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5 (0.0)	익명	134 (0.8)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85 (1.7)	기타	578 (3.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 (3.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10 (1.3)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30 (0.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58 (0.3)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9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41 (0.2)		
정신보건센터종사자	49 (0.3)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72 (0.4)		
응급구조사	0 (0.0)		
의료기사	0 (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140 (0.8)		
청소년보호·재활센터종사자	28 (0.2)		
아이돌보미	9 (0.1)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98 (1.8)		
소 계	4,900 (29.4)	소 계	11,751 (70.6)
계			16,651(100.0)

신고의무자 29.4%

70.6% 비신고의무자

〈그림 2-4〉 신고자 유형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사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서울	서울특별시	32	8	7	0	6	1	0	0	0	0	0	6	3
	서울특별시동부	68	5	8	0	7	1	0	0	0	0	5	13	8
	서울강서	41	4	1	0	7	1	0	0	0	0	0	11	4
	서울은평	22	3	1	3	9	2	0	0	0	0	2	7	4
	서울영등포	37	0	5	2	3	1	0	0	0	0	7	4	1
	서울성북	31	0	1	1	7	1	0	0	0	0	0	0	8
	서울마포	17	3	2	0	4	0	0	0	0	0	8	2	-
부산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소 계	248	23	25	6	43	7	0	0	0	2	14	49	30
부산	부산광역시	57	3	6	0	7	1	1	0	0	0	2	1	2
	부산동부	58	1	5	5	2	2	0	0	0	0	6	30	8
	부산서부**	29	1	2	1	0	3	0	2	0	0	4	6	7
대구	소 계	144	5	13	6	9	6	1	2	0	0	12	37	17
인천	대구광역시	46	9	2	0	13	3	0	0	2	1	5	8	7
	대구광역시남부	37	3	4	2	2	1	0	0	0	0	0	10	3
	소 계	83	12	6	2	15	4	0	0	2	1	5	18	10
인천	인천광역시	40	3	0	0	19	1	0	0	0	0	3	13	0
	인천보통부	44	6	2	0	29	2	0	0	0	0	0	2	2
	인천미초홀***	1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남부**	37	3	5	1	4	0	1	1	0	0	1	15	0
광주	소 계	122	12	7	1	52	3	1	1	0	0	4	30	2
광주	광주광역시	45	7	10	0	3	2	0	0	0	0	1	13	0
대전	대전광역시	67	2	6	0	12	1	0	1	1	0	6	4	1
울산	울산광역시	84	6	2	3	12	6	1	1	2	1	7	12	2
경기	경기도	70	5	4	1	11	1	0	1	0	1	13	16	3
	경기북부	32	2	2	1	5	1	0	3	0	0	4	23	11
	경기상남	44	7	7	0	8	8	0	0	3	0	1	12	8
	경기고양	55	5	12	2	9	0	0	0	0	0	0	3	6
	경기부천	29	2	5	0	5	2	0	0	1	0	5	11	11
	경기화성	65	4	4	1	5	4	0	0	0	0	14	14	6
	경기남양주	41	0	2	1	1	0	0	0	0	0	3	2	0
	안산시	62	2	6	0	4	1	0	1	1	0	7	4	5
	경기용인	49	0	2	2	5	0	4	0	0	0	3	6	3
	경기시흥	25	1	3	0	5	0	0	0	0	0	4	11	9
	경기평택**	18	0	0	0	1	0	0	0	0	0	2	10	0
	소 계	490	28	47	8	59	17	4	9	2	1	56	112	62
강원	강원도	53	2	5	0	1	3	6	0	0	0	9	8	2
	강원동부	45	2	9	0	4	1	0	1	0	0	0	4	5
	원주시	30	0	3	1	2	2	0	0	0	0	6	4	7
	강원남부**	2	0	0	0	0	0	0	0	0	0	0	0	0
충북	소 계	130	4	17	1	7	6	6	1	0	0	15	16	14
충남	충청북도	54	2	2	0	6	0	0	1	0	0	5	24	2
	충청북부	11	0	0	5	6	0	0	0	0	0	8	5	1
	충청북남부	22	8	0	2	0	0	0	0	0	0	0	8	1
충남	소 계	87	10	2	7	12	0	0	1	0	0	13	37	4
충남	충청남도	66	10	17	3	6	2	2	1	0	0	38	32	15
	충청남도남부	41	0	4	0	2	2	2	0	2	0	9	8	8
	충청남도서부	24	2	1	0	4	1	0	0	0	0	1	32	4
전북	소 계	131	12	22	3	12	3	4	1	2	0	48	72	27
전북	전라북도	57	1	15	2	1	4	2	0	0	0	10	17	0
	전라북도서부	53	0	12	0	14	1	0	4	0	0	7	21	6
	전라북도동부	34	1	8	1	2	1	0	0	0	0	2	8	0
전남	소 계	144	2	35	3	17	6	2	4	0	0	19	46	6
전남	전라남도	29	1	20	2	6	0	0	0	0	0	3	8	2
	전라남도서부권	45	4	4	0	7	0	0	0	0	0	11	30	5
	전남중부권	51	0	8	1	2	0	0	0	0	0	0	33	6
경북	소 계	125	5	32	3	15	0	0	0	0	0	14	71	13
경북	경북남부	30	3	2	1	5	0	0	0	0	0	1	10	2
	경북북부	35	1	5	0	2	0	0	0	0	0	8	13	4
	경북서부	31	3	7	0	3	4	12	0	1	0	10	6	2
경남	소 계	142	7	15	1	14	5	12	0	1	0	19	44	9
경남	경상남도	61	0	5	2	17	1	0	1	2	0	8	13	5
	경남서부	16	2	1	0	6	0	0	0	0	0	40	13	1
	김해시**	11	0	1	0	1	0	0	0	0	0	0	13	0
제주	소 계	88	2	7	2	24	1	0	1	2	0	48	39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4	0	8	0	1	0	0	0	0	0	4	1	7
	서귀포시	18	0	3	0	2	1	0	0	0	0	0	1	0
	소 계	42	0	11	0	3	1	0	0	0	0	4	2	7
계		2,172	137 (13.0)	257 (1.5)	46 (0.3)	309 (1.9)	68 (0.4)	31 (0.2)	22 (0.1)	12 (0.1)	5 (0.0)	285 (1.7)	602 (3.6)	210 (1.3)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소 계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기족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서울	서울특별시	0	0	0	1	1	0	0	0	4	1	0	1	71
	서울특별시동부	0	0	0	1	0	2	0	0	2	0	0	9	130
	서울강서	0	1	0	0	1	0	0	0	2	0	0	1	74
	서울은평	0	0	0	0	1	0	0	0	3	1	0	0	58
	서울영등포	0	0	0	2	1	2	0	0	1	0	0	0	66
	서울성북	0	0	0	0	0	0	0	0	1	0	0	2	52
	서울마포	0	0	0	0	4	0	0	0	0	0	0	11	53
부산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소 계	0	1	0	4	8	4	0	0	13	3	0	24	504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0	2	1	0	8	91
	부산동부	0	3	0	0	0	0	0	0	6	1	0	6	133
대구	부산서부	1	1	3	0	0	0	0	0	2	2	0	6	70
	소 계	1	4	3	0	0	0	0	0	10	4	0	20	294
	대구광역시	0	0	0	0	0	3	0	0	2	1	0	1	103
인천	대구광역시남부	0	0	1	0	1	0	0	0	0	0	0	3	67
	소 계	0	0	1	0	1	3	0	0	2	1	0	4	170
	인천광역시	7	1	2	0	0	2	0	0	1	0	2	2	96
인천	인천동부	0	10	0	0	2	0	0	0	0	0	0	5	104
	인천미추홀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천남부	0	3	0	0	0	0	0	0	0	0	0	0	71
	소 계	7	14	2	0	2	2	0	0	1	0	2	7	272
광주	광주광역시	0	1	0	1	3	0	0	0	1	0	0	0	87
	대전광역시	0	0	0	0	2	1	0	0	4	0	0	2	110
	울산광역시	2	1	0	0	0	2	0	0	2	5	0	2	153
경기	경기도	0	0	1	0	2	2	0	0	4	1	0	2	138
	경기북부	6	1	1	0	0	1	0	0	2	2	0	12	109
	경기성남	0	5	0	1	0	2	0	0	7	1	0	10	125
	경기고양	0	1	0	0	2	4	0	0	0	0	0	2	101
	경기부천	0	4	1	0	2	1	0	0	2	1	0	4	85
	경기화성	0	3	1	0	4	0	0	0	2	1	0	8	136
	경기仁川	0	0	0	0	0	0	0	0	4	0	0	2	56
	경기안양주	0	0	0	0	0	0	0	0	7	0	0	8	111
	경기용인	0	2	0	3	1	1	0	0	11	0	0	2	94
	경기시흥	0	0	1	0	2	0	0	0	1	1	0	4	67
경기	경기평택	4	0	0	0	1	1	0	0	0	0	0	3	40
	소 계	10	17	5	4	14	14	0	0	40	6	0	57	1,062
강원	강원도	0	0	0	0	0	1	0	0	3	0	0	2	95
	강원동부	0	0	0	0	1	1	0	0	2	0	0	6	81
	원주시	0	0	0	2	4	0	0	0	1	0	0	3	65
	강원남부	0	0	0	0	0	0	0	0	0	0	0	2	2
	소 계	0	0	0	2	5	2	0	0	6	0	0	11	243
충북	충청북도	3	0	0	0	0	1	0	0	5	1	0	1	107
	충청북부	0	2	0	2	3	0	0	1	0	1	0	14	59
	충북남부	0	2	0	0	1	0	0	0	0	0	0	16	60
	소 계	3	4	0	2	4	1	0	0	6	1	1	31	226
충남	충청남도	1	5	1	2	0	0	0	0	3	0	0	14	218
	충청남도남부	0	4	0	1	0	1	0	0	1	0	0	12	95
	충청남도서부	0	0	0	0	0	0	0	0	0	1	0	9	79
	소 계	1	9	1	3	0	1	0	0	4	1	0	35	392
전북	전라북도	0	0	1	0	0	3	0	0	1	0	0	9	123
	전라북도서부	1	0	1	4	3	2	0	0	6	0	0	13	148
	전라북도동부	2	0	0	0	0	3	0	0	2	0	0	25	89
전남	소 계	3	0	2	4	3	8	0	0	9	0	0	47	360
	전라남도	1	3	0	10	0	8	0	0	6	0	0	6	105
	전남서부권	0	0	1	3	1	4	0	0	13	0	0	5	133
	전남중부권	0	0	0	0	2	4	0	0	3	0	0	16	126
경북	소 계	1	3	1	13	3	16	0	0	22	0	0	27	364
	경북남부	1	0	0	2	0	2	0	0	0	0	0	3	62
경남	경북북부	0	0	0	0	1	1	0	0	4	0	0	4	78
	경북서부	0	0	1	3	0	9	0	0	0	0	0	12	104
	소 계	1	2	2	6	1	13	0	0	4	1	0	19	318
경남	경상남도	0	0	2	0	3	2	0	0	6	3	0	7	138
	경남서부	1	2	0	0	0	2	0	0	5	0	6	3	98
	김해시	0	0	0	0	0	0	0	0	0	1	0	2	29
제주	소 계	1	2	2	0	3	4	0	0	11	4	6	12	265
	제주특별자치도	0	0	0	2	0	1	0	0	4	1	0	0	53
	서귀포시	0	0	0	0	0	0	0	0	1	1	0	0	27
제주	소 계	0	0	0	2	0	1	0	0	5	2	0	0	80
	계	30 (0.2)	58 (0.3)	19 (0.1)	41 (0.2)	49 (0.3)	72 (0.4)	0 (0.0)	0 (0.0)	140 (0.8)	28 (0.2)	9 (0.1)	298 (1.8)	4,900 (29.4)

(계속)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이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의명	기타	소계	
서울	서울특별시	65	63	6	9	35	10	0	15	3	4	5	215	286 (1.7)
	서울특별시동부	41	86	1	9	31	17	2	125	7	7	5	331	461 (2.8)
	서울강서	20	50	0	6	8	3	0	65	4	3	23	182	256 (1.5)
	서울은평	22	63	3	2	18	10	1	42	6	1	22	190	248 (1.5)
	서울영등포	15	43	2	4	13	9	0	73	2	1	8	170	236 (1.4)
	서울성북	15	40	1	5	12	3	0	91	5	2	23	197	249 (1.5)
	서울마포	20	53	7	5	19	7	1	39	1	2	10	164	217 (1.3)
	서울동남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소 계	198	398	20	40	136	59	4	450	28	20	96	1,449	1,953 (11.7)
부산	부산광역시	27	47	0	8	9	8	11	1	9	15	20	155	246 (1.5)
	부산동부	42	77	3	7	12	1	71	0	5	2	21	241	374 (2.2)
	부산서부**	5	21	1	2	15	5	15	0	1	2	7	74	144 (0.9)
	소 계	74	145	4	17	36	14	97	1	15	19	48	470	764 (4.6)
대구	대구광역시	23	67	6	5	16	11	1	47	14	0	4	194	297 (1.8)
	대구광역시남부	24	43	5	10	9	13	0	39	6	0	9	158	225 (1.4)
	소 계	47	110	11	15	25	24	1	86	20	0	13	352	522 (3.1)
인천	인천광역시	7	54	5	10	36	25	0	77	12	0	6	232	328 (2.0)
	인천북부	9	40	0	9	15	10	0	11	2	1	11	108	212 (1.3)
	인천미추홀***	0	5	0	0	1	0	0	1	0	0	0	7	8 (0.0)
	인천남부**	14	29	1	2	15	10	0	25	3	5	10	114	185 (1.1)
	소 계	30	128	6	21	67	45	0	114	17	6	27	461	733 (4.4)
광주	광주광역시	37	76	14	10	25	16	0	57	11	9	9	264	351 (2.1)
대전	대전광역시	39	89	5	10	25	7	1	86	7	9	13	291	401 (2.4)
울산	울산광역시	51	102	6	19	31	44	0	74	14	1	31	373	526 (3.2)
경기	경기도	73	138	16	21	50	37	0	30	7	0	8	380	518 (3.1)
	경기북부	58	86	5	24	25	28	2	62	10	4	9	313	422 (2.5)
	경기성남	76	101	5	11	35	19	1	77	12	1	13	351	476 (2.9)
	경기고양	23	68	6	10	29	11	1	40	4	6	29	227	328 (2.0)
	경기부천	25	47	5	10	30	18	2	59	16	0	7	219	304 (1.8)
	경기화성	48	101	6	10	23	14	2	51	8	8	16	287	423 (2.5)
	경기남양주	24	74	5	2	23	6	1	94	4	5	15	253	309 (1.9)
	안산시	96	123	9	14	72	35	1	163	17	6	7	543	654 (3.9)
	경기용인	63	72	5	5	24	26	1	39	12	2	1	250	344 (2.1)
	경기시흥	17	50	1	10	18	38	0	71	9	2	12	228	295 (1.8)
	경기평택**	3	31	0	5	11	11	1	33	1	0	8	104	144 (0.9)
	소 계	506	891	63	122	340	243	12	719	100	34	125	3,155	4,217 (25.3)
강원	강원도	15	30	4	11	10	23	1	42	4	3	28	171	266 (1.6)
	강원동부	40	44	4	7	11	11	0	41	3	2	12	175	256 (1.5)
	원주시	20	35	4	6	16	7	1	105	2	1	17	214	279 (1.7)
	강원남부**	0	0	0	0	0	0	0	1	0	0	0	1	3 (0.0)
	소 계	75	109	12	24	37	41	2	189	9	6	57	561	804 (4.8)
충북	충청북도	21	69	8	13	26	40	0	144	9	0	8	338	445 (2.7)
	충북북부	15	44	6	5	20	16	0	71	3	0	7	187	246 (1.5)
	충북남부	3	10	0	0	9	5	1	32	1	0	5	66	126 (0.8)
	소 계	39	123	14	18	55	61	1	247	13	0	20	591	817 (4.9)

(계속)

		비신고의무자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이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의명	기타	소계	계
지역 및 기관														
충남	충청남도	42	105	9	10	21	4	0	45	8	4	16	264	482 (2.9)
	충청남도남부	14	39	1	15	19	38	0	41	1	0	8	176	271 (1.6)
	충청남도서부	19	25	3	9	6	5	0	29	1	0	10	107	186 (1.1)
	소 계	75	169	13	34	46	47	0	115	10	4	34	547	939 (5.6)
전북	전라북도	24	95	4	15	27	28	0	107	4	2	9	315	438 (2.6)
	전라북도서부	27	69	3	21	18	46	0	137	17	3	6	347	495 (3.0)
	전라북도동부	6	17	1	6	15	4	0	82	0	5	7	143	232 (1.4)
	소 계	57	181	8	42	60	78	0	326	21	10	22	805	1,165 (7.0)
전남	전라남도	28	57	8	5	10	4	1	81	0	1	3	198	303 (1.8)
	전남서부권	20	35	4	5	20	11	2	86	4	0	19	206	339 (2.0)
	전남중부권	17	36	4	5	24	15	0	105	1	0	4	211	337 (2.0)
	소 계	65	128	16	15	54	30	3	272	5	1	26	615	979 (5.9)
경북	경북남부	16	14	3	10	4	2	1	64	0	1	2	117	179 (1.1)
	경북북부	12	60	4	6	11	13	0	77	3	0	7	193	271 (1.6)
	경북동부	39	57	5	10	17	16	0	217	9	2	7	379	483 (2.9)
	경북서부	34	42	4	4	11	12	0	72	9	1	3	192	266 (1.6)
	소 계	101	173	16	30	43	43	1	430	21	4	19	881	1,199 (7.2)
경남	경상남도	38	97	9	16	20	52	1	201	2	3	7	446	584 (3.5)
	경남서부	15	21	5	1	2	2	0	53	5	2	21	127	225 (1.4)
	김해시**	8	28	2	6	4	8	0	19	3	1	0	79	108 (0.6)
	소 계	61	146	16	23	26	62	1	273	10	6	28	652	917 (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8	72	6	9	24	16	0	42	4	4	3	208	261 (1.6)
	서귀포시	17	8	1	3	10	16	0	13	0	1	7	76	103 (0.6)
	소 계	45	80	7	12	34	32	0	55	4	5	10	284	364 (2.2)
계		1,500 (9.0)	3,048 (18.3)	231 (1.4)	452 (2.7)	1,040 (6.2)	846 (5.1)	27 (0.2)	3,590 (21.6)	305 (1.8)	134 (0.8)	578 (3.5)	11,751 (70.6)	16,651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5일 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4월 1일 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7월 1일 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11월 9일 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3월 27일 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일자로 폐쇄됨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서울	중구	4	0	1	0	2	0	0	0	0	0	0	0	0
	종로구	3	0	0	0	0	1	0	0	0	0	0	0	0
	서대문구	4	2	1	0	1	0	0	0	0	0	0	0	0
	마포구	10	1	0	0	3	0	0	0	0	2	0	2	0
	은평구	10	0	1	0	9	1	0	0	0	0	2	0	0
	동대문구	10	3	4	0	3	0	0	0	0	0	0	2	0
	중랑구	15	0	1	0	2	0	0	0	0	0	0	5	0
	도봉구	6	0	0	1	0	0	0	0	0	0	0	0	0
	성동구	10	0	1	0	0	0	0	0	0	0	3	2	0
	강동구	6	1	2	0	1	0	0	0	0	0	0	2	0
	강남구	7	1	5	0	0	0	0	0	0	0	0	1	0
	성북구	25	0	1	0	7	1	0	0	0	0	0	0	0
	서초구	3	2	0	0	2	0	0	0	0	0	0	0	0
	송파구	3	2	0	0	2	1	0	0	0	0	0	1	0
	노원구	14	0	1	0	0	1	0	0	0	0	1	4	0
	용산구	3	0	1	0	0	0	0	0	0	0	0	6	0
	강북구	9	3	0	3	0	0	0	0	0	0	0	7	0
	광진구	15	2	0	0	0	0	0	0	0	0	1	0	0
	영등포구	11	0	2	0	0	1	0	0	0	0	1	4	0
	관악구	7	2	0	0	1	0	0	0	0	0	0	1	0
	구로구	12	0	2	2	0	0	0	0	0	0	2	0	0
	금천구	14	0	1	0	3	0	0	0	0	0	4	0	0
	동작구	6	0	0	0	0	0	0	0	0	0	0	1	0
	강서구	16	3	1	0	6	1	0	0	0	0	0	6	0
	양천구	25	1	0	0	1	0	0	0	0	0	0	5	0
	소 계	248	23	25	6	43	7	0	0	0	2	14	49	0
부산	중구	2	0	0	0	0	0	0	0	0	0	0	0	0
	동구	7	0	3	0	0	0	0	0	0	0	0	0	0
	서구	11	0	0	0	0	0	0	0	0	0	0	0	0
	사하구	23	1	0	0	1	1	0	0	0	0	2	0	0
	영도구	6	0	0	0	4	0	0	0	0	0	0	0	0
	동래구	8	0	0	2	0	0	0	0	0	0	0	0	0
	남구	6	0	3	0	2	0	1	0	0	0	0	0	0
	금정구	4	1	0	1	0	0	0	0	0	0	0	0	0
	연제구	4	0	2	0	1	2	0	0	0	0	0	1	0
	해운대구	24	0	0	0	1	0	0	0	0	0	3	21	0
	수영구	6	0	3	2	0	0	0	0	0	0	0	3	0
	부산진구	9	2	0	0	0	0	0	0	0	0	0	2	0
	북구	5	0	1	0	0	1	0	0	0	0	0	1	1
	사상구	15	1	1	1	0	2	0	2	0	0	0	4	0
	강서구	1	0	0	0	0	0	0	0	0	0	2	2	0
	기장군	13	0	0	0	0	0	0	0	0	0	3	5	0
	소 계	144	5	13	6	9	6	1	2	0	0	12	37	1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이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 소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총계
서울	중구	0	0	0	0	0	0	0	2	0	0	0	0	9
	종로구	0	0	0	0	0	0	0	0	0	1	0	0	5
	서대문구	0	0	0	1	0	0	0	0	0	4	0	0	13
	마포구	0	0	0	1	0	0	0	0	0	0	0	11	30
	은평구	0	0	0	3	0	0	0	1	1	0	0	0	28
	동대문구	0	0	0	1	0	0	0	0	1	0	0	0	24
	중랑구	0	0	1	5	1	0	0	0	0	0	0	8	38
	도봉구	0	0	0	2	0	0	0	0	0	0	0	2	11
	성동구	0	0	0	0	0	0	0	0	0	0	0	0	16
	강동구	0	0	1	0	0	0	0	0	0	0	0	0	13
	강남구	0	0	0	0	0	0	0	3	0	0	0	0	17
	성북구	0	0	0	6	0	0	0	1	0	0	0	0	41
	서초구	0	0	0	0	0	0	0	1	0	1	0	0	9
	송파구	0	0	0	0	0	0	0	0	1	0	0	1	11
	노원구	0	0	0	1	1	0	0	0	0	0	0	0	23
	용산구	0	0	0	0	0	0	0	0	0	0	0	0	10
	강북구	0	0	0	1	0	0	0	2	0	0	0	0	25
	광진구	0	0	0	1	0	0	0	0	0	0	0	1	20
	영등포구	0	0	0	1	1	0	0	0	0	0	0	0	21
	관악구	0	0	0	2	0	0	0	0	0	0	0	0	13
	구로구	0	0	0	0	0	0	0	1	0	0	0	0	19
	금천구	0	0	2	0	1	0	0	1	0	1	0	0	27
	동작구	0	0	0	1	0	0	0	0	0	0	0	0	8
	강서구	0	0	0	3	0	0	0	1	0	1	0	0	38
	양천구	1	0	0	1	0	0	0	1	0	0	0	1	36
	소 계	1	0	4	30	4	0	0	14	3	8	0	24	505
부산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2
	동구	0	0	0	2	0	0	0	0	0	0	0	0	12
	서구	0	0	0	0	0	0	0	0	0	0	0	1	12
	사하구	0	0	0	0	0	0	0	2	0	0	0	3	33
	영도구	0	0	0	0	0	0	0	0	0	0	0	2	12
	동래구	0	0	0	2	0	0	0	2	0	0	0	0	14
	남구	0	0	0	0	0	0	0	0	0	0	0	0	12
	금정구	2	0	0	2	0	0	0	0	0	0	0	2	12
	연제구	0	0	0	3	0	0	0	1	0	0	0	0	14
	해운대구	1	0	0	0	0	0	0	1	1	0	0	4	56
	수영구	0	0	0	1	0	0	0	0	1	0	0	2	18
	부산진구	1	3	0	0	0	0	0	2	1	0	0	0	20
	북구	0	0	0	4	0	0	0	0	0	0	0	2	15
	사상구	0	0	0	3	0	0	0	0	1	0	0	0	30
	강서구	0	0	0	0	0	0	0	0	0	0	0	4	9
	기장군	0	0	0	0	0	0	0	2	0	0	0	0	23
	소 계	4	3	0	17	0	0	0	10	4	0	0	20	294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 고교 직원	의료인	이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대구	중구	2	0	0	0	0	0	0	0	0	0	0	0	0
	동구	9	1	1	0	2	1	0	0	2	0	1	1	0
	북구	11	0	1	0	1	2	0	0	0	0	3	0	0
	서구	14	8	0	0	10	0	0	0	0	1	1	7	0
	달서구	19	1	2	0	0	1	0	0	0	0	0	4	0
	남구	11	1	2	2	2	0	0	0	0	0	0	6	0
	수성구	9	0	0	0	0	0	0	0	0	0	0	0	0
	달성군	8	1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83	12	6	2	15	4	0	0	2	1	5	18	0
인천	중구	5	0	0	0	3	1	0	0	0	0	2	6	0
	동구	2	0	0	0	1	0	0	0	0	0	0	0	0
	남구	17	2	0	0	4	0	0	0	0	0	0	4	0
	부평구	14	3	0	0	22	0	0	0	0	0	1	1	7
	서구	23	3	1	0	16	2	0	0	0	0	0	3	0
	남동구	36	3	2	1	2	0	0	1	0	0	0	11	0
	연수구	5	1	3	0	3	0	1	0	0	0	0	1	5
	계양구	18	0	1	0	1	0	0	0	0	0	0	0	0
	강화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122	12	7	1	52	3	1	1	0	0	4	30	7
광주	북구	13	2	0	0	2	0	0	0	0	0	0	3	0
	동구	4	0	1	0	0	0	0	0	0	0	0	0	0
	서구	8	2	1	0	0	0	0	0	0	0	1	8	0
	남구	11	1	2	0	1	1	0	0	0	0	0	0	0
	광산구	9	2	6	0	0	1	0	0	0	0	0	2	0
	소 계	45	7	10	0	3	2	0	0	0	0	1	13	0
대전	동구	14	1	1	0	1	0	0	0	0	0	0	1	0
	중구	9	0	1	0	0	0	0	0	0	0	1	2	0
	서구	16	1	3	0	7	0	0	0	0	0	3	1	0
	유성구	13	0	0	0	1	0	0	1	1	0	0	0	0
	대덕구	14	0	1	0	3	1	0	0	0	0	2	0	0
	소 계	66	2	6	0	12	1	0	1	1	0	6	4	0
울산	남구	24	1	0	0	4	3	1	0	0	0	4	0	0
	중구	14	1	2	0	0	1	0	0	0	0	2	2	2
	동구	7	4	0	1	0	0	0	1	0	0	0	3	0
	북구	18	0	0	0	7	1	0	0	2	0	1	1	0
	울주군	21	0	0	2	1	1	0	0	0	1	0	6	0
	소 계	84	6	2	3	12	6	1	1	2	1	7	12	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8	2	1	0	4	0	0	0	0	0	0	1	0
	고양시 일산서구	10	0	5	1	0	0	0	0	0	0	0	0	0
	고양시 덕양구	15	2	4	1	2	0	0	0	0	0	0	2	0
	파주시	12	1	2	0	3	0	0	0	0	0	0	0	0
	김포시	6	0	1	0	0	1	0	0	0	0	3	1	0
	부천시 원미구	14	2	2	0	4	0	0	1	0	0	0	10	0
	부천시 오정구	6	0	0	0	1	0	0	0	0	0	1	0	0
	부천시 소사구	3	0	2	0	0	1	0	0	0	0	1	0	0
	광명시	5	0	1	0	4	0	0	0	0	0	0	1	0
	안산시 단원구	23	2	6	0	2	1	0	1	1	0	2	2	0
	안산시 상록구	39	0	0	0	2	0	0	0	0	0	5	2	0
	과천시	2	0	0	0	0	0	0	0	0	0	0	0	0
	시흥시	20	1	2	0	1	0	0	0	0	0	4	10	0
	안양시 만안구	4	0	0	0	0	0	0	0	0	0	4	4	0
	안양시 동안구	3	3	0	0	1	0	0	0	0	0	3	0	0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총계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 소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대구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2
	동구	0	0	0	6	0	0	0	0	0	0	0	0	24
	북구	0	0	0	0	1	0	0	0	1	0	0	0	20
	서구	0	0	0	0	0	0	0	1	0	0	0	0	42
	달서구	0	0	0	2	0	0	0	0	0	1	0	0	30
	남구	0	1	0	1	0	0	0	0	0	0	0	2	28
	수성구	0	0	0	1	2	0	0	1	0	0	0	1	14
	달성군	0	0	0	0	0	0	0	0	0	0	0	1	10
	소 계	0	1	0	10	3	0	0	2	1	1	0	4	170
인천	중구	0	1	0	0	0	0	0	0	0	0	0	0	18
	동구	0	1	0	0	0	0	0	0	0	0	0	0	4
	남구	0	0	0	0	2	0	0	0	0	0	0	0	31
	부평구	8	0	0	0	0	0	0	1	0	0	0	0	57
	서구	1	0	0	2	0	0	0	0	0	0	0	3	54
	남동구	1	0	0	0	0	0	0	0	0	0	0	0	57
	연수구	2	0	0	0	0	0	0	0	0	0	0	0	21
	계양구	2	0	0	0	0	0	0	0	0	0	0	0	24
	강화군	0	0	0	0	0	0	0	0	0	0	0	4	6
	소 계	14	2	0	2	2	0	0	1	0	2	2	7	272
광주	북구	0	0	0	0	0	0	0	1	0	0	0	0	21
	동구	1	0	0	0	0	0	0	0	0	0	0	0	6
	서구	0	0	0	0	0	0	0	0	0	3	0	0	23
	남구	0	0	1	0	0	0	0	0	0	0	0	0	17
	광산구	0	0	0	0	0	0	0	0	0	0	0	0	20
	소 계	1	0	1	0	0	0	0	1	0	3	0	0	87
대전	동구	0	0	0	0	1	0	0	2	0	0	0	0	21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13
	서구	0	0	0	0	0	0	0	2	0	0	0	0	33
	유성구	0	0	0	1	0	0	0	0	0	0	0	2	19
	대덕구	0	0	0	0	0	0	0	0	0	2	0	0	23
	소 계	0	0	0	1	1	0	0	4	0	2	0	2	109
울산	남구	1	0	0	0	0	0	0	1	2	0	0	0	41
	중구	0	0	0	2	0	0	0	0	0	0	0	1	27
	동구	0	0	0	0	1	0	0	1	3	0	0	0	21
	북구	0	0	0	0	0	0	0	0	0	0	0	0	30
	울주군	0	0	0	0	1	0	0	0	0	0	0	1	34
	소 계	1	0	0	2	2	0	0	2	5	0	0	2	15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	0	0	0	0	0	0	0	0	0	0	0	26
	고양시 일산서구	1	0	0	1	0	0	0	0	0	0	0	0	18
	고양시 덕양구	0	0	0	4	4	0	0	0	0	2	0	2	38
	파주시	0	0	0	4	0	0	0	0	0	0	0	0	22
	김포시	3	0	0	3	1	0	0	1	0	0	0	4	24
	부천시 원미구	0	0	0	3	0	0	0	1	0	2	0	0	39
	부천시 오정구	1	1	0	2	0	0	0	0	0	0	0	0	12
	부천시 소사구	0	0	0	3	0	0	0	0	0	0	0	0	10
	광명시	0	1	0	1	0	0	0	0	1	0	0	0	14
	안산시 단원구	1	0	0	1	2	0	0	2	0	0	0	8	54
	안산시 상록구	0	0	0	4	0	0	0	5	0	0	0	0	57
	과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2
	시흥시	0	0	0	8	0	0	0	1	0	2	0	4	53
	안양시 만안구	0	0	0	0	1	0	0	0	0	0	0	0	13
	안양시 동안구	0	1	0	1	0	0	0	0	1	0	0	0	13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기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경기	군포시	6	1	2	0	1	0	0	0	0	0	0	2	0
	의왕시	6	0	0	0	0	0	0	0	0	0	1	0	0
	수원시 장안구	11	0	1	0	1	0	0	0	0	0	1	0	0
	수원시 권선구	21	1	0	0	7	0	0	1	0	0	1	7	0
	수원시 팔달구	12	0	0	1	1	1	0	0	0	1	1	3	0
	수원시 영통구	5	0	1	0	0	0	0	0	0	0	2	0	0
	화성시	36	2	0	0	1	1	0	0	0	0	10	10	0
	용인시 기흥구	18	0	1	0	0	0	0	0	0	0	0	0	0
	오산시	11	0	1	0	1	2	0	0	0	0	3	2	0
	용인시 수지구	6	0	0	0	3	0	0	0	0	0	2	1	0
	용인시 처인구	14	0	0	0	1	0	0	0	0	0	0	0	0
	평택시	23	2	3	1	3	1	0	0	0	0	3	7	0
	안성시	14	0	0	0	1	0	0	0	0	0	0	5	4
	성남시 수정구	6	0	2	0	0	4	0	1	0	0	0	8	0
	성남시 중원구	14	1	3	0	1	0	0	2	1	0	0	3	0
	성남시 분당구	8	4	0	0	5	4	0	0	0	0	1	0	0
	광주시	10	1	0	0	2	0	0	0	0	0	0	1	0
	하남시	4	0	2	0	0	0	0	0	0	0	0	0	0
	이천시	8	0	1	0	0	0	4	0	0	0	0	4	0
	여주시	3	0	0	2	1	0	0	0	0	0	1	1	0
	구리시	13	0	0	1	0	0	0	0	0	0	3	0	0
	남양주시	22	0	2	0	1	0	0	0	0	0	0	2	0
	양평군	2	1	0	0	0	0	0	0	0	0	0	0	0
	가평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시	8	1	2	1	3	1	0	0	0	0	0	4	0
	양주시	7	0	0	0	0	0	0	3	0	0	2	7	0
	동두천시	2	0	0	0	0	0	0	0	0	0	1	5	0
	연천군	4	0	0	0	2	0	0	0	0	0	0	0	0
	포천시	11	1	0	0	0	0	0	0	0	0	1	7	6
	소 계	491	28	47	8	59	17	4	9	2	1	56	112	10
강원	춘천시	28	0	5	0	0	0	6	0	0	0	8	3	0
	화천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강릉시	15	1	5	0	2	0	0	1	0	0	0	3	0
	양양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속초시	7	0	0	0	1	0	0	0	0	0	0	0	0
	고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원주시	30	0	3	1	2	2	0	0	0	0	6	4	0
	횡성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영월군	4	0	0	0	0	0	0	0	0	0	0	3	0
	평창군	4	0	0	0	0	0	1	0	0	0	0	2	0
	정선군	4	0	0	0	0	0	0	0	0	0	0	0	0
	태백시	0	0	0	0	1	1	0	0	0	0	0	0	0
	동해시	12	1	2	0	0	0	0	0	0	0	0	1	0
	삼척시	8	0	2	0	0	0	0	0	0	0	0	0	0
	홍천군	8	1	0	0	0	0	0	0	0	0	0	0	0
	인제군	3	1	0	0	1	2	0	0	0	0	0	0	0
	양구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철원군	2	0	0	0	0	0	0	0	0	0	1	0	0
	소 계	130	4	17	1	7	6	6	1	0	0	15	16	0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총계
		아동 복지 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총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총사자	사회복지 시설 총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총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총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총사자	정신보건 센터 총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경기	군포시	0	0	0	0	0	0	0	2	0	0	0	0	16
	의왕시	0	0	0	0	0	0	0	0	0	0	0	0	7
	수원시 장안구	0	0	0	0	0	0	0	1	0	0	0	0	15
	수원시 권선구	0	0	0	1	0	0	0	0	0	0	0	0	39
	수원시 팔달구	0	0	0	1	0	0	0	1	0	2	0	0	24
	수원시 영통구	0	0	0	0	0	0	0	0	0	0	0	0	8
	화성시	2	1	0	2	0	0	0	2	1	0	0	2	70
	용인시 기흥구	0	0	0	0	0	0	0	0	0	0	0	2	21
	오산시	1	0	0	0	0	0	0	0	0	0	0	0	21
	용인시 수지구	0	0	0	0	0	0	0	0	0	0	0	0	12
	용인시 처인구	2	0	2	0	0	0	0	7	0	0	0	0	26
	평택시	0	0	0	4	1	0	0	0	0	1	0	3	52
	안성시	0	0	0	0	0	0	0	0	0	4	0	6	34
	성남시 수정구	0	0	1	1	0	0	0	1	0	0	0	2	26
	성남시 중원구	1	0	0	4	0	0	0	2	1	0	0	4	37
	성남시 분당구	0	0	0	1	0	0	0	2	0	0	0	2	27
	광주시	3	0	0	0	2	0	0	2	0	0	0	0	21
	하남시	1	0	0	0	0	0	0	0	0	0	0	2	9
	이천시	0	0	1	0	1	0	0	3	0	0	0	0	22
	여주시	0	0	0	3	0	0	0	1	0	1	0	0	13
	구리시	0	0	0	0	0	0	0	1	0	0	0	1	19
	남양주시	0	0	0	0	0	0	0	3	0	0	0	1	31
	양평군	0	0	0	2	0	0	0	0	0	0	0	0	5
	가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6
	의정부시	0	1	0	4	1	0	0	1	0	0	0	7	34
	양주시	0	0	0	1	0	0	0	0	2	0	0	3	25
	동두천시	0	0	0	1	0	0	0	0	0	0	0	1	10
	연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6
	포천시	1	0	0	5	0	0	0	1	0	0	0	1	34
	소 계	17	5	4	65	13	0	0	40	6	14	0	57	1,065
강원	춘천시	0	0	0	2	1	0	0	2	0	0	0	0	55
	화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강릉시	0	0	0	0	1	0	0	1	0	0	0	2	31
	양양군	0	0	0	0	0	0	0	0	0	0	0	2	3
	속초시	0	0	0	0	0	0	0	1	0	0	0	0	9
	고성군	0	0	0	3	0	0	0	0	0	1	0	0	4
	원주시	0	0	2	7	0	0	0	1	0	4	0	3	65
	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영월군	0	0	0	0	0	0	0	1	0	0	0	2	10
	평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7
	정선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태백시	0	0	0	1	0	0	0	0	0	0	0	0	3
	동해시	0	0	0	1	0	0	0	0	0	0	0	2	19
	삼척시	0	0	0	0	0	0	0	0	0	0	0	0	10
	홍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9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0	7
	양구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철원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소 계	0	0	2	14	2	0	0	6	0	5	0	11	243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3	1	1	0	0	0	0	0	0	0	1	1	0
	청주시 흥덕구	22	0	1	0	0	0	0	0	0	0	4	21	2
	청주시 서원구	11	1	0	0	0	0	0	0	0	0	0	2	0
	청주시 청원구	10	0	0	0	4	0	0	0	0	0	0	0	0
	진천군	4	0	0	0	0	0	0	0	0	0	0	0	0
	괴산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증평군	0	0	0	0	2	0	0	0	0	0	0	0	0
	음성군	3	0	0	0	0	0	0	1	0	0	0	0	1
	영동군	13	0	0	0	0	0	0	0	0	0	0	6	0
	옥천군	6	8	0	0	0	0	0	0	0	0	0	0	0
	보은군	2	0	0	2	0	0	0	0	0	0	0	2	0
	충주시	5	0	0	4	0	0	0	0	0	0	0	6	4
	제천시	6	0	0	1	6	0	0	0	0	0	0	2	1
	단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86	10	2	7	12	0	0	1	0	0	13	37	3
충남	금산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공주시	6	0	3	0	0	0	0	0	0	0	2	0	0
	논산시	21	0	1	0	0	0	2	0	0	0	7	5	0
	계룡시	2	0	0	0	0	0	0	0	0	0	0	0	0
	부여군	4	0	0	0	0	0	0	0	0	0	0	3	0
	서천군	3	0	0	0	2	0	0	0	2	0	0	0	0
	천안시 동남구	31	1	2	0	5	0	1	0	0	0	15	8	0
	천안시 서북구	18	3	8	0	0	0	0	0	0	0	12	3	1
	아산시	10	6	3	3	0	1	0	1	0	0	5	10	0
	예산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당진시	5	0	0	0	1	1	0	0	0	0	1	7	0
	청양군	3	0	0	0	0	0	0	0	0	0	0	1	0
	홍성군	5	1	0	0	0	0	0	0	0	0	0	1	0
	보령시	2	1	1	0	3	0	0	0	0	0	0	0	21
	서산시	7	0	0	0	1	1	0	0	0	0	1	9	0
	태안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2	0	4	0	0	0	1	0	0	0	5	4	0
	소 계	132	12	22	3	12	3	4	1	2	0	48	72	1
전북	전주시 완산구	22	0	3	0	0	3	2	0	0	0	6	8	0
	전주시 덕진구	19	0	1	0	0	0	0	0	0	0	2	8	0
	원주군	11	0	6	0	0	0	0	0	0	0	1	0	0
	임실군	17	0	0	0	0	0	0	0	0	0	0	5	0
	진안군	0	0	5	0	0	0	0	0	0	0	0	0	0
	무주군	8	0	0	0	0	0	0	0	0	0	0	0	0
	익산시	15	0	8	0	2	1	0	2	0	0	4	12	1
	군산시	33	0	3	0	4	0	0	1	0	0	3	5	0
	김제시	3	0	0	0	8	0	0	0	0	0	0	0	0
	부안군	1	0	0	0	0	0	0	1	0	0	0	0	0
	정읍시	5	1	0	2	1	1	0	0	0	0	1	1	0
	고창군	1	0	1	0	0	0	0	0	0	0	0	4	0
	남원시	7	1	8	1	2	0	0	0	0	0	0	2	0
	순창군	0	0	0	0	0	1	0	0	0	0	2	0	0
	장수군	2	0	0	0	0	0	0	0	0	0	0	1	2
	소 계	144	2	35	3	17	6	2	4	0	0	19	46	3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총계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 소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충북	청주시 상당구	0	0	0	1	0	0	0	3	1	0	0	0	12
	청주시 흥덕구	0	0	0	1	0	0	0	0	0	0	0	0	51
	청주시 서원구	0	0	0	0	1	0	0	1	0	0	0	0	16
	청주시 청원구	0	0	0	0	0	0	0	0	0	0	0	0	14
	진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괴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증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음성군	0	0	0	0	0	0	0	1	0	0	0	1	7
	영동군	0	0	0	0	0	0	0	0	0	0	0	10	29
	옥천군	2	0	0	0	0	0	0	0	0	1	0	6	23
	보은군	0	0	0	1	0	0	0	0	0	0	0	0	7
	충주시	0	0	0	1	0	0	0	1	0	1	0	0	22
	제천시	2	0	0	0	0	0	0	0	0	2	1	12	33
	단양군	0	0	2	0	0	0	0	0	0	0	0	2	4
	소 계	4	0	2	4	1	0	0	6	1	4	1	31	225
충남	금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6
	공주시	0	0	0	4	1	0	0	0	0	0	0	0	16
	논산시	3	0	1	4	0	0	0	0	0	0	0	0	44
	계룡시	1	0	0	0	0	0	0	0	0	0	0	0	3
	부여군	0	0	0	0	0	0	0	0	0	0	0	12	19
	서천군	0	0	0	0	0	0	0	1	0	0	0	0	8
	천안시 동남구	0	0	0	3	0	0	0	1	0	0	0	4	71
	천안시 서북구	0	1	0	1	0	0	0	1	0	0	0	6	54
	아산시	2	0	0	1	0	0	0	1	0	0	0	0	43
	예산군	0	0	0	1	0	0	0	0	0	0	0	0	6
	당진시	0	0	2	0	0	0	0	0	0	0	0	3	20
	청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홍성군	0	0	0	0	0	0	0	0	0	0	0	2	9
	보령시	0	0	0	3	0	0	0	0	0	0	0	7	38
	서산시	0	0	0	0	0	0	0	0	1	0	0	0	20
	태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세종특별자치시	3	0	0	7	0	0	0	0	0	0	0	1	27
	소 계	9	1	3	24	1	0	0	4	1	0	0	35	390
전북	전주시 완산구	0	0	0	0	0	0	0	0	0	0	0	2	46
	전주시 덕진구	0	0	0	0	0	0	0	0	0	0	0	0	30
	완주군	0	0	0	0	3	0	0	0	0	0	0	3	24
	임실군	0	0	0	0	0	0	0	0	0	0	0	3	25
	진안군	0	0	0	0	0	0	0	1	0	0	0	3	9
	무주군	0	0	0	0	0	0	0	0	0	0	0	0	8
	악산시	0	1	0	4	2	0	0	5	0	0	0	5	62
	군산시	0	0	0	1	0	0	0	0	0	2	0	8	60
	김제시	0	0	0	1	0	0	0	0	0	0	0	0	12
	부안군	0	0	0	0	0	0	0	1	0	0	0	0	3
	정읍시	0	1	0	0	0	0	0	0	0	0	0	1	14
	고창군	0	0	4	0	0	0	0	0	0	0	1	0	11
	남원시	0	0	0	0	1	0	0	0	0	0	0	15	37
	순창군	0	0	0	0	2	0	0	2	0	0	0	7	14
	장수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소 계	0	2	4	6	8	0	0	9	0	3	0	47	360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이동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전남	영광군	4	0	2	1	0	0	0	0	0	0	0	3	0
	장성군	3	0	3	0	0	0	0	0	0	0	0	2	0
	곡성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담양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회순군	7	0	0	0	0	0	0	0	0	0	0	10	0
	나주시	15	0	0	0	2	0	0	0	0	0	0	4	0
	함평군	2	0	0	0	0	0	0	0	0	0	0	12	0
	영암군	4	0	0	0	2	0	0	0	0	0	0	0	0
	강진군	2	0	0	0	0	0	0	0	0	0	0	2	0
	장흥군	17	0	3	0	0	0	0	0	0	0	0	0	0
	목포시	18	0	1	0	5	0	0	0	0	0	3	6	0
	무안군	2	0	1	0	0	0	0	0	0	0	0	14	0
	신안군	2	0	2	0	0	0	0	0	0	0	0	0	0
	해남군	7	0	0	0	0	0	0	0	0	0	2	3	0
	완도군	8	0	0	0	0	0	0	0	0	0	3	2	0
	진도군	4	4	0	0	0	0	0	0	0	0	3	5	0
	순천시	17	0	13	2	4	0	0	0	0	0	3	0	1
	구례군	3	0	0	0	0	0	0	0	0	0	0	1	0
	광양시	2	0	1	0	0	0	0	0	0	0	0	5	0
	보성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고흥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여수시	5	1	6	0	2	0	0	0	0	0	0	2	0
	소 계	125	5	32	3	15	0	0	0	0	0	14	71	1
경북	경산시	10	3	1	0	0	0	0	0	0	0	1	3	1
	청도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군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령군	4	0	0	0	0	0	0	0	0	0	0	3	0
	칠곡군	6	0	0	0	3	0	0	0	0	0	0	0	0
	성주군	0	0	0	0	0	0	0	0	0	0	0	1	0
	구미시	26	0	1	0	1	1	0	0	0	0	0	10	0
	김천시	7	0	0	0	0	0	0	0	0	0	0	1	0
	상주시	3	0	0	0	0	0	0	0	0	0	0	0	0
	문경시	3	0	0	0	0	0	0	0	0	0	3	0	0
	영주시	12	1	0	0	1	0	0	0	0	0	2	0	0
	봉화군	2	0	0	0	0	0	0	0	0	0	0	1	0
	예천군	0	0	2	0	0	0	0	0	0	0	3	0	0
	안동시	17	0	3	0	1	0	0	0	0	0	0	12	0
	청송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영양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영덕군	5	0	0	0	0	0	0	0	0	0	1	0	0
	울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성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영천시	7	0	0	1	1	0	0	0	0	0	0	0	0
	경주시	11	0	1	0	4	0	0	0	0	0	0	7	0
	포항시 남구	15	1	6	0	0	4	9	0	1	0	3	6	0
	포항시 북구	9	2	1	0	3	0	3	0	0	0	6	0	0
	소 계	142	7	15	1	14	5	12	0	1	0	19	44	1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총계
		이동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기독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 소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전남	영광군	0	0	0	0	0	0	0	0	0	0	0	8	18
	장성군	0	0	0	6	2	0	0	0	0	0	0	2	18
	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담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화순군	0	0	0	0	0	0	0	0	0	0	0	0	17
	나주시	0	0	0	0	2	0	0	3	0	2	0	0	28
	함평군	0	0	0	0	0	0	0	0	0	0	0	2	16
	영암군	0	0	1	0	0	0	0	0	0	0	0	0	7
	강진군	0	0	0	0	0	0	0	0	0	0	0	4	8
	장흥군	0	0	0	0	0	0	0	0	0	0	0	0	20
	목포시	0	0	1	0	0	0	0	6	0	0	0	0	42
	무안군	0	0	0	0	0	0	0	1	0	0	0	0	18
	신안군	0	0	0	0	0	0	0	2	0	0	0	0	6
	해남군	0	0	1	3	3	0	0	3	0	1	0	3	26
	완도군	0	1	0	0	1	0	0	1	0	0	0	0	16
	진도군	0	0	0	2	0	0	0	0	0	0	0	0	18
	순천시	3	0	0	0	0	0	0	1	0	0	0	1	45
	구례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광양시	0	0	0	2	0	0	0	3	0	0	0	2	15
	보성군	0	0	9	0	2	0	0	0	0	0	0	0	12
	고흥군	0	0	0	0	0	0	0	1	0	0	0	0	1
	여수시	0	0	1	0	6	0	0	1	0	0	0	3	27
	소 계	3	1	13	13	16	0	0	22	0	3	0	27	364
경북	경산시	0	0	0	0	1	0	0	0	0	0	0	0	20
	청도군	0	0	1	1	0	0	0	0	0	0	0	0	3
	군위군	0	0	1	0	0	0	0	0	0	0	0	0	1
	고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7
	칠곡군	0	1	1	0	0	0	0	0	1	0	0	0	12
	성주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구미시	0	0	0	1	1	0	0	0	0	0	0	0	41
	김천시	2	0	0	0	0	0	0	0	0	0	0	0	10
	상주시	0	0	0	0	0	0	0	0	0	0	0	0	3
	문경시	0	0	0	0	0	0	0	0	0	0	0	0	6
	영주시	0	0	0	4	0	0	0	0	0	0	0	4	24
	봉화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예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안동시	0	0	0	0	1	0	0	3	0	1	0	0	38
	청송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영양군	0	0	0	0	0	0	0	1	0	0	0	0	2
	영덕군	0	0	0	0	0	0	0	0	0	0	0	1	7
	울진군	0	0	0	0	0	0	0	0	0	0	0	6	6
	의성군	0	0	0	1	0	0	0	0	0	0	0	0	2
	영천시	0	0	0	0	1	0	0	0	0	0	0	0	2
	경주시	0	0	0	0	0	0	0	0	0	0	0	1	24
	포항시 남구	0	0	1	0	1	0	0	0	0	0	0	0	47
	포항시 북구	0	1	2	2	9	0	0	0	0	0	0	5	43
	소 계	2	2	6	9	14	0	0	4	1	1	0	19	319

(계속)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기혼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기정의탁 지원센터 종사자
경남	김해시	12	0	1	0	1	0	0	0	0	0	0	13	0
	양산시	13	0	0	0	5	1	0	0	0	0	2	1	0
	밀양시	1	0	2	0	0	0	0	0	2	0	0	1	0
	창원시 마산회원구	10	0	1	0	0	0	0	0	0	0	0	0	0
	창원시 마산합포구	5	0	0	0	0	0	0	0	0	0	1	0	0
	창녕군	1	0	0	0	0	0	0	0	0	0	0	2	0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2	0	0
	함안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고성군	1	0	1	0	2	0	0	0	0	0	0	1	0
	창원시 의창구	4	0	1	0	2	0	0	0	0	0	0	0	0
	창원시 성산구	1	0	0	0	0	0	0	1	0	0	2	0	0
	창원시 진해구	5	0	0	2	3	0	0	0	0	0	1	7	0
	통영시	4	0	0	0	0	0	0	0	0	0	0	0	0
	거제시	12	0	0	0	5	0	0	0	0	0	0	1	0
	진주시	8	0	1	0	4	0	0	0	0	0	24	2	0
	사천시	3	0	0	0	0	0	0	0	0	0	7	9	1
	산청군	2	0	0	0	0	0	0	0	0	0	3	0	0
	하동군	1	0	0	0	0	0	0	0	0	0	2	0	0
	남해군	1	2	0	0	2	0	0	0	0	0	0	0	0
	거창군	1	0	0	0	0	0	0	0	0	0	1	2	0
	함양군	0	0	0	0	0	0	0	0	0	0	3	0	0
	합천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88	2	7	2	24	1	0	1	2	0	48	39	1
제주	제주시	24	0	8	0	1	0	0	0	0	0	4	1	0
	서귀포시	18	0	3	0	2	1	0	0	0	0	0	1	0
	소 계	42	0	11	0	3	1	0	0	0	0	4	2	0
총계		2,172	137	257	46	309	68	31	22	12	5	285	602	30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이동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 소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이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총계
경남	김해시	0	0	0	4	0	0	0	2	1	0	0	2	36
	양산시	0	0	0	0	1	0	0	0	0	0	0	4	27
	밀양시	0	0	0	1	0	0	0	0	0	0	0	0	7
	창원시 마산회원구	0	0	0	0	0	0	0	1	2	0	0	0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0	0	0	0	0	0	0	0	0	0	0	0	6
	창녕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함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고성군	0	0	0	0	0	0	0	1	0	0	0	0	6
	창원시 의창구	0	1	0	0	1	0	0	1	1	0	0	0	11
	창원시 성산구	0	0	0	0	0	0	0	0	0	0	0	0	4
	창원시 진해구	0	0	0	0	0	0	0	0	0	1	0	0	19
	통영시	0	0	0	0	0	0	0	0	0	2	0	3	9
	거제시	0	1	0	0	0	0	0	1	0	0	0	0	20
	진주시	0	0	0	0	0	0	0	3	0	0	0	0	42
	사천시	2	0	0	0	0	0	0	1	0	0	6	0	29
	산청군	0	0	0	0	0	0	0	0	0	0	0	3	8
	하동군	0	0	0	0	1	0	0	0	0	0	0	0	4
	남해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거창군	0	0	0	1	1	0	0	0	0	0	0	0	6
	함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 계	2	2	0	6	4	0	0	10	4	3	6	12	264
제주	제주시	0	0	2	7	1	0	0	4	1	0	0	0	53
	서귀포시	0	0	0	0	0	0	0	1	1	0	0	0	27
	소 계	0	0	2	7	1	0	0	5	2	0	0	0	80
총계		58	19	41	210	72	0	0	140	28	49	9	298	4,900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서울	중구	2	4	0	0	1	0	0	4	0	0	0	11
	종로구	4	9	0	0	2	2	0	4	0	0	1	22
	서대문구	4	21	3	1	4	3	1	12	1	1	5	56
	마포구	7	22	3	1	5	2	0	21	0	0	5	66
	은평구	17	40	3	2	12	4	1	25	5	1	15	125
	동대문구	8	9	0	4	5	1	1	31	1	0	1	61
	중랑구	9	36	0	3	9	10	1	68	3	1	2	142
	도봉구	7	13	0	0	4	1	0	36	1	1	6	69
	성동구	4	6	0	0	2	2	0	1	1	0	0	16
	강동구	21	13	2	2	19	3	0	2	1	1	0	64
	강남구	11	8	0	2	7	0	0	5	1	0	1	35
	성북구	8	27	1	5	8	2	0	55	4	1	17	128
	서초구	5	14	0	3	1	6	0	4	0	1	1	35
	송파구	10	8	1	1	2	0	0	2	1	0	1	26
	노원구	16	20	1	2	13	2	0	11	1	4	1	71
	용산구	9	10	1	3	10	4	0	6	0	1	0	44
	강북구	1	14	0	0	4	2	0	13	1	0	6	41
	광진구	2	12	0	0	1	2	0	10	1	2	1	31
	영등포구	5	22	0	1	8	6	0	17	0	1	0	60
	관악구	13	12	0	1	5	3	0	2	0	2	2	40
	구로구	5	14	0	1	3	2	0	15	1	0	4	45
	금천구	5	7	2	2	2	1	0	41	1	0	4	65
	동작구	5	8	3	0	1	0	0	0	0	0	0	17
	강서구	5	26	0	5	7	2	0	39	3	1	7	95
	양천구	15	24	0	1	1	1	0	26	1	2	16	87
	소 계	198	399	20	40	136	61	4	450	28	20	96	1,452
부산	중구	1	3	0	0	0	0	0	0	0	0	1	5
	동구	2	5	0	1	4	0	1	1	0	12	2	28
	서구	1	2	0	0	1	0	0	0	0	0	1	5
	사하구	7	18	0	2	1	3	0	7	2	0	1	41
	영도구	7	4	0	0	0	2	0	0	0	0	3	16
	동래구	13	11	1	1	5	0	0	5	2	0	2	40
	남구	7	8	0	4	3	1	0	2	7	2	9	43
	금정구	5	13	0	0	4	0	0	14	0	0	1	37
	연제구	4	19	0	2	0	1	0	20	0	0	10	56
	해운대구	16	17	2	3	2	0	0	16	2	2	3	63
	수영구	3	8	0	2	1	0	0	6	1	0	2	23
	부산진구	5	9	0	0	15	7	0	2	1	0	3	42
	북구	0	11	1	1	0	0	0	1	0	0	0	14
	사상구	1	3	0	0	0	0	0	10	0	2	3	19
	강서구	0	4	0	1	0	0	0	2	0	1	2	10
	기장군	3	10	0	0	0	0	0	11	0	0	5	29
	소 계	75	145	4	17	36	14	1	97	15	19	48	471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대구	중구	3	4	1	0	0	0	1	3	0	0	0	12
	동구	5	8	3	1	3	5	0	13	2	0	1	41
	북구	9	30	0	2	4	0	0	17	6	0	0	68
	서구	4	16	1	1	3	1	0	8	3	0	1	38
	달서구	14	22	3	5	8	7	0	24	1	0	7	91
	남구	8	8	2	2	1	3	0	9	2	0	2	37
	수성구	3	9	2	1	6	5	0	6	3	0	2	37
	달성군	2	13	0	3	0	3	0	6	3	0	0	30
	소 계	48	110	12	15	25	24	1	86	20	0	13	354
인천	중구	0	6	0	0	7	0	0	8	2	0	0	23
	동구	0	6	1	4	1	1	0	4	0	0	0	17
	남구	4	8	1	2	8	0	0	30	5	0	4	62
	부평구	2	33	0	4	11	10	0	27	3	1	3	94
	서구	5	25	3	3	13	12	0	11	2	0	2	76
	남동구	10	29	1	1	13	5	0	20	5	2	3	89
	연수구	6	13	0	2	6	6	0	10	0	3	7	53
	계양구	3	8	0	5	8	8	0	1	0	0	1	34
	옹진군	0	0	0	0	0	3	0	0	0	0	0	3
	강화군	0	0	0	0	0	0	0	3	0	0	7	10
	소 계	30	128	6	21	67	45	0	114	17	6	27	461
광주	북구	12	17	3	1	6	4	0	13	3	0	5	64
	동구	2	0	7	1	4	0	0	5	0	0	1	20
	서구	11	23	4	5	2	4	0	8	1	6	2	66
	남구	6	7	0	2	5	4	0	13	4	2	0	43
	광산구	6	29	0	1	8	4	0	18	3	1	1	71
	소 계	37	76	14	10	25	16	0	57	11	9	9	264
대전	동구	7	12	1	2	4	1	0	19	2	1	2	51
	중구	7	14	1	0	4	1	1	19	1	0	6	54
	서구	16	27	3	5	10	5	0	24	3	1	2	96
	유성구	5	14	0	3	3	0	0	13	1	0	2	41
	대덕구	4	22	0	0	4	0	0	11	0	7	1	49
	소 계	39	89	5	10	25	7	1	86	7	9	13	291
울산	남구	12	24	3	4	7	12	0	22	2	1	9	96
	중구	13	22	0	8	5	8	0	15	6	0	4	81
	동구	10	19	2	2	2	12	0	10	0	0	10	67
	북구	5	20	0	5	7	4	0	20	3	0	3	67
	울주군	11	17	1	0	10	8	0	7	3	0	5	62
	소 계	51	102	6	19	31	44	0	74	14	1	31	37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3	18	0	1	5	3	0	1	1	0	2	34
	고양시 일산서구	6	10	0	2	6	0	0	7	1	1	14	47
	고양시 덕양구	6	19	4	3	6	6	1	10	2	1	3	61
	파주시	8	21	2	4	12	2	0	22	0	4	10	85
	김포시	8	12	0	3	9	3	0	21	4	0	2	62
	부천시 원미구	4	11	0	2	3	6	2	19	3	0	1	51
	부천시 오정구	4	9	5	5	13	8	0	12	6	0	2	64
	부천시 소사구	9	15	0	0	5	1	0	7	3	0	2	42
	광명시	6	26	1	2	7	8	0	29	5	0	6	90
	안산시 단원구	48	73	3	7	31	12	0	74	5	3	0	256
	안산시 상록구	48	50	6	7	40	23	1	89	12	3	7	286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경기	과천시	2	1	0	0	1	2	0	2	0	0	0	8
	시흥시	11	24	0	8	11	30	0	42	4	2	6	138
	안양시 만안구	1	4	0	0	6	4	0	1	0	0	0	16
	안양시 동안구	0	9	1	1	4	0	0	1	0	0	0	16
	군포시	1	15	0	0	0	2	0	2	0	0	0	20
	의왕시	5	7	2	9	1	8	0	0	0	0	0	32
	수원시 장안구	16	24	1	3	12	4	0	5	4	0	6	75
	수원시 권선구	24	39	6	5	8	10	0	10	1	0	0	103
	수원시 팔달구	11	16	2	2	8	6	0	7	2	0	0	54
	수원시 영통구	13	23	4	1	10	1	0	2	0	0	2	56
	화성시	26	54	2	4	16	5	1	35	3	5	12	163
	용인시 기흥구	18	21	1	0	7	13	0	7	3	0	0	70
	오산시	11	18	3	4	4	3	0	2	3	2	2	52
	용인시 수지구	25	21	0	1	4	6	0	5	5	2	1	70
	용인시 처인구	7	10	0	2	2	1	0	15	0	0	0	37
	평택시	13	46	0	6	14	11	2	41	2	1	10	146
	안성시	1	13	1	1	0	4	0	6	1	0	0	27
	성남시 수정구	19	26	1	0	12	6	0	26	4	0	0	94
	성남시 중원구	9	13	2	2	2	5	1	16	5	1	3	59
	성남시 분당구	19	23	1	1	6	0	0	16	3	0	2	71
	광주시	17	28	1	7	13	7	0	16	0	0	4	93
	하남시	8	8	0	0	2	1	0	3	0	0	3	25
	이천시	8	12	1	1	5	3	1	3	4	0	0	38
	여주군	5	8	3	1	6	3	0	9	0	0	0	35
	구리시	15	12	3	0	4	0	0	41	2	2	1	80
	남양주시	8	59	2	2	16	6	1	49	2	3	14	162
	양평군	2	3	0	1	0	0	0	0	0	0	1	7
	가평군	1	4	0	0	3	0	0	4	0	0	0	12
	의정부시	15	39	1	8	8	11	0	36	7	1	4	130
	양주시	5	18	0	2	4	3	2	4	1	0	0	39
	동두천시	9	8	1	5	7	2	0	12	0	0	1	45
	연천군	1	2	0	4	0	1	0	0	0	0	1	9
	포천시	28	19	3	5	6	11	0	10	2	3	3	90
	소 계	504	891	63	122	339	241	12	719	100	34	125	3,150
강원	춘천시	9	16	2	8	4	6	1	20	3	3	16	88
	화천군	0	0	0	0	1	0	0	0	0	0	4	5
	강릉시	11	20	0	1	2	3	0	17	2	1	7	64
	양양군	0	1	0	0	0	0	0	1	0	0	0	2
	속초시	4	6	0	0	3	3	0	2	0	0	1	19
	고성군	0	0	0	1	1	0	0	0	0	0	0	2
	원주시	20	35	4	6	16	7	1	105	2	1	17	214
	횡성군	0	1	0	2	0	16	0	2	0	0	1	22
	영월군	0	1	0	0	4	0	0	3	0	0	5	13
	평창군	2	4	2	1	1	1	0	6	1	0	0	18
	정선군	1	3	2	0	0	0	0	2	0	0	0	8
	태백시	2	5	1	1	0	0	0	1	0	0	0	10
	동해시	5	4	0	3	3	1	0	6	0	0	1	23
	삼척시	17	5	1	1	2	4	0	13	1	1	3	48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의명	기타	계
충북	흥천군	3	2	0	0	1	0	0	5	0	0	1	12
	인제군	0	6	0	0	0	0	0	0	0	0	0	6
	양구군	0	0	0	0	0	0	0	0	0	0	1	1
	철원군	1	0	0	0	0	0	0	6	0	0	0	7
	소 계	75	109	12	24	38	41	2	189	9	6	57	562
충남	청주시 상당구	2	13	3	2	7	0	0	6	1	0	0	34
	청주시 흥덕구	7	11	0	2	11	8	0	16	2	0	4	61
	청주시 서원구	0	12	0	0	0	3	0	9	0	0	2	26
	청주시 청원구	6	22	3	0	2	26	0	99	5	0	1	164
	진천군	2	2	1	4	0	2	0	1	0	0	0	12
	괴산군	0	2	0	0	0	0	0	5	0	0	1	8
	증평군	0	1	0	2	2	0	0	3	0	0	0	8
	음성군	4	6	1	3	4	1	0	5	0	0	0	24
	영동군	2	5	0	0	4	0	1	18	0	0	2	32
	옥천군	1	2	0	0	0	1	0	12	0	0	3	19
	보은군	0	3	0	0	5	4	0	2	2	0	0	16
	충주시	13	28	3	1	12	13	0	41	2	0	4	117
	제천시	2	16	2	4	2	3	0	21	1	0	3	54
	단양군	0	0	1	0	6	0	0	9	0	0	0	16
	소 계	39	123	14	18	55	61	1	247	13	0	20	591
전북	금산군	1	11	0	0	2	5	0	5	0	0	1	25
	공주시	4	7	1	0	2	8	0	11	0	0	2	35
	논산시	3	16	0	7	10	21	0	18	0	0	3	78
	계룡시	1	0	0	0	0	0	0	0	0	0	1	2
	부여군	4	5	0	6	5	4	0	3	1	0	1	29
	서천군	1	0	0	2	0	0	0	4	0	0	0	7
	천안시 동남구	7	15	1	2	9	2	0	13	4	0	0	53
	천안시 서북구	9	32	0	5	5	1	0	6	2	0	4	64
	아산시	19	41	5	1	4	0	0	20	2	1	11	104
	예산군	3	5	2	1	2	1	0	4	0	0	5	23
	당진시	7	9	3	1	3	1	0	4	0	1	0	29
	청양군	1	0	0	0	0	0	0	2	0	0	0	3
	홍성군	2	5	0	0	2	0	0	3	0	0	0	12
	보령시	0	4	0	4	1	3	0	6	0	0	1	19
	서산시	10	10	1	4	0	0	0	13	0	0	4	42
	태안군	3	0	0	0	1	1	0	1	1	0	0	7
	세종특별자치시	0	8	0	1	0	0	0	2	0	2	1	14
	소 계	75	168	13	34	46	47	0	115	10	4	34	546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의명	기타	계
	김제시	3	8	0	2	3	1	0	10	1	0	0	28
	부안군	0	4	0	1	0	1	0	2	0	0	2	10
	정읍시	4	18	2	0	13	13	0	26	0	1	3	80
	고창군	3	0	0	0	0	12	0	2	0	0	0	17
	남원시	1	14	0	6	8	3	0	41	0	4	5	82
	순창군	3	2	0	0	0	0	0	7	0	0	1	13
	장수군	0	0	0	0	1	1	0	7	0	0	0	9
전남	소 계	57	181	8	42	60	78	0	326	21	10	22	805
	영광군	3	2	4	0	1	0	0	14	0	0	0	24
	장성군	0	2	0	1	3	0	0	9	0	0	1	16
	곡성군	0	0	0	0	0	1	0	0	0	0	0	1
	담양군	2	0	0	1	1	2	0	9	0	0	0	15
	회순군	1	7	0	3	7	1	0	16	0	0	0	35
	나주시	11	8	0	0	3	8	0	33	0	0	0	63
	함평군	0	1	0	0	0	1	0	4	0	0	1	7
	영암군	2	1	0	1	1	1	0	4	1	0	0	11
	강진군	0	5	0	0	0	2	0	7	0	0	0	14
	장흥군	0	11	0	0	9	1	0	13	1	0	2	37
	목포시	13	31	4	3	12	4	2	50	2	0	4	125
	무안군	2	2	0	1	1	3	0	0	1	0	2	12
	신안군	0	0	0	0	3	0	0	3	0	0	0	6
	해남군	0	1	0	0	1	0	0	14	0	0	2	18
	완도군	1	0	0	0	0	0	0	7	0	0	0	8
	진도군	2	0	0	0	2	3	0	8	0	0	11	26
	순천시	14	31	2	3	1	0	0	27	0	0	0	78
	구례군	0	0	0	0	0	0	0	2	0	0	0	2
	광양시	8	9	5	1	6	0	1	38	0	1	0	69
	보성군	0	2	0	0	0	0	0	0	0	0	0	2
	고흥군	3	0	1	0	0	0	0	1	0	0	0	5
	여수시	3	15	0	1	3	3	0	13	0	0	3	41
	소 계	65	128	16	15	54	30	3	272	5	1	26	615
경북	경산시	1	3	0	5	4	0	0	12	0	0	0	25
	청도군	0	2	0	0	0	0	0	1	0	0	0	3
	군위군	2	1	0	0	0	0	1	3	0	0	0	7
	고령군	2	0	0	0	0	0	0	6	0	0	0	8
	칠곡군	7	10	0	0	1	2	0	15	2	0	0	37
	성주군	4	3	0	0	0	0	0	2	0	0	0	9
	구미시	16	14	3	0	9	4	0	24	5	1	3	79
	김천시	2	11	0	1	1	5	0	18	2	0	0	40
	상주시	3	4	0	3	0	1	0	7	0	0	0	18
	문경시	3	8	1	0	0	2	0	4	0	0	0	18
	영주시	1	5	0	3	3	1	0	6	0	0	0	19
	봉화군	0	0	0	0	0	8	0	0	0	0	0	8
	예천군	2	3	1	0	0	1	0	6	0	0	0	13
	인동시	6	38	0	3	8	1	0	60	3	0	5	124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아동 분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경상	청송군	2	3	0	0	0	0	0	0	0	0	0	5
	영양군	0	6	2	0	0	0	0	1	0	0	2	11
	영덕군	0	0	0	0	0	1	0	2	0	0	0	3
	울진군	0	0	0	0	0	4	0	5	0	0	0	9
	의성군	0	0	0	0	0	1	0	27	0	0	0	28
	영천시	9	0	3	0	0	0	0	2	0	0	0	14
	경주시	4	8	0	5	0	1	0	19	0	1	2	40
	포항시 남구	17	23	3	3	4	8	0	155	5	2	4	224
	포항시 북구	20	31	2	7	13	3	0	55	4	0	3	138
	소 계	101	173	15	30	43	43	1	430	21	4	19	880
경남	김해시	14	36	3	6	4	8	0	20	3	1	0	95
	양산시	7	21	1	5	7	6	0	12	0	0	2	61
	밀양시	1	6	0	2	1	1	0	1	0	0	0	12
	창원시 마산회원구	3	9	3	4	0	2	0	11	0	0	0	32
	창원시 마산합포구	2	8	1	0	2	2	0	4	0	0	0	19
	창녕군	0	2	0	0	0	0	0	0	0	0	0	2
	의령군	0	0	0	0	1	0	0	13	0	0	0	14
	함안군	0	3	0	1	0	0	0	1	0	1	0	6
	고성군	1	4	0	0	1	32	0	5	0	0	0	43
	창원시 의창구	5	7	1	0	0	1	0	43	0	2	1	60
	창원시 성산구	1	0	0	2	0	0	0	1	0	0	1	5
	창원시 진해구	2	10	2	1	2	0	0	65	0	0	1	83
	통영시	1	4	0	0	0	0	0	0	0	0	0	5
	거제시	9	14	0	1	6	8	1	43	2	0	2	86
	진주시	11	8	5	0	2	1	0	18	3	1	12	61
	사천시	4	5	0	1	0	0	0	24	1	1	6	42
	산청군	0	1	0	0	0	0	0	1	0	0	0	2
	하동군	0	1	0	0	0	1	0	2	0	0	0	4
	남해군	0	2	0	0	0	0	0	4	0	0	1	7
	거창군	0	2	0	0	0	0	0	3	0	0	0	5
	함양군	0	2	0	0	0	0	0	1	1	0	2	6
	합천군	0	1	0	0	0	0	0	1	0	0	0	2
	소 계	61	146	16	23	26	62	1	273	10	6	28	652
제주	제주시	28	72	6	9	24	16	0	42	4	4	3	208
	서귀포시	17	8	1	3	10	16	0	13	0	1	7	76
	소 계	45	80	7	12	34	32	0	55	4	5	10	284
총 계		1,500	3,048	231	452	1,040	846	27	3,590	305	134	578	11,751

3) 경찰통보건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이후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112 상황실에서 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신고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의심되는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동행 출동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2015년에 경찰이 112 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거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전체 8,348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경찰통보건수 중 신고자가 112 또는 경찰서 내방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경우 7,781건(9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이 수사과정 등에서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한 경우는 527건(6.3%)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대비하여 경찰 통보 건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0〉 경찰통보건수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484 (5.8)	13 (0.2)	30 (0.4)	527 (6.3)	7,781 (93.2)	19 (0.2)	2 (0.0)	19 (0.2)	8,348 (100.0)

*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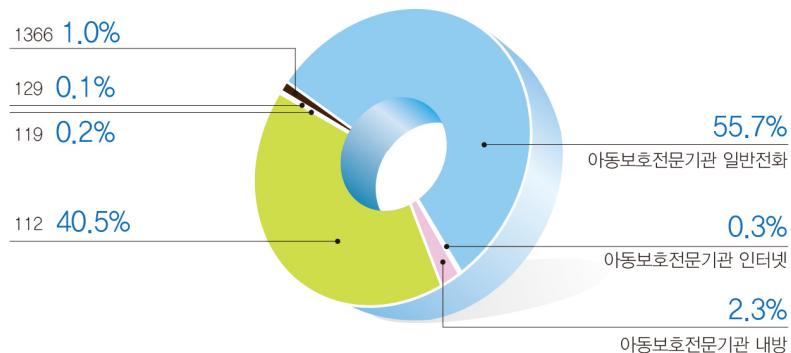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경로는 전화라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그리고 119 안전신고센터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이 되었고, 기준에 운영하던 1577-1391은 폐지가 되었다.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 된 비율은 전체 신고의 58.3%으로 총 11,20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건수는 10,709건(55.7%),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55건(0.3%),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는 444건(2.3%)이었다. 그리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통합이 되면서 112를 통한 신고는 총 7,781건으로 전체의 40.5%에 해당하였다.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비율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25.5%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통합되면서 112를 통해 신고접수된 비율이 작년과 비교하여 27.1%포인트가 증가한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통한 신고는 185건(1.0%), 119를 통한 신고는 29건(0.2%),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1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0,709 (55.7)	55 (0.3)	444 (2.3)	11,208 (58.3)	7,781 (40.5)	29 (0.2)	11 (0.1)	185 (1.0)	19,214 (100.0)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유형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 경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중 양*	2(50.0)	2(50.0)	–	4(100.0)	–	–	–	–	4(100.0)
서울	서울특별시	81(26.9)	0(0.0)	11(3.7)	92(30.6)	206(68.4)	0(0.0)	0(0.0)	3(1.0)	301(100.0)
	서울특별시동부	276(49.4)	1(0.2)	1(0.2)	278(49.7)	273(48.8)	0(0.0)	2(0.4)	6(1.1)	559(100.0)
	서울강서	195(65.7)	1(0.3)	12(4.0)	208(70.0)	88(29.6)	0(0.0)	0(0.0)	1(0.3)	297(100.0)
	서울은평	129(40.8)	0(0.0)	3(0.9)	132(41.8)	184(58.2)	0(0.0)	0(0.0)	0(0.0)	316(100.0)
	서울영등포	208(70.3)	0(0.0)	6(2.0)	214(72.3)	81(27.4)	0(0.0)	0(0.0)	1(0.3)	296(100.0)
	서울성북	178(67.4)	0(0.0)	2(0.8)	180(68.2)	84(31.8)	0(0.0)	0(0.0)	0(0.0)	264(100.0)
	서울마포	146(50.0)	0(0.0)	1(0.3)	147(50.3)	145(49.7)	0(0.0)	0(0.0)	0(0.0)	292(100.0)
	서울동남권**	–	–	–	–	–	–	–	–	–
	소 계	1,213(52.2)	2(0.1)	36(1.5)	1,251(53.8)	1,061(45.6)	0(0.0)	2(0.1)	11(0.5)	2,325(100.0)
부산	부산광역시	94(30.7)	18(5.9)	7(2.3)	119(38.9)	187(61.1)	0(0.0)	0(0.0)	0(0.0)	306(100.0)
	부산통부	223(53.0)	1(0.2)	7(1.7)	231(54.9)	188(44.7)	0(0.0)	1(0.2)	1(0.2)	421(100.0)
	부산서부***	101(58.4)	4(2.3)	6(3.5)	111(64.2)	61(35.3)	0(0.0)	0(0.0)	1(0.6)	173(100.0)
	소 계	418(46.4)	23(2.6)	20(2.2)	461(51.2)	436(48.4)	0(0.0)	1(0.1)	2(0.2)	900(100.0)
대구	대구광역시	144(42.0)	0(0.0)	17(5.0)	161(46.9)	181(52.8)	0(0.0)	0(0.0)	1(0.3)	343(100.0)
	대구광역시남부	175(59.1)	0(0.0)	14(4.7)	189(63.9)	107(36.1)	0(0.0)	0(0.0)	0(0.0)	296(100.0)
	소 계	319(49.9)	0(0.0)	31(4.9)	350(54.8)	288(45.1)	0(0.0)	0(0.0)	1(0.2)	639(100.0)
인천	인천광역시	255(60.4)	0(0.0)	4(0.9)	259(61.4)	161(38.2)	0(0.0)	1(0.2)	1(0.2)	422(100.0)
	인천북부	97(37.5)	0(0.0)	4(1.5)	101(39.0)	155(59.8)	0(0.0)	0(0.0)	3(1.2)	259(100.0)
	인천미추홀****	0(0.0)	0(0.0)	0(0.0)	0(0.0)	8(100.0)	0(0.0)	0(0.0)	0(0.0)	8(100.0)
	인천남부***	147(62.8)	0(0.0)	4(1.7)	151(64.5)	79(33.8)	2(0.9)	0(0.0)	2(0.9)	234(100.0)
	소 계	499(54.1)	0(0.0)	12(1.3)	511(55.4)	403(43.7)	2(0.2)	1(0.1)	6(0.7)	923(100.0)
광주	광주광역시	146(38.0)	10(2.6)	7(1.8)	163(42.4)	217(56.5)	3(0.8)	1(0.3)	0(0.0)	384(100.0)
대전	대전광역시	175(34.2)	1(0.2)	7(1.4)	183(35.7)	321(62.7)	0(0.0)	0(0.0)	8(1.6)	512(100.0)
울산	울산광역시	301(44.9)	0(0.0)	6(0.9)	307(45.8)	361(53.8)	0(0.0)	0(0.0)	3(0.4)	671(100.0)
경기	경기도	174(32.0)	2(0.4)	5(0.9)	181(33.3)	361(66.4)	2(0.4)	0(0.0)	0(0.0)	544(100.0)
	경기북부	231(49.0)	1(0.2)	13(2.8)	245(52.0)	224(47.6)	1(0.2)	0(0.0)	1(0.2)	471(100.0)
	경기성남	223(44.5)	0(0.0)	13(2.6)	236(47.1)	263(52.5)	2(0.4)	0(0.0)	0(0.0)	501(100.0)
	경기고양	256(56.9)	3(0.7)	3(0.7)	262(58.2)	183(40.7)	0(0.0)	0(0.0)	5(1.1)	450(100.0)
	경기부천	196(56.8)	1(0.3)	6(1.7)	203(58.8)	139(40.3)	1(0.3)	1(0.3)	1(0.3)	345(100.0)
	경기화성	256(54.9)	0(0.0)	5(1.1)	261(56.0)	199(42.7)	0(0.0)	0(0.0)	6(1.3)	466(100.0)
	경기남양주	223(63.5)	0(0.0)	7(2.0)	230(65.5)	114(32.5)	2(0.6)	5(1.4)	0(0.0)	351(100.0)
	안산시	369(49.5)	0(0.0)	7(0.9)	376(50.4)	362(48.5)	3(0.4)	0(0.0)	5(0.7)	746(100.0)
	경기용인	173(45.5)	2(0.5)	2(0.5)	177(46.6)	197(51.8)	4(1.1)	0(0.0)	2(0.5)	380(100.0)
	경기시흥	225(65.0)	0(0.0)	0(0.0)	225(65.0)	121(35.0)	0(0.0)	0(0.0)	0(0.0)	346(100.0)
	경기평택***	132(79.0)	0(0.0)	5(3.0)	137(82.0)	28(16.8)	0(0.0)	0(0.0)	2(1.2)	167(100.0)
	소 계	2,458(51.6)	9(0.2)	66(1.4)	2,533(53.1)	2,191(46.0)	15(0.3)	6(0.1)	22(0.5)	4,767(100.0)

(계속)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외발생사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되는 사례만 신고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접수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 경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강원	강원도	153(54.3)	0(0.0)	14(5.0)	167(59.2)	110(39.0)	0(0.0)	0(0.0)	5(1.8)	282 (100.0)
	강원동부	144(52.4)	1(0.4)	13(4.7)	158(57.5)	111(40.4)	0(0.0)	0(0.0)	6(2.2)	275 (100.0)
	원주시	217(68.5)	1(0.3)	8(2.5)	226(71.3)	83(26.2)	0(0.0)	0(0.0)	8(2.5)	317 (100.0)
	강원남부***	1(33.3)	0(0.0)	0(0.0)	1(33.3)	2(66.7)	0(0.0)	0(0.0)	0(0.0)	3 (100.0)
	소 계	515(58.7)	2(0.2)	35(4.0)	552(62.9)	306(34.9)	0(0.0)	0(0.0)	19(2.2)	877 (100.0)
충북	충청북도	275(54.6)	0(0.0)	12(2.4)	287(56.9)	214(42.5)	0(0.0)	0(0.0)	3(0.6)	504 (100.0)
	충북북부	184(63.4)	0(0.0)	13(4.5)	197(67.9)	93(32.1)	0(0.0)	0(0.0)	0(0.0)	290 (100.0)
	충북남부	123(81.5)	0(0.0)	3(2.0)	126(83.4)	25(16.6)	0(0.0)	0(0.0)	0(0.0)	151 (100.0)
	소 계	582(61.6)	0(0.0)	28(3.0)	610(64.6)	332(35.1)	0(0.0)	0(0.0)	3(0.3)	945 (100.0)
충남	충청남도	338(62.8)	0(0.0)	17(3.2)	355(66.0)	173(32.2)	0(0.0)	0(0.0)	10(1.9)	538 (100.0)
	충청남도남부	211(68.5)	0(0.0)	13(4.2)	224(72.7)	80(26.0)	0(0.0)	0(0.0)	4(1.3)	308 (100.0)
	충청남도서부	148(67.6)	0(0.0)	2(0.9)	150(68.5)	66(30.1)	0(0.0)	0(0.0)	3(1.4)	219 (100.0)
	소 계	697(65.4)	0(0.0)	32(3.0)	729(68.5)	319(30.0)	0(0.0)	0(0.0)	17(1.6)	1,065 (100.0)
전북	전라북도	354(68.9)	0(0.0)	17(3.3)	371(72.2)	135(26.3)	3(0.6)	0(0.0)	5(1.0)	514 (100.0)
	전라북도서부	381(68.6)	0(0.0)	18(3.2)	399(71.9)	153(27.6)	3(0.5)	0(0.0)	0(0.0)	555 (100.0)
	전라북도동부	202(78.0)	1(0.4)	28(10.8)	231(89.2)	27(10.4)	0(0.0)	0(0.0)	1(0.4)	259 (100.0)
	소 계	937(70.6)	1(0.1)	63(4.7)	1,001(75.4)	315(23.7)	6(0.5)	0(0.0)	6(0.5)	1,328 (100.0)
전남	전라남도	208(63.0)	0(0.0)	9(2.7)	217(65.8)	113(34.2)	0(0.0)	0(0.0)	0(0.0)	330 (100.0)
	전남서부권	255(67.3)	0(0.0)	9(2.4)	264(69.7)	111(29.3)	0(0.0)	0(0.0)	4(1.1)	379 (100.0)
	전남중부권	242(70.6)	1(0.3)	7(2.0)	250(72.9)	92(26.8)	0(0.0)	0(0.0)	1(0.3)	343 (100.0)
	소 계	705(67.0)	1(0.1)	25(2.4)	731(69.5)	316(30.0)	0(0.0)	0(0.0)	5(0.5)	1,052 (100.0)
경북	경북남부	150(66.1)	0(0.0)	4(1.8)	154(67.8)	67(29.5)	0(0.0)	0(0.0)	6(2.6)	227 (100.0)
	경북북부	233(75.2)	0(0.0)	14(4.5)	247(79.7)	57(18.4)	2(0.6)	0(0.0)	4(1.3)	310 (100.0)
	경북동부	386(71.6)	0(0.0)	13(2.4)	399(74.0)	135(25.0)	0(0.0)	0(0.0)	5(0.9)	539 (100.0)
	경북서부	184(55.3)	1(0.3)	2(0.6)	187(56.2)	114(34.2)	1(0.3)	0(0.0)	31(9.3)	333 (100.0)
	소 계	953(67.6)	1(0.1)	33(2.3)	987(70.0)	373(26.5)	3(0.2)	0(0.0)	46(3.3)	1,409 (100.0)
경남	경상남도	343(57.1)	1(0.2)	13(2.2)	357(59.4)	241(40.1)	0(0.0)	0(0.0)	3(0.5)	601 (100.0)
	경남서부	173(75.2)	1(0.4)	5(2.2)	179(77.8)	46(20.0)	0(0.0)	0(0.0)	5(2.2)	230 (100.0)
	김해시***	61(53.0)	0(0.0)	7(6.1)	68(59.1)	47(40.9)	0(0.0)	0(0.0)	0(0.0)	115 (100.0)
	소 계	577(61.0)	2(0.2)	25(2.6)	604(63.8)	334(35.3)	0(0.0)	0(0.0)	8(0.8)	946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42(44.1)	1(0.3)	13(4.0)	156(48.4)	139(43.2)	0(0.0)	0(0.0)	27(8.4)	322 (100.0)
	서귀포시	70(48.3)	0(0.0)	5(3.4)	75(51.7)	69(47.6)	0(0.0)	0(0.0)	1(0.7)	145 (100.0)
	소 계	212(45.4)	1(0.2)	18(3.9)	231(49.5)	208(44.5)	0(0.0)	0(0.0)	28(6.0)	467 (100.0)
계		10,709(55.7)	55(0.3)	444(2.3)	11,208(58.3)	7,781(40.5)	29(0.2)	11(0.1)	185(1.0)	19,214(100.0)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또는 일반상담을 실시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5일 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4월 1일 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7월 1일 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11월 9일 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3월 27일 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일자로 폐쇄됨.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 현장조사
2. 사례판단
3. 피해아동 발견율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03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상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불어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1회 이상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5년의 경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에 해당하는 16,651건을 대상으로 총 35,379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 당 약 2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현장조사 횟수

(단위 :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16,651	35,379	2.1

2015년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표 3-2〉와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22,890건으로 전체의 64.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한 사례가 8,927건(25.2%), 경찰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 1,75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경찰 단독의 아동학대의심사례 1차 현장조사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상호동행 건수는 2014년과 대비하여 각각 76.5%, 128.6% 증가하였다. 이는 경찰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원활한 사례개입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시설(보육·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하여 협조하고 있다.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574건(1.6%),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30건(0.1%), 상담원·경찰·공무원이 모두 함께 동행한 사례는 1,203건(3.4%)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단위 : 건, %)

상담원	경찰	상담원·경찰	상담원·공무원	경찰·공무원	상담원·경찰·공무원	계
22,890(64.7)	1,755(5.0)	8,927(25.2)	574(1.6)	30(0.1)	1,203(3.4)	35,379 (100.0)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표 3-3〉은 2015년의 기관별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3.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2.9회, 2.8회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단위 :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서 울	서울특별시	286	555	1.9
	서울특별시동부	461	1,265	2.7
	서울강서	256	600	2.3
	서울은평	248	527	2.1
	서울영등포	236	717	3.0
	서울성북	249	560	2.2
	서울마포	217	390	1.8
	서울동남권*	—	—	—
	소 계	1,953	4,614	2.4
부 산	부산광역시	246	464	1.9
	부산동부	374	762	2.0
	부산서부**	144	285	2.0
	소 계	764	1,511	2.0
대 구	대구광역시	297	566	1.9
	대구남부	225	471	2.1
	소 계	522	1,037	2.0
인 천	인천광역시	328	575	1.8
	인천북부	212	411	1.9
	인천미추홀***	8	21	2.6
	인천남**	185	450	2.4
	소 계	733	1,457	2.0
광 주	광주광역시	351	620	1.8
대 전	대전광역시	401	835	2.1
울 산	울산광역시	526	1,085	2.1

(계속)

(단위 :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경 기	경기도	518	1,122	2,2	
	경기북부	422	956	2,3	
	경기성남	476	1,367	2,9	
	경기고양	328	786	2,4	
	경기부천	304	605	2,0	
	경기화성	423	914	2,2	
	경기남양주	309	851	2,8	
	안산시	654	1,223	1,9	
	경기용인	344	708	2,1	
	경기시흥	295	658	2,2	
	경기평택**	144	331	2,3	
	소 계	4,217	9,521	2,3	
강 원	강원도	266	505	1,9	
	강원동부	256	522	2,0	
	원주시	279	656	2,4	
	강원남부**	3	8	2,7	
	소 계	804	1,691	2,1	
총 북	충청북도	445	895	2,0	
	충북북부	246	585	2,4	
	충북남부	126	280	2,2	
	소 계	817	1,760	2,2	
총 남	충청남도	482	980	2,0	
	충청남도남부	271	538	2,0	
	충청남도서부	186	327	1,8	
	소 계	939	1,845	2,0	
전 북	전라북도	438	894	2,0	
	전라북도서부	495	898	1,8	
	전라북도동부	232	448	1,9	
	소 계	1,165	2,240	1,9	
전 남	전라남도	303	509	1,7	
	전남서부권	339	632	1,9	
	전남중부권	337	637	1,9	
	소 계	979	1,778	1,8	
경 북	경북남부	179	326	1,8	
	경북북부	271	639	2,4	
	경북동부	483	1,101	2,3	
	경북서부	266	586	2,2	
	소 계	1,199	2,652	2,2	
경 남	경상남도	584	1,393	2,4	
	경상남도서부	225	396	1,8	
	김해시**	108	234	2,2	
	소 계	917	2,023	2,2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261	488	1,9	
	서귀포시	103	222	2,2	
	소 계	364	710	2,0	
계		16,651	35,379	2,1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5일 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4월 1일 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7월 1일 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11월 9일 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3월 27일 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일자로 폐소됨.

2. 사례판단

1) 사례판단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척도 등을 토대로 현장 판단, 기관 내 자체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한다.

아동학대사례^{*}의 세부적인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본 보고서 제4장에 제시되어 있다.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조기지원사례를 관리할 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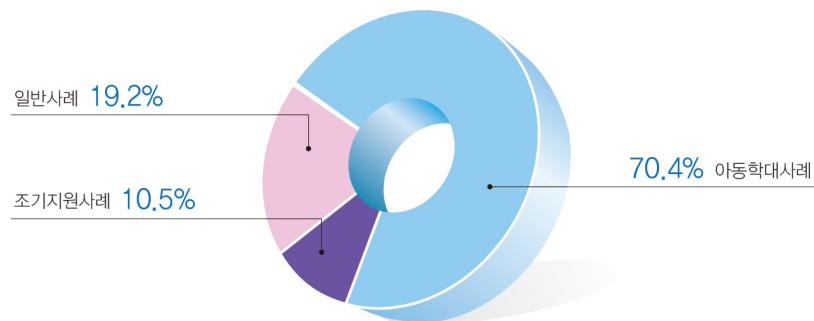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표 3-4〉와 같이 201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6,651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총 11,71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70.4%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와 일반사례는 각각 1,742건(10.5%), 3,194건(19.2%)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11,715 (70.4)	1,742 (10.5)	3,194 (19.2)	16,651 (100.0)



* '아동학대사례'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발생률'이라는 용어는 역학조사 및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발생률'과는 다른 의미임.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를 <표 3-5>와 같이 살펴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 심사례 중 아동학대 판단 비율을 보면 42.5%에서 100.0%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관별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서 울	서울특별시		123 (43.0)	41 (14.3)	122 (42.7)	286 (100.0)
	서울특별시동부		196 (42.5)	69 (15.0)	196 (42.5)	461 (100.0)
	서울강서		143 (55.9)	53 (20.7)	60 (23.4)	256 (100.0)
	서울은평		184 (74.2)	12 (4.8)	52 (21.0)	248 (100.0)
	서울영등포		173 (73.3)	11 (4.7)	52 (22.0)	236 (100.0)
	서울성북		190 (76.3)	36 (14.5)	23 (9.2)	249 (100.0)
	서울마포		170 (78.3)	13 (6.0)	34 (15.7)	217 (100.0)
	서울동남권*		—	—	—	—
소 계			1,179 (60.4)	235 (12.0)	539 (27.6)	1,953 (100.0)
부 산	부산광역시		168 (68.3)	33 (13.4)	45 (18.3)	246 (100.0)
	부산동부		241 (64.4)	92 (24.6)	41 (11.0)	374 (100.0)
	부산서부**		116 (80.6)	18 (12.5)	10 (6.9)	144 (100.0)
	소 계		525 (68.7)	143 (18.7)	96 (12.6)	764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198 (66.7)	17 (5.7)	82 (27.6)	297 (100.0)
	대구남부		149 (66.2)	20 (8.9)	56 (24.9)	225 (100.0)
	소 계		347 (66.5)	37 (7.1)	138 (26.4)	522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240 (73.2)	9 (2.7)	79 (24.1)	328 (100.0)
	인천북부		127 (59.9)	13 (6.1)	72 (34.0)	212 (100.0)
	인천미추홀***		4 (50.0)	0 (0.0)	4 (50.0)	8 (100.0)
	인천남부**		140 (75.7)	12 (6.5)	33 (17.8)	185 (100.0)
	소 계		511 (69.7)	34 (4.6)	188 (25.6)	733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253 (72.1)	16 (4.6)	82 (23.4)	351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330 (82.3)	29 (7.2)	42 (10.5)	401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340 (64.6)	96 (18.3)	90 (17.1)	526 (100.0)
경 기	경기도		332 (64.1)	64 (12.4)	122 (23.6)	518 (100.0)
	경기북부		283 (67.1)	24 (5.7)	115 (27.3)	422 (100.0)
	경기성남		329 (69.1)	84 (17.6)	63 (13.2)	476 (100.0)
	경기고양		207 (63.1)	48 (14.6)	73 (22.3)	328 (100.0)
	경기부천		261 (85.9)	3 (1.0)	40 (13.2)	304 (100.0)
	경기화성		314 (74.2)	45 (10.6)	64 (15.1)	423 (100.0)
	경기남양주		200 (64.7)	30 (9.7)	79 (25.6)	309 (100.0)
	안산시		515 (78.7)	53 (8.1)	86 (13.1)	654 (100.0)
	경기용인		202 (58.7)	69 (20.1)	73 (21.2)	344 (100.0)
	경기시흥		227 (76.9)	17 (5.8)	51 (17.3)	295 (100.0)
	경기평택**		103 (71.5)	9 (6.3)	32 (22.2)	144 (100.0)
소 계			2,973 (70.5)	446 (10.6)	798 (18.9)	4,217 (100.0)

(계속)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강 원	강원도	197 (74.1)	35 (13.2)	34 (12.8)	266 (100.0)	
	강원동부	194 (75.8)	8 (3.1)	54 (21.1)	256 (100.0)	
	원주시	158 (56.6)	44 (15.8)	77 (27.6)	279 (100.0)	
	강원남부**	3 (100.0)	0 (0.0)	0 (0.0)	3 (100.0)	
	소 계	552 (68.7)	87 (10.8)	165 (20.5)	804 (100.0)	
충 북	충청북도	385 (86.5)	29 (6.5)	31 (7.0)	445 (100.0)	
	충북북부	157 (63.8)	21 (8.5)	68 (27.6)	246 (100.0)	
	충북남부	102 (81.0)	20 (15.9)	4 (3.2)	126 (100.0)	
	소 계	644 (78.8)	70 (8.6)	103 (12.6)	817 (100.0)	
충 남	충청남도	292 (60.6)	52 (10.8)	138 (28.6)	482 (100.0)	
	충청남도남부	199 (73.4)	20 (7.4)	52 (19.2)	271 (100.0)	
	충청남도서부	124 (66.7)	17 (9.1)	45 (24.2)	186 (100.0)	
	소 계	615 (65.5)	89 (9.5)	235 (25.0)	939 (100.0)	
전 북	전라북도	326 (74.4)	65 (14.8)	47 (10.7)	438 (100.0)	
	전라북도서부	383 (77.4)	80 (16.2)	32 (6.5)	495 (100.0)	
	전라북도동부	180 (77.6)	47 (20.3)	5 (2.2)	232 (100.0)	
	소 계	889 (76.3)	192 (16.5)	84 (7.2)	1,165 (100.0)	
전 남	전라남도	194 (64.0)	22 (7.3)	87 (28.7)	303 (100.0)	
	전남서부권	260 (76.7)	31 (9.1)	48 (14.2)	339 (100.0)	
	전남중부권	303 (89.9)	24 (7.1)	10 (3.0)	337 (100.0)	
	소 계	757 (77.3)	77 (7.9)	145 (14.8)	979 (100.0)	
경 북	경북남부	94 (52.5)	50 (27.9)	35 (19.6)	179 (100.0)	
	경북북부	233 (86.0)	22 (8.1)	16 (5.9)	271 (100.0)	
	경북동부	355 (73.5)	43 (8.9)	85 (17.6)	483 (100.0)	
	경북서부	126 (47.4)	52 (19.5)	88 (33.1)	266 (100.0)	
	소 계	808 (67.4)	167 (13.9)	224 (18.7)	1,199 (100.0)	
경 남	경상남도	466 (79.8)	1 (0.2)	117 (20.0)	584 (100.0)	
	경상남도서부	186 (82.7)	9 (4.0)	30 (13.3)	225 (100.0)	
	김해시**	90 (83.3)	0 (0.0)	18 (16.7)	108 (100.0)	
	소 계	742 (80.9)	10 (1.1)	165 (18.0)	917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84 (70.5)	5 (1.9)	72 (27.6)	261 (100.0)	
	서귀포시	66 (64.1)	9 (8.7)	28 (27.2)	103 (100.0)	
	소 계	250 (68.7)	14 (3.8)	100 (27.5)	364 (100.0)	
계		11,715 (70.4)	1,742 (10.5)	3,194 (19.2)	16,651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5일 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4월 1일 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7월 1일 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11월 9일 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3월 27일 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일자로 폐소됨.

3) 피해아동 보호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11,715 건 이었으나 실제 피해아동 수는 8,978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사례 11,715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단위 : 건, 명)

	피해아동 보호건수	피해아동 보호명수
총합	11,715	8,978

3. 피해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발견율은 〈표 3-7〉에 제시하였다.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2015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다. 발견율은 %로 기록 한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 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은 1.32%로 나타났으며, 작년의 1.10%에 대비하여 약 0.2%포인트 가량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2.78%, 전라남도 2.50%, 충청북도 2.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특별시가 0.78%, 대구광역시 0.81%로 낮게 나타났다.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9.4%*, 호주가 8.0%**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피해아동 보호 간의 관계 양상 및 정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변수 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1에서 1의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6). Child Maltreatment 2014.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6). Child protection Australia : 2014-15.

값을 가지며,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 상관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0.74로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아동 인구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히 설치될 경우,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동인구와 관할면적,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개소,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502,968	8	187,871	1,179	0.78
부산광역시	516,861	3	172,287	525	1.02
대구광역시	428,144	2	214,072	347	0.81
인천광역시	520,106	4	130,027	511	0.98
광주광역시	302,459	1	302,459	253	0.84
대전광역시	290,866	1	290,866	330	1.13
울산광역시	221,250	1	221,250	340	1.54
경 기 도	2,380,413	11	216,401	2,973	1.25
강 원 도	252,848	4	63,212	552	2.18
충청북도	277,623	3	92,541	644	2.32
충청남도	414,137	3	138,046	615	1.49
전라북도	320,351	3	106,784	889	2.78
전라남도	303,055	3	101,018	757	2.50
경상북도	427,687	4	106,922	808	1.89
경상남도	606,610	3	202,203	742	1.22
제주특별자치도	120,155	2	60,078	250	2.08
계	8,885,533	56	162,877	11,715	1.32

* 통계청(www.kosis.kr), 2015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3. 아동학대사례 유형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5. 서비스 제공 현황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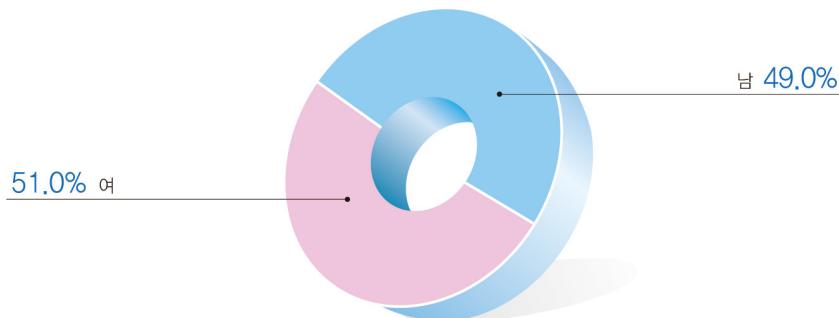
가. 피해아동 성별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표 4-1〉과 같이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남아가 5,745건(49.0%), 여아가 5,970건(51.0%)으로 남아랑 여아 간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남	여	계
5,745(49.0)	5,970(51.0)	11,715(100.0)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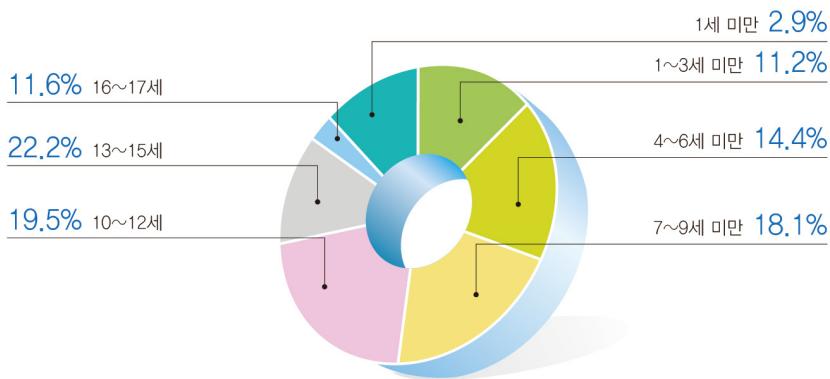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표 4-2〉와 같이 살펴보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19.5%,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학령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아동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 6세 미만은 28.5%로, 이는 영유아기에 해당한다. 영유아기는 아동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며, 아동이 부모와 주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부터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굴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생신고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에 대한 상시적 양육환경 점검을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취학·장기결석 등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344(2.9)
1세	312(2.7)
2세	457(3.9)
3세	543(4.6)
소 계	1,312(11.2)
4세	570(4.9)
5세	485(4.1)
6세	628(5.4)
소 계	1,683(14.4)
7세	696(5.9)
8세	700(6.0)
9세	727(6.2)
소 계	2,123(18.1)
10세	717(6.1)
11세	859(7.3)
12세	713(6.1)
소 계	2,289(19.5)
13세	827(7.1)
14세	920(7.9)
15세	853(7.3)
소 계	2,600(22.2)
16세	760(6.5)
17세	604(5.2)
소 계	1,364(11.6)
계	11,715(100.0)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의 〈표 4-3〉과 같이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이 5,779건으로 전체의 4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5,177건으로 44.2%였으며, 대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각 220건(1.9%), 58건(0.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3,578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30.5%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189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 소득 389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미취학 자녀의 12%, 초등생 자녀의 54.4%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부모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고 양육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기에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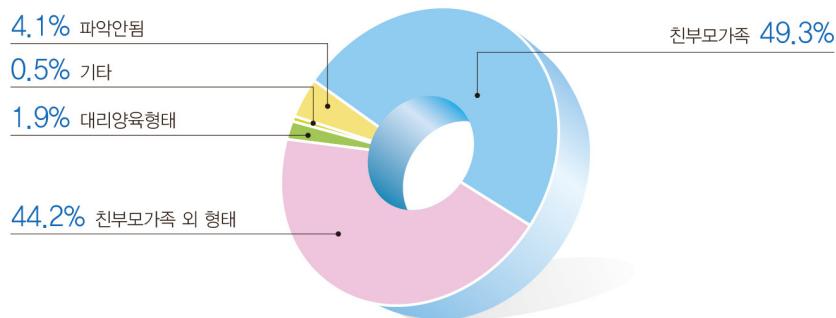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155건(1.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양가정 34건(0.3%), 가정위탁 31건(0.3%)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4년 208건에 비해 25.5%가 감소하였으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5,779 (49.3)	1,855 (15.8)	1,483 (12.7)	240 (2.0)	869 (7.4)	320 (2.7)	403 (3.4)	7 (0.1)	5,177 (44.2)	31 (0.3)	34 (0.3)	155 (1.3)	220 (1.9)	58 (0.5)	481 (4.1)	11,715 (100.0)

* 여성가족부(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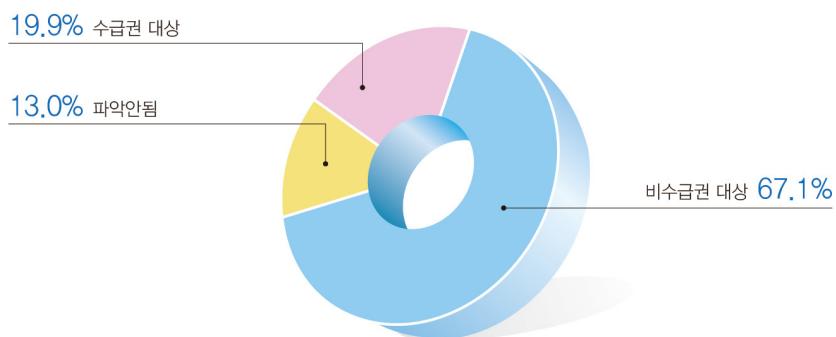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4-4〉와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아동이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2,335건이다.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7,857건(67.1%)이고, 수급권 여부가 파악 되지 않는 경우는 1,523건(13.0%)으로 나타났다.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2,335 (19.9)
비수급권 대상	7,857 (67.1)
파악안됨	1,523 (13.0)
계	11,715 (100.0)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마. 피해아동 특성

〈표 4-5〉는 피해아동의 특성을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없음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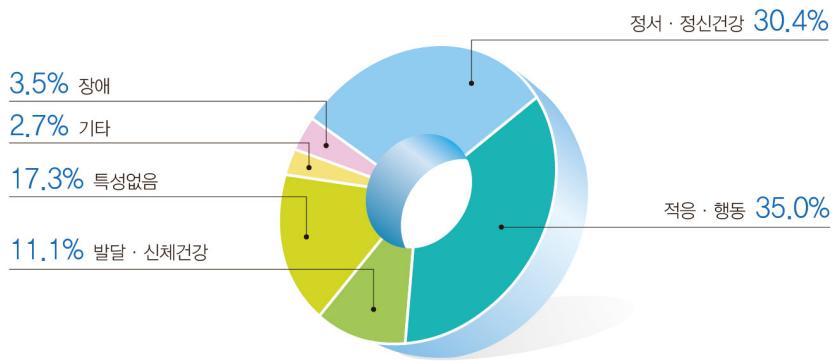
피해아동의 주된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행동으로 전체의 35.0%에 해당하는 8,382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으로 7,279건(30.4%), 특성없음이 4,150건(17.3%), 발달·신체건강이 2,667건(11.1%), 장애가 838건(3.5%), 기타가 647건(2.7%)이었다. 여기서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17.3%를 차지하는데, 이는 아동의 특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행동 중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이 1,294건(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920건(3.8%), 약물·흡연·음주가 848건(3.5%), 학교부적응이 787건(3.3%)으로 나타났다. 정서·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1,819건(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산만이 1,120건(4.7%), 우울이 737건(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신체건강 중에서는 위생문제가 841건(3.5%)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학대행위자가 행한 방임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의 경우,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공식적인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아동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또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정신적 장애가 355건(1.5%)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344건(1.4%), 신체적 장애가 139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학대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적 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장애	신체적 장애	139(0.6)
	정신적 장애	355(1.5)
	장애의심	344(1.4)
	소 계	838(3.5)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1,120(4.7)
	과잉행동	525(2.2)
	인터넷(게임)중독	307(1.3)
	불안	1,819(7.6)
	애착문제	686(2.9)
	무력감	527(2.2)
	우울	737(3.1)
	낮은 자아존중감	633(2.6)
	성격 및 기질 문제	647(2.7)
	탐식 및 결식	278(1.2)
	소 계	7,279(30.4)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294(5.4)
	거짓말	920(3.8)
	도벽	595(2.5)
	기출	728(3.0)
	약물·흡연·음주	848(3.5)
	성문제	222(0.9)
	학교 부적응	787(3.3)
	잦은 결석, 무단결과	609(2.5)
	늦은 귀가	584(2.4)
	학습문제	668(2.8)
	폭력행동	389(1.6)
	비행집단활동	198(0.8)
	불건전한 또래 관계	296(1.2)
	대인관계기피	244(1.0)
	소 계	8,382(35.0)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270(1.1)
	언어문제	697(2.9)
	영양결핍	133(0.6)
	대소변문제	189(0.8)
	위생문제	841(3.5)
	틱(음성·신체·뚜렷)	88(0.4)
	잦은 병치례, 허약	152(0.6)
	주요병력	297(1.2)
	소 계	2,667(11.1)
	특성없음	4,150(17.3)
기타	기타	647(2.7)
	계	23,963(100.0)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2)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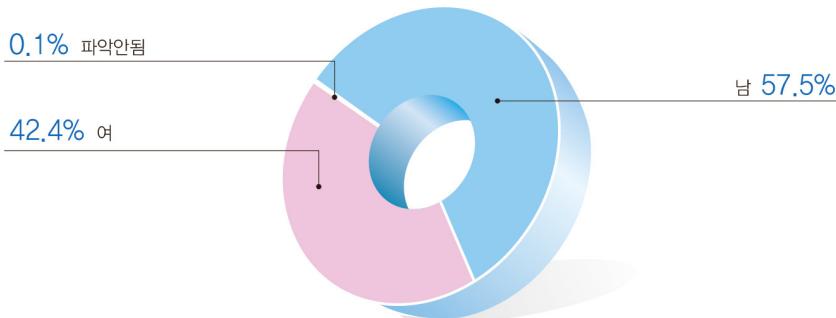
가. 학대행위자 성별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표 4-6〉과 같이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의 57.5%에 해당하는 6,736건이었으며, 여성은 4,967건(42.4%),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12건(0.1%)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과 비슷한 양상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남	여	파악안됨	계
6,736 (57.5)	4,967 (42.4)	12 (0.1)	11,715 (100.0)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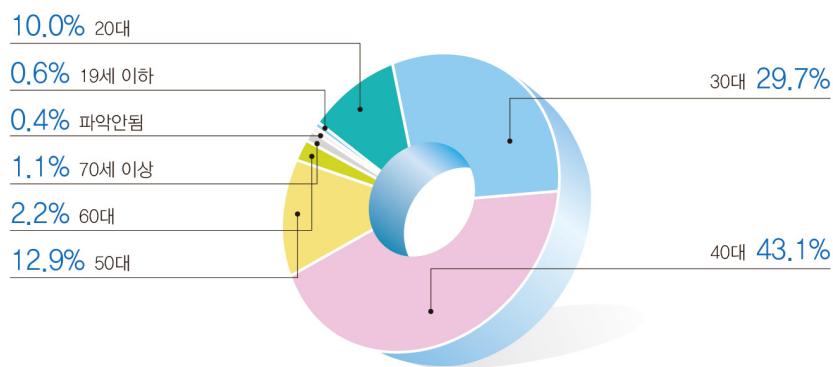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표 4-7〉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5,044건(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481건(29.7%)이었다. 앞서 피해아동 연령 중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만 19세 이하의 학대행위자는 74건으로 0.6%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학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세 이하에 해당하는 학대 행위자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임신과 출산을 자립 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생기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학업 중단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인 학대행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및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74 (0.6)
20~29세	1,173 (10.0)
30~39세	3,481 (29.7)
40~49세	5,044 (43.1)
50~59세	1,509 (12.9)
60~69세	260 (2.2)
70세 이상	129 (1.1)
파악안됨	45 (0.4)
계	11,715 (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다.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4-8>과 같이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및 파악안됨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79.8%에 해당하는 9,348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건 정도가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5,368건(45.8%), 친모는 3,475건(29.7%), 계모와 계부는 각각 237건(2.0%), 236건(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부계모에 의한 학대(473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8,843건)로 약 18배 이상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리양육자의 경우 1,431건으로 12.2%에 해당하였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보육교직원은 427건(3.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296건(2.5%)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동복지시설과 어린 이집 등과 같은 돌봄시설은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등 아동을 보호·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정기적인 종사자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균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외에 친인척은 562건(4.8%), 타인은 187건(1.6%), 기타 166건(1.4%), 파악안됨 21건(0.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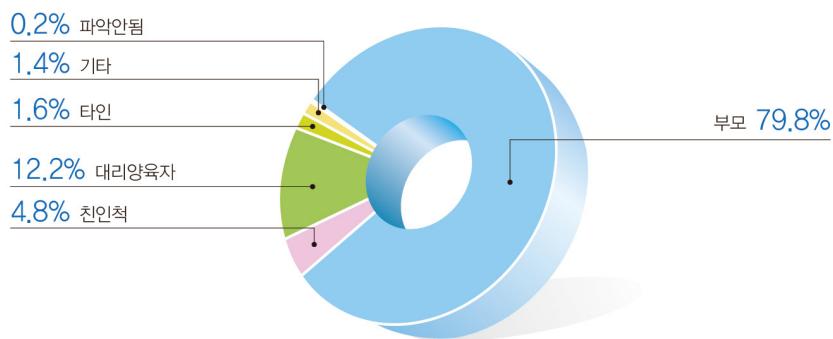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5,368 (45.8)
	친모	3,475 (29.7)
	계부	236 (2.0)
	계모	237 (2.0)
	양부	17 (0.1)
	양모	15 (0.1)
	소 계	9,348 (79.8)
친인척	친조부	96 (0.8)
	친조모	112 (1.0)
	외조부	28 (0.2)
	외조모	52 (0.4)
	친인척	201 (1.7)
	형제, 자매	73 (0.6)
	소 계	562 (4.8)

(계속)

관계		건수(비율)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158 (1.3)
	유치원교직원	203 (1.7)
	초·중고교 직원	234 (2.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64 (0.5)
	보육교직원	427 (3.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96 (2.5)
	기타시설 종사자	22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7 (0.1)
	위탁부	8 (0.1)
	위탁모	5 (0.0)
	베이비시터	7 (0.1)
소 계		1,431 (12.2)
타인	이웃	85 (0.7)
	낯선 사람	102 (0.9)
	소 계	187 (1.6)
기타		166 (1.4)
파악안됨		21 (0.2)
계		11,715 (100.0)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 보육학, 17, 381-404.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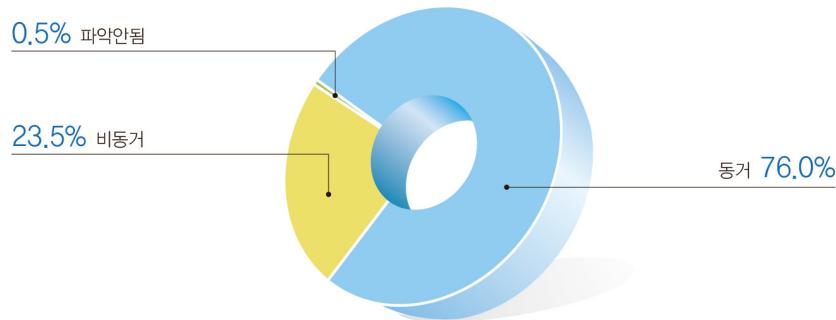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표 4-9〉와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8,901건(76.0%)이었으며, 동거하지 않거나 않는 경우는 2,754건(23.5%),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60건(0.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대행위자 중 79.8%가 부모라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8〉 참조).

아동이 학대행위자와 함께 동거할 경우, 아동이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고 학대를 발견해내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피해가 축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의 활용 및 가정 내 위기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단위 : 건, %)

동거	비동거	파악안됨	계
8,901(76.0)	2,754(23.5)	60(0.5)	11,715(10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표 4-10〉과 같이 살펴본 결과, 무직인 학대행위자가 3,530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단순노무직이 1,783건(15.2%)이었다. 위와 같은 직업유형의 경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의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25.9%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한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비율)
관리직	339 (2.9)
전문직	1,348 (11.5)
기술공 및 준전문직	942 (8.0)
사무직	411 (3.5)
서비스 및 판매직	1,773 (15.1)
농 · 어 · 축산업	239 (2.0)
기능직	175 (1.5)
기계장치조작원	279 (2.4)
단순노무직	1,783 (15.2)
군인	67 (0.6)
무직	3,530 (30.1)
파악안됨	829 (7.1)
계	11,7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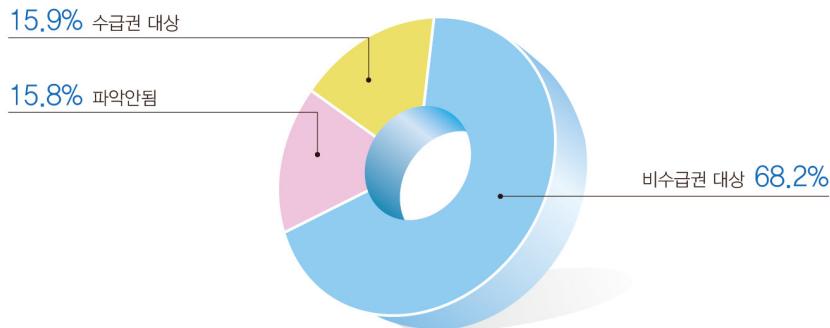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4-11〉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가 비수급권 대상인 경우가 전체의 68.2%로 7,99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수급권 대상은 15.9%로 1,866건에 해당하였다.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856건(15.8%)으로 조사되었다. 학대행위자의 경제적인 상황은 학대 발생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가정 등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1,866 (15.9)
비수급권 대상	7,993 (68.2)
파악안됨	1,856 (15.8)
계	11,715 (100.0)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은 〈표 4-12〉와 같이 신체·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중독 및 질환문제 등 총 20개 유형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11,171건(33.7%)이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하는 학대행위자는 6,296건(19.0%)이었다. 또한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가지는 경우는 3,607건(10.9%)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범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대행위자가 성격 및 기질 문제를 가지는 경우는 2,261건(6.8%),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2,247건(6.8%)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이 학대행위자의 성격 및 기질, 알콜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특성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특성의 파악과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치료 및 상담 등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개인과 사회적 환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235 (0.7)
정신적 장애	194 (0.6)
장애의심	341 (1.0)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1,171 (33.7)
중독문제	2,247 (6.8)
질환문제	513 (1.5)
성격 및 기질문제	2,261 (6.8)
위생문제	475 (1.4)
나태 및 무기력	430 (1.3)
난독해, 난작문	35 (0.1)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296 (19.0)
어릴 적 학대경험	542 (1.6)
폭력성	1,791 (5.4)
전과력	199 (0.6)
성문제	378 (1.1)
원치 않는 아동	217 (0.7)
부부 및 가족 갈등	3,607 (10.9)
종교문제	89 (0.3)
특성없음	1,735 (5.2)
파악안됨	417 (1.3)
계	33,173 (100.0)

※ 중복포함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4-13〉과 같이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3%인 총 9,64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9,381건(80.1%)으로 10명 중 8명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각각 432건(3.7%), 258건 (2.2%), 207건(1.8%)으로 나타나, 전체 사례 중 7.7%에 해당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약 2.0%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331건(2.8%), 기타복지시설 31건 (0.3%)로 전체 사례 중 3.1%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기관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학대 징후를 발견, 대처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자격 취득 과정 시 또는 교원연수과정, 보수교육 과정 시 실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9,381 (80.1)
	학대행위자 가정 내	260 (2.2)
소 계		9,641 (82.3)
복지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213 (1.8)
	친척집	78 (0.7)
	이웃집	19 (0.2)
	어린이집	432 (3.7)
	유치원	207 (1.8)
	학교	258 (2.2)
	학원	68 (0.6)
	병원	49 (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331 (2.8)
	기타복지시설	31 (0.3)
소 계		362 (3.1)
기타	숙박업소	61 (0.5)
	종교시설	24 (0.2)
	기타	286 (2.4)
	파악안됨	17 (0.1)
계		11,715 (100.0)

2)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2,845건(2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인 경우가 1,546건(13.2%),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1,361건(11.6%)이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49.1%로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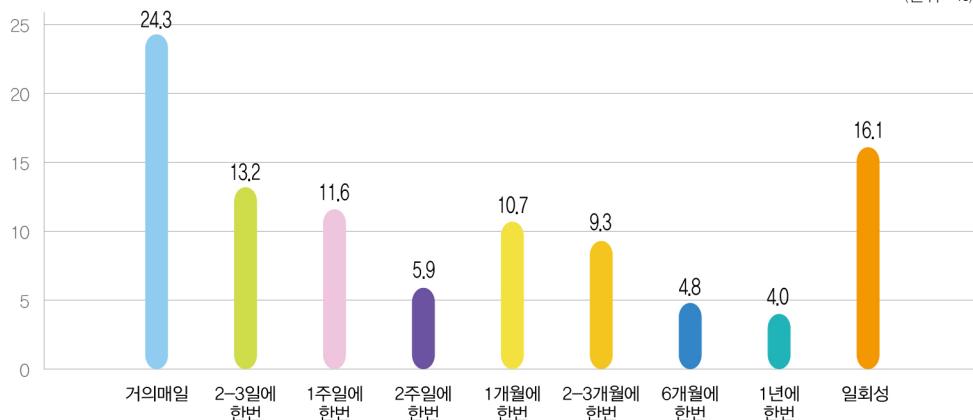
아동학대가 장기화될 경우 일회성의 학대보다 아동의 생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이 아동은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후대에 전승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아동의 학대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례개입종결 이후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2,845 (24.3)
2~3일에 한 번	1,546 (13.2)
일주일에 한 번	1,361 (11.6)
2주일에 한 번	692 (5.9)
1개월에 한 번	1,255 (10.7)
2~3개월에 한 번	1,095 (9.3)
6개월에 한 번	566 (4.8)
1년에 한 번	469 (4.0)
일회성	1,886 (16.1)
계	11,715 (100.0)

(단위 : %)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 강은영·김희균 (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아동학대사례 유형

본 절에서는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사정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판단할 시 4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경우와 미분류한 경우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집계하였다.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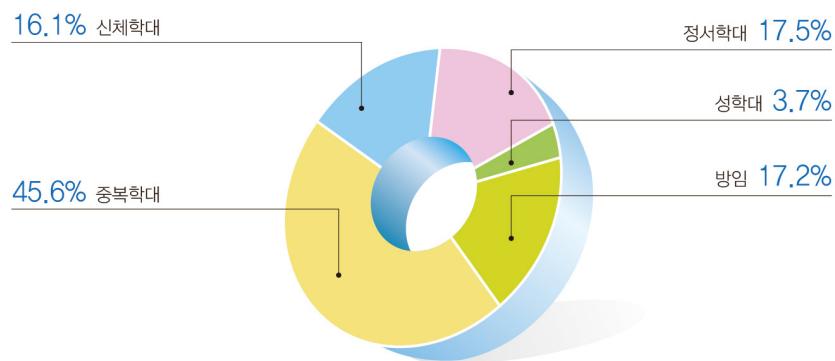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표 4-15>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5,347건(4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2,046건(17.5%), 방임 2,010건(17.2%), 신체학대 1,884건(16.1%), 성학대 428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한 가지 학대 유형보다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4,009건(3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학대·방임이 495건(4.2%),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475건(4.1%)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모든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17건(0.1%)이었다. 중복학대의 경우 더 심각한 학대 후유증 및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884 (16.1)
정서학대	2,046 (17.5)
성학대	428 (3.7)
방임	2,010 (17.2)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4,009 (34.2)
신체학대·성학대	20 (0.2)
신체학대·방임	167 (1.4)
정서학대·성학대	65 (0.6)
정서학대·방임	495 (4.2)
성학대·방임	8 (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88 (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75 (4.1)
신체학대·성학대·방임	1 (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2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7 (0.1)
소 계	5,347 (45.6)
계	11,715 (100.0)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인 11,715건을 초과한 17,662건이다.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 정서학대가 전체의 40.7%에 해당하는 7,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가 6,661건(37.7%), 방임이 3,175건(18.0%)이었다. 또한 성학대는 629건(3.6%)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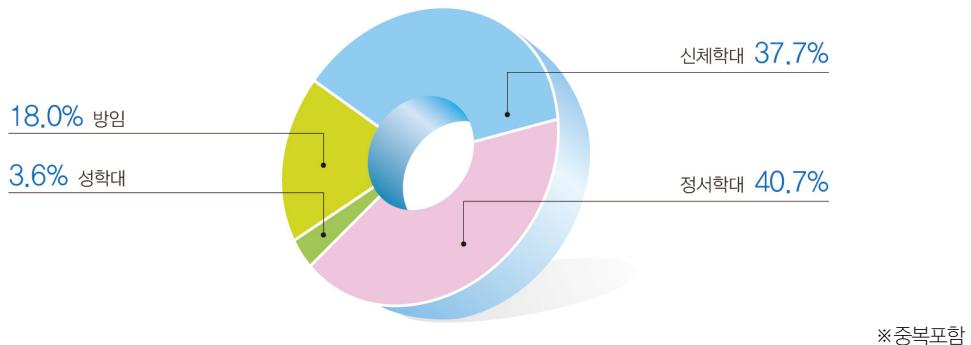
〈표 4-15〉를 토대로 살펴볼 때,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였을 때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1%, 17.5%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6,661 (37.7)
정서학대	7,197 (40.7)
성학대	629 (3.6)
방임	3,175 (18.0)
계	17,662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표 4-17〉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 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약 4.2%포인트 높았으며, 방임사례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약 3%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정서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 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여아가 90.5%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남아의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3,468 (52.1)	3,487 (48.5)	60 (9.5)	1,636 (51.5)	8,651 (49.0)
여	3,193 (47.9)	3,710 (51.5)	569 (90.5)	1,539 (48.5)	9,011 (51.0)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단위 : %)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중복포함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을 〈표 4-1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과 다소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학령기인 만 13~15세, 만 10~12세와 만 7~9세 구간에 피해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만 16~17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피해아동의 발견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사례의 경우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세 미만의 아동과 같은 경우는 총 415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 사례가 226건으로 약 54.5%로 과반수이상에 해당이 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흔은 없으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 건강검진·타 진료기록·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영유아 또는 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상시적 양육환경 점검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 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확인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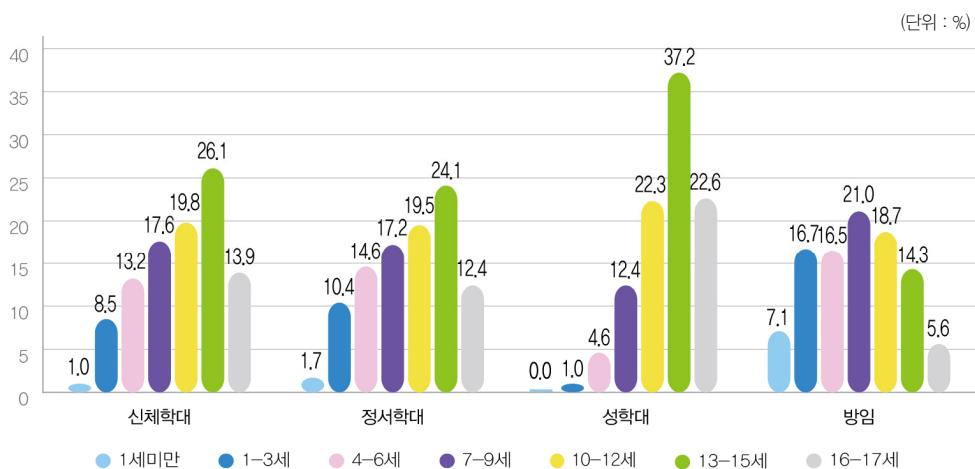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영아방임에 관한 연구.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68 (1.0)	121 (1.7)	0 (0.0)	226 (7.1)	415 (2.3)
1~3세	564 (8.5)	750 (10.4)	6 (1.0)	530 (16.7)	1,850 (10.5)
4~6세	877 (13.2)	1,054 (14.6)	29 (4.6)	524 (16.5)	2,484 (14.1)
7~9세	1,171 (17.6)	1,241 (17.2)	78 (12.4)	668 (21.0)	3,158 (17.9)
10~12세	1,319 (19.8)	1,401 (19.5)	140 (22.3)	594 (18.7)	3,454 (19.6)
13~15세	1,738 (26.1)	1,737 (24.1)	234 (37.2)	455 (14.3)	4,164 (23.6)
16~17세	924 (13.9)	893 (12.4)	142 (22.6)	178 (5.6)	2,137 (12.1)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특성을 〈표 4-19〉와 같이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의 경우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약물·흡연·음주, 기출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특성없음, 발달·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임의 경우 불안, 주의산만 등과 같은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적응·행동 특성, 발달·신체건강 특성, 특성없음,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피해아동 특성을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학대에서 장애 특성이 5.3%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학대의 위험요인 중 하나가 아동의 장애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와도 같은 결과이다*. 또한 정서·정신건강 특성의 경우 정서 학대에서 33.6%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불안이 9.5%로 가장 높았다.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 Findings of a 17 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11), 1065-1078.

이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발생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아동의 인지적 손상, 학업성취,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응·행동 특성의 경우 신체학대와 성학대에서 각각 41.0%, 41.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체학대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6.5%)과 거짓말(5.1%)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성학대에서는 약물·흡연·음주(6.0%)와 성문제(6.0%)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발달·신체건강 특성의 경우 방임에서 23.2%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특히 위생이 10.6%로 가장 높았다.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건, %)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장애	신체적 장애	79 (0.5)	79 (0.5)	8 (0.6)	47 (0.7)	213 (0.6)	
	정신적 장애	207 (1.4)	177 (1.2)	28 (2.1)	115 (1.7)	527 (1.4)	
	장애 의심	155 (1.1)	183 (1.2)	33 (2.5)	152 (2.3)	523 (1.4)	
	소 계	441 (3.0)	439 (2.9)	69 (5.3)	314 (4.7)	1,263 (3.4)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707 (4.8)	685 (4.6)	35 (2.7)	321 (4.9)	1,748 (4.7)	
	과잉행동	362 (2.5)	320 (2.1)	29 (2.2)	118 (1.8)	829 (2.2)	
	인터넷(게임) 중독	212 (1.4)	199 (1.3)	5 (0.4)	76 (1.1)	492 (1.3)	
	불안	1,141 (7.8)	1,411 (9.5)	126 (9.6)	358 (5.4)	3,036 (8.1)	
	애착문제	409 (2.8)	485 (3.3)	26 (2.0)	181 (2.7)	1,101 (2.9)	
	무력감	297 (2.0)	349 (2.3)	28 (2.1)	153 (2.3)	827 (2.2)	
	우울	458 (3.1)	543 (3.6)	53 (4.1)	168 (2.5)	1,222 (3.3)	
	낮은 자아존중감	400 (2.7)	460 (3.1)	40 (3.1)	154 (2.3)	1,054 (2.8)	
	성격 및 기질문제	459 (3.1)	424 (2.8)	26 (2.0)	126 (1.9)	1,035 (2.8)	
	탐식 및 결식	130 (0.9)	137 (0.9)	9 (0.7)	182 (2.8)	458 (1.2)	
적응·행동	소 계	4,575 (31.2)	5,013 (33.6)	377 (28.8)	1,837 (27.8)	11,802 (31.5)	
	반항·충동·공격성	952 (6.5)	901 (6.0)	38 (2.9)	202 (3.1)	2,093 (5.6)	
	거짓말	745 (5.1)	597 (4.0)	46 (3.5)	142 (2.1)	1,530 (4.1)	
	도벽	488 (3.3)	375 (2.5)	24 (1.8)	108 (1.6)	995 (2.7)	
	기출	555 (3.8)	496 (3.3)	60 (4.6)	119 (1.8)	1,230 (3.3)	
	약물·흡연·음주	650 (4.4)	531 (3.6)	79 (6.0)	107 (1.6)	1,367 (3.6)	
	성문제	103 (0.7)	104 (0.7)	78 (6.0)	50 (0.8)	335 (0.9)	
	학교 부적응	515 (3.5)	487 (3.3)	54 (4.1)	183 (2.8)	1,239 (3.3)	
	잦은 결석·무단결과	374 (2.6)	351 (2.4)	34 (2.6)	196 (3.0)	955 (2.5)	
	낮은 귀가	459 (3.1)	371 (2.5)	29 (2.2)	91 (1.4)	950 (2.5)	
	학습문제	368 (2.5)	374 (2.5)	32 (2.4)	251 (3.8)	1,025 (2.7)	
	폭력행동	285 (1.9)	265 (1.8)	11 (0.8)	75 (1.1)	636 (1.7)	
	비행집단활동	165 (1.1)	130 (0.9)	10 (0.8)	20 (0.3)	325 (0.9)	
	불건전한 또래관계	227 (1.5)	191 (1.3)	26 (2.0)	36 (0.5)	480 (1.3)	
	대인관계기피	123 (0.8)	138 (0.9)	18 (1.4)	100 (1.5)	379 (1.0)	
발달·신체건강	소 계	6,009 (41.0)	5,311 (35.6)	539 (41.2)	1,680 (25.4)	13,539 (36.1)	
	신체발달지연	117 (0.8)	136 (0.9)	8 (0.6)	144 (2.2)	405 (1.1)	
	언어문제	327 (2.2)	407 (2.7)	20 (1.5)	305 (4.6)	1,059 (2.8)	
	영양결핍	35 (0.2)	45 (0.3)	1 (0.1)	116 (1.8)	197 (0.5)	
	대소변문제	96 (0.7)	97 (0.7)	4 (0.3)	105 (1.6)	302 (0.8)	
	위생문제	226 (1.5)	287 (1.9)	17 (1.3)	703 (10.6)	1,233 (3.3)	
	틱(음성·신체·뜻밖)	61 (0.4)	58 (0.4)	0 (0.0)	22 (0.3)	141 (0.4)	
	잦은 병치료·하약	80 (0.5)	99 (0.7)	10 (0.8)	51 (0.8)	240 (0.6)	
	주요병력	179 (1.2)	166 (1.1)	16 (1.2)	89 (1.3)	450 (1.2)	
	소 계	1,121 (7.6)	1,295 (8.7)	76 (5.8)	1,535 (23.2)	4,027 (10.7)	
특성없음		2,118 (14.4)	2,439 (16.4)	215 (16.4)	1,096 (16.6)	5,868 (15.7)	
기타		396 (2.7)	406 (2.7)	31 (2.4)	155 (2.3)	988 (2.6)	
계		14,660 (100.0)	14,903 (100.0)	1,307 (100.0)	6,617 (100.0)	37,487 (100.0)	

※증복포함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김수정·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1-28.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4-20〉과 같이 분석한 결과,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는 80%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친인척 및 대리양육자, 타인에 의한 학대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방임 사례의 경우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87.6%로 압도적인 수치이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40.1%이며, 타인(24.3%), 대리양육자(18.4%), 친인척(9.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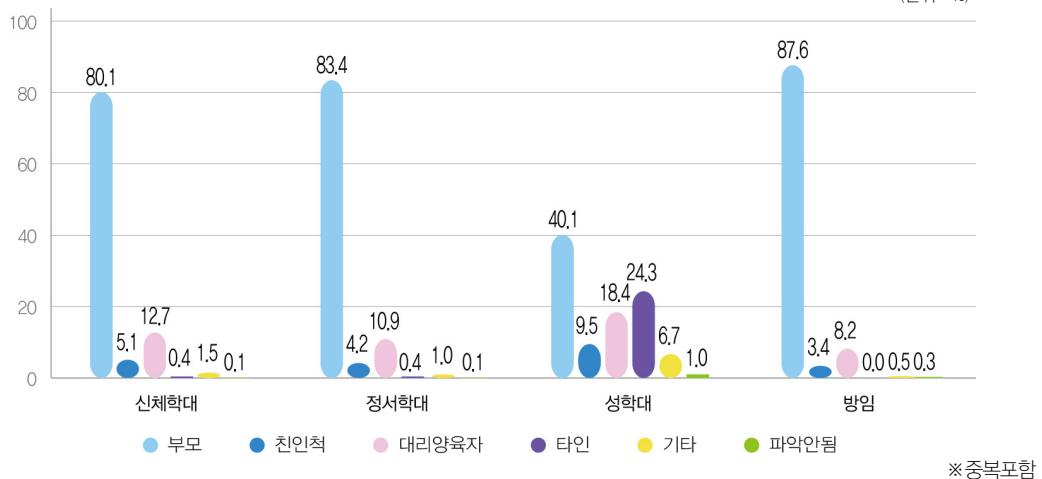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 모	5,338 (80.1)	5,999 (83.4)	252 (40.1)	2,780 (87.6)	14,369 (81.4)
친인척	339 (5.1)	304 (4.2)	60 (9.5)	109 (3.4)	812 (4.6)
대리양육자	848 (12.7)	782 (10.9)	116 (18.4)	261 (8.2)	2,007 (11.4)
타 인	28 (0.4)	32 (0.4)	153 (24.3)	0 (0.0)	213 (1.2)
기타	102 (1.5)	74 (1.0)	42 (6.7)	17 (0.5)	235 (1.3)
파악안됨	6 (0.1)	6 (0.1)	6 (1.0)	8 (0.3)	26 (0.1)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4-21>과 같이 분석하였다.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성학대에서는 성문제가 21.8%로 다른 특성들에 비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신체적 장애	128 (0.7)	145 (0.6)	12 (1.0)	83 (0.8)	368 (0.7)
	정신적 장애	75 (0.4)	79 (0.4)	8 (0.7)	113 (1.1)	275 (0.5)
	장애의심	119 (0.6)	176 (0.8)	5 (0.4)	210 (2.1)	510 (1.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6,873 (36.5)	7,331 (32.5)	254 (21.4)	3,388 (33.6)	17,846 (33.9)
	중독문제	1,276 (6.8)	1,864 (8.3)	85 (7.2)	539 (5.3)	3,764 (7.1)
	질환문제	282 (1.5)	332 (1.5)	9 (0.8)	180 (1.8)	803 (1.5)
	성격 및 기질문제	1,455 (7.7)	1,729 (7.7)	73 (6.2)	472 (4.7)	3,729 (7.1)
	위생문제	105 (0.6)	152 (0.7)	3 (0.3)	422 (4.2)	682 (1.3)
	나태 및 무기력	158 (0.8)	213 (0.9)	5 (0.4)	291 (2.9)	667 (1.3)
	난독해, 난작문	13 (0.1)	22 (0.1)	1 (0.1)	17 (0.2)	53 (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3,455 (18.3)	4,155 (18.4)	96 (8.1)	2,299 (22.8)	10,005 (19.0)
	어릴 적 학대경험	348 (1.8)	413 (1.8)	7 (0.6)	111 (1.1)	879 (1.7)
	폭력성	1,011 (5.4)	1,588 (7.0)	64 (5.4)	323 (3.2)	2,986 (5.7)
	전과력	108 (0.6)	142 (0.6)	17 (1.4)	54 (0.5)	321 (0.6)
	성문제	96 (0.5)	128 (0.6)	258 (21.8)	70 (0.7)	552 (1.0)
	원치 않는 아동	118 (0.6)	126 (0.6)	8 (0.7)	84 (0.8)	336 (0.6)
	부부 및 가족 갈등	1,957 (10.4)	2,864 (12.7)	74 (6.2)	900 (8.9)	5,795 (11.0)
	종교문제	52 (0.3)	70 (0.3)	1 (0.1)	30 (0.3)	153 (0.3)
	특성없음	1,017 (5.4)	852 (3.8)	104 (8.8)	404 (4.0)	2,377 (4.5)
	파악안됨	199 (1.1)	183 (0.8)	102 (8.6)	86 (0.9)	570 (1.1)
	계	18,845 (100.0)	22,564 (100.0)	1,186 (100.0)	10,076 (100.0)	52,671 (100.0)

※중복포함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사례를 판단하며,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15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 및 최종조치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조치결과,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73.3%인 8,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원가정보호 조치는 학대재발위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시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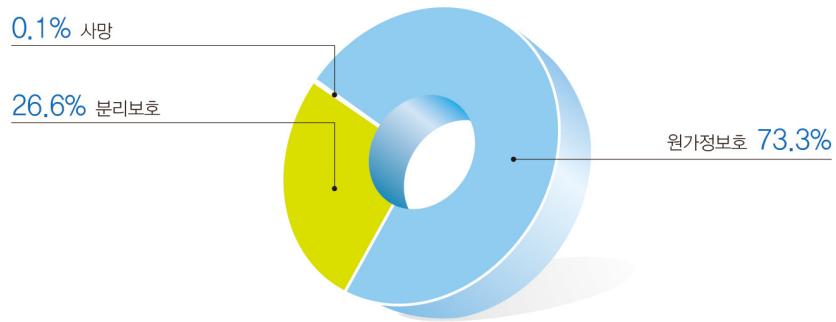
다음으로 분리보호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위험이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피해아동이 분리보호된 경우는 전체의 26.6%인 3,110건이며, 이 중 일시보호 1,790건 (15.3%), 친족(친인척)보호 807건(6.9%), 장기보호 234건(2.0%), 연고자에 의한 보호 161건 (1.4%), 병원입원 107건(0.9%), 가정위탁 1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 분리보호된 아동 중에는 친족(친인척)에 의해 보호된 경우가 6.9%이고,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리 양육체계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가급적 1:1 또는 소규모 양육이 가능하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도 개별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정위탁부모의 양성 및 관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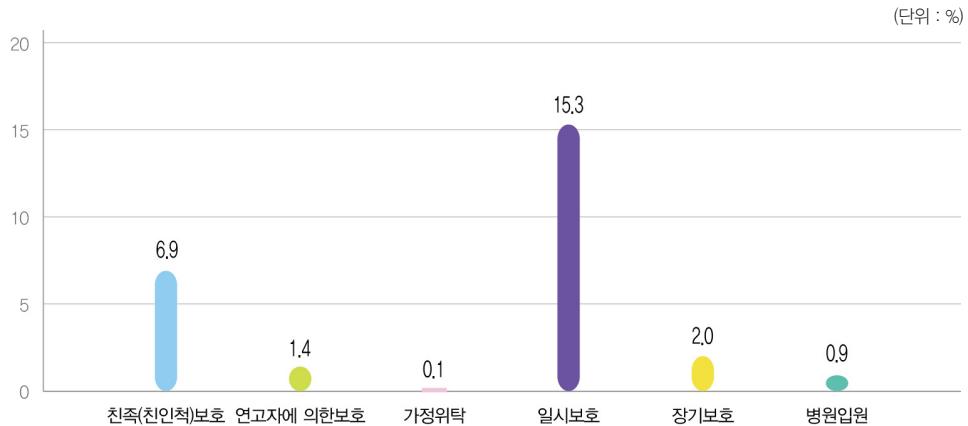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친족(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8,588 (73.3)	807 (6.9)	161 (1.4)	11 (0.1)	1,790 (15.3)	234 (2.0)	107 (0.9)	3,110 (26.6)	17 (0.1)	11,715 (100.0)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분리보호인 3,110건의 사례 중 초기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1,035건으로 전체 분리보호 사례수에 약 33.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분리보호된 아동 10명 중 3명은 원가정에 복귀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학대유발요인 및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조건부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와 비기해보호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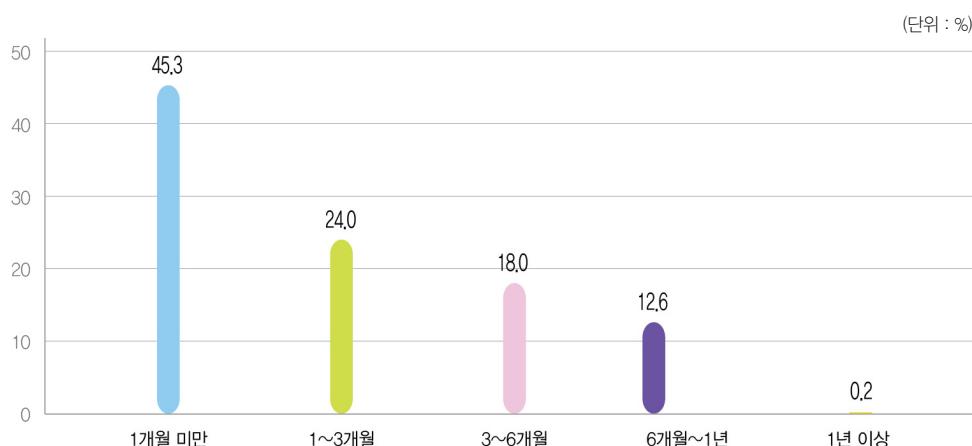
초기 분리보호 전체건수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건수	초기 분리보호가 지속된 건수
3,110	1,035	2,075

2015년 아동학대 사례 중 초기에 분리보호된 3,110건 가운데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된 1,035건을 바탕으로 복귀시기를 〈표 4-24〉와 같이 살펴보면, 1개월 이내에 가정복귀한 사례가 469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1개월~3개월 사이는 248건(24.0%), 3개월~6개월 사이는 186건(18.0%), 6개월~1년 사이가 130건(12.6%)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2건(0.2%)으로 나타났다.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단위 : 건, %)

복귀시기	건수(비율)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 미만	469 (45.3)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3개월	248 (24.0)
초기 분리보호 후 3개월~6개월	186 (18.0)
초기 분리보호 후 6개월~1년	130 (12.6)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상	2 (0.2)
계	1,035 (100.0)



〈그림 4-19〉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다음으로 〈표 4-25〉는 각 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에 대비하여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8.7%, 인천광역시가 35.4%, 대구광역시 3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19.7%였고, 다음은 충청북도가 21.1%를 기록하였다.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아동 발견율이 2.78%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북도의 초기 분리보호율은 25.0%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은 수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0.84%로 매우 낮은 수치인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초기 분리보호율에 있어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접수되는 사례의 특성 및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해 초기 분리보호율은 달라질 수 있다.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단위 : %, %)

지 역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서울특별시	0.78	27.2
부산광역시	1.02	25.5
대구광역시	0.81	30.8
인천광역시	0.98	35.4
광주광역시	0.84	38.7
대전광역시	1.13	28.5
울산광역시	1.54	19.7
경 기 도	1.25	25.1
강 원 도	2.18	27.2
충청북도	2.32	21.1
충청남도	1.49	29.4
전라북도	2.78	25.0
전라남도	2.50	27.6
경상북도	1.89	24.5
경상남도	1.22	27.9
제주특별자치도	2.08	23.2
전국평균	1.55	27.3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서 울	서울특별시	74 (60.2)	49 (39.8)	0 (0.0)	123 (100.0)
	서울특별시동부	155 (79.1)	41 (20.9)	0 (0.0)	196 (100.0)
	서울강서	98 (68.5)	44 (30.8)	1 (0.7)	143 (100.0)
	서울은평	132 (71.7)	52 (28.3)	0 (0.0)	184 (100.0)
	서울영등포	138 (79.8)	35 (20.2)	0 (0.0)	173 (100.0)
	서울성북	145 (76.3)	45 (23.7)	0 (0.0)	190 (100.0)
	서울마포	115 (67.6)	55 (32.4)	0 (0.0)	170 (100.0)
	서울동남권*	—	—	—	—
	소 계	857 (72.7)	321 (27.2)	1 (0.1)	1,179 (100.0)
부 산	부산광역시	115 (68.5)	53 (31.5)	0 (0.0)	168 (100.0)
	부산동부	184 (76.3)	57 (23.7)	0 (0.0)	241 (100.0)
	부산서부	91 (78.4)	24 (20.7)	1 (0.9)	116 (100.0)
	소 계	390 (74.3)	134 (25.5)	1 (0.2)	525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137 (69.2)	61 (30.8)	0 (0.0)	198 (100.0)
	대구광역시남부	103 (69.1)	46 (30.9)	0 (0.0)	149 (100.0)
	소 계	240 (69.2)	107 (30.8)	0 (0.0)	347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161 (67.1)	79 (32.9)	0 (0.0)	240 (100.0)
	인천북부	67 (52.8)	60 (47.2)	0 (0.0)	127 (100.0)
	인천미추홀	4 (100.0)	0 (0.0)	0 (0.0)	4 (100.0)
	인천남부	98 (70.0)	42 (30.0)	0 (0.0)	140 (100.0)
	소 계	330 (64.6)	181 (35.4)	0 (0.0)	511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154 (60.9)	98 (38.7)	1 (0.4)	253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236 (71.5)	94 (28.5)	0 (0.0)	330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271 (79.7)	67 (19.7)	2 (0.6)	340 (100.0)
경 기	경기도	239 (72.0)	93 (28.0)	0 (0.0)	332 (100.0)
	경기북부	215 (76.0)	68 (24.0)	0 (0.0)	283 (100.0)
	경기성남	252 (76.6)	77 (23.4)	0 (0.0)	329 (100.0)
	경기고양	152 (73.4)	55 (26.6)	0 (0.0)	207 (100.0)
	경기부천	193 (73.9)	68 (26.1)	0 (0.0)	261 (100.0)
	경기화성	231 (73.6)	83 (26.4)	0 (0.0)	314 (100.0)
	경기남양주	168 (84.0)	31 (15.5)	1 (0.5)	200 (100.0)
	안산시	380 (73.8)	134 (26.0)	1 (0.2)	515 (100.0)
	경기용인	162 (80.2)	40 (19.8)	0 (0.0)	202 (100.0)
	경기시흥	146 (64.3)	81 (35.7)	0 (0.0)	227 (100.0)
	경기평택	86 (83.5)	17 (16.5)	0 (0.0)	103 (100.0)
	소 계	2,224 (74.8)	747 (25.1)	2 (0.1)	2,973 (100.0)
강 원	강원도	145 (73.6)	52 (26.4)	0 (0.0)	197 (100.0)
	강원동부	145 (74.7)	49 (25.3)	0 (0.0)	194 (100.0)
	원주시	111 (70.3)	47 (29.7)	0 (0.0)	158 (100.0)
	강원남부	1 (33.3)	2 (66.7)	0 (0.0)	3 (100.0)
	소 계	402 (72.8)	150 (27.2)	0 (0.0)	552 (100.0)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충 북	충청북도	299 (77.7)	85 (22.1)	1 (0.3)		385 (100.0)
	충북북부	126 (80.3)	31 (19.7)	0 (0.0)		157 (100.0)
	충북남부	82 (80.4)	20 (19.6)	0 (0.0)		102 (100.0)
	소 계	507 (78.7)	136 (21.1)	1 (0.2)		644 (100.0)
충 남	충청남도	188 (64.4)	103 (35.3)	1 (0.3)		292 (100.0)
	충청남도남부	155 (77.9)	44 (22.1)	0 (0.0)		199 (100.0)
	충청남도서부	90 (72.6)	34 (27.4)	0 (0.0)		124 (100.0)
	소 계	433 (70.4)	181 (29.4)	1 (0.2)		615 (100.0)
전 북	전라북도	234 (71.8)	91 (27.9)	1 (0.3)		326 (100.0)
	전라북도서부	276 (72.1)	107 (27.9)	0 (0.0)		383 (100.0)
	전라북도동부	156 (86.7)	24 (13.3)	0 (0.0)		180 (100.0)
	소 계	666 (74.9)	222 (25.0)	1 (0.1)		889 (100.0)
전 남	전라남도	140 (72.2)	54 (27.8)	0 (0.0)		194 (100.0)
	전남서부권	183 (70.4)	77 (29.6)	0 (0.0)		260 (100.0)
	전남중부권	223 (73.6)	78 (25.7)	2 (0.7)		303 (100.0)
	소 계	546 (72.1)	209 (27.6)	2 (0.3)		757 (100.0)
경 북	경북남부	61 (64.9)	33 (35.1)	0 (0.0)		94 (100.0)
	경북북부	171 (73.4)	61 (26.2)	1 (0.4)		233 (100.0)
	경북동부	276 (77.7)	79 (22.3)	0 (0.0)		355 (100.0)
	경북서부	100 (79.4)	25 (19.8)	1 (0.8)		126 (100.0)
	소 계	608 (75.2)	198 (24.5)	2 (0.2)		808 (100.0)
경 남	경상남도	343 (73.6)	121 (26.0)	2 (0.4)		466 (100.0)
	경남서부	136 (73.1)	50 (26.9)	0 (0.0)		186 (100.0)
	김해시	54 (60.0)	36 (40.0)	0 (0.0)		90 (100.0)
	소 계	533 (71.8)	207 (27.9)	2 (0.3)		742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42 (77.2)	42 (22.8)	0 (0.0)		184 (100.0)
	서귀포시	49 (74.2)	16 (24.2)	1 (1.5)		66 (100.0)
	소 계	191 (76.4)	58 (23.2)	1 (0.4)		250 (100.0)
계		8,588 (73.3)	3,110 (26.6)	17 (0.1)		11,715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표 4-27〉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초기조치는 원가정보호로 각각 72.3%, 72.5%, 68.7%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성학대 사례의 경우 59.1%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되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최종목표인 가족 보존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아동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보호되는 원가정보호조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 학대유발 요인이 감소되거나 재학대 발생 위험성이 낮은 경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협력,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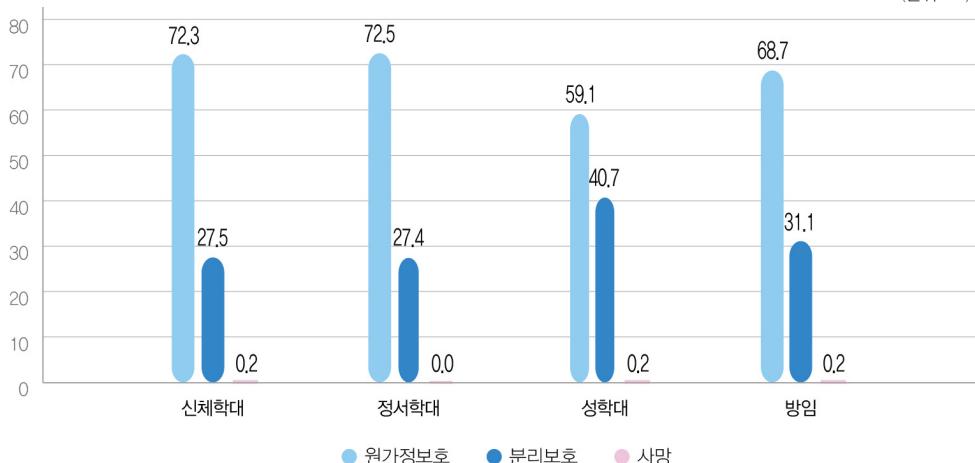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학대유형 초기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4,817 (72.3)	5,221 (72.5)	372 (59.1)	2,182 (68.7)	12,592 (71.3)
분리 보호	친족(친인척)보호	513 (7.7)	565 (7.9)	35 (5.6)	183 (5.8)	1,296 (7.3)
	연고자에 의한 보호	84 (1.3)	92 (1.3)	16 (2.5)	44 (1.4)	236 (1.3)
	가정위탁	2 (0.0)	3 (0.0)	7 (1.1)	4 (0.1)	16 (0.1)
	일시보호	1,068 (16.0)	1,142 (15.9)	170 (27.0)	592 (18.6)	2,972 (16.8)
	장기보호	110 (1.7)	137 (1.9)	25 (4.0)	98 (3.1)	370 (2.1)
	병원입원	53 (0.8)	34 (0.5)	3 (0.5)	67 (2.1)	157 (0.9)
소 계		1,830 (27.5)	1,973 (27.4)	256 (40.7)	988 (31.1)	5,047 (28.6)
사망		14 (0.2)	3 (0.0)	1 (0.2)	5 (0.2)	23 (0.1)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본 절에서는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자 하는데,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란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5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한다.

〈표 4-28〉을 통해 2015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사례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례 종결 비중은 0%~62.1%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37.9%~100.0%의 범위를 보였다.

2015년 아동학대사례 11,71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48건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9,367건(80.0%)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8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서 울	서울특별시		11 (8.9)	112 (91.1)	123 (100.0)
	서울특별시동부		34 (17.3)	162 (82.7)	196 (100.0)
	서울강서		9 (6.3)	134 (93.7)	143 (100.0)
	서울은평		7 (3.8)	177 (96.2)	184 (100.0)
	서울영등포		6 (3.5)	167 (96.5)	173 (100.0)
	서울성북		18 (9.5)	172 (90.5)	190 (100.0)
	서울마포		57 (33.5)	113 (66.5)	170 (100.0)
	서울동남권*		—	—	—
	소 계		142 (12.0)	1,037 (88.0)	1,179 (100.0)
부 산	부산광역시		6 (3.6)	162 (96.4)	168 (100.0)
	부산동부		4 (1.7)	237 (98.3)	241 (100.0)
	부산서부**		9 (7.8)	107 (92.2)	116 (100.0)
	소 계		19 (3.6)	506 (96.4)	525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40 (20.2)	158 (79.8)	198 (100.0)
	대구광역시남부		31 (20.8)	118 (79.2)	149 (100.0)
	소 계		71 (20.5)	276 (79.5)	347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102 (42.5)	138 (57.5)	240 (100.0)
	인천북부		30 (23.6)	97 (76.4)	127 (100.0)
	인천미추홀***		1 (25.0)	3 (75.0)	4 (100.0)
	인천남부**		7 (5.0)	133 (95.0)	140 (100.0)
	소 계		140 (27.4)	371 (72.6)	511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53 (20.9)	200 (79.1)	253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11 (3.3)	319 (96.7)	330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211 (62.1)	129 (37.9)	340 (100.0)

(계속)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경 기		경기도	91 (27.4)	241 (72.6)	332 (100.0)
		경기북부	39 (13.8)	244 (86.2)	283 (100.0)
		경기성남	21 (6.4)	308 (93.6)	329 (100.0)
		경기고양	79 (38.2)	128 (61.8)	207 (100.0)
		경기부천	87 (33.3)	174 (66.7)	261 (100.0)
		경기화성	72 (22.9)	242 (77.1)	314 (100.0)
		경기남양주	70 (35.0)	130 (65.0)	200 (100.0)
		안산시	118 (22.9)	397 (77.1)	515 (100.0)
		경기용인	25 (12.4)	177 (87.6)	202 (100.0)
		경기시흥	72 (31.7)	155 (68.3)	227 (100.0)
		경기평택**	2 (1.9)	101 (98.1)	103 (100.0)
		소 계	676 (22.7)	2,297 (77.3)	2,973 (100.0)
강 원		강원도	80 (40.6)	117 (59.4)	197 (100.0)
		강원동부	17 (8.8)	177 (91.2)	194 (100.0)
		원주시	33 (20.9)	125 (79.1)	158 (100.0)
		강원남부**	0 (0.0)	3 (100.0)	3 (100.0)
		소 계	130 (23.6)	422 (76.4)	552 (100.0)
충 북		충청북도	14 (3.6)	371 (96.4)	385 (100.0)
		충북북부	23 (14.6)	134 (85.4)	157 (100.0)
		충북남부	5 (4.9)	97 (95.1)	102 (100.0)
		소 계	42 (6.5)	602 (93.5)	644 (100.0)
충 남		충청남도	59 (20.2)	233 (79.8)	292 (100.0)
		충청남도남부	57 (28.6)	142 (71.4)	199 (100.0)
		충청남도서부	18 (14.5)	106 (85.5)	124 (100.0)
		소 계	134 (21.8)	481 (78.2)	615 (100.0)
전 북		전라북도	26 (8.0)	300 (92.0)	326 (100.0)
		전라북도서부	77 (20.1)	306 (79.9)	383 (100.0)
		전라북도동부	6 (3.3)	174 (96.7)	180 (100.0)
		소 계	109 (12.3)	780 (87.7)	889 (100.0)
전 남		전라남도	72 (37.1)	122 (62.9)	194 (100.0)
		전남서부권	62 (23.8)	198 (76.2)	260 (100.0)
		전남중부권	34 (11.2)	269 (88.8)	303 (100.0)
		소 계	168 (22.2)	589 (77.8)	757 (100.0)
경 북		경북남부	42 (44.7)	52 (55.3)	94 (100.0)
		경북북부	94 (40.3)	139 (59.7)	233 (100.0)
		경북동부	85 (23.9)	270 (76.1)	355 (100.0)
		경북서부	50 (39.7)	76 (60.3)	126 (100.0)
		소 계	271 (33.5)	537 (66.5)	808 (100.0)
경 남		경상남도	83 (17.8)	383 (82.2)	466 (100.0)
		경남서부	9 (4.8)	177 (95.2)	186 (100.0)
		김해시**	5 (5.6)	85 (94.4)	90 (100.0)
		소 계	97 (13.1)	645 (86.9)	742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70 (38.0)	114 (62.0)	184 (100.0)
		서귀포시	4 (6.1)	62 (93.9)	66 (100.0)
		소 계	74 (29.6)	176 (70.4)	250 (100.0)
계		2,348 (20.0)	9,367 (80.0)	11,715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5일 개소,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4월 1일 개소,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7월 1일 개소,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11월 9일 개소,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3월 27일 개소됨.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일자로 폐소됨.

2015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1,715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았다. 원가정에 보호되는 사례는 7,760건(66.2%)을 기록하였는데, 초기조치 시 원가정에 보호된 아동이 73.3%인 것을 감안 할 때 다소 낮아진 수치다. 다음으로는 분리보호된 사례가 2,772건(23.7%)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유형으로 살펴보면 친족(친인척) 보호 1,030건(8.8%), 장기보호 899건(7.7%), 일시보호 636건(5.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4건(1.0%), 병원입원 63건(0.5%), 가정위탁 30건(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 분리보호된 이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이는 1,164건(9.9%)에 해당하며, 사망한 경우는 19건(0.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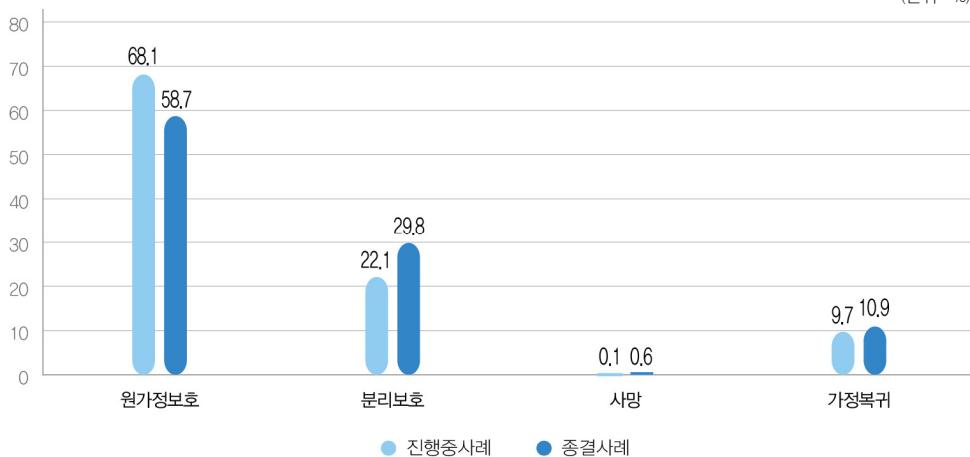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 중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68.1%였고, 종결 사례에서는 다소 감소된 58.7%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례 중 분리보호된 사례는 22.1%에 해당하고, 반면 종결된 사례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는 진행 중인 사례보다 약 7.7%포인트가 상승한 29.8%의 비율을 보였다.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종결여부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가정 복귀	계
		친족(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진행 중 사례	6,381(68.1)	762(8.1)	92(1.0)	21(0.2)	538(5.7)	607(6.5)	52(0.6)	2,072(22.1)	6(0.1)	908(9.7)	9,367(100.0)
종결사례	1,379(58.7)	268(11.4)	22(0.9)	9(0.4)	98(4.2)	292(12.4)	11(0.5)	700(29.8)	13(0.6)	256(10.9)	2,348(100.0)
계	7,760(66.2)	1,030(8.8)	114(1.0)	30(0.3)	636(5.4)	899(7.7)	63(0.5)	2,772(23.7)	19(0.2)	1,164(9.9)	11,715(100.0)

(단위 : %)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표 4-30〉과 같이 모든 사례유형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하는 조치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례유형 특성상 성학대 사례는 분리보호율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장기보호조치가 14.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방임 사례에서는 분리보호 유형 중 다른 유형보다 장기보호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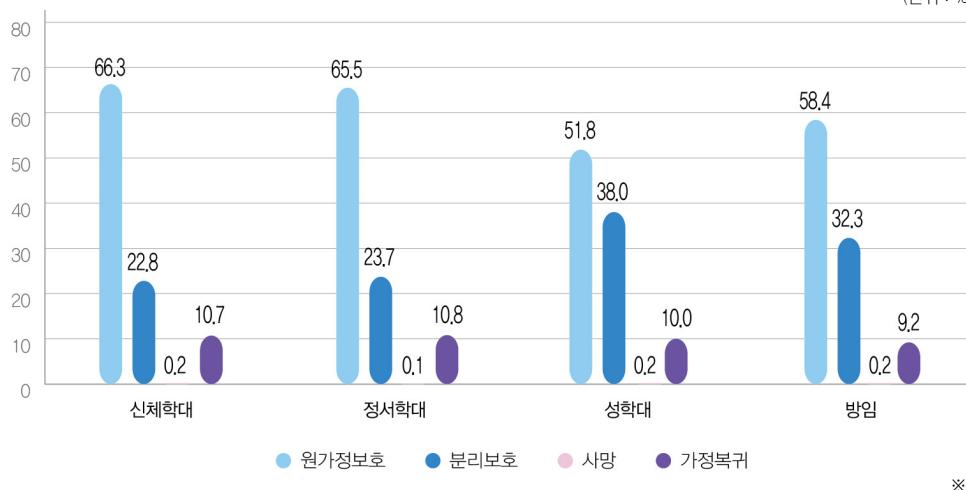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학대유형 최종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4,415 (66.3)	4,711 (65.5)	326 (51.8)	1,853 (58.4)	11,305 (64.0)
분리 보호	친족(친인척)보호	612 (9.2)	715 (9.9)	73 (11.6)	240 (7.6)
	연고자에 의한 보호	64 (1.0)	71 (1.0)	17 (2.7)	33 (1.0)
	가정위탁	7 (0.1)	8 (0.1)	6 (1.0)	18 (0.6)
	일시보호	355 (5.3)	369 (5.1)	46 (7.3)	248 (7.8)
	장기보호	439 (6.6)	503 (7.0)	94 (14.9)	453 (14.3)
	병원입원	39 (0.6)	39 (0.5)	3 (0.5)	33 (1.0)
소 계		1,516 (22.8)	1,705 (23.7)	239 (38.0)	1,025 (32.3)
사망	16 (0.2)	4 (0.1)	1 (0.2)	5 (0.2)	26 (0.1)
가정복귀	714 (10.7)	777 (10.8)	63 (10.0)	292 (9.2)	1,846 (10.5)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증복포함

(단위 : %)



※증복포함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현황은 〈표 4-31〉과 같이 전국 총 40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이며, 상근 보육사는 117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36명,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3명이었다.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지 역	쉼터 수	상근 직원 수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소 계	
서울	0	0	0	0	0
부산	3	8	3	11	6
대구	2	5	1	6	1
인천	0	0	0	0	0
광주	1	3	1	4	0
대전	2	5	2	7	0
울산	1	3	0	3	0
경기	8	22	9	31	2
강원	3	9	3	12	1
충북	5	16	5	21	0
충남	1	2	1	3	0
전북	3	9	3	12	1
전남	5	15	4	19	1
경북	2	6	2	8	0
경남	2	8	0	8	0
제주	2	6	2	8	1
계	40	117	36	153	13

① 2015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표 4-32〉와 같이 2015년에는 전국에 총 40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830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15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5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전체의 20.4%인 169명이었고, 2015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661명(79.6%)이었다.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

	2015년 이전 입소 아동	2015년 입소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169(20.4)	661(79.6)	830(100.0)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을 〈표 4-33〉과 같이 살펴보면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830명 중 퇴소한 아동은 78.1%인 648명이었고, 2015년도에 퇴소하지 않고 2016년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82명(21.9%)이었다.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 : 명, %)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648 (78.1)	182 (21.9)	8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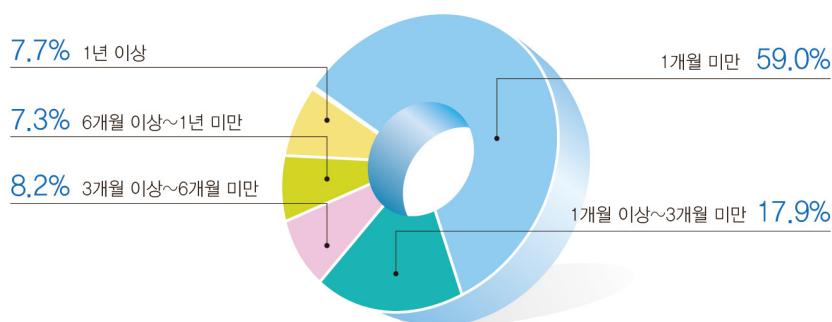
② 2015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총 648명을 대상으로 〈표 4-34〉와 같이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대 피해상황과 특성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개월 미만으로 거주한 아동은 전체의 59.0%에 해당하는 382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16명(17.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3명(8.2%), 1년 이상 50명(7.7%), 6개월 이상~1년 미만 47명(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 : 명, %)

거주 기간	명수(비율)
1개월 미만	382 (59.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16 (17.9)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3 (8.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7 (7.3)
1년 이상	50 (7.7)
계	648 (100.0)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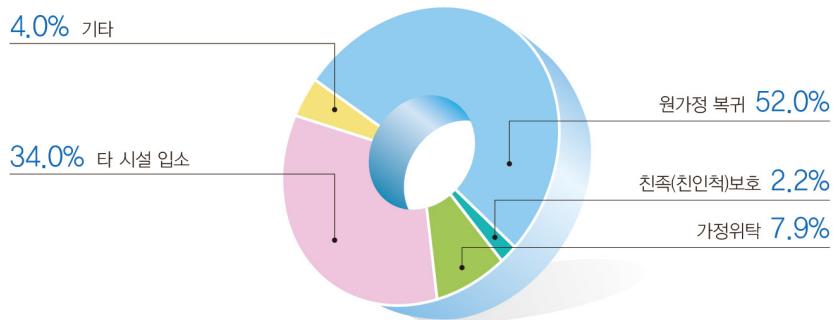
③ 2015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648명을 대상으로 〈표 4-35〉와 같이 살펴본 결과 원가정 복귀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다. 원가정 복귀는 아동의 학대 위험 상황이 종료되거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타 시설 입소는 220명(34.0%)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나 장애, 영유아 등의 특성이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타 시설로 입소가 되고 있다. 가정위탁은 51명(7.9%)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조부모),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이 이루어졌다. 기타로 26명(4.0%)이 병원, 연고자보호, 자립, 가출 등의 사유로 퇴소하였다. 친족(친인척)보호는 14명(2.2%)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표 4-3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비율)
원가정 복귀	337 (52.0)
친족(친인척)보호	14 (2.2)
가정위탁	51 (7.9)
타 시설 입소	220 (34.0)
기타	26 (4.0)
계	648 (100.0)



〈그림 4-2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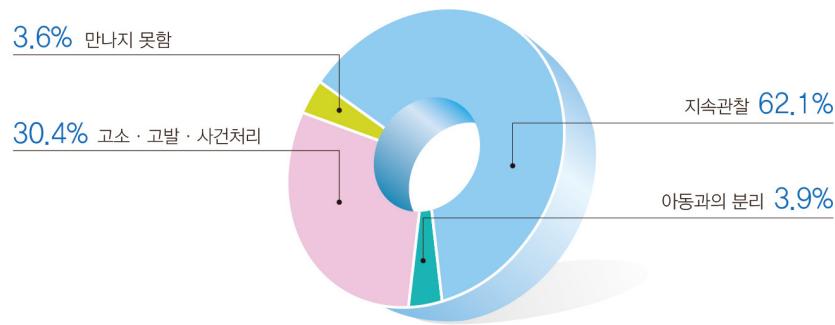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4-36>과 같이 살펴보았다. 최종조치결과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2015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총 7,270건(62.1%)이었다. 지속관찰은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고소 및 고발과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3,564건(30.4%)이었다. 이외에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분리된 사례는 460건(3.9%)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421건(3.6%)으로 행방불명, 수감, 개입거부, 사망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4-3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7,270 (62.1)	460 (3.9)	3,564 (30.4)	421 (3.6)	11,715 (100.0)



<그림 4-2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4-37>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이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이 60% 이상인 반면, 성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77.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신체학대에서 33.4%, 정서학대에서 28.8%, 방임에서 25.2%로 작년에 9~16%에 불과하던 비율이 약 두 배씩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이후 고소·고발·사건처리의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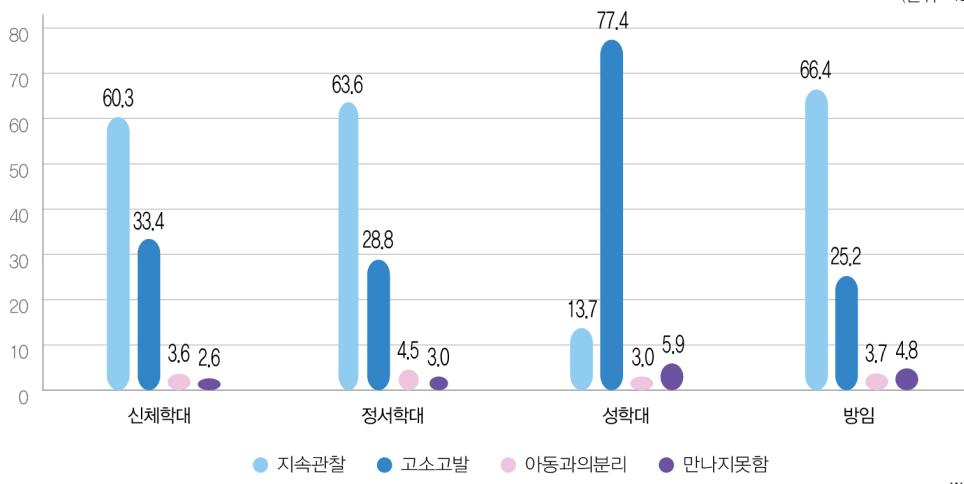
〈표 4-3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지속관찰	4,017 (60.3)	4,580 (63.6)	86 (13.7)	2,108 (66.4)	10,791 (61.1)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2,228 (33.4)	2,072 (28.8)	487 (77.4)	799 (25.2)	5,586 (31.6)
아동과의 분리	241 (3.6)	326 (4.5)	19 (3.0)	116 (3.7)	702 (4.0)
만나지 못함	175 (2.6)	219 (3.0)	37 (5.9)	152 (4.8)	583 (3.3)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2015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11,715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3,564건으로 전체의 30.4%에 해당하였다.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중 고소·고발 조치의 경우는 2,549건이었으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인 1,015건이었다. 해당 분석은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조치에 대한 분석으로 전체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의 3,564건 중 사건처리 조치 1,015건을 제외한 2,549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미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2,549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722건(28.3%)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627건(24.6%), 내사종결된 사례는 95건(3.7%)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1,134건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634건(24.9%), 불기소된 사례는 321건(12.6%), 아동보호송치사건은 145건(5.7%), 형사기소는 22건(0.9%), 가정보호송치사건은 12건(0.5%)으로 집계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234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205건(8.0%),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27건(1.1%),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례는 2건(0.1%)이었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례가 2,090건으로 전체 고소·고발 사례의 8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고, 고소·고발되어 1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판결을 선고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인지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452건으로 전체의 17.7%에 해당한다. 이중 보안처분 사례는 210건(8.2%), 형사처벌 사례가 143건(5.6%),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집행된 사례가 71건(2.8%), 불처분 등의 기타 판결은 28건(1.1%)으로 집계되었다. 보안처분 중에서 상담위탁이 118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 35건(1.4%), 수강명령 21건(0.8%) 순으로 높았다. 형사처벌 중에서는 징역형이 46건(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죄가 40건(1.6%), 벌금형이 35건(1.4%)이었다.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집행된 사례 중에서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함께 집행된 사례가 13건(0.5%)으로 가장 많았다.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

(단위 : 건, %)

구 分		건수	
경찰수사	수사중	627 (24.6)	
	내사종결	95 (3.7)	
	소 계	722 (28.3)	
검찰수사	수사중	634 (24.9)	
	불기소	321 (12.6)	
	아동보호송치사건	145 (5.7)	
	가정보호송치사건	12 (0.5)	
	형사기소	22 (0.9)	
재판진행중	소 계	1,134 (44.5)	
	1심 진행	205 (8.0)	
재판진행중	항소심 진행	27 (1.1)	
	상고심 진행	2 (0.1)	
	소 계	234 (9.2)	
판결	보안처분	접근행위제한	8 (0.3)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6 (0.2)
		사회봉사	4 (0.2)
		수강명령	21 (0.8)
		보호관찰	35 (1.4)
		치료위탁	4 (0.2)
		상담위탁	118 (4.6)
		기타	14 (0.5)
	소 계	210 (8.2)	
형사처벌	형사처벌	무죄	40 (1.6)
		징역	46 (1.8)
		벌금	35 (1.4)
		집행유예	20 (0.8)
		선고유예	2 (0.1)
	소 계	143 (5.6)	
판결	보안처분+형사처벌	징역+사회봉사	3 (0.1)
		징역+수강명령	8 (0.3)
		징역+상담위탁	5 (0.2)
		징역+기타	7 (0.3)
		벌금+수강명령	5 (0.2)
		벌금+상담위탁	4 (0.2)
		벌금+기타	1 (0.0)
		집행유예+사회봉사	9 (0.4)
		집행유예+수강명령	13 (0.5)
		집행유예+보호관찰	12 (0.5)
		집행유예+기타	3 (0.1)
		몰수+기타	1 (0.0)
	소 계	71 (2.8)	
	기타	28 (1.1)	
	소 계	452 (17.7)	
	파악안됨	7 (0.3)	
	계	2,549 (100.0)	

고소·고발된 아동학대사례를 학대 유형별로 〈표 4-39〉와 같이 분석한 결과, 고소·고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로 총 1,129건(44.3%)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체학대 520건(20.4%), 정서학대 319건(12.5%), 방임 292건(11.5%), 성학대 289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857건(3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81건(3.2%)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보안처분이 각각 8.8%, 8.5%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학대의 경우는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8.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방임의 경우 형사처벌이 4.8%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복학대의 경우는 보안처분이 11.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학대유형	고소·고발 결과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 진행중	판결						파악 안됨	계	
					보안처분	형사처벌	보안처분+ 형사처벌	무죄	기타	소계			
신체학대	160 (30.8)	216 (41.5)	53 (10.2)	46 (8.8)	22 (4.2)	4 (0.8)	14 (2.7)	5 (1.0)	91 (17.5)	0 (0.0)	520 (100.0)		
정서학대	104 (32.6)	139 (43.6)	22 (6.9)	27 (8.5)	5 (1.6)	9 (2.8)	10 (3.1)	3 (0.9)	54 (16.9)	0 (0.0)	319 (100.0)		
성학대	88 (30.4)	103 (35.6)	53 (18.3)	1 (0.3)	18 (6.2)	23 (8.0)	2 (0.7)	0 (0.0)	44 (15.2)	1 (0.3)	289 (100.0)		
방임	65 (22.3)	193 (66.1)	6 (2.1)	8 (2.7)	14 (4.8)	1 (0.3)	2 (0.7)	2 (0.7)	27 (9.2)	1 (0.3)	292 (100.0)		
중복학대	신체·정서	237 (27.7)	362 (42.2)	83 (9.7)	100 (11.7)	30 (3.5)	18 (2.1)	10 (1.2)	12 (1.4)	170 (19.8)	5 (0.6)	857 (100.0)	
	신체·성	2 (25.0)	1 (12.5)	0 (0.0)	0 (0.0)	1 (12.5)	4 (50.0)	0 (0.0)	0 (0.0)	5 (62.5)	0 (0.0)	8 (100.0)	
	신체·방임	4 (15.4)	13 (50.0)	0 (0.0)	6 (23.1)	2 (7.7)	0 (0.0)	0 (0.0)	1 (3.8)	9 (34.6)	0 (0.0)	26 (100.0)	
	정서·성	15 (40.5)	15 (40.5)	0 (0.0)	0 (0.0)	2 (5.4)	4 (10.8)	0 (0.0)	1 (2.7)	7 (18.9)	0 (0.0)	37 (100.0)	
	정서·방임	18 (26.9)	28 (41.8)	3 (4.5)	12 (17.9)	0 (0.0)	2 (3.0)	1 (1.5)	3 (4.5)	18 (26.9)	0 (0.0)	67 (100.0)	
	성·방임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신체·정서·성	12 (26.1)	17 (37.0)	7 (15.2)	0 (0.0)	8 (17.4)	2 (4.3)	0 (0.0)	0 (0.0)	10 (21.7)	0 (0.0)	46 (100.0)	
	신체·정서·방임	15 (18.5)	44 (54.3)	5 (6.2)	10 (12.3)	1 (1.2)	4 (4.9)	1 (1.2)	1 (1.2)	17 (21.0)	0 (0.0)	81 (100.0)	
	신체·정서·성·방임	0 (0.0)	3 (60.0)	2 (4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소 계		305 (27.0)	483 (42.8)	100 (8.9)	128 (11.3)	44 (3.9)	34 (3.0)	12 (1.1)	18 (1.6)	236 (20.9)	5 (0.4)	1,129 (100.0)	
계		722 (28.3)	1,134 (44.5)	234 (9.2)	210 (8.2)	103 (4.0)	71 (2.8)	40 (1.6)	28 (1.1)	452 (17.7)	7 (0.3)	2,549 (100.0)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15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2015년도 아동학대사례는 11,715건이며, 이 중 1,214건(10.4%)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례에 한정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추후 조치의 적정 비율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1,715	1,214	10.4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 1호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행위를 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대행위자를 72시간 동안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이다. 3호는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이고, 마지막 4호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이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표 4-41〉과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571건(63.8%),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324건(36.2%)으로 총 895건이었다. 응급조치 내용 중 상담원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504건(77.8%)이었고, 다음으로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70건(10.8%),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51건(7.9%), 1호(학대행위 제지) 23건(3.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235건(48.2%)이었다.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와 1호(학대행위 제지 조치)는 각각 120건(24.6%), 93건(19.1%)으로 상담원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는 40건(8.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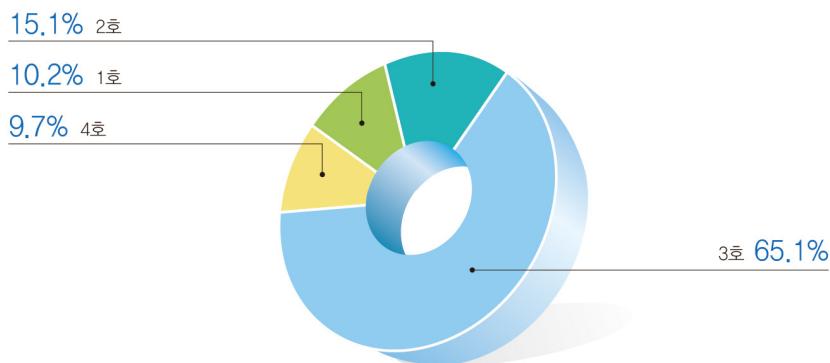
* 2015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 건, %)

분류	실건수	조치 내용				
		1호	2호	3호	4호	총계 (중복집계)
상담원	571(63.8)	23(3.5)	51(7.9)	504(77.8)	70(10.8)	648(100.0)
경찰	324(36.2)	93(19.1)	120(24.6)	235(48.2)	40(8.2)	488(100.0)
총계	895(100.0)	116(10.2)	171(15.1)	739(65.1)	110(9.7)	1,136(100.0)

- 1호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림 4-27〉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이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로 접근금지 장소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표 4-42〉를 살펴보면, 긴급임시조치 결정 실건수는 총 29건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의 직권으로 20건이 청구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8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건이 결정되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1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경찰 직권에 의해 집행되었으나 임시조치 기각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가장 많은 조치가 결정된 조치는 2호(100m 이내 접근금지)로 26건(40.6%)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22건(34.4%), 1호(퇴거 등 격리)가 16건(25.0%) 순으로

로 나타났다.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가 가능하여 해당 조치를 따로 살펴보면, 주거가 17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시설과 학교 및 학원이 각각 14건(31.1%), 9건(20.0%), 병원과 기타장소는 각각 3건(6.7%), 2건(4.4%)이었다. 긴급임시조치의 결정 실건수는 29건이지만, 총 중복집계 건수는 64건으로 약 2~3개의 조치를 동시에 신청하고 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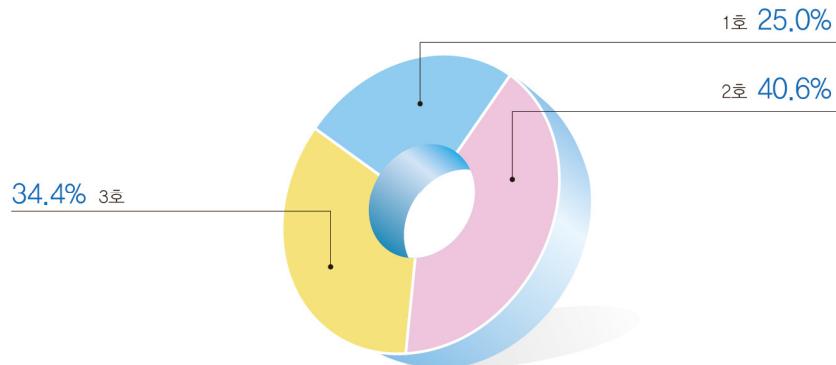
(단위 : 건, %)

신청자	신청 실건 수	결정 건수	취소 건수	총 실건 수	1호	2호*						3호	총계 (중복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포함)			
경찰 직권	-	20	0	20	14(29.2)	15(51.7)	4(13.8)	7(24.1)	1(3.4)	2(6.9)	29(100.0)	18(37.5)	16(33.3) 48(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8	5	3	8	2(12.5)	2(12.5)	5(31.3)	7(43.8)	2(12.5)	0(0.0)	16(100.0)	8(50.0)	6(37.5) 16(100.0)	
피해아동법정대리인	1	0	1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총계	9	25	4	29	16(25.0)	17(37.8)	9(20.0)	14(31.1)	3(6.7)	2(4.4)	45(100.0)	26(40.6)	22(34.4)	64(100.0)

• 1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3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다.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15조)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이다. 임시조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하고, 검사의 직권 또는 청구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과 검사에게 각각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과 임시조치 청구요청을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상세 내용으로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이고,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4호는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마지막 7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이다.

먼저 임시조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검사의 직원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한 경우이다. 제14조 임시조치 시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에게 청구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청구신청(요청)되거나 청구요청 또는 청구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례는 총 1,129건이다. 이 중 제15조 임시조치로 진행된 사례는 전체 74.8%에 해당하는 845건이었고, 제14조 임시조치가 진행된 것은 284건(25.2%)으로 제15조 임시조치가 3배가량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표 4-43〉 제14조 임시조치와 제15조 임시조치 실건수

(단위 : 건 %)

	제14조 임시조치	제15조 임시조치	총계
실건수	284(25.2)	845(74.8)	1,129(100.0)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조치가 취해진 895건 중에서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된 사례는 845건이고,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50건으로 응급조치 후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율은 94.4%로 나타났다.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

(단위 : 건, %)

응급조치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 미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률
895	50	845	94.4

2015년 신고접수된 사례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검색일자 기준(2016년 3월 7일)에 해당하는 단계(청구신청 · 청구 · 결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피해아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360건이고, 257건(71.4%)은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 되었으며, 103건(28.6%)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청구신청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청구신청(요청)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229건(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137건(23.1%)으로 높게 나타났다. 7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단 한건도 청구신청 되지 않았다.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단위 : 건, %)

절차 분류	거부 실건수	결정 실건수	총 실건수	1호	세부 내용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총계 (중복집계)						
					2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 계 (중복집계)	소 계 (중복제외)												
청구신청 (요청)	103 (28.6)	257 (71.4)	360 (100.0)	89 (15.0)	133 (32.4)	123 (30.0)	131 (32.0)	11 (2.7)	12 (2.9)	410 (100.0)	229 (38.6)	137 (23.1)	28 (4.7)	107 (18.0)	4 (0.7)	0 (0.0)	594 (100.0)						

- 1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피해아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를 모두 종합하면 196건이고, 이 중 174건(88.8%)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22건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 · 학교 및 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11.2%)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요청)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153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95건(24.4%), 5호(상담 및 교육 위탁) 81건(20.8%) 순으로 나타났다. 7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단 한건도 없었다.

〈표 4-46〉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단위 : 건, %)

절차 분류	거부 실건수	결정 실건수	총 실건수	세부 내용										결정총계 (중복집계)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청구(요청)	22 (11.2)	174 (88.8)	196 (100.0)	45 (11.5)	72 (27.8)	77 (29.7)	92 (35.5)	9 (3.5)	9 (3.5)	259 (100.0)	153 (39.2)	95 (24.4)	7 (1.8)	81 (20.8)	9 (2.3)	0 (0.0)	390 (100.0)

- 1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리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 임시조치 결정 현황

판사 직권 또는 법원으로 임시조치가 청구되어 결정된 사례는 총 625건으로 95.4%에 해당하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30건(4.6%)이었다. 먼저 임시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512건(3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가 가능하다. 이 중 보호시설로의 접근금지가 308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로의 접근금지 288건(31.5%), 학교 및 학원으로의 접근금지 283건(31.0%)으로 높은 수치들을 보였다. 2호를 제외하고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306건(21.8%),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304건(21.6%)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임시조치 항고 결정된 사례는 2건으로 66.7%에 해당하고, 기각된 사례는 1건(33.3%)이었다. 항고결정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3건(75.0%),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1건(25.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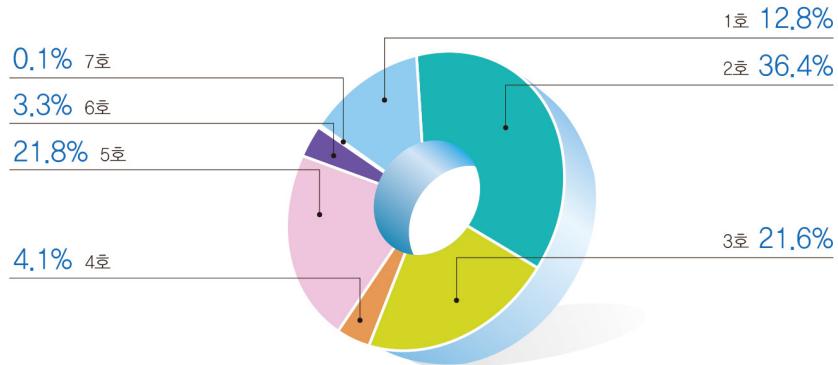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 · 학교 및 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절차 분류	거부 실건수	결정 실건수	총 실건수	결정 내용										결정총계 (중복집계)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법원결정	30 (4.6)	625 (95.4)	655 (100.0)	180 (12.8)	288 (31.5)	283 (31.0)	308 (33.7)	16 (1.8)	18 (2.0)	913 (100.0)	512 (36.4)	304 (21.6)	57 (4.1)	306 (21.8)	46 (3.3)	1 (0.1)	1,406 (100.0)
항고결정	1 (33.3)	2 (66.7)	3 (100.0)	0 (0.0)	0 (0.0)	1 (25.0)	3 (75.0)	0 (0.0)	0 (0.0)	4 (100.0)	3 (75.0)	1 (25.0)	0 (0.0)	0 (0.0)	0 (0.0)	0 (0.0)	4 (100.0)

- 1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그림 4-29〉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9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 1~3호까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1호는 피해아동 주거지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다. 4호~6호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 4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는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는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7~9호는 학대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권한에 대한 조치로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7호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조치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인정하는 때에 임시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1~9호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에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 될 때까지이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아동의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청구한 건수는 총 282건 중 262건으로 무려 92.9%에 해당하였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건수는 20건(7.1%)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241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59건(24.7%), 3호(전기통신 접근 제한) 123건(1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변호사는 주로 2호, 3호, 4호 조치를 주로 청구하였다. 이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조치를 다른 청구인들보다 높은 비율로 청구하였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1호, 2호, 3호 조치 청구비율이 높았으나 6호, 9호 조치는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단위 : 건, %)

청구인	임시보호 필요	임시보호 불필요	청구 실건수	세부 내용									총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160	14	174	10 (2.4)	99 (24.1)	71 (17.3)	152 (37.1)	10 (2.4)	13 (3.2)	47 (11.5)	2 (0.5)	6 (1.5)	410 (100.0)
변호사	92	5	97	6 (3.0)	50 (25.0)	43 (21.5)	86 (43.0)	2 (1.0)	4 (2.0)	6 (3.0)	2 (1.0)	1 (0.5)	200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10	1	11	6 (18.2)	10 (30.3)	9 (27.3)	3 (9.1)	2 (6.1)	0 (0.0)	1 (3.0)	2 (6.1)	0 (0.0)	33 (100.0)
총계	262	20	282	22 (3.4)	159 (24.7)	123 (19.1)	241 (37.5)	14 (2.2)	17 (2.6)	54 (8.4)	6 (0.9)	7 (1.1)	643 (100.0)

- 1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접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리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임시보호명령 청구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151건으로

나타났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건수는 없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신청 건수인 282건에 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는 170건으로 60.3%에 해당하였다. 나머지 건수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88건 중 기각된 9건을 제외하고 79건(89.8%)이었다. 변호사는 76건을 청구하여 68건(89.5%)이 결정되었다.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4건을 청구하여 4건 모두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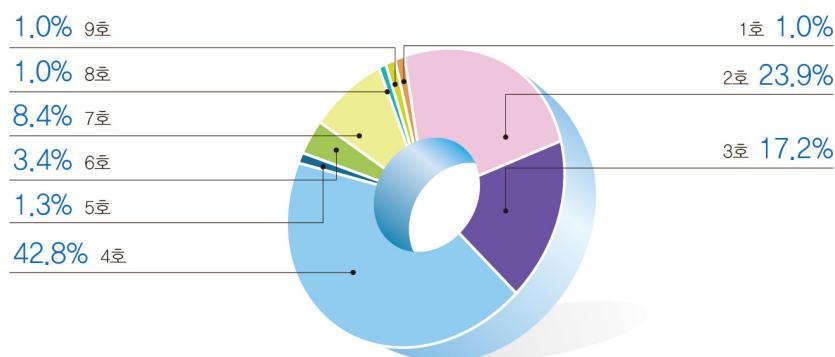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127건(4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71건(23.9%),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51건(17.2%),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25건(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 건 %)

청구인	결정 실건수	기각 실건수	총 실건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결정 내용									총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판사 직권	2	0	2	0	0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79	9	88	92	0	0 (0.0)	44 (24.9)	27 (15.3)	68 (38.4)	3 (1.7)	6 (3.4)	23 (13.0)	3 (1.7)	3 (1.7)	177 (100.0)
변호사	68	8	76	55	0	3 (2.8)	23 (21.1)	22 (20.2)	55 (50.5)	1 (0.9)	4 (3.7)	1 (0.9)	0 (0.0)	0 (0.0)	109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4	0	4	4	0	0 (0.0)	4 (44.4)	2 (22.2)	2 (22.2)	0 (0.0)	0 (0.0)	1 (11.1)	0 (0.0)	0 (0.0)	9 (100.0)
총계	153	17	170	151	0	3 (1.0)	71 (23.9)	51 (17.2)	127 (42.8)	4 (1.3)	10 (3.4)	25 (8.4)	3 (1.0)	3 (1.0)	297 (100.0)

- 1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접유하는 방식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의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같음하는 결정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개별상담·집단상담·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일시보호서비스,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당해 연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이전 신고 사례 중 장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접수 시점에 따라 2015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5년 신고사례, 그리고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5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 분	2015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492,415
학대행위자	131,836
부모 또는 가족	142,535
계	766,786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2015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492,415회이다. 〈표 4-51〉에서 2015년 이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15,733회이며, 2015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76,682회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전과 당해 연도 사례에서 상담서비스가 각각 117,253회 (54.4%), 138,999회(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유형 중에서 상담서비스 중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전 신고사례는 개별상담

54,616회(25.3%), 기관상담 58,975회(27.3%)가 제공되었으며, 2015년 신고사례의 경우 개별상담 50,483회(18.2%), 기관상담 85,293회(30.8%)가 피해아동들에게 제공되었다.

일시보호서비스가 각각 52,218회(24.2%), 83,279회(30.1%)로 상담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치료서비스는 각각 26,230회(12.2%), 24,666회(8.9%)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각각 6,692회(3.1%), 7,198회(2.6%)로 신고 시점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가 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피해아동에게 직접 실시한 서비스제공 실적을 반영하였다. 2015년 이전 신고사례의 경우 3회(0.0%), 2015년 신고사례의 경우 9회(0.0%)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아동에게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이 제공되었다.

〈표 4-5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5년 이전 신고사례	2015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54,616 (25.3)	50,483 (18.2)
	집단상담	1,191 (0.6)	940 (0.3)
	기관상담	58,975 (27.3)	85,293 (30.8)
	주변인상담	2,471 (1.1)	2,283 (0.8)
	소 계	117,253 (54.4)	138,999 (50.2)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225 (0.1)	751 (0.3)
	입원치료	3,084 (1.4)	4,159 (1.5)
	통원치료	619 (0.3)	671 (0.2)
	소 계	3,928 (1.8)	5,581 (2.0)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012 (0.5)	2,831 (1.0)
	심리치료	25,218 (11.7)	21,835 (7.9)
	소 계	26,230 (12.2)	24,666 (8.9)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5,911 (2.7)	6,299 (2.3)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07 (0.2)	659 (0.2)
	공적지원연결	374 (0.2)	240 (0.1)
	소 계	6,692 (3.1)	7,198 (2.6)
일시보호서비스		52,218 (24.2)	83,279 (30.1)
사건처리지원서비스		2,487 (1.2)	8,680 (3.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2 (0.0)	3 (0.0)
	조건부기소유예	0 (0.0)	0 (0.0)
	보호처분	1 (0.0)	6 (0.0)
	소 계	3 (0.0)	9 (0.0)
기타		6,922 (3.2)	8,270 (3.0)
계		215,733 (100.0)	276,682 (100.0)

※증복포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피해아동에게 지원된 서비스는 총 492,415회로 2015년 기준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되어 사후관리 중인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진행 중인 사례는 448,744회, 사후관리 중인 사례는 43,671회로 사례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가 약 10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2〉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50.7%, 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도 기관상담, 개별상담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시보호서비스는 진행 중 사례에서는 135,497회(30.2%)로 높은 수치이나 사후관리 사례에는 0회(0.0%)이었다. 이는 일시보호서비스가 종료되어야 사례가 종결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 서비스는 진행 중 사례에서 9.2%에 해당하지만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약 2배 높은 21.7%로 나타났다.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94,043 (21.0)	11,056 (25.3)
	집단상담	1,945 (0.4)	186 (0.4)
	기관상담	127,474 (28.4)	16,794 (38.5)
	주변인상담	3,986 (0.9)	768 (1.8)
	소 계	227,448 (50.7)	28,804 (66.0)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915 (0.2)	61 (0.1)
	입원치료	6,768 (1.5)	475 (1.1)
	통원치료	1,122 (0.3)	168 (0.4)
	소 계	8,805 (2.0)	704 (1.6)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3,444 (0.8)	399 (0.9)
	심리치료	37,982 (8.5)	9,071 (20.8)
	소 계	41,426 (9.2)	9,470 (21.7)
기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0,737 (2.4)	1,473 (3.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951 (0.2)	115 (0.3)
	공적지원연결	543 (0.1)	71 (0.2)
	소 계	12,231 (2.7)	1,659 (3.8)
일시보호서비스		135,497 (30.2)	0 (0.0)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0,359 (2.3)	808 (1.9)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5 (0.0)	0 (0.0)
	조건부기소유예	0 (0.0)	0 (0.0)
	보호처분	6 (0.0)	1 (0.0)
	소 계	11 (0.0)	1 (0.0)
기타		12,967 (2.9)	2,225 (5.1)
계		448,744 (100.0)	43,671 (100.0)

※증복포함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2015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131,836회로 집계되었다. 2015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57,212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5년 신고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74,624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5년 신고사례가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담서비스가 각각 47,873회(83.7%), 59,907회(80.3%)로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심리치료서비스가 각각 3,384회(5.9%), 4,929회(6.6%)를 제공하여 그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에 따라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는 각각 2,463회(4.3%), 3,592회(4.8%)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는 2015년 이전 신고사례가 1,844회(3.2%)로 2015년 신고사례의 3,877회(5.2%)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5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5년 이전 신고사례	2015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41,065 (71.8)	48,918 (65.6)
	집단상담	284 (0.5)	352 (0.5)
	기관상담	6,150 (10.7)	10,214 (13.7)
	주변인상담	374 (0.7)	423 (0.6)
	소 계	47,873 (83.7)	59,907 (80.3)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8 (0.0)	90 (0.1)
	입원치료	1,754 (3.1)	3,747 (5.0)
	통원치료	72 (0.1)	40 (0.1)
	소 계	1,844 (3.2)	3,877 (5.2)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255 (0.4)	744 (1.0)
	심리치료	3,129 (5.5)	4,185 (5.6)
	소 계	3,384 (5.9)	4,929 (6.6)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537 (0.9)	763 (1.0)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9 (0.1)	141 (0.2)
	공적지원연결	35 (0.1)	28 (0.0)
	소 계	621 (1.1)	932 (1.2)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42 (0.2)	394 (0.5)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513 (0.9)	2,093 (2.8)
	조건부기소유예	96 (0.2)	304 (0.4)
	보호처분	1,854 (3.2)	1,195 (1.6)
	소 계	2,463 (4.3)	3,592 (4.8)
기타		885 (1.5)	993 (1.3)
계		57,212 (100.0)	74,624 (100.0)

※증복포함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표 4-54>와 같이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18,562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13,274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9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96,697회(81.6%), 심리치료서비스 7,490회(6.3%), 행위자수탁프로그램 5,515회(4.7%), 의료서비스 5,464회(4.6%), 기타서비스 1,553회(1.3%),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377회(1.2%), 사건처리지원서비스 466회(0.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의 하위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 모두 보호처분에 따른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11,083회(8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치료 서비스 823회(6.2%), 행위자수탁프로그램 540회(4.1%), 기타서비스 325회(2.4%), 의료서비스 257회(1.9%),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76회(1.3%), 사건처리지원서비스 70회(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80,812 (68.2)	9,171 (69.1)
	집단상담	594 (0.5)	42 (0.3)
	기관상담	14,584 (12.3)	1,780 (13.4)
	주변인상담	707 (0.6)	90 (0.7)
	소 계	96,697 (81.6)	11,083 (83.5)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06 (0.1)	2 (0.0)
	입원치료	5,262 (4.4)	239 (1.8)
	통원치료	96 (0.1)	16 (0.1)
	소 계	5,464 (4.6)	257 (1.9)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934 (0.8)	65 (0.5)
	심리치료	6,556 (5.5)	758 (5.7)
	소 계	7,490 (6.3)	823 (6.2)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142 (1.0)	158 (1.2)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75 (0.1)	15 (0.1)
	공직지원연결	60 (0.1)	3 (0.0)
	소 계	1,377 (1.2)	176 (1.3)
사건처리지원서비스		466 (0.4)	70 (0.5)

(계속)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2,547 (2.1)	59 (0.4)
	조건부기소유예	368 (0.3)	32 (0.2)
	보호처분	2,600 (2.2)	449 (3.4)
	소 계	5,515 (4.7)	540 (4.1)
기타		1,553 (1.3)	325 (2.4)
계		118,562 (100.0)	13,274 (100.0)

※증복포함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은 피해아동의 비가해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만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가해부모들도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및 무력감, 비관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학대발생 위험 요소를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비가해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5년에 제공한 서비스는 총 142,535회였으며, 여러 서비스 유형 중 상담서비스가 약 89%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표 4-55〉와 같이 신고접수 시점에 따라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5년 이전 신고접수 사례는 총 61,941회를 제공하였고, 2015년 신고된 사례는 80,594회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2015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5년 신고사례 각각 55,553회(89.7%), 71,454회(88.7%)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치료 서비스는 각각 3,355회(5.4%), 4,181회(5.2%)로 그 뒤를 이었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와 의료서비스, 행위자수탁프로그램*, 기타서비스는 3%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부모 또는 가족에게 실시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영함.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이 제공되었음.

〈표 4-55〉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5년 이전/2015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5년 이전 신고사례	2015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46,945 (75.8)	60,800 (75.4)
	집단상담	463 (0.7)	584 (0.7)
	기관상담	7,314 (11.8)	9,548 (11.8)
	주변인상담	831 (1.3)	522 (0.6)
소 계		55,553 (89.7)	71,454 (88.7)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43 (0.1)	139 (0.2)
	입원치료	138 (0.2)	1,300 (1.6)
	통원치료	91 (0.1)	119 (0.1)
	소 계	272 (0.4)	1,558 (1.9)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273 (0.4)	612 (0.8)
	심리치료	3,082 (5.0)	3,569 (4.4)
	소 계	3,355 (5.4)	4,181 (5.2)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097 (1.8)	1,502 (1.9)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56 (0.1)	98 (0.1)
	공적지원연결	17 (0.0)	41 (0.1)
	소 계	1,170 (1.9)	1,641 (2.0)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80 (0.1)	166 (0.2)
	조건부기소유예	2 (0.0)	1 (0.0)
	보호처분	69 (0.1)	84 (0.1)
	소 계	151 (0.2)	251 (0.3)
기타		1,440 (2.3)	1,509 (1.9)
계		61,941 (100.0)	80,594 (100.0)

※증복포함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표 4-56〉과 같이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24,769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17,766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7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111,278회로 89.2%를 차지하였고, 심리치료 서비스가 6,323회(5.1%),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2,538회(2.0%), 기타서비스 2,444회(2.0%), 의료서비스 1,807회(1.4%), 행위자수탁프로그램 379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15,729회(88.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1,213회(6.8%), 기타서비스 505회(2.8%),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273회(1.5%), 의료서비스와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이 각각 23회(0.1%)로 집계되었다.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94,236 (75.5)	13,509 (76.0)
	집단상담	989 (0.8)	58 (0.3)
	기관상담	14,922 (12.0)	1,940 (10.9)
	주변인상담	1,131 (0.9)	222 (1.2)
	소 계	111,278 (89.2)	15,729 (88.5)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70 (0.1)	12 (0.1)
	입원치료	1,437 (1.2)	1 (0.0)
	통원치료	200 (0.2)	10 (0.1)
	소 계	1,807 (1.4)	23 (0.1)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802 (0.6)	83 (0.5)
	심리치료	5,521 (4.4)	1,130 (6.4)
	소 계	6,323 (5.1)	1,213 (6.8)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2,343 (1.9)	256 (1.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41 (0.1)	13 (0.1)
	공적지원연결	54 (0.0)	4 (0.0)
	소 계	2,538 (2.0)	273 (1.5)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227 (0.2)	19 (0.1)
	조건부기소유예	3 (0.0)	0 (0.0)
	보호처분	149 (0.1)	4 (0.0)
	소 계	379 (0.3)	23 (0.1)
기타		2,444 (2.0)	505 (2.8)
계		124,769 (100.0)	17,766 (100.0)

※종복포함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2. 재학대 사례
3. 사망아동 사례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05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본 절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의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이 추가되어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었다.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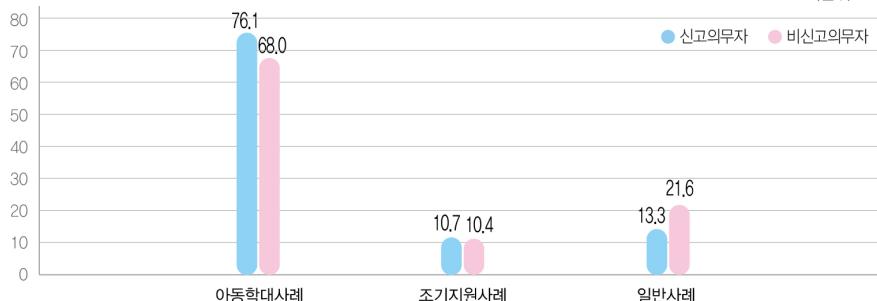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사례판단 결과를 <표 5-1>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은 76.1%로 비신고의무자의 68.0%와 비교하여 약 8%포인트가 더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3,727 (76.1)	522 (10.7)	651 (13.3)	4,900 (100.0)
비신고의무자	7,988 (68.0)	1,220 (10.4)	2,543 (21.6)	11,751 (100.0)
계	11,715 (70.4)	1,742 (10.5)	3,194 (19.2)	16,651 (100.0)

(단위 : %)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는 〈표 5-2〉와 같다. 신고의무자로서 가장 많이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한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고접수 건수가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의 경우 각각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63.3%, 68.6%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수가 가장 적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100%로 매우 높았으며, 아이돌보미와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도 각각 88.9%, 83.3%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과 별개로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신고의무자유형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초·중·고교 직원		1,778 (81.9)	189 (8.7)	205 (9.4)	2,172 (100.0)
의료인		91 (66.4)	14 (10.2)	32 (23.4)	137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97 (76.7)	28 (10.9)	32 (12.5)	257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1 (67.4)	10 (21.7)	5 (10.9)	46 (100.0)
보육교직원		212 (68.6)	25 (8.1)	72 (23.3)	309 (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44 (64.7)	13 (19.1)	11 (16.2)	68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1 (67.7)	0 (0.0)	10 (32.3)	31 (100.0)
소방구급대원		14 (63.6)	3 (13.6)	5 (22.7)	22 (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 (83.3)	0 (0.0)	2 (16.7)	12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5 (100.0)	0 (0.0)	0 (0.0)	5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33 (81.8)	31 (10.9)	21 (7.4)	285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81 (63.3)	75 (12.5)	146 (24.3)	602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39 (66.2)	41 (19.5)	30 (14.3)	210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4 (80.0)	1 (3.3)	5 (16.7)	30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0 (51.7)	12 (20.7)	16 (27.6)	58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4 (73.7)	2 (10.5)	3 (15.8)	19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33 (80.5)	4 (9.8)	4 (9.8)	41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39 (79.6)	3 (6.1)	7 (14.3)	49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55 (76.4)	1 (1.4)	16 (22.2)	72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100.0)
의료기사		0 (0.0)	0 (0.0)	0 (0.0)	0 (10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114 (81.4)	16 (11.4)	10 (7.1)	140 (100.0)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22 (78.6)	2 (7.1)	4 (14.3)	28 (100.0)
아이돌보미		8 (88.9)	1 (11.1)	0 (0.0)	9 (1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32 (77.9)	51 (17.1)	15 (5.0)	298 (100.0)
계		3,727 (76.1)	522 (10.7)	651 (13.3)	4,900 (100.0)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3>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의무자가 83.7%, 비신고의무자가 78.0%로 신고의무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친인척인 경우도 신고의무자가 6.2%, 비신고의무자가 4.1%로 신고의무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학대행위자가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7.0%, 비신고의무자가 14.6%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타인의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각각 1.6%, 1.6%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신고의무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약 80%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학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신고자유형	건수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부모	친부	1,723 (46.2)	3,645 (45.6)
	친모	1,214 (32.6)	2,261 (28.3)
	계부	85 (2.3)	151 (1.9)
	계모	90 (2.4)	147 (1.8)
	양부	4 (0.1)	13 (0.2)
	양모	5 (0.1)	10 (0.1)
	소 계	3,121 (83.7)	6,227 (78.0)
친인척	친조부	42 (1.1)	54 (0.7)
	친조모	41 (1.1)	71 (0.9)
	외조부	15 (0.4)	13 (0.2)
	외조모	19 (0.5)	33 (0.4)
	친인척	80 (2.1)	121 (1.5)
	형제, 자매	35 (0.9)	38 (0.5)
	소 계	232 (6.2)	330 (4.1)
대리 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45 (1.2)	113 (1.4)
	유치원교직원	22 (0.6)	181 (2.3)
	초·중·고교 직원	61 (1.6)	173 (2.2)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1 (0.3)	53 (0.7)
	보육교직원	65 (1.7)	362 (4.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0 (1.3)	246 (3.1)
	기타시설 종사자	1 (0.0)	21 (0.3)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0 (0.0)	7 (0.1)
	베이비시터	0 (0.0)	7 (0.1)
	위탁부	3 (0.1)	5 (0.1)
	위탁모	3 (0.1)	2 (0.0)
	소 계	261 (7.0)	1,170 (14.6)

(계속)

관계	신고자유형	건수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타인	이웃	36 (1.0)	49 (0.6)	
	낯선 사람	24 (0.6)	78 (1.0)	
	소 계	60 (1.6)	127 (1.6)	
기타		46 (1.2)	120 (1.5)	
	파악안됨	7 (0.2)	14 (0.2)	
계		3,727 (100.0)	7,988 (100.0)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5-4〉와 같이 살펴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발견 비율이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6.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의무자 여부를 떠나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발견 비율이 약 80% 정도로 나타나 다른 장소에 비해 더 민감하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 가정 내를 포함한 학대행위자 가정 내, 친인척의 집, 병원, 기타 복지시설 등의 장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학대 발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신고의무자보다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표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 발생장소	아동 가정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친인척 의 집	이웃집	어린 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계
신고의무자	3,159 (84.8)	86 (2.3)	31 (0.8)	7 (0.2)	77 (2.1)	24 (0.6)	66 (1.8)	11 (0.3)	29 (0.8)	63 (1.7)	15 (0.4)	47 (1.3)	23 (0.6)	2 (0.1)	80 (2.1)	7 (0.2)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6,222 (77.9)	174 (2.2)	47 (0.6)	12 (0.2)	355 (4.4)	183 (2.3)	192 (2.4)	57 (0.7)	20 (0.3)	268 (3.4)	16 (0.2)	166 (2.1)	38 (0.5)	22 (0.3)	206 (2.6)	10 (0.1)	7,988 (100.0)
계	9,381 (80.1)	260 (2.2)	78 (0.7)	19 (0.2)	432 (3.7)	207 (1.8)	258 (2.2)	68 (0.6)	49 (0.4)	331 (2.8)	31 (0.3)	213 (1.8)	61 (0.5)	24 (0.2)	286 (2.4)	17 (0.1)	11,715 (100.0)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5-5〉와 같이 살펴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는 기타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비율이 40.0%로 다른 직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병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8건(19.8%),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34건(17.3%),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45건(21.2%)으로 동일한 직군의 종사자가 동일 직업장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한 비율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았다.

신고의무자가 신분노출이나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신고를 거리는 일이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6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와 금전적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일반인의 신고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표 5-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신고의무자유형	발생장소	아동 가정 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친 척 집	이 웃 집	어린 이집	유 치 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계	
초 · 중 · 고교 직원		1,554 (87.4)	40 (2.2)	13 (0.7)	1 (0.1)	0 (0.0)	17 (1.0)	62 (3.5)	4 (0.2)	3 (0.2)	13 (0.7)	3 (0.2)	17 (1.0)	6 (0.3)	0 (0.0)	41 (2.3)	4 (0.2)	1,778 (100.0)	
의료인		69 (75.8)	0 (0.0)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18 (19.8)	0 (0.0)	0 (0.0)	2 (2.2)	0 (0.0)	0 (0.0)	1 (1.1)	0 (0.0)	91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41 (71.6)	5 (2.5)	1 (0.5)	2 (1.0)	1 (0.5)	0 (0.0)	0 (0.0)	3 (1.5)	1 (0.5)	34 (17.3)	1 (0.5)	3 (1.5)	1 (0.5)	0 (0.0)	4 (2.0)	0 (0.0)	197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7 (87.1)	1 (3.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9.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1 (100.0)	
보육교직원		153 (72.2)	1 (0.5)	2 (0.9)	0 (0.0)	45 (21.2)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2.4)	0 (0.0)	0 (0.0)	5 (2.4)	0 (0.0)	212 (100.0)
유치원		35 (79.5)	0 (0.0)	2 (4.5)	0 (0.0)	1 (2.3)	6 (13.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4 (100.0)	
직원·강사		18 (85.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9.5)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0 (0.0)	21 (100.0)	
학원 및 교습소		14 (9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4 (100.0)	
소방구급대원		210 (90.1)	2 (0.9)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2.1)	6 (2.6)	2 (0.9)	0 (0.0)	6 (2.6)	1 (0.4)	233 (100.0)
성매매피해사설상담소		9 (9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10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0)	2 (4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116 (83.5)	0 (0.0)	5 (3.6)	2 (1.4)	1 (0.7)	0 (0.0)	0 (0.0)	1 (0.7)	0 (0.0)	5 (3.6)	2 (1.4)	1 (0.7)	2 (1.4)	0 (0.0)	4 (2.9)	0 (0.0)	139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 (62.5)	6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24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7 (56.7)	0 (0.0)	0 (0.0)	0 (0.0)	8 (26.7)	0 (0.0)	0 (0.0)	0 (0.0)	2 (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	0 (0.0)	30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1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4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 (9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0)	0 (0.0)	2 (6.1)	0 (0.0)	0 (0.0)	0 (0.0)	0 (0.0)	33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37 (94.9)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9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		38 (69.1)	9 (16.4)	0 (0.0)	1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3.6)	2 (3.6)	2 (3.6)	1 (1.8)	0 (0.0)	0 (0.0)	55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의료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102 (89.5)	3 (2.6)	1 (0.9)	0 (0.0)	0 (0.0)	0 (0.0)	0 (2.6)	1 (0.9)	0 (0.0)	1 (0.9)	1 (0.9)	1 (0.9)	1 (0.9)	1 (0.9)	0 (0.0)	0 (0.0)	0 (0.0)	114 (100.0)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21 (95.5)	1 (4.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2 (100.0)
아이돌보미		6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5.0)	0 (0.0)	0 (0.0)	8 (1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17 (93.5)	6 (2.6)	0 (0.0)	0 (0.0)	0 (0.0)	0 (0.0)	1 (0.4)	0 (0.4)	1 (0.4)	1 (0.4)	0 (0.4)	2 (0.9)	0 (0.9)	0 (0.9)	4 (1.7)	0 (0.0)	0 (0.0)	232 (100.0)
계		3,159 (84.8)	86 (2.3)	31 (0.8)	7 (0.2)	77 (0.6)	24 (1.8)	66 (0.3)	11 (0.8)	29 (1.7)	63 (1.7)	15 (0.4)	47 (1.3)	23 (1.3)	2 (0.6)	80 (0.6)	7 (0.2)	3,7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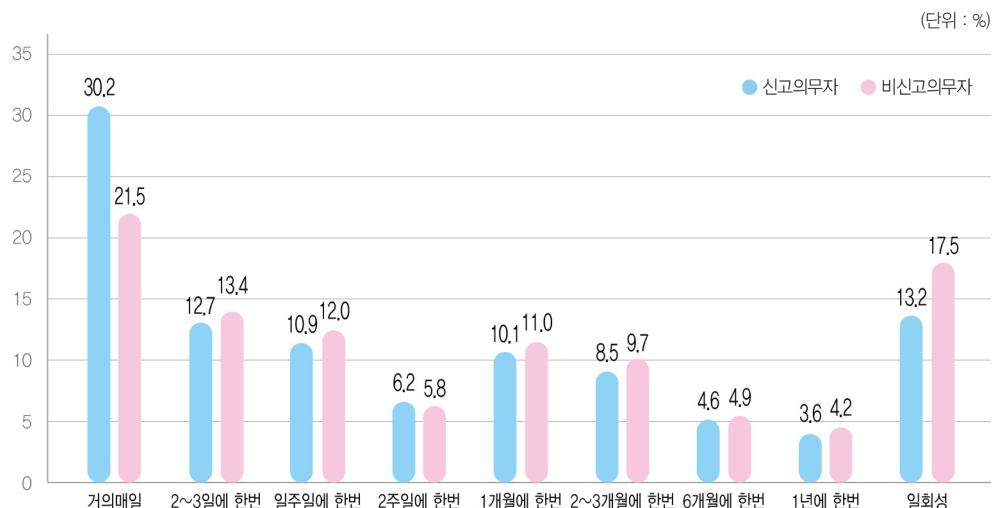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표 5-6>과 같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30.2%였고, 비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21.5%로 신고의무자 비율이 약 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회성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비신고의무자가 17.5%로 신고의무자 13.2%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 발생빈도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124 (30.2)	474 (12.7)	405 (10.9)	231 (6.2)	376 (10.1)	317 (8.5)	172 (4.6)	136 (3.6)	492 (13.2)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1,721 (21.5)	1,072 (13.4)	956 (12.0)	461 (5.8)	879 (11.0)	778 (9.7)	394 (4.9)	333 (4.2)	1,394 (17.5)	7,988 (100.0)
계	2,845 (24.3)	1,546 (13.2)	1,361 (11.6)	692 (5.9)	1,255 (10.7)	1,095 (9.3)	566 (4.8)	469 (4.0)	1,886 (16.1)	11,715 (100.0)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기를 <표 5-7>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가 1년~3년 전이 신고의무자 37.3%, 비신고의무자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년 이상이 신고의무자 26.5%, 비신고의무자 23.3%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학대사례가 초기에 발견되어 신고 될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 발생시기	1주일~1개월	3~6개월	1~3년	4년 이상	계
신고의무자	753 (20.2)	595 (16.0)	1,392 (37.3)	987 (26.5)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1,800 (22.5)	1,420 (17.8)	2,905 (36.4)	1,863 (23.3)	7,988 (100.0)
계	2,553 (21.8)	2,015 (17.2)	4,297 (36.7)	2,850 (24.3)	11,715 (100.0)



<그림 5-4>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 분류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5-8>과 같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3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신고의무자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성학대와 방임의 경우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높은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유형에서 신고의무자 보다 더 높은 발견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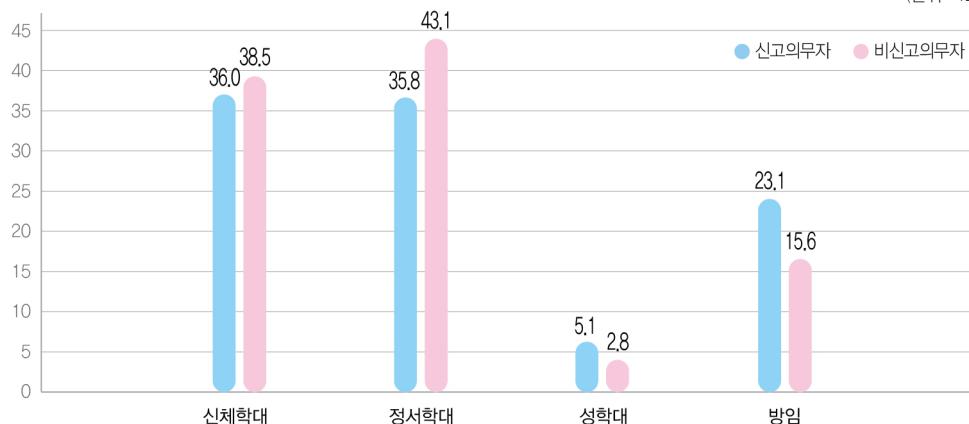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신고자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고의무자	2,033 (36.0)	2,018 (35.8)	288 (5.1)	1,305 (23.1)	5,644 (100.0)
비신고의무자	4,628 (38.5)	5,179 (43.1)	341 (2.8)	1,870 (15.6)	12,018 (100.0)
계	6,661 (37.7)	7,197 (40.7)	629 (3.6)	3,175 (18.0)	17,662 (100.0)

※ 중복포함

(단위 : %)



※ 중복포함

<그림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라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표 5-9〉와 같이 살펴보면,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높은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다.

신체학대 발견율은 유치원교직원·강사 60.7%, 의료인 45.9%, 초·중·고교 직원 42.1%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 발견율은 아이돌보미가 75.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54.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와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가 각각 50.0% 순이었다. 성학대 발견율에 있어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가 6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3.4%, 소방구급대원 4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유형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초·중·고교 직원	1,162 (42.1)	1,014 (36.8)	176 (6.4)	407 (14.8)	2,759 (100.0)	
의료인	61 (45.9)	37 (27.8)	0 (0.0)	35 (26.3)	133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91 (33.1)	74 (26.9)	16 (5.8)	94 (34.2)	275 (1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7 (37.8)	13 (28.9)	0 (0.0)	15 (33.3)	45 (100.0)	
보육교직원	116 (38.3)	89 (29.4)	4 (1.3)	94 (31.0)	303 (100.0)	
유치원교직원,강사	37 (60.7)	17 (27.9)	1 (1.6)	6 (9.8)	61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0 (33.3)	15 (50.0)	1 (3.3)	4 (13.3)	30 (100.0)	
소방구급대원	6 (28.6)	6 (28.6)	0 (0.0)	9 (42.9)	21 (100.0)	
성매매피해상담소종사자	6 (30.0)	8 (40.0)	4 (20.0)	2 (10.0)	20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2 (40.0)	0 (0.0)	0 (0.0)	3 (60.0)	5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41 (36.3)	210 (54.1)	5 (1.3)	32 (8.2)	388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6 (15.8)	162 (29.8)	5 (0.9)	290 (53.4)	543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54 (27.7)	53 (27.2)	15 (7.7)	73 (37.4)	195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0 (27.8)	11 (30.6)	6 (16.7)	9 (25.0)	36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3 (29.5)	18 (40.9)	0 (0.0)	13 (29.5)	44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5 (25.0)	10 (50.0)	0 (0.0)	5 (25.0)	20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1 (25.0)	20 (45.5)	1 (2.3)	12 (27.3)	44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19 (35.2)	22 (40.7)	1 (1.9)	12 (22.2)	54 (100.0)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6 (31.0)	23 (27.4)	25 (29.8)	10 (11.9)	84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의료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73 (36.3)	79 (39.3)	16 (8.0)	33 (16.4)	201 (100.0)	
청소년보호·재활센터종사자	16 (41.0)	17 (43.6)	3 (7.7)	3 (7.7)	39 (100.0)	
아이돌보미	0 (0.0)	6 (75.0)	0 (0.0)	2 (25.0)	8 (100.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71 (21.1)	114 (33.9)	9 (2.7)	142 (42.3)	336 (100.0)	
계	2,033 (36.0)	2,018 (35.8)	288 (5.1)	1,305 (23.1)	5,644 (100.0)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10>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가정보호율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자보다 약 2.9%포인트 더 높았고, 분리보호율은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약 3.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신고의무자	2,659 (71.3)	1,065 (28.6)	3 (0.1)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5,929 (74.2)	2,045 (25.6)	14 (0.2)	7,988 (100.0)
계	8,588 (73.3)	3,110 (26.6)	17 (0.1)	11,715 (100.0)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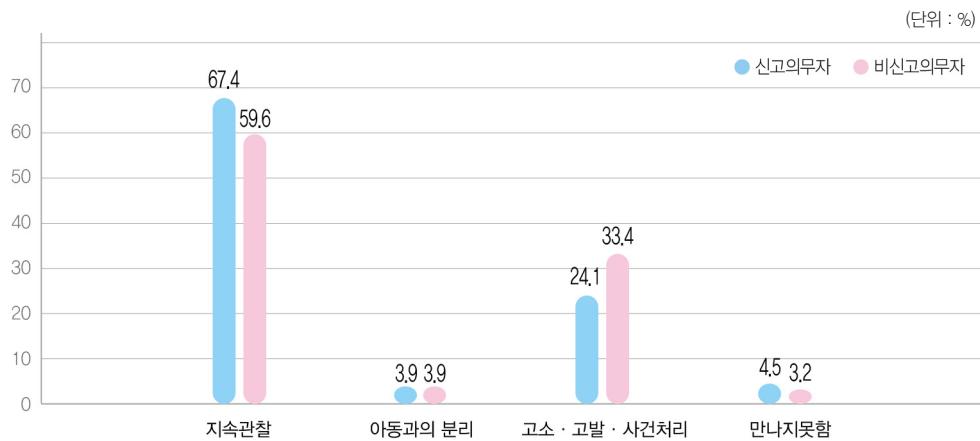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11>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각각 67.4%, 59.6%로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지속관찰 비율이 비신고의무자보다 약 7.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소·고발·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24.1%, 비신고의무자 33.4%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신고의무자	2,512 (67.4)	147 (3.9)	899 (24.1)	169 (4.5)	3,727 (100.0)
비신고의무자	4,758 (59.6)	313 (3.9)	2,665 (33.4)	252 (3.2)	7,988 (100.0)
계	7,270 (62.1)	460 (3.9)	3,564 (30.4)	421 (3.6)	11,715 (100.0)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 재학대 사례

본 절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015년에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2015년의 재학대 사례는 총 1,240건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11,715건 대비하여 재학대 사례 비율은 10.6%로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1건은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

재학대 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1,240	10.6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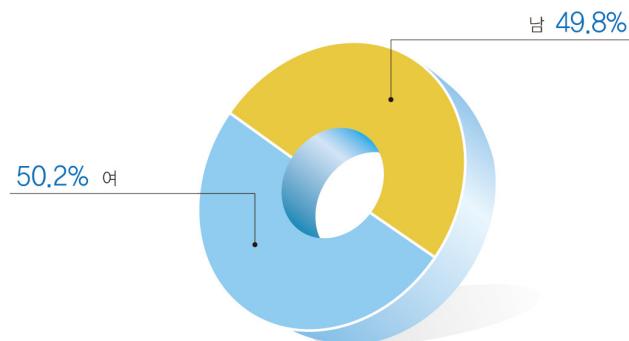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표 5-13〉과 같이 살펴보면 여아 623건(50.2%), 남아 617건(49.8%)으로 성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	617 (49.8)
여	623 (50.2)
계	1,240 (100.0)



* 실제 재학대 아동 수는 1,072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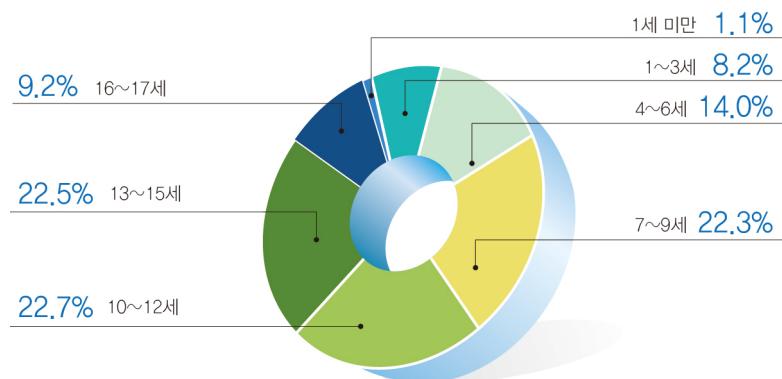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표 5-14〉와 같이 살펴보면, 만 10~12세가 281건(22.7%), 만 13~15세가 279건(22.5%), 만 7~9세가 277건(22.3%)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67.5%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1세 미만은 14건(1.1%)에 불과하였다.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14 (1.1)
1~3세	102 (8.2)
4~6세	173 (14.0)
7~9세	277 (22.3)
10~12세	281 (22.7)
13~15세	279 (22.5)
16~17세	114 (9.2)
계	1,240 (100.0)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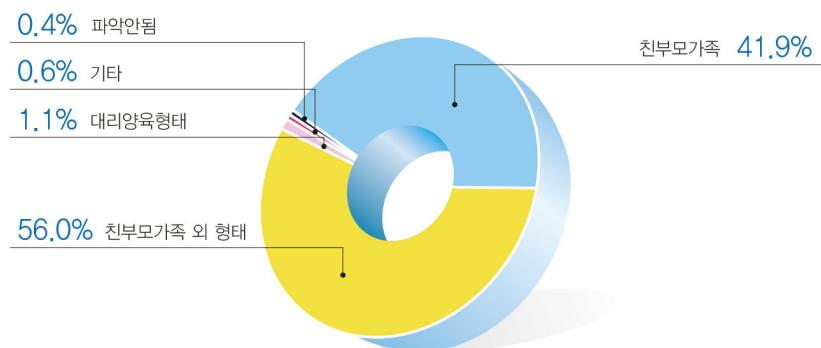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분포를 〈표 5-15〉와 같이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695건으로 전체의 56.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에서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275건(22.2%), 208건(16.8%)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이 18건(1.4%)으로 한부모 가족이 40.4%로 재학대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친부모가족은 519건(41.9%), 대리양육형태는 14건(1.1%)이었다.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519 (41.9)	275 (22.2)	208 (16.8)	18 (1.4)	100 (8.1)	23 (1.8)	71 (5.7)	695 (56.0)	1 (0.1)	1 (0.1)	12 (1.0)	14 (1.1)	7 (0.6)	5 (0.4)	1,240 (100.0)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을 〈표 5-16〉과 같이 살펴보면, 적응 및 행동 특성이 1,224건(37.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적응 및 행동 특성 중에서도 반항·충동·공격성이 189건(5.8%), 거짓말 145건(4.4%), 학습문제 131건(4.0%), 학교 부적응 121건(3.7%), 약물·흡연·음주 103건(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이 1,066건(32.5%)으로 나타났는데, 불안과 주의산만, 우울이 각각 249건(7.6%), 186건(5.7%), 104건(3.2%)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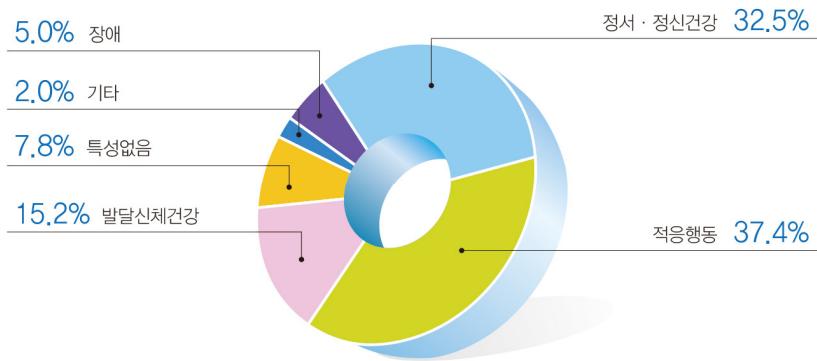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할 때 공격성과 반항, 충동 등의 적응·행동 특성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정신건강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적응·행동 특성이나 정서·정신건강 특성을 가진 재학대 사례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수의 약 70%로 나타났다.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194.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장애	신체적 장애	21 (0.6)
	정신적 장애	78 (2.4)
	장애의심	65 (2.0)
	소 계	164 (5.0)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186 (5.7)
	과잉행동	88 (2.7)
	인터넷(게임)중독	37 (1.1)
	불안	249 (7.6)
	애착문제	99 (3.0)
	무력감	60 (1.8)
	우울	104 (3.2)
	낮은 자아존중감	97 (3.0)
	성격 및 기질문제	88 (2.7)
	탐식 및 결식	58 (1.8)
	소 계	1,066 (32.5)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89 (5.8)
	거짓말	145 (4.4)
	도벽	80 (2.4)
	기출	95 (2.9)
	약물·흡연·음주	103 (3.1)
	성문제	27 (0.8)
	학교 부적응	121 (3.7)
	잦은 결석, 무단 결과	94 (2.9)
	늦은 귀가	84 (2.6)
	학습문제	131 (4.0)
	폭력행동	58 (1.8)
	비행집단활동	28 (0.9)
	불건전한 또래관계	38 (1.2)
	대인관계기피	31 (0.9)
	소 계	1,224 (37.4)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52 (1.6)
	언어문제	121 (3.7)
	영양결핍	32 (1.0)
	대소변문제	35 (1.1)
	위생문제	185 (5.6)
	턱(음성, 신체, 뚜렷)	8 (0.2)
	잦은 병치료, 허약	23 (0.7)
	주요병력	43 (1.3)
	소 계	499 (15.2)
특성없음		257 (7.8)
기타		65 (2.0)
계		3,275 (100.0)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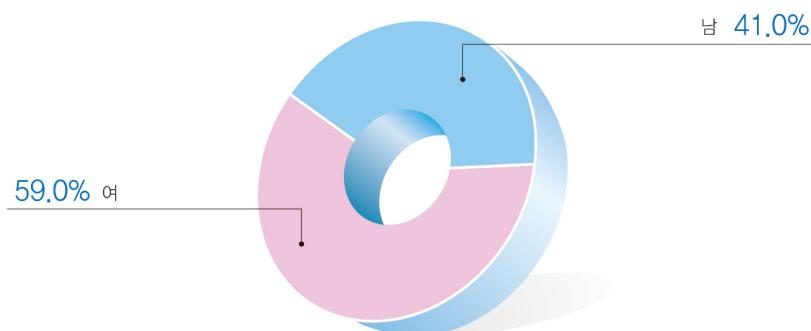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표 5-17〉과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732건(59.0%)으로 남성 508건(41.0%) 보다 약 18%포인트 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학대행위자 의 성별 결과와 달리 재학대 사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	508 (41.0)
여	732 (59.0)
계	1,240 (100.0)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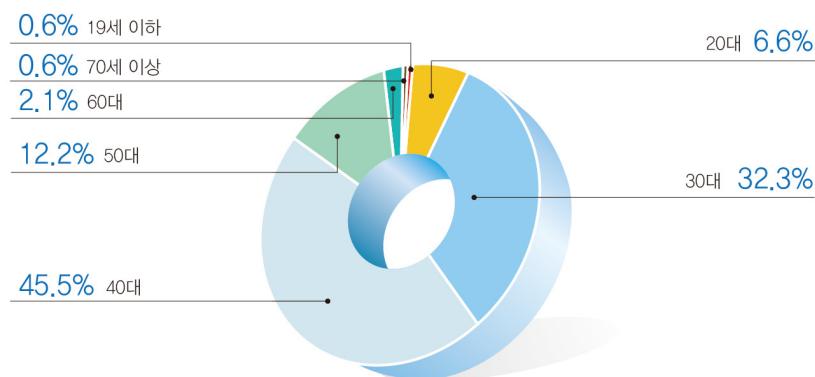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표 5-18〉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564건(45.5%)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는 401건(32.3%), 50대가 151건(12.2%), 20대가 82건(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약 77% 이상이 30~40대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8 (0.6)
20~29세	82 (6.6)
30~39세	401 (32.3)
40~49세	564 (45.5)
50~59세	151 (12.2)
60~69세	26 (2.1)
70세 이상	8 (0.6)
계	1,240 (100.0)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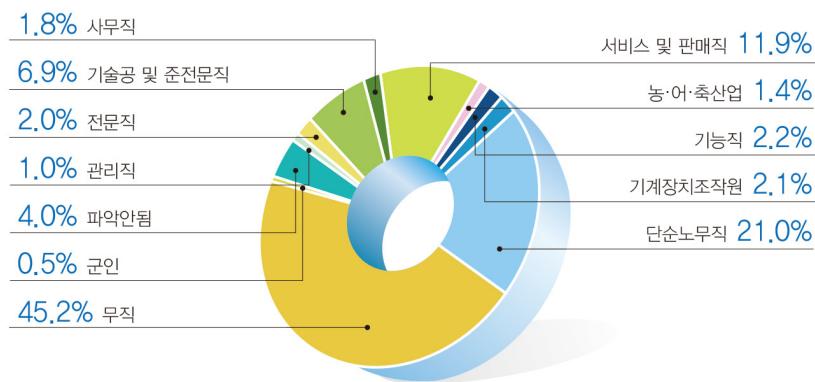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분포를 〈표 5-19〉와 같이 살펴보면, 무직이 561건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60건(21.0%), 서비스 및 판매직 148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무직과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45.4%로 조사되었는데(〈표 4-10〉참조),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는 20.8%포인트 더 높은 66.2%의 비율을 보였다.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	건수(비율)
관리직	12 (1.0)
전문직	25 (2.0)
기술공 및 준전문직	86 (6.9)
사무직	22 (1.8)
서비스 및 판매직	148 (11.9)
농·어·축산업	17 (1.4)
기능직	27 (2.2)
기계장치조작원	26 (2.1)
단순노무직	260 (21.0)
무직	561 (45.2)
군인	6 (0.5)
파악 안 됨	50 (4.0)
계	1,240 (100.0)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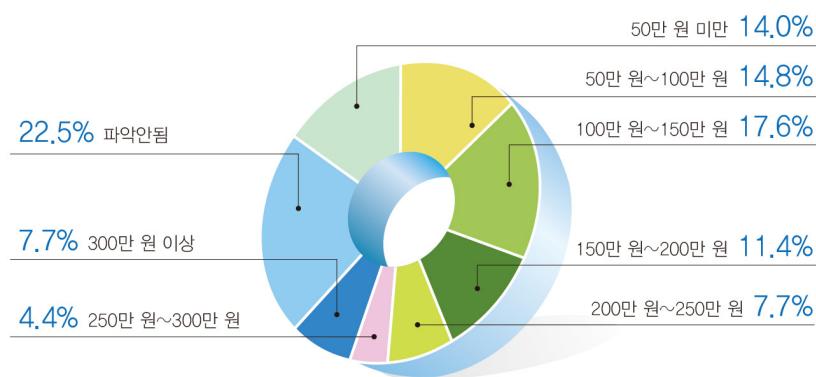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을 〈표 5-20〉과 같이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218건(17.6%),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84건(14.8%), 50만 원 미만이 174건(14.0%)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6.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95건(7.7%)으로 조사되었고,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279건(22.5%)이었다.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 건, %)

소득	건수(비율)
50만 원 미만	174 (14.0)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84 (14.8)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18 (17.6)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41 (11.4)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95 (7.7)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4 (4.4)
300만 원 이상	95 (7.7)
파악 안 됨	279 (22.5)
계	1,240 (100.0)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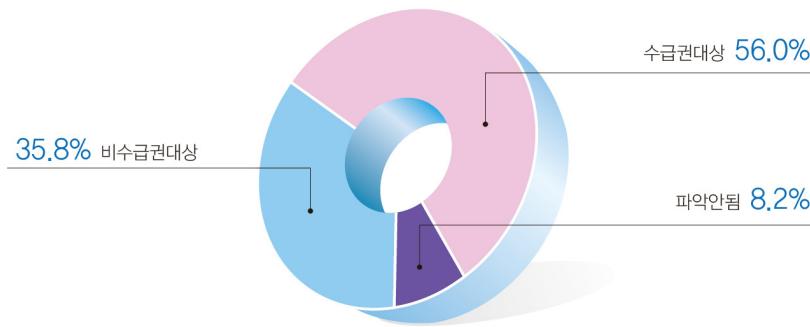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5-21〉과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이 694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56.0%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수급권 대상은 444건(35.8%)이었고, 파악이 안 된 사례는 102건(8.2%)으로 나타났다.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694 (56.0)
비수급권 대상	444 (35.8)
파악안됨	102 (8.2)
계	1,240 (100.0)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22〉와 같이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587건(3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대 사례의 3명 중 1명은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1,008건(21.4%), 알콜 및 약물·게임 등의 중독문제가 406건(8.6%), 부부 및 가족 갈등이 396건(8.4%)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35 (0.7)
정신적 장애	54 (1.1)
장애 의심	65 (1.4)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587 (33.7)
중독문제	406 (8.6)
질환문제	107 (2.3)
성격 및 기질문제	323 (6.9)
위생문제	112 (2.4)
나태 및 무기력	95 (2.0)
난독해, 난작문	7 (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008 (21.4)
어릴 적 학대 경험	78 (1.7)
폭력성	227 (4.8)
전과력	54 (1.1)
성문제	32 (0.7)
원치 않은 아동	20 (0.4)
부부 및 가족 갈등	396 (8.4)
종교문제	13 (0.3)
특성없음	66 (1.4)
파악안됨	26 (0.6)
계	4,7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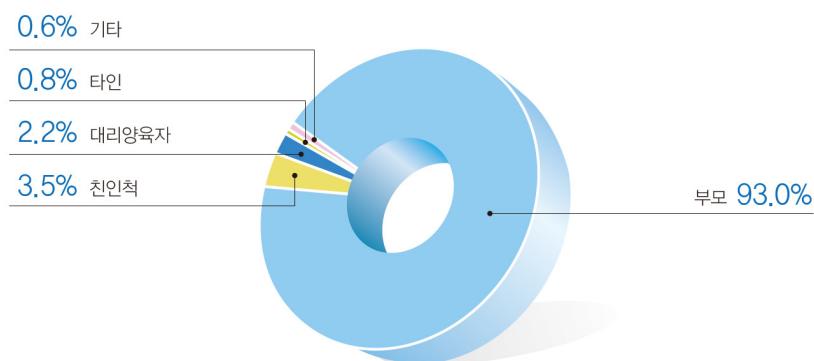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23〉과 같이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1,153건(93.0%)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43건(3.5%),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27건(2.2%)으로 나타났다.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647 (52.2)
	친모	444 (35.8)
	계부	25 (2.0)
	계모	36 (2.9)
	양부	0 (0.0)
	양모	1 (0.1)
	소 계	1,153 (93.0)
친인척	친조부	5 (0.4)
	친조모	8 (0.6)
	외조부	0 (0.0)
	외조모	3 (0.2)
	친인척	22 (1.8)
	형제·자매	5 (0.4)
	소 계	43 (3.5)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2 (1.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1)
	보육교직원	1 (0.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0.2)
	소 계	27 (2.2)
타인	이웃	5 (0.4)
	낯선 사람	5 (0.4)
	소 계	10 (0.8)
기타		7 (0.6)
계		1,240 (100.0)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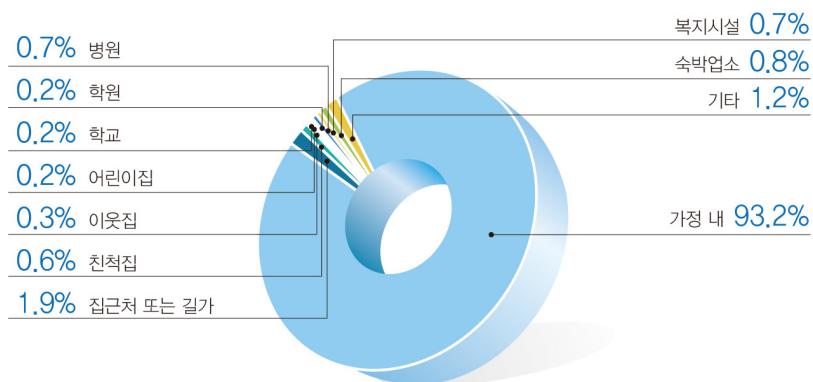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24>와 같이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1,156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93.2%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2.3%였던 것에 비교하면 재학대 사례는 약 10%포인트 더 높았다. 다음으로 집근처 또는 길가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23건(1.9%)으로 나타났다.

<표 5-24>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120 (90.3)
	학대행위자 가정 내	36 (2.9)
	소 계	1,156 (93.2)
집근처 또는 길가	집근처 또는 길가	23 (1.9)
	친척집	7 (0.6)
	이웃집	4 (0.3)
	어린이집	3 (0.2)
	학교	3 (0.2)
	학원	2 (0.2)
	병원	9 (0.7)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6 (0.5)
	기타복지시설	2 (0.2)
	소 계	8 (0.7)
숙박업소	숙박업소	10 (0.8)
	기타	15 (1.2)
계		1,240 (100.0)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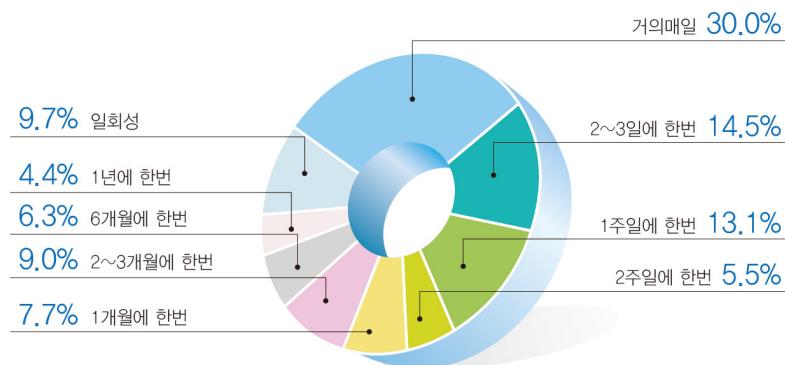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발생빈도를 〈표 5-25〉와 같이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재학대 사례가 372건(3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이 180건(14.5%), 일주일에 한 번이 162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매우 빈번하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비율은 57.6%로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일회성의 재학대 사례는 120건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372 (30.0)
2~3일에 한 번	180 (14.5)
일주일에 한 번	162 (13.1)
2주일에 한 번	68 (5.5)
1개월에 한 번	95 (7.7)
2~3개월에 한 번	111 (9.0)
6개월에 한 번	78 (6.3)
1년에 한 번	54 (4.4)
일회성	120 (9.7)
계	1,240 (100.0)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표 5-26〉과 같이 살펴보면 사례판단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311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17건(17.5%), 2년~3년 사이가 215건(17.3%), 3년 이상이 190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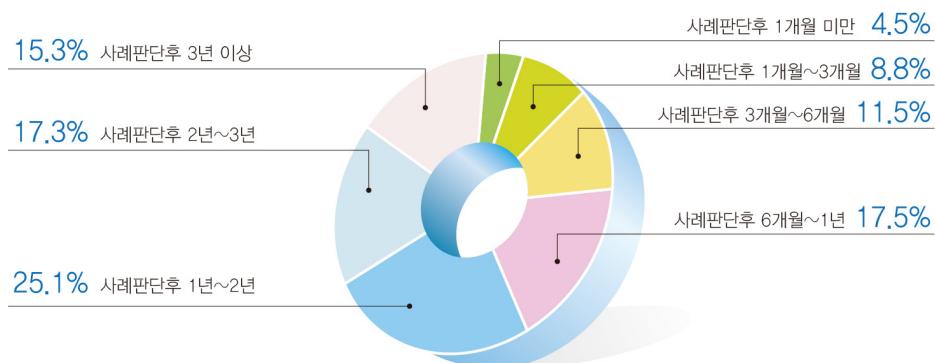
다시 말해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전체 재학대의 57.7%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례판단 후 1개월 미만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비율이 전체 재학대의 42.3%로 작년에 비해 5.7%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대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상태 및 가정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조정하며 사례종결 후에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아동안전 및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의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과 다양한 지역사회체계를 통하여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건수(비율)
사례판단 후 1개월 미만	56 (4.5)
사례판단 후 1개월~3개월	109 (8.8)
사례판단 후 3개월~6개월	142 (11.5)
사례판단 후 6개월~1년	217 (17.5)
사례판단 후 1년~2년	311 (25.1)
사례판단 후 2년~3년	215 (17.3)
사례판단 후 3년 이상	190 (15.3)
계	1,240 (100.0)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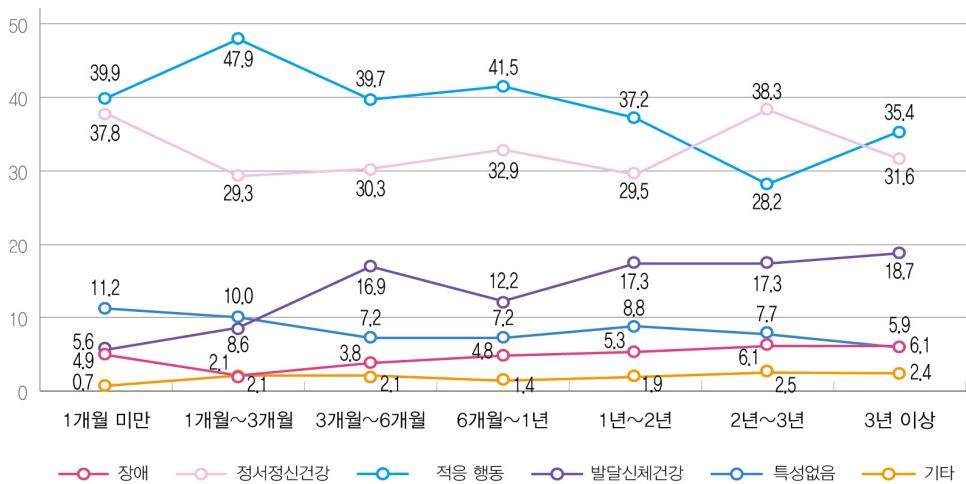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27>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 시기 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년~3년 사이를 제외하고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적용·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발달·신체·건강, 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7>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건, %)

피해아동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장애	신체적 장애	2 (1.4)	1 (0.4)	1 (0.3)	4 (0.6)	4 (0.6)	5 (0.8)	4 (0.8)	
	정신적 장애	2 (1.4)	3 (1.1)	8 (2.1)	12 (1.9)	27 (3.8)	13 (2.1)	13 (2.6)	
	장애 의심	3 (2.1)	2 (0.7)	6 (1.5)	14 (2.2)	7 (1.0)	19 (3.1)	14 (2.8)	
	소 계	7 (4.9)	6 (2.1)	15 (3.8)	30 (4.8)	38 (5.3)	37 (6.1)	31 (6.1)	
정서 정신 건강	주의산만	9 (6.3)	20 (7.1)	20 (5.1)	42 (6.7)	40 (5.6)	35 (5.7)	20 (3.9)	
	과잉행동	1 (0.7)	8 (2.9)	9 (2.3)	16 (2.6)	22 (3.1)	21 (3.4)	11 (2.2)	
	인터넷(게임)중독	2 (1.4)	1 (0.4)	4 (1.0)	9 (1.4)	8 (1.1)	7 (1.1)	6 (1.2)	
	불안	14 (9.8)	20 (7.1)	29 (7.4)	46 (7.4)	53 (7.4)	53 (8.7)	34 (6.7)	
	애착문제	6 (4.2)	9 (3.2)	8 (2.1)	21 (3.4)	16 (2.2)	24 (3.9)	15 (2.9)	
	무력감	4 (2.8)	4 (1.4)	8 (2.1)	10 (1.6)	12 (1.7)	9 (1.5)	13 (2.6)	
	우울	8 (5.6)	4 (1.4)	9 (2.3)	24 (3.8)	18 (2.5)	24 (3.9)	17 (3.3)	
	낮은 자아존중감	4 (2.8)	5 (1.8)	8 (2.1)	19 (3.0)	19 (2.6)	24 (3.9)	18 (3.5)	
	성격 및 기질문제	4 (2.8)	8 (2.9)	13 (3.3)	10 (1.6)	16 (2.2)	23 (3.8)	14 (2.8)	
	탐식 및 결식	2 (1.4)	3 (1.1)	10 (2.6)	8 (1.3)	8 (1.1)	14 (2.3)	13 (2.6)	
	소 계	54 (37.8)	82 (29.3)	118 (30.3)	205 (32.9)	212 (29.5)	234 (38.3)	161 (31.6)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4 (2.8)	23 (8.2)	21 (5.4)	39 (6.3)	38 (5.3)	36 (5.9)	28 (5.5)	
	거짓말	7 (4.9)	18 (6.4)	18 (4.6)	35 (5.6)	27 (3.8)	18 (2.9)	22 (4.3)	
	도벽	2 (1.4)	6 (2.1)	14 (3.6)	14 (2.2)	20 (2.8)	11 (1.8)	13 (2.6)	
	기출	6 (4.2)	15 (5.4)	14 (3.6)	19 (3.0)	20 (2.8)	9 (1.5)	12 (2.4)	
	약물흡연음주	8 (5.6)	10 (3.6)	18 (4.6)	26 (4.2)	19 (2.6)	15 (2.5)	7 (1.4)	
	성문제	3 (2.1)	0 (0.0)	3 (0.8)	5 (0.8)	6 (0.8)	3 (0.5)	7 (1.4)	
	학교부적응	2 (1.4)	12 (4.3)	15 (3.8)	27 (4.3)	29 (4.0)	23 (3.8)	13 (2.6)	
	잦은 결석·무단결과	2 (1.4)	14 (5.0)	10 (2.6)	23 (3.7)	20 (2.8)	8 (1.3)	17 (3.3)	
	늦은귀가	5 (3.5)	8 (2.9)	11 (2.8)	15 (2.4)	19 (2.6)	9 (1.5)	17 (3.3)	
	학습문제	8 (5.6)	11 (3.9)	16 (4.1)	20 (3.2)	31 (4.3)	21 (3.4)	24 (4.7)	
	폭력행동	1 (0.7)	5 (1.8)	8 (2.1)	15 (2.4)	13 (1.8)	6 (1.0)	10 (2.0)	
	비행집단활동	3 (2.1)	6 (2.1)	2 (0.5)	7 (1.1)	4 (0.6)	4 (0.7)	2 (0.4)	
	불건전한 또래관계	3 (2.1)	6 (2.1)	3 (0.8)	7 (1.1)	13 (1.8)	3 (0.5)	3 (0.6)	
	대인관계기피	3 (2.1)	0 (0.0)	2 (0.5)	7 (1.1)	8 (1.1)	6 (1.0)	5 (1.0)	
	소 계	57 (39.9)	134 (47.9)	155 (39.7)	259 (41.5)	267 (37.2)	172 (28.2)	180 (35.4)	
발달 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0 (0.0)	5 (1.8)	5 (1.3)	11 (1.8)	11 (1.5)	10 (1.6)	10 (2.0)	
	언어문제	2 (1.4)	9 (3.2)	11 (2.8)	24 (3.8)	27 (3.8)	28 (4.6)	20 (3.9)	
	영양결핍	0 (0.0)	3 (1.1)	4 (1.0)	5 (0.8)	8 (1.1)	8 (1.3)	4 (0.8)	
	대소변문제	1 (0.7)	1 (0.4)	6 (1.5)	5 (0.8)	7 (1.0)	2 (0.3)	13 (2.6)	
	위생문제	1 (0.7)	3 (1.1)	27 (6.9)	23 (3.7)	56 (7.8)	41 (6.7)	34 (6.7)	
	틱	0 (0.0)	0 (0.0)	3 (0.8)	0 (0.0)	1 (0.1)	2 (0.3)	2 (0.4)	
	잦은 병치례·허약	1 (0.7)	0 (0.0)	6 (1.5)	2 (0.3)	5 (0.7)	6 (1.0)	3 (0.6)	
	주요병력	3 (2.1)	3 (1.1)	4 (1.0)	6 (1.0)	9 (1.3)	9 (1.5)	9 (1.8)	
	소 계	8 (5.6)	24 (8.6)	66 (16.9)	76 (12.2)	124 (17.3)	106 (17.3)	95 (18.7)	
	특성없음	16 (11.2)	28 (10.0)	28 (7.2)	45 (7.2)	63 (8.8)	47 (7.7)	30 (5.9)	
	기타	1 (0.7)	6 (2.1)	8 (2.1)	9 (1.4)	14 (1.9)	15 (2.5)	12 (2.4)	
계		143 (100.0)	280 (100.0)	390 (100.0)	624 (100.0)	718 (100.0)	611 (100.0)	509 (100.0)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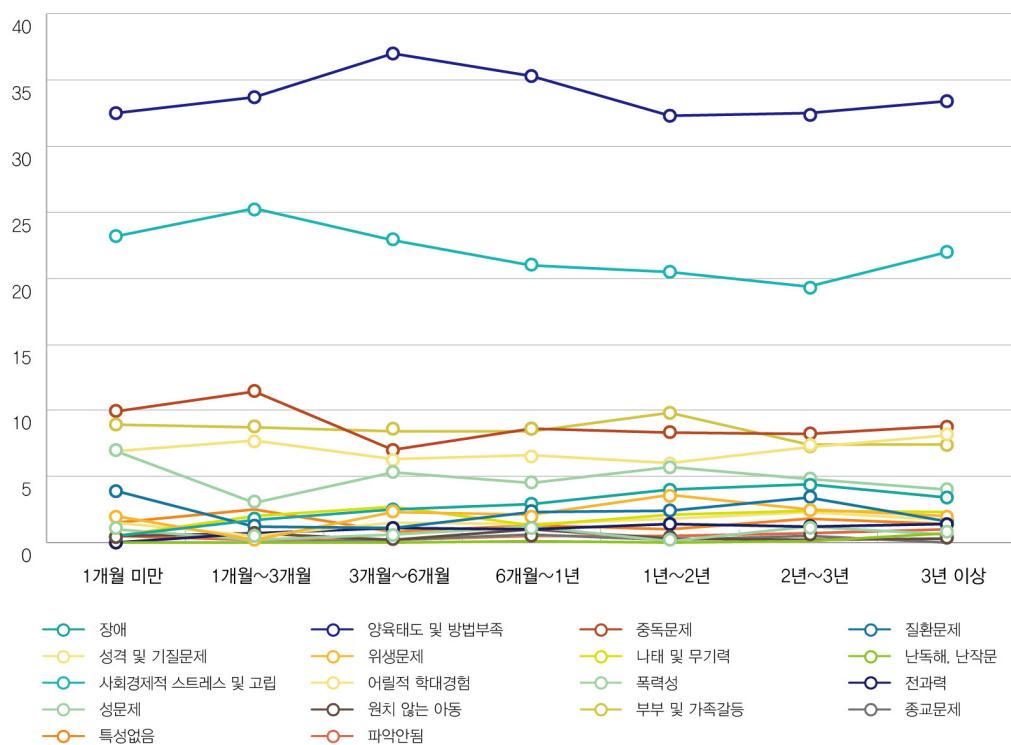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28〉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시기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2%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중독문제, 부부 및 가족 갈등 순으로 높았다.

〈표 5-28〉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학대행위자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신체적 장애	0 (0.0)	3 (0.7)	0 (0.0)	4 (0.5)	10 (0.9)	9 (1.0)	9 (1.3)
정신적 장애	1 (0.5)	4 (1.0)	8 (1.5)	4 (0.5)	16 (1.4)	11 (1.2)	10 (1.4)
장애의심	0 (0.0)	0 (0.0)	5 (1.0)	16 (1.9)	19 (1.7)	20 (2.2)	5 (0.7)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66 (32.5)	136 (33.7)	194 (37.0)	296 (35.3)	360 (32.3)	300 (32.5)	235 (33.4)
중독문제	20 (9.9)	46 (11.4)	37 (7.0)	72 (8.6)	93 (8.3)	76 (8.2)	62 (8.8)
질환문제	8 (3.9)	5 (1.2)	6 (1.1)	19 (2.3)	27 (2.4)	31 (3.4)	11 (1.6)
성격 및 기질문제	14 (6.9)	31 (7.7)	33 (6.3)	55 (6.6)	67 (6.0)	66 (7.2)	57 (8.1)
위상문제	4 (2.0)	1 (0.2)	12 (2.3)	18 (2.1)	40 (3.6)	23 (2.5)	14 (2.0)
나태 및 무기력	1 (0.5)	8 (2.0)	14 (2.7)	11 (1.3)	23 (2.1)	22 (2.4)	16 (2.3)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1 (0.1)	0 (0.0)	1 (0.1)	5 (0.7)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7 (23.2)	102 (25.3)	120 (22.9)	176 (21.0)	229 (20.5)	179 (19.4)	155 (22.0)
어릴적 학대경험	3 (1.5)	2 (0.5)	8 (1.5)	12 (1.4)	20 (1.8)	21 (2.3)	12 (1.7)
폭력성	14 (6.9)	12 (3.0)	28 (5.3)	38 (4.5)	63 (5.7)	44 (4.8)	28 (4.0)
전과력	0 (0.0)	3 (0.7)	6 (1.1)	8 (1.0)	16 (1.4)	11 (1.2)	10 (1.4)
성문제	2 (1.0)	1 (0.2)	3 (0.6)	10 (1.2)	1 (0.1)	11 (1.2)	4 (0.6)
원치 않는 아동	1 (0.5)	3 (0.7)	1 (0.2)	8 (1.0)	3 (0.3)	2 (0.2)	2 (0.3)
부부 및 가족갈등	18 (8.9)	35 (8.7)	44 (8.4)	70 (8.4)	109 (9.8)	68 (7.4)	52 (7.4)
종교문제	0 (0.0)	0 (0.0)	1 (0.2)	5 (0.6)	2 (0.2)	5 (0.5)	0 (0.0)
특성없음	3 (1.5)	10 (2.5)	4 (0.8)	11 (1.3)	11 (1.0)	17 (1.8)	10 (1.4)
파악안됨	1 (0.5)	1 (0.2)	1 (0.2)	4 (0.5)	6 (0.5)	6 (0.7)	7 (1.0)
계	203 (100.0)	403 (100.0)	525 (100.0)	838 (100.0)	1,115 (100.0)	923 (100.0)	704 (100.0)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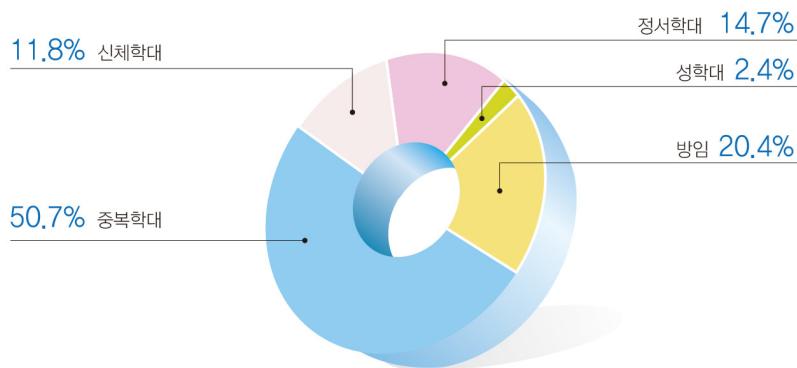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5-29〉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629건 (50.7%), 방임 253건(20.4%), 정서학대 182건(14.7%), 신체학대 146건(11.8%), 성학대 30건 (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경우 중복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재학대 사례에서는 중복학대 다음으로 방임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2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46 (11.8)
정서학대	182 (14.7)
성학대	30 (2.4)
방임	253 (20.4)
중복학대	629 (50.7)
계	1,240 (100.0)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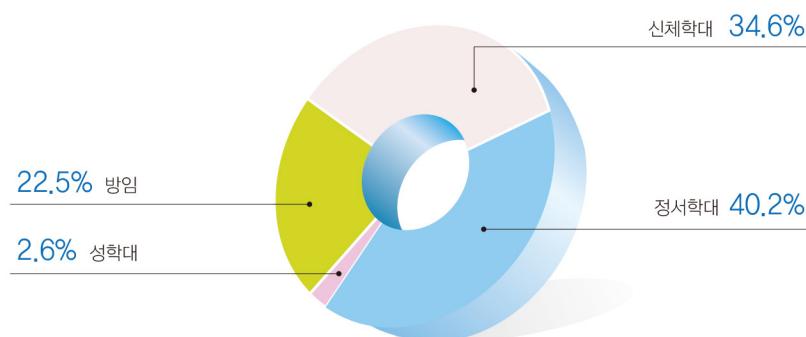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 총 1,240건 중에서 중복학대를 미분류하여 학대 유형으로 집계한 결과 총 1,951건 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학대는 정서학대로 785건(40.2%), 다음으로 신체학대 676건(34.6%), 방임 439건(22.5%), 성학대 51건(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676 (34.6)
정서학대	785 (40.2)
성학대	51 (2.6)
방임	439 (22.5)
계	1,951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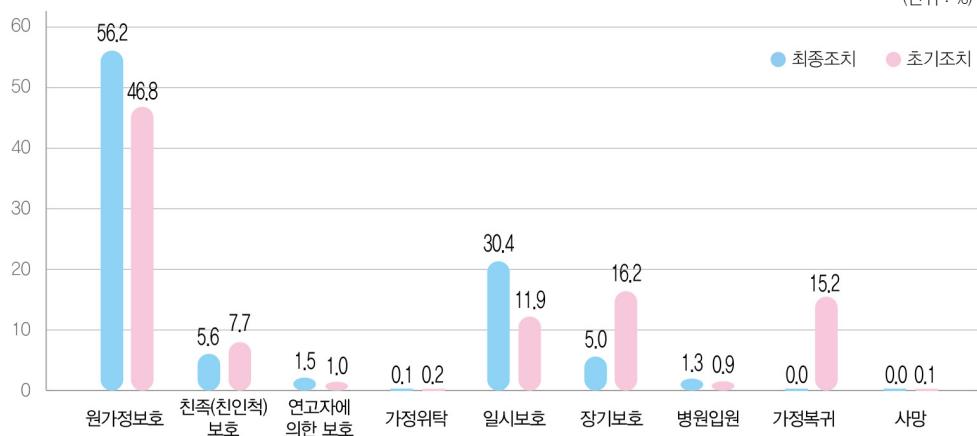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31>과 같이 제시하였다.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원가정보호가 697건(56.2%), 분리보호 543건(43.8%)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없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 사례의 원가정보호율은 약 17%포인트 낮았으나 분리보호율은 약 17%포인트 높았다.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가 580건(46.8%), 분리보호 470건(37.9%)이었으며,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89건(15.2%)이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 사례의 최종 조치결과 원가정보호율은 약 19%포인트 낮았고, 분리보호율은 약 14%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재학대 사례는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했을 때보다 분리보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가정보호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의 경우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초기에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아동의 가정보호 여부 판단을 위해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사정도구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 구분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가정 복귀	사망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초기조치	697(56.2)	69(5.6)	18 (1.5)	1(0.1)	377(30.4)	62(5.0)	16 (1.3)	543(43.8)	-	0 (0.0)	1,240 (100.0)
최종조치	580(46.8)	95(7.7)	12 (1.0)	3(0.2)	148(11.9)	201(16.2)	11 (0.9)	470(37.9)	189(15.2)	1 (0.1)	1,240 (100.0)

(단위 : %)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 조치결과를 〈표 5-32〉와 같이 제시하였다.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지속관찰이 736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가 387건(31.2%), 아동과의 분리가 68건(5.5%),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49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695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3.4%포인트 감소한 수치였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443건(35.7%)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4.5%포인트 증가한 수치였다. 아동과의 분리는 68건(5.5%),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는 34건(2.7%)이었다.

〈표 5-3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조치	지속관찰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초기조치		736 (59.4)	387 (31.2)	49 (4.0)	68 (5.5)	1,240 (100.0)
최종조치		695 (56.0)	443 (35.7)	34 (2.7)	68 (5.5)	1,240 (100.0)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8) 2014/2015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2014년과 2015년에 판단된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33>과 같이 살펴보면,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율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의 분리보호율 보다 약 15%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원가정보호율은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보다 약 18%포인트 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사망의 경우 재학대 사례보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더 사망률이 높았다. 이는 재학대 사례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최악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33〉 2014/2015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단위 : 건 %)

조치결과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초기조치결과	원가정보호		15,416 (74.2)	534 (55.6)
	분리 보호	친족(친인척)보호	1,476 (7.1)	63 (6.6)
		연고자에 의한 보호	255 (1.2)	9 (0.9)
		가정위탁	21 (0.1)	1 (0.1)
		일시보호	2,887 (13.9)	280 (29.2)
		장기보호	519 (2.5)	57 (5.9)
		병원입원	175 (0.8)	16 (1.7)
	소 계		5,333 (25.7)	426 (44.4)
	사망		33 (0.2)	0 (0.0)
	소 계		20,782 (100.0)	960 (100.0)
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		13,994 (67.3)	432 (45.0)
	분리 보호	친족(친인척)보호	1,875 (9.0)	79 (8.2)
		연고자에 의한 보호	177 (0.9)	10 (1.0)
		가정위탁	84 (0.4)	2 (0.2)
		일시보호	1,125 (5.4)	125 (13.0)
		장기보호	1,642 (7.9)	148 (15.4)
		병원입원	102 (0.5)	13 (1.4)
	소 계		5,005 (24.1)	377 (39.3)
	가정복귀		1,748 (8.4)	150 (15.6)
	사망		35 (0.2)	1 (0.1)
	소 계		20,782 (100.0)	960 (100.0)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34〉와 같이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약 8.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의 경우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재학대 미발생 사례가 재학대 사례보다 7.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2014/2015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단위 : 건, %)

관계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부모	친부	9,415 (45.3)	484 (50.4)
	친모	6,362 (30.6)	324 (33.8)
	계부	407 (2.0)	18 (1.9)
	계모	451 (2.2)	28 (2.9)
	양부	34 (0.2)	0 (0.0)
	양모	31 (0.1)	1 (0.1)
	소 계	16,700 (80.4)	855 (89.1)
친인척	친조부	158 (0.8)	7 (0.7)
	친조모	238 (1.1)	9 (0.9)
	외조부	45 (0.2)	0 (0.0)
	외조모	104 (0.5)	2 (0.2)
	친인척	414 (2.0)	16 (1.7)
	형제, 자매	123 (0.6)	5 (0.5)
	소 계	1,082 (5.2)	39 (4.1)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76 (1.3)	28 (2.9)
	유치원교직원	303 (1.5)	0 (0.0)
	초·중·고교 직원	379 (1.8)	0 (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43 (0.7)	1 (0.1)
	보육교직원	719 (3.5)	3 (0.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69 (2.3)	4 (0.4)
	기타시설 종사자	51 (0.2)	0 (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6 (0.0)	0 (0.0)
	위탁부	12 (0.1)	1 (0.1)
	위탁모	12 (0.1)	0 (0.0)
	베이비시터	14 (0.1)	0 (0.0)
	소 계	2,384 (11.5)	37 (3.9)
타인	이웃	148 (0.7)	10 (1.0)
	낯선 사람	144 (0.7)	9 (0.9)
	소 계	292 (1.4)	19 (2.0)
기타		286 (1.4)	9 (0.9)
파악안됨		38 (0.2)	1 (0.1)
계		20,782 (100.0)	960 (100.0)

다. 가족유형 비교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 가족유형을 〈표 5-35〉와 같이 비교해보면, 친부모가정에서 재학대 미발생 사례 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약 8.5%포인트 더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와 반대로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 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약 1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특히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재학대 사례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는 아동이 친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족, 재혼가정 등 친부모가족 외 형태에서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5-35〉 2014/2015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단위 : 건, %)

가족유형	재학대 여부	재학대 사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친부모가족외형태	친부모가정	9,863 (47.5)	374 (39.0)
	부자가정	3,517 (16.9)	225 (23.4)
	모자가정	2,739 (13.2)	158 (16.5)
	미혼부모가정	429 (2.1)	19 (2.0)
	재혼가정	1,537 (7.4)	82 (8.5)
	친인척보호	595 (2.9)	22 (2.3)
	동거(사실혼포함)	700 (3.4)	56 (5.8)
	소년소녀가정	17 (0.1)	0 (0.0)
대리양육 형태	소 계	9,534 (45.9)	562 (58.5)
	가정위탁	54 (0.3)	1 (0.1)
	입양가정	72 (0.3)	1 (0.1)
	시설보호	349 (1.7)	14 (1.5)
기타	소 계	475 (2.3)	16 (1.7)
	파악안됨	98 (0.5)	3 (0.3)
	계	812 (3.9)	5 (0.5)
	계	20,782 (100.0)	960 (100.0)

* Hamilton, C. E. & Browne, K. D. (1999). Recurrent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 A survey of referrals to Police Child Protection Units in England. *Child Maltreatment*, 4(4), 275-286.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한국의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

3. 사망아동 사례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5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19건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0.2%를 차지하였다*. 19건 중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 후에 신고접수가 된 사례는 15건이며, 신고접수 당시 위독한 상태이다가 현장조사 진행 중 사망한 사례는 4건이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표 5-36〉에 제시된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36〉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아동사례 비율	사망아동 명수	피해아동 중 사망아동 비율
19	0.2	16	0.2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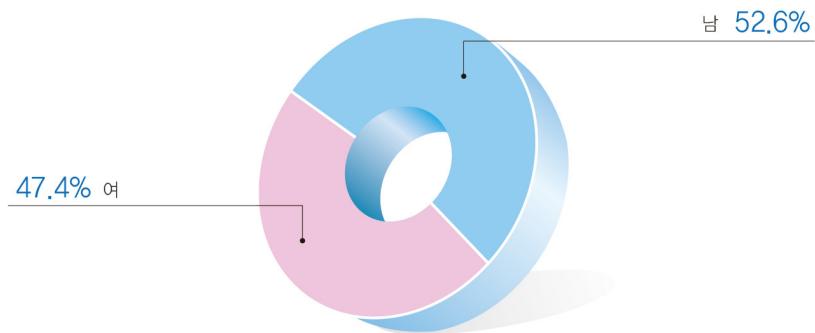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성별을 〈표 5-37〉과 같이 살펴본 결과, 남아가 10건(52.6%), 여아가 9건(47.4%)으로 성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	10 (52.6)
여	9 (47.4)
계	19 (100.0)

* 2015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 19건이며, 실제 사망아동 수는 총 16명임. 이는 2명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2건으로 집계 되기 때문에 사례 건수와 실제 아동 수는 다를 수 있음.



〈그림 5-2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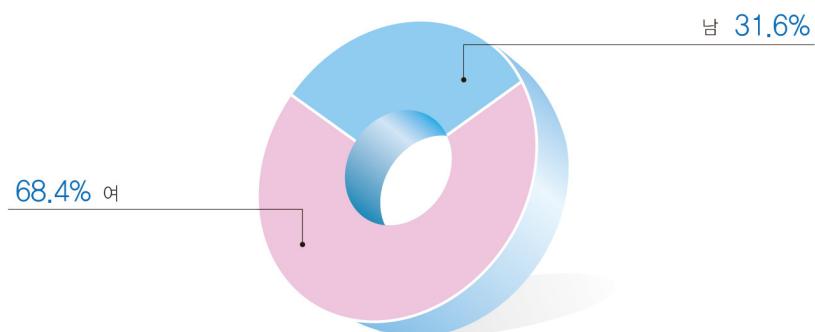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3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총 19건의 사례 중 남성은 6건(31.6%), 여성은 13건(68.4%)으로 여성 학대행위자가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	6 (31.6)
여	13 (68.4)
계	19 (100.0)



〈그림 5-2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39>와 같이 교차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4건과 1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계부와 친조모, 부모의 동거인이 각각 1건이었다. 전체 사망아동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17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였는데, 30대가 11건(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건(26.3%), 20대 3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미만이 7건(36.8%), 만 1세가 2건(10.5%), 만 2세가 4건(21.1%)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13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만 6세, 만 7세, 만 16세는 각각 1건(5.3%)이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세 미만의 영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의 사망사례는 친부모가 학대행위자일 경우 92.3%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학대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사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가운데 0~3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7%로 나타나 영유아의 아동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알 수 있다**.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시 18세 미만의 또 다른 아동이 학대가정 내에 있을 경우 또 다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 및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대행위자가 구속 수감되어 있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가해부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 전부터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부부를 대상으로 체벌 금지 등 올바른 훈육 방법 및 아동 인권에 기반한 양육교육,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Pritchard, C. and Sharples, A. (2008). "Violent deaths of children in England and Wales compared to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1974-2002: Possible evidence for improving child protection?" Child Abuse Review 17: 297-312.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6). Child maltreatment 2014.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구분 (만)	친부			친모			계부	친조모	부모의 동거인	계
	30대	40대	소계	20대	30대	40대				
1세미만	1 (14.3)	0 (0.0)	1 (14.3)	2 (28.6)	2 (28.6)	1 (14.3)	5 (71.4)	0 (0.0)	0 (0.0)	1 (14.3)
1세	0 (0.0)	0 (0.0)	0 (0.0)	1 (50.0)	0 (0.0)	1 (50.0)	2 (100.0)	0 (0.0)	0 (0.0)	0 (0.0)
2세	1 (25.0)	1 (25.0)	2 (50.0)	0 (0.0)	2 (50.0)	0 (0.0)	2 (50.0)	0 (0.0)	0 (0.0)	0 (0.0)
5세	1 (33.3)	0 (0.0)	1 (33.3)	0 (0.0)	2 (66.7)	0 (0.0)	2 (66.7)	0 (0.0)	0 (0.0)	0 (0.0)
6세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7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6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계	3 (15.8)	1 (5.3)	4 (21.1)	3 (15.8)	7 (36.8)	2 (10.5)	12 (63.2)	1 (5.3)	1 (5.3)	19 (100.0)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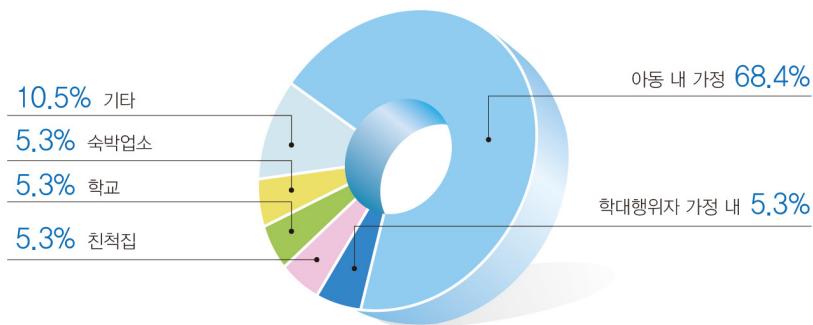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40〉과 같이 살펴보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3건(68.4%)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가정 내, 친척집, 학교, 숙박업소(찜질방, 여관 등)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각각 1건(5.3%)으로 나타났고, 기타 발생 사례(주유소)는 2건(10.5%)이었다.

〈표 5-40〉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명수(비율)
아동 가정 내	13 (68.4)	11 (68.8)
학대행위자 가정 내	1 (5.3)	1 (6.3)
친척집	1 (5.3)	1 (6.3)
학교	1 (5.3)	1 (6.3)
숙박업소	1 (5.3)	1 (6.3)
기타	2 (10.5)	1 (6.3)
계	19 (100.0)	16 (100.0)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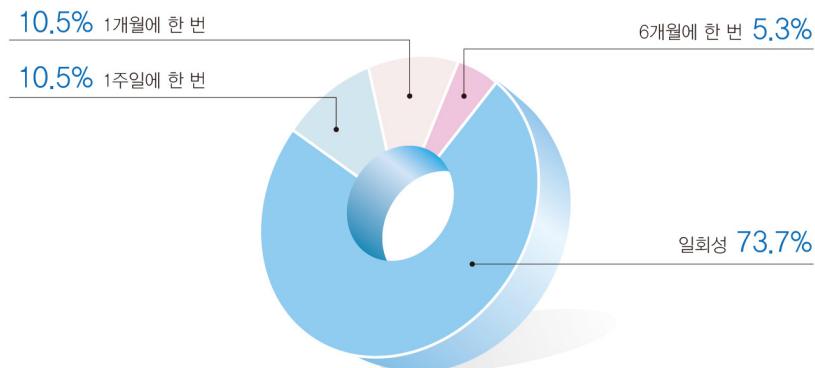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 발생빈도를 〈표 5-41〉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일회성이 14건으로 73.7%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회적인 학대행위라도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회성 폭력과 가혹행위의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위험가정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1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학대를 받는 사망아동 사례는 각각 2건(10.5%), 6개월에 한번은 1건(5.3%)으로 나타났다.

〈표 5-41〉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명수(비율)
1주일에 한 번	2 (10.5)	1 (6.3)
1개월에 한 번	2 (10.5)	1 (6.3)
6개월에 한 번	1 (5.3)	1 (6.3)
일회성	14 (73.7)	13 (81.3)
계	19 (100.0)	16 (100.0)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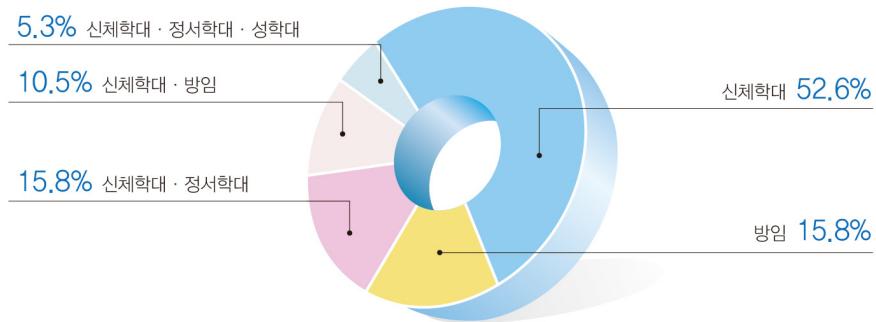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표 5-42〉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10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복학대가 6건(31.6%)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례가 3건(15.8%)이었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사례가 2건(10.5%), 신체학대와 정서 학대, 성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례가 1건(5.3%)으로 나타났다. 방임이 단독으로 발생한 사례는 3건(15.8%)이었다. 이처럼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체별이 훈육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에 대한 체벌은 2015년 9월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금지했지만 민법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5-42〉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명수(비율)
신체학대	10 (52.6)	9 (56.3)
방임	3 (15.8)	2 (12.5)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3 (15.8)
	신체학대·방임	2 (10.5)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1 (5.3)
	소 계	6 (31.6)
계	19 (100.0)	16 (100.0)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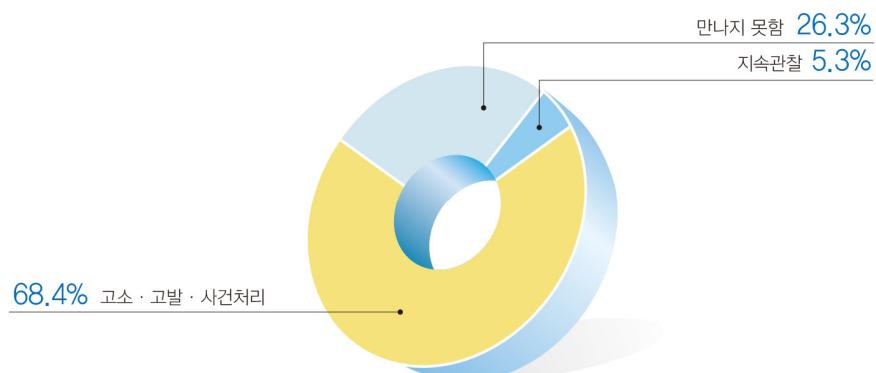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43〉과 같이 살펴보면 고소·고발·사건처리가 13건(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5건(26.3%), 지속관찰 1건(5.3%)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 신고접수 되어 이미 학대행위자가 구속 수감 중이거나 사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1 (5.3)	13 (68.4)	5 (26.3)	19 (100.0)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본 절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총 1,189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0.1%에 해당한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427 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296건(24.9%), 초·중·고교 직원 234건(19.7%), 유치원교직원 203건(17.1%), 기타시설 종사자 22건(1.9%),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7건(0.6%) 순으로 나타났다.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표 5-44〉와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도 지역에서 234건(1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143건(12.0%), 경상북도 142건 (11.9%) 순이었다. 종사자 유형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경기도가 126건 (29.5%)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충청북도가 104건(51.2%)으로 가장 높았다. 초·중·고교 직원은 경상남도가 46건(19.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23건(41.6%)로 경상북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전라북도가 8건(36.4%),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경기도가 4건(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서울	서울특별시	4 (0.9)	0 (0.0)	0 (0.0)	4 (1.4)	0 (0.0)	0 (0.0)	8 (0.7)
	서울특별시동부	4 (0.9)	1 (0.5)	8 (3.4)	2 (0.7)	0 (0.0)	0 (0.0)	15 (1.3)
	서울강서	8 (1.9)	0 (0.0)	0 (0.0)	0 (0.0)	0 (0.0)	0 (0.0)	8 (0.7)
	서울은평	3 (0.7)	0 (0.0)	1 (0.4)	0 (0.0)	0 (0.0)	0 (0.0)	4 (0.3)
	서울영등포	4 (0.9)	0 (0.0)	26 (11.1)	0 (0.0)	1 (4.5)	2 (28.6)	33 (2.8)
	서울성북	6 (1.4)	1 (0.5)	3 (1.3)	0 (0.0)	0 (0.0)	0 (0.0)	10 (0.8)
	서울마포	7 (1.6)	0 (0.0)	4 (1.7)	0 (0.0)	0 (0.0)	1 (14.3)	12 (1.0)
소 계		36 (8.4)	2 (1.0)	42 (17.9)	6 (2.0)	1 (4.5)	3 (42.9)	90 (7.6)
부산	부산광역시	5 (1.2)	1 (0.5)	17 (7.3)	6 (2.0)	0 (0.0)	0 (0.0)	29 (2.4)
	부산동부	1 (0.2)	2 (1.0)	4 (1.7)	1 (0.3)	0 (0.0)	0 (0.0)	8 (0.7)
	부산서부	0 (0.0)	2 (1.0)	21 (9.0)	0 (0.0)	0 (0.0)	0 (0.0)	23 (1.9)
	소 계	6 (1.4)	5 (2.5)	42 (17.9)	7 (2.4)	0 (0.0)	0 (0.0)	60 (5.0)
대구	대구광역시	11 (2.6)	0 (0.0)	0 (0.0)	1 (0.3)	1 (4.5)	0 (0.0)	13 (1.1)
	대구남부	0 (0.0)	1 (0.5)	0 (0.0)	1 (0.3)	0 (0.0)	0 (0.0)	2 (0.2)
	소 계	11 (2.6)	1 (0.5)	0 (0.0)	2 (0.7)	1 (4.5)	0 (0.0)	15 (1.3)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 중 · 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인천	인천광역시	4 (0.9)	19 (9.4)	0 (0.0)	0 (0.0)	0 (0.0)	0 (0.0)	23 (1.9)
	인천북부	27 (6.3)	0 (0.0)	0 (0.0)	0 (0.0)	0 (0.0)	0 (0.0)	27 (2.3)
	인천미추홀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2 (0.2)
	인천남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33 (7.7)	19 (9.4)	0 (0.0)	0 (0.0)	0 (0.0)	0 (0.0)	52 (4.4)
광주	광주광역시	5 (1.2)	3 (1.5)	3 (1.3)	5 (1.7)	0 (0.0)	0 (0.0)	16 (1.3)
대전	대전광역시	1 (0.2)	0 (0.0)	7 (3.0)	1 (0.3)	0 (0.0)	0 (0.0)	9 (0.8)
울산	울산광역시	18 (4.2)	0 (0.0)	4 (1.7)	1 (0.3)	0 (0.0)	0 (0.0)	23 (1.9)
경기	경기도	11 (2.6)	1 (0.5)	2 (0.9)	1 (0.3)	0 (0.0)	0 (0.0)	15 (1.3)
	경기북부	17 (4.0)	0 (0.0)	1 (0.4)	0 (0.0)	0 (0.0)	0 (0.0)	18 (1.5)
	경기성남	4 (0.9)	4 (2.0)	0 (0.0)	7 (2.4)	0 (0.0)	0 (0.0)	15 (1.3)
	경기고양	5 (1.2)	0 (0.0)	18 (7.7)	9 (3.0)	1 (4.5)	2 (28.6)	35 (2.9)
	경기부천	8 (1.9)	3 (1.5)	1 (0.4)	0 (0.0)	1 (4.5)	0 (0.0)	13 (1.1)
	경기화성	4 (0.9)	4 (2.0)	1 (0.4)	1 (0.3)	0 (0.0)	0 (0.0)	10 (0.8)
	경기남양주	22 (5.2)	0 (0.0)	0 (0.0)	3 (1.0)	0 (0.0)	0 (0.0)	25 (2.1)
	안산시	37 (8.7)	2 (1.0)	13 (5.6)	14 (4.7)	4 (18.2)	2 (28.6)	72 (6.1)
	경기용인	7 (1.6)	0 (0.0)	9 (3.8)	2 (0.7)	0 (0.0)	0 (0.0)	18 (1.5)
	경기시흥	6 (1.4)	1 (0.5)	0 (0.0)	1 (0.3)	0 (0.0)	0 (0.0)	8 (0.7)
	경기평택	5 (1.2)	0 (0.0)	0 (0.0)	0 (0.0)	0 (0.0)	0 (0.0)	5 (0.4)
	소 계	126 (29.5)	15 (7.4)	45 (19.2)	38 (12.8)	6 (27.3)	4 (57.1)	234 (19.7)
강원	강원도	10 (2.3)	16 (7.9)	0 (0.0)	6 (2.0)	0 (0.0)	0 (0.0)	32 (2.7)
	강원동부	12 (2.8)	0 (0.0)	0 (0.0)	0 (0.0)	0 (0.0)	0 (0.0)	12 (1.0)
	원주시	7 (1.6)	1 (0.5)	2 (0.9)	0 (0.0)	0 (0.0)	0 (0.0)	10 (0.8)
	강원남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29 (6.8)	17 (8.4)	2 (0.9)	6 (2.0)	0 (0.0)	0 (0.0)	54 (4.5)
충북	충청북도	26 (6.1)	104 (51.2)	1 (0.4)	0 (0.0)	0 (0.0)	0 (0.0)	131 (11.0)
	충북북부	6 (1.4)	0 (0.0)	0 (0.0)	0 (0.0)	1 (4.5)	0 (0.0)	7 (0.6)
	충북남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32 (7.5)	104 (51.2)	1 (0.4)	0 (0.0)	1 (4.5)	0 (0.0)	138 (11.6)
충남	충청남도	4 (0.9)	17 (8.4)	0 (0.0)	9 (3.0)	0 (0.0)	0 (0.0)	30 (2.5)
	충청남도남부	10 (2.3)	0 (0.0)	0 (0.0)	0 (0.0)	0 (0.0)	0 (0.0)	10 (0.8)
	충청남도서부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소 계	15 (3.5)	17 (8.4)	0 (0.0)	9 (3.0)	0 (0.0)	0 (0.0)	41 (3.4)
전북	전라북도	6 (1.4)	1 (0.5)	2 (0.9)	9 (3.0)	8 (36.4)	0 (0.0)	26 (2.2)
	전라북도서부	2 (0.5)	2 (1.0)	21 (9.0)	26 (8.8)	0 (0.0)	0 (0.0)	51 (4.3)
	전라북도동부	6 (1.4)	0 (0.0)	0 (0.0)	0 (0.0)	0 (0.0)	0 (0.0)	6 (0.5)
	소 계	14 (3.3)	3 (1.5)	23 (9.8)	35 (11.8)	8 (36.4)	0 (0.0)	83 (7.0)
전남	전라남도	1 (0.2)	4 (2.0)	1 (0.4)	0 (0.0)	0 (0.0)	0 (0.0)	6 (0.5)
	전남서부권	7 (1.6)	0 (0.0)	5 (2.1)	12 (4.1)	0 (0.0)	0 (0.0)	24 (2.0)
	전남중부권	0 (0.0)	9 (4.4)	4 (1.7)	22 (7.4)	0 (0.0)	0 (0.0)	35 (2.9)
	소 계	8 (1.9)	13 (6.4)	10 (4.3)	34 (11.5)	0 (0.0)	0 (0.0)	65 (5.5)
경북	경북남부	1 (0.2)	0 (0.0)	0 (0.0)	1 (0.3)	0 (0.0)	0 (0.0)	2 (0.2)
	경북북부	3 (0.7)	0 (0.0)	4 (1.7)	2 (0.7)	0 (0.0)	0 (0.0)	9 (0.8)
	경북동부	5 (1.2)	0 (0.0)	0 (0.0)	120 (40.5)	4 (18.2)	0 (0.0)	129 (10.8)
	경북서부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2 (0.2)
	소 계	11 (2.6)	0 (0.0)	4 (1.7)	123 (41.6)	4 (18.2)	0 (0.0)	142 (11.9)
경남	경상남도	49 (11.5)	3 (1.5)	44 (18.8)	17 (5.7)	0 (0.0)	0 (0.0)	113 (9.5)
	경남서부	11 (2.6)	0 (0.0)	0 (0.0)	12 (4.1)	1 (4.5)	0 (0.0)	24 (2.0)
	김해시	3 (0.7)	1 (0.5)	2 (0.9)	0 (0.0)	0 (0.0)	0 (0.0)	6 (0.5)
	소 계	63 (14.8)	4 (2.0)	46 (19.7)	29 (9.8)	1 (4.5)	0 (0.0)	143 (12.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9 (4.4)	0 (0.0)	5 (2.1)	0 (0.0)	0 (0.0)	0 (0.0)	24 (2.0)
	서귀포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19 (4.4)	0 (0.0)	5 (2.1)	0 (0.0)	0 (0.0)	0 (0.0)	24 (2.0)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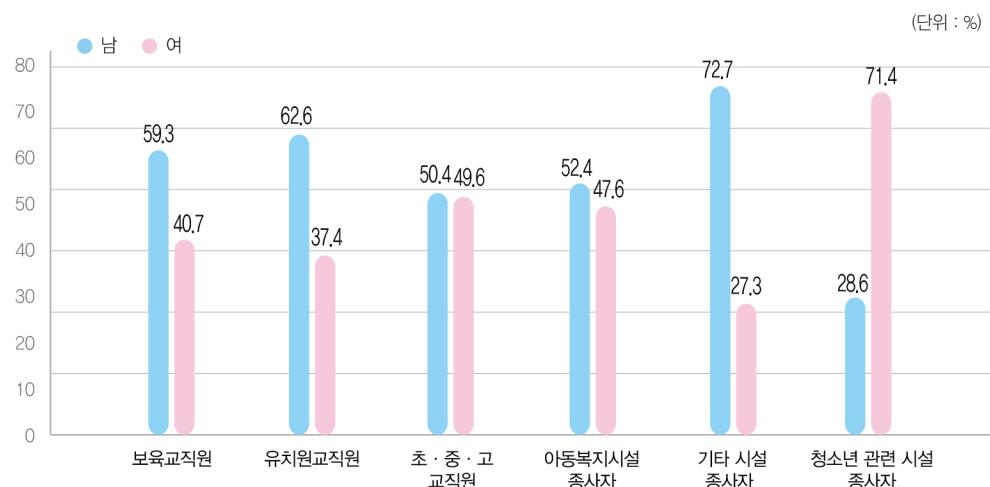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성별을 <표 5-45>와 같이 살펴보면 남아가 671건(56.4%), 여아가 518건(43.6%)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았다. 종사자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4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 성별	남	여	계
보육교직원	253 (59.3)	174 (40.7)	427 (100.0)
유치원교직원	127 (62.6)	76 (37.4)	203 (100.0)
초·중·고교 직원	118 (50.4)	116 (49.6)	234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5 (52.4)	141 (47.6)	296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6 (72.7)	6 (27.3)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 (28.6)	5 (71.4)	7 (100.0)
계	671 (56.4)	518 (43.6)	1,189 (100.0)



<그림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연령을 <표 5-46>과 같이 살펴보면, 만 4~6세가 340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 1~3세가 290건(24.4%), 만 10~12세가 177건(14.9%),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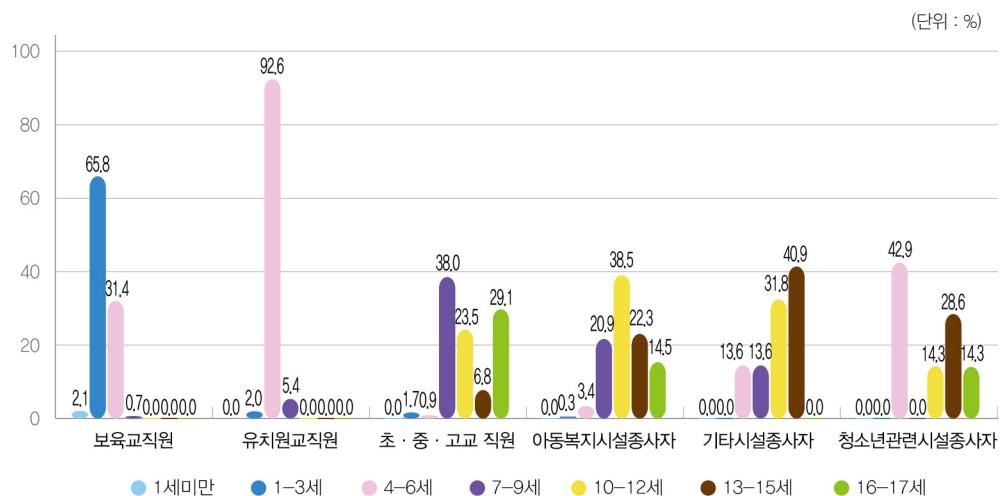
7~9세 168건(1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만 1~3세가 281건(65.8%), 만 4~6세 134건(31.4%) 순으로 높았고, 유치원 교직원의 경우 만 4~6세가 188건(92.6%)으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였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만 7~9세 89건(38.0%), 만 16~17세가 68건(29.1%), 만 10~12세 55건(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0~12세 114건(38.5%), 만 13~15세 66건(22.3%), 만 7~9세 62건(20.9%) 순으로 높았고,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3~15세 9건(40.9%), 만 10~12세 7건(31.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4~6세가 3건(42.9%), 만 13~15세가 2건(28.6%), 만 10~12세와 만 16~17세가 각각 1건(14.3%)으로 나타났다.

〈표 5-4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 유형 연령(만)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1세 미만	9 (2.1)	0 (0.0)	0 (0.0)	0 (0.0)	0 (0.0)	0 (0.0)	9 (0.8)
1~3세	281 (65.8)	4 (2.0)	4 (1.7)	1 (0.3)	0 (0.0)	0 (0.0)	290 (24.4)
4~6세	134 (31.4)	188 (92.6)	2 (0.9)	10 (3.4)	3 (13.6)	3 (42.9)	340 (28.6)
7~9세	3 (0.7)	11 (5.4)	89 (38.0)	62 (20.9)	3 (13.6)	0 (0.0)	168 (14.1)
10~12세	0 (0.0)	0 (0.0)	55 (23.5)	114 (38.5)	7 (31.8)	1 (14.3)	177 (14.9)
13~15세	0 (0.0)	0 (0.0)	16 (6.8)	66 (22.3)	9 (40.9)	2 (28.6)	93 (7.8)
16~17세	0 (0.0)	0 (0.0)	68 (29.1)	43 (14.5)	0 (0.0)	1 (14.3)	112 (9.4)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그림 5-3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표 5-47>과 같이 살펴보면 특성없음이 894건(62.4%)으로 기타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 그리고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가 정서·정신건강 특성에서 각각 111건(22.4%), 34건(14.9%), 41건(15.6%), 18건(47.4%), 2건(25.0%)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적응·행동의 특성에서 72건(18.0%)으로 특성없음을 제외하고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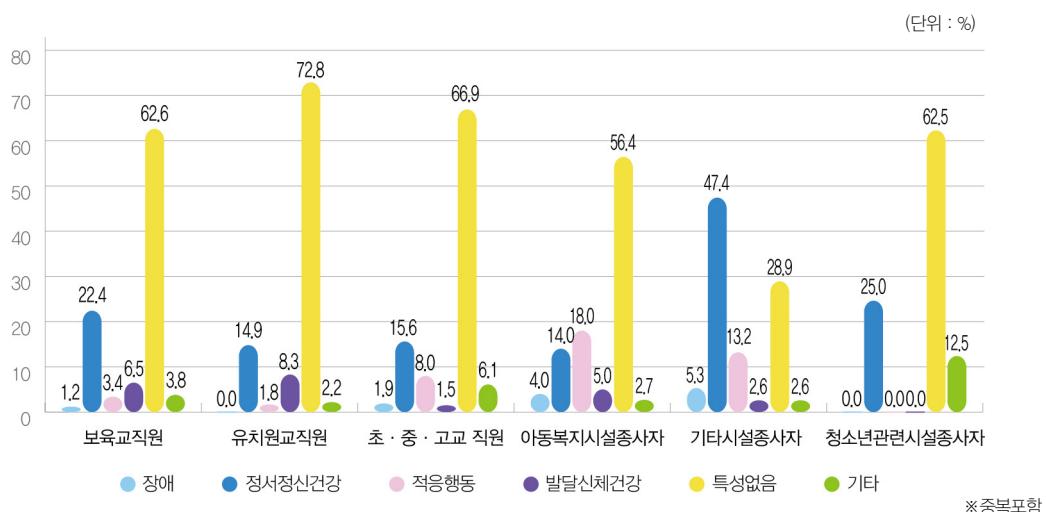
(단위 : 건, %)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 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장애	신체적 장애	2 (0.4)	0 (0.0)	0 (0.0)	1 (0.2)	0 (0.0)	0 (0.0)	3 (0.2)
	정신적 장애	1 (0.2)	0 (0.0)	5 (1.9)	12 (3.0)	2 (5.3)	0 (0.0)	20 (1.4)
	장애의심	3 (0.6)	0 (0.0)	0 (0.0)	3 (0.7)	0 (0.0)	0 (0.0)	6 (0.4)
	소 계	6 (1.2)	0 (0.0)	5 (1.9)	16 (4.0)	2 (5.3)	0 (0.0)	29 (2.0)
정서 정신 건강	주의산만	31 (6.3)	13 (5.7)	12 (4.6)	10 (2.5)	3 (7.9)	2 (25.0)	71 (5.0)
	과잉행동	16 (3.2)	3 (1.3)	6 (2.3)	9 (2.2)	2 (5.3)	0 (0.0)	36 (2.5)
	인터넷(게임)중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불안	43 (8.7)	8 (3.5)	16 (6.1)	7 (1.7)	5 (13.2)	0 (0.0)	79 (5.5)
	애착문제	8 (1.6)	2 (0.9)	0 (0.0)	9 (2.2)	0 (0.0)	0 (0.0)	19 (1.3)
	무력감	3 (0.6)	0 (0.0)	0 (0.0)	0 (0.0)	3 (7.9)	0 (0.0)	6 (0.4)
	우울	2 (0.4)	1 (0.4)	2 (0.8)	1 (0.2)	0 (0.0)	0 (0.0)	6 (0.4)
	낮은 자아존중감	0 (0.0)	1 (0.4)	0 (0.0)	3 (0.7)	3 (7.9)	0 (0.0)	7 (0.5)
	성격 및 기질문제	6 (1.2)	5 (2.2)	5 (1.9)	17 (4.2)	2 (5.3)	0 (0.0)	35 (2.4)
	탐식 및 결식	2 (0.4)	1 (0.4)	0 (0.0)	0 (0.0)	0 (0.0)	0 (0.0)	3 (0.2)
	소 계	111 (22.4)	34 (14.9)	41 (15.6)	56 (14.0)	18 (47.4)	2 (25.0)	262 (18.3)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1 (2.2)	4 (1.8)	6 (2.3)	14 (3.5)	2 (5.3)	0 (0.0)	37 (2.6)
	거짓말	0 (0.0)	0 (0.0)	3 (1.1)	12 (3.0)	1 (2.6)	0 (0.0)	16 (1.1)
	도벽	0 (0.0)	0 (0.0)	0 (0.0)	7 (1.7)	1 (2.6)	0 (0.0)	8 (0.6)
	가출	0 (0.0)	0 (0.0)	0 (0.0)	6 (1.5)	0 (0.0)	0 (0.0)	6 (0.4)
	약물·흡연·음주	0 (0.0)	0 (0.0)	2 (0.8)	8 (2.0)	0 (0.0)	0 (0.0)	10 (0.7)
	성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학교 부적응	0 (0.0)	0 (0.0)	2 (0.8)	3 (0.7)	1 (2.6)	0 (0.0)	6 (0.4)
	잦은 결석·무단결과	0 (0.0)	0 (0.0)	1 (0.4)	4 (1.0)	0 (0.0)	0 (0.0)	5 (0.3)
	늦은 귀가	0 (0.0)	0 (0.0)	1 (0.4)	4 (1.0)	0 (0.0)	0 (0.0)	5 (0.3)
	학습문제	0 (0.0)	0 (0.0)	4 (1.5)	7 (1.7)	0 (0.0)	0 (0.0)	11 (0.8)
	폭력행동	5 (1.0)	0 (0.0)	0 (0.0)	6 (1.5)	0 (0.0)	0 (0.0)	11 (0.8)
	비행집단활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불건전한 또래 관계	0 (0.0)	0 (0.0)	0 (0.0)	1 (0.2)	0 (0.0)	0 (0.0)	1 (0.1)
	대인관계기피	1 (0.2)	0 (0.0)	2 (0.8)	0 (0.0)	0 (0.0)	0 (0.0)	3 (0.2)
	소 계	17 (3.4)	4 (1.8)	21 (8.0)	72 (18.0)	5 (13.2)	0 (0.0)	119 (8.3)

(계속)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발달 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5 (1.0)	2 (0.9)	0 (0.0)	3 (0.7)	0 (0.0)	0 (0.0)	0 (0.0)	10 (0.7)
	언어문제	17 (3.4)	8 (3.5)	1 (0.4)	5 (1.2)	0 (0.0)	0 (0.0)	0 (0.0)	31 (2.2)
	영양결핍	0 (0.0)	0 (0.0)	1 (0.4)	2 (0.5)	0 (0.0)	0 (0.0)	0 (0.0)	3 (0.2)
	대소변문제	5 (1.0)	2 (0.9)	0 (0.0)	0 (0.0)	0 (0.0)	0 (0.0)	0 (0.0)	7 (0.5)
	위생문제	1 (0.2)	1 (0.4)	0 (0.0)	2 (0.5)	0 (0.0)	0 (0.0)	0 (0.0)	4 (0.3)
	틱(음성,신체,뚜렷)	3 (0.6)	2 (0.9)	1 (0.4)	0 (0.0)	0 (0.0)	0 (0.0)	0 (0.0)	6 (0.4)
	잦은 병치료, 허약	0 (0.0)	1 (0.4)	1 (0.4)	2 (0.5)	0 (0.0)	0 (0.0)	0 (0.0)	4 (0.3)
	주요병력	1 (0.2)	3 (1.3)	0 (0.0)	6 (1.5)	1 (2.6)	0 (0.0)	0 (0.0)	11 (0.8)
	소 계	32 (6.5)	19 (8.3)	4 (1.5)	20 (5.0)	1 (2.6)	0 (0.0)	0 (0.0)	76 (5.3)
특성없음		310 (62.6)	166 (72.8)	176 (66.9)	226 (56.4)	11 (28.9)	5 (62.5)	5 (62.5)	894 (62.4)
기타		19 (3.8)	5 (2.2)	16 (6.1)	11 (2.7)	1 (2.6)	1 (12.5)	1 (12.5)	53 (3.7)
계		495 (100.0)	228 (100.0)	263 (100.0)	401 (100.0)	38 (100.0)	8 (100.0)	1,433 (100.0)	

※증복포함



〈그림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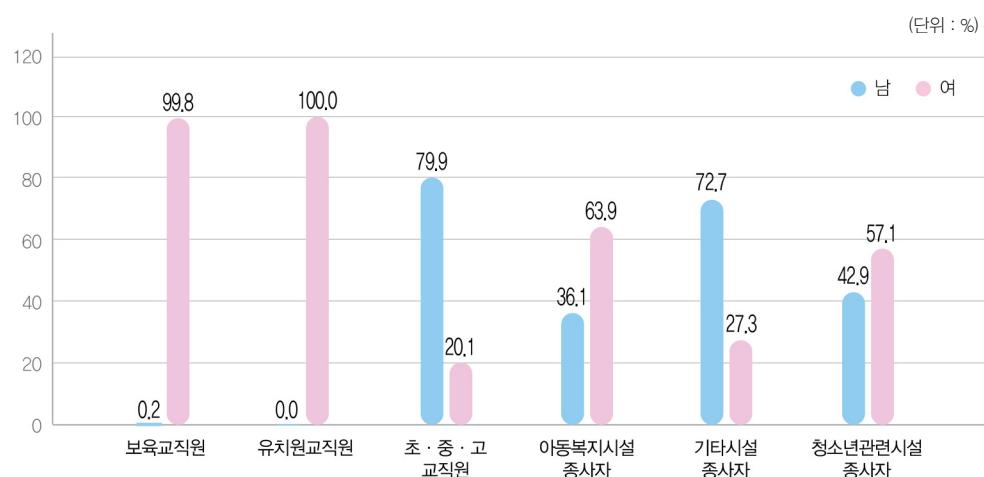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48>과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875건(73.6%), 남성이 314건(26.4%)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과 같은 경우 여성이 각각 426건(99.8%), 203건(100.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도 여성이 각각 189건(63.9%), 4건(57.1%)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남성이 187건(79.9%)으로 여성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시설 종사자는 남성이 16건(72.7%)로 집계되어 여성보다 약 2.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성별	남	여	계
보육교직원		1 (0.2)	426 (99.8)	427 (100.0)
유치원교직원		0 (0.0)	203 (100.0)	203 (100.0)
초·중·고교직원		187 (79.9)	47 (20.1)	234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07 (36.1)	189 (63.9)	296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6 (72.7)	6 (27.3)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 (42.9)	4 (57.1)	7 (100.0)
계		314 (26.4)	875 (73.6)	1,189 (100.0)



<그림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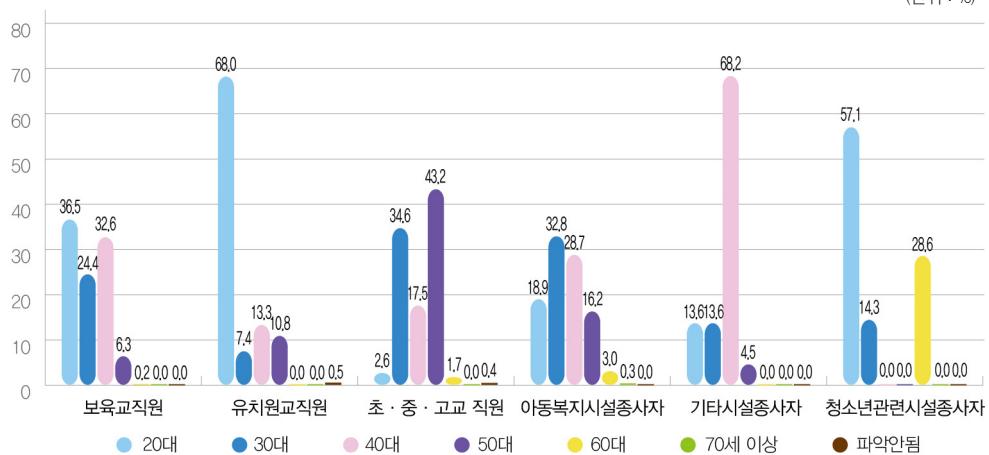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표 5-49>와 같이 살펴보면 20대가 363건(30.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40대와 30대가 각각 307건(25.8%), 301건(25.3%), 50대가 199건(16.7%)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20대(36.5%), 40대(32.6%), 30대(24.4%)로 20~40대에 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20대(68.0%)에 집중되어 있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50대(43.2%)가 가장 많았으며, 30대(34.6%), 40대(17.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30대(32.8%)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고루 분포하여 있었다. 기타시설 종사자는 40대(68.2%)에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20대(57.1%), 60대(2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연령(만)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20~29세	156 (36.5)	138 (68.0)	6 (2.6)	56 (18.9)	3 (13.6)	4 (57.1)	363 (30.5)
30~39세	104 (24.4)	15 (7.4)	81 (34.6)	97 (32.8)	3 (13.6)	1 (14.3)	301 (25.3)
40~49세	139 (32.6)	27 (13.3)	41 (17.5)	85 (28.7)	15 (68.2)	0 (0.0)	307 (25.8)
50~59세	27 (6.3)	22 (10.8)	101 (43.2)	48 (16.2)	1 (4.5)	0 (0.0)	199 (16.7)
60~69세	1 (0.2)	0 (0.0)	4 (1.7)	9 (3.0)	0 (0.0)	2 (28.6)	16 (1.3)
70세 이상	0 (0.0)	0 (0.0)	0 (0.0)	1 (0.3)	0 (0.0)	0 (0.0)	1 (0.1)
파악안됨	0 (0.0)	1 (0.5)	1 (0.4)	0 (0.0)	0 (0.0)	0 (0.0)	2 (0.2)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단위 : %)



<그림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50>과 같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297건(51.6%)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유치원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성없음이 각각 165건(75.3%), 161건(40.0%), 4건(57.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초·중·고교 직원과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147건(36.7%), 9건(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 종사자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신체적 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신적 장애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 (0.1)
장애의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97 (51.6)	47 (21.5)	147 (36.7)	152 (37.8)	9 (34.6)	2 (28.6)	654 (40.1)
중독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질환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성격 및 기질문제	34 (5.9)	1 (0.5)	56 (14.0)	30 (7.5)	5 (19.2)	0 (0.0)	126 (7.7)
위생문제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나태 및 무기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6 (8.0)	3 (1.4)	62 (15.5)	41 (10.2)	1 (3.8)	0 (0.0)	153 (9.4)
어릴 적 학대 경험	0 (0.0)	0 (0.0)	0 (0.0)	4 (1.0)	0 (0.0)	0 (0.0)	4 (0.2)
폭력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과력	0 (0.0)	0 (0.0)	1 (0.2)	1 (0.2)	0 (0.0)	0 (0.0)	2 (0.1)
성문제	0 (0.0)	0 (0.0)	34 (8.5)	9 (2.2)	0 (0.0)	0 (0.0)	43 (2.6)
원치 않은 아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부 및 가족갈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종교문제	0 (0.0)	0 (0.0)	0 (0.0)	4 (1.0)	0 (0.0)	0 (0.0)	4 (0.2)
특성없음	129 (22.4)	165 (75.3)	65 (16.2)	161 (40.0)	4 (15.4)	4 (57.1)	528 (32.4)
파악안됨	69 (12.0)	3 (1.4)	35 (8.7)	0 (0.0)	7 (26.9)	1 (14.3)	115 (7.1)
계	576 (100.0)	219 (100.0)	401 (100.0)	402 (100.0)	26 (100.0)	7 (100.0)	1,631 (100.0)

※증복포함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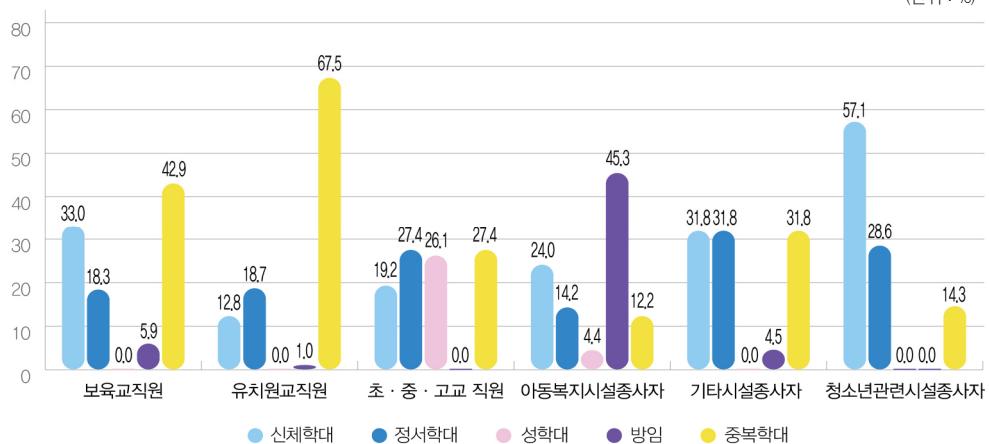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표 5-51〉과 같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중복학대가 각각 183건(42.9%), 137건(6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정서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64건(27.4%)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방임이 134건(45.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 중복학대가 각각 7건(31.8%)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4건(5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종사자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 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중 복 학 대	신체학대	141 (33.0)	26 (12.8)	45 (19.2)	71 (24.0)	7 (31.8)	4 (57.1)	294 (24.7)
	정서학대	78 (18.3)	38 (18.7)	64 (27.4)	42 (14.2)	7 (31.8)	2 (28.6)	231 (19.4)
	성학대	0 (0.0)	0 (0.0)	61 (26.1)	13 (4.4)	0 (0.0)	0 (0.0)	74 (6.2)
	방임	25 (5.9)	2 (1.0)	0 (0.0)	134 (45.3)	1 (4.5)	0 (0.0)	162 (13.6)
	신체학대·정서학대	126 (29.5)	136 (67.0)	58 (24.8)	27 (9.1)	7 (31.8)	1 (14.3)	355 (29.9)
	신체학대·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체학대·방임	2 (0.5)	0 (0.0)	0 (0.0)	1 (0.3)	0 (0.0)	0 (0.0)	3 (0.3)
	정서학대·성학대	0 (0.0)	0 (0.0)	6 (2.6)	4 (1.4)	0 (0.0)	0 (0.0)	10 (0.8)
	정서학대·방임	21 (4.9)	1 (0.5)	0 (0.0)	2 (0.7)	0 (0.0)	0 (0.0)	24 (2.0)
	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 복 학 대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34 (8.0)	0 (0.0)	0 (0.0)	2 (0.7)	0 (0.0)	0 (0.0)	36 (3.0)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183 (42.9)	137 (67.5)	64 (27.4)	36 (12.2)	7 (31.8)	1 (14.3)	428 (36.0)
	계	427 (100.0)	203 (100.0)	234 (100.0)	296 (100.0)	22 (100.0)	7 (100.0)	1,189 (100.0)

(단위 : %)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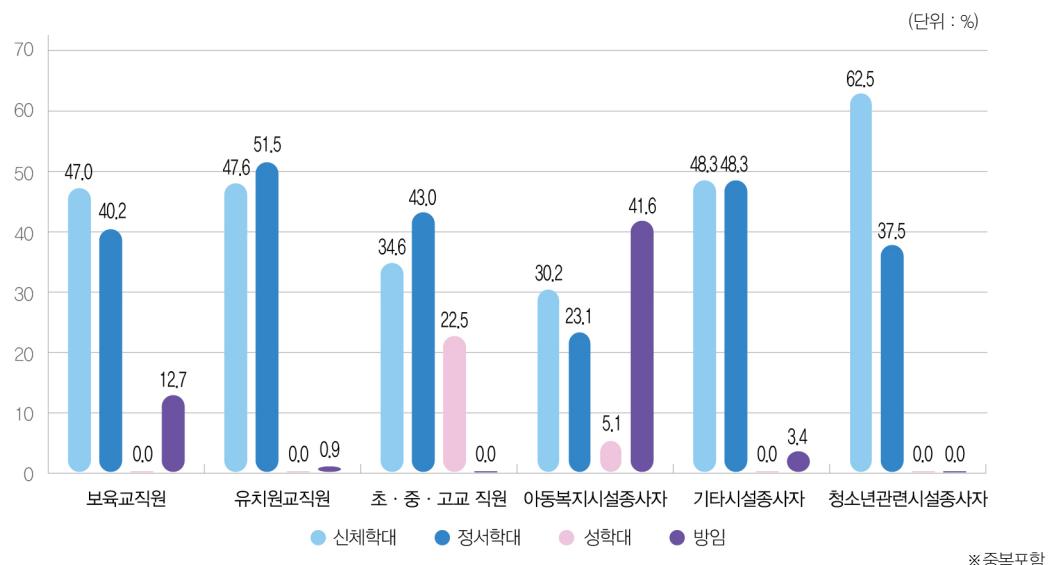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5-52>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688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656건(39.7%), 방임 225건(13.6%), 성학대 8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과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학대유형 중 신체학대가 각각 47.0%, 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치원교직원과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정서학대에서 각각 51.5%, 43.0%로 높은 학대 유형을 차지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방임이 41.6%로 가장 많았다. 기타시설 종사자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서 각각 48.3%로 나타났다.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 종사자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 중 ·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신체학대	303 (47.0)	162 (47.6)	103 (34.6)	101 (30.2)	14 (48.3)	5 (62.5)	688 (41.6)
정서학대	259 (40.2)	175 (51.5)	128 (43.0)	77 (23.1)	14 (48.3)	3 (37.5)	656 (39.7)
성학대	0 (0.0)	0 (0.0)	67 (22.5)	17 (5.1)	0 (0.0)	0 (0.0)	84 (5.1)
방임	82 (12.7)	3 (0.9)	0 (0.0)	139 (41.6)	1 (3.4)	0 (0.0)	225 (13.6)
계	644 (100.0)	340 (100.0)	298 (100.0)	334 (100.0)	29 (100.0)	8 (100.0)	1,653 (100.0)

※중복포함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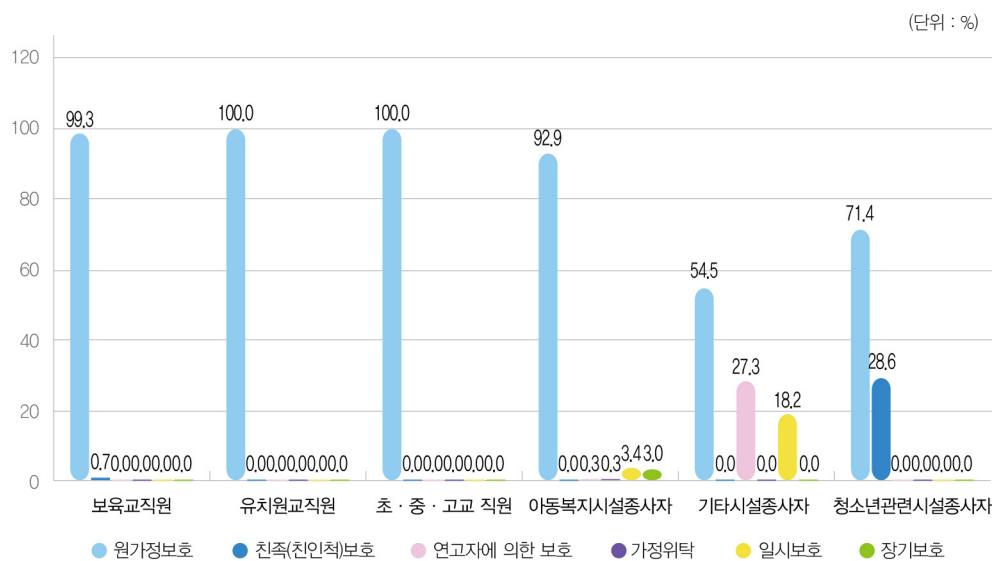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5-53>과 같이 살펴보면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92% 이상의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분리보호가 45.5%로 다른 시설종사자 유형에 비해 높은 분리보호율을 보였다.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계
		친족 (친인척)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소계	
보육교직원	424 (99.3)	3 (0.7)	0 (0.0)	0 (0.0)	0 (0.0)	0 (0.0)	3 (0.7)	427 (100.0)
유치원교직원	20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3 (100.0)
초·중·고교 직원	23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34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75 (92.9)	0 (0.0)	1 (0.3)	1 (0.3)	10 (3.4)	9 (3.0)	21 (7.1)	296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2 (54.5)	0 (0.0)	6 (27.3)	0 (0.0)	4 (18.2)	0 (0.0)	10 (45.5)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5 (71.4)	2 (28.6)	0 (0.0)	0 (0.0)	0 (0.0)	0 (0.0)	2 (28.6)	7 (100.0)
계	1,153 (97.0)	5 (0.4)	7 (0.6)	1 (0.1)	14 (1.2)	9 (0.8)	36 (3.0)	1,189 (100.0)



<그림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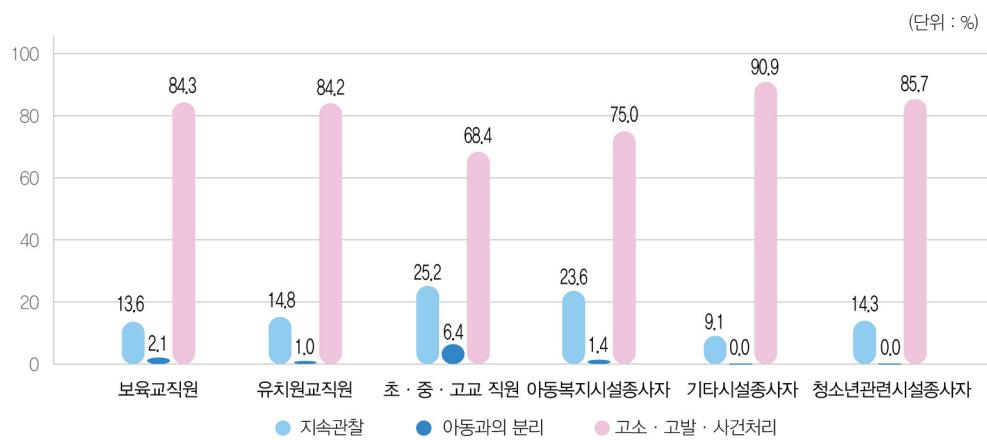
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54>와 같이 살펴보면 고소·고발·사건처리가 939건(7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속관찰이 220건(18.5%), 아동과의 분리 30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관찰은 초·중·고교 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각각 25.2%, 23.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다른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도 고루 분포하였다. 아동과의 분리는 초·중·고교 직원이 6.4%로 다른 종사자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처리의 경우 기타 시설 종사자가 9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른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도 약 70%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계
보육교직원	58 (13.6)	9 (2.1)	360 (84.3)	427 (100.0)
유치원교직원	30 (14.8)	2 (1.0)	171 (84.2)	203 (100.0)
초·중·고교 직원	59 (25.2)	15 (6.4)	160 (68.4)	234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0 (23.6)	4 (1.4)	222 (75.0)	296 (100.0)
기타시설 종사자	2 (9.1)	0 (0.0)	20 (90.9)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1 (14.3)	0 (0.0)	6 (85.7)	7 (100.0)
계	220 (18.5)	30 (2.5)	939 (79.0)	1,189 (100.0)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본 장에서는 2016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보고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을 일부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량 측정과 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전개되는 업무흐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신고 이후의 조사 및 서비스 등 관련 세부 업무들을 조사하여 단계별로 업무량(시간)을 추정하였다.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관리업무, 사후관리 업무, 24시간 근무 환경에 따른 당직대기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팀장 포함)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에 한해 업무량을 분석하였다.

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시간)을 세부업무별 평균 업무시간을 기초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추정하였다. 즉 각 업무별 평균 소요시간 값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연간 수행한 각 업무들의 크기(회, 건)을 적용하여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의 총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표 6-1〉은 2015년도에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총량과 직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이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추정한 것이다.

201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약 1,315,575시간(상담원 1인당 약 2,520시간, 315일**), 1인당 업무손실(L)^{***}은 약 148시간(18.6 일)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이 수행한 치료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약 256,727시간(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약 4,208시간, 526일**), 1인당 업무손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 경찰대학교 정웅 연구관이 수행한 연구결과임.

**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대입한 근무일수.

*** 업무손실(L)이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손실을 말함.

실(L)은 약 148시간(18.5일)으로 추정되었다.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L_{yc})은 1인당 연간 가용 기본근무시간(L_y)^{*}에서 상담원 1인당 연 평균 업무손실 등을 차감하여 재산정한 실질적인 업무 가능 시간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약 231일(1,851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약 231일(1,852시간)이었다.

이러한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231일(1,851시간) 대비 84일(669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231일(1,852시간) 대비 295일(2,356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H_p = T$)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L_{yc})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710.7 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5년 기준 총 138.6명***이 치료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과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단위 : 시간, 명)

구분		상담원수 (기관장 제외)	상담원 총 업무량 (시간)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임상 심리치료 전문 인력수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 표준모형 적정인원수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7	9,107	1,851	4.9	—	17	1,852	0.0	
	서울동부	12	23,304	1,851	12.6	2	2,536	1,852	1.4	
	서울강서	9	16,032	1,851	8.7	2	4,124	1,852	2.2	
	서울은평	8	15,620	1,851	8.4	1	3,741	1,852	2.0	
	서울영등포	9	21,752	1,851	11.8	1	4,015	1,852	2.2	
	서울성북	8	29,452	1,851	15.9	1	4,737	1,852	2.6	
	서울마포	10	21,785	1,851	11.8	1	5,206	1,852	2.8	
	서울동남권	6	7,744	1,851	4.2	1	4,073	1,852	2.2	
	소 계	69	144,796		78.2	9	28,450		15.4	
부산	부산광역시	11	23,121	1,851	12.5	2	4,619	1,852	2.5	
	부산동부	11	23,337	1,851	12.6	1	1,962	1,852	1.1	
	부산서부	7	10,904	1,157	9.4	1	1,727	1,158	1.5	2015.5.15개소
	소 계	29	57,362		34.5	4	8,308		5.0	
대구	대구광역시	9	23,019	1,851	12.4	1	4,797	1,852	2.6	
	대구남부	10	21,996	1,851	11.9	1	3,519	1,852	1.9	
	소 계	19	45,015		24.3	2	8,316		4.5	

(계속)

* 1인당 연간 가용 기본근무시간(L_y)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근무시간으로, 2011~2015년 5년 평균 250일(= 2,000시간)임.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상담원 수는 522명임.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1명임.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단위 : 시간, 명)

항목		상담원수 (기관장 제외)	상담원 총 업무량 (시간)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 인력수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 표준모형 적정인원수	비고
지역 및 기관										
인천	인천광역시	10	46,523	1,851	25.1	1	3,967	1,852	2.1	
	인천북부	9	19,502	1,851	10.5	1	3,885	1,852	2.1	
	인천미추홀	—	—	—	—	—	—	—	—	2015.5.1.폐소로 업무량 산출 제외
	인천남부	9	11,962	1,384	8.6	1	1,367	1,389	1.0	2015.4.1개소
소 계		28	77,987	—	44.3	3	9,219	—	5.2	
광주	광주광역시	9	22,478	1,851	12.1	1	4,280	1,852	2.3	
대전	대전광역시	9	22,602	1,851	12.2	1	7,236	1,852	3.9	
울산	울산광역시	13	30,880	1,851	16.7	1	4,427	1,852	2.4	
경기	경기도	11	41,250	1,851	22.3	1	7,787	1,852	4.2	
	경기북부	13	26,709	1,851	14.4	1	6,181	1,852	3.3	
	경기성남	11	21,622	1,851	11.7	1	6,435	1,852	3.5	
	경기고양	10	24,702	1,851	13.3	1	5,652	1,852	3.1	
	경기부천	10	24,937	1,851	13.5	1	9,803	1,852	5.3	
	경기화성	9	29,110	1,851	15.7	1	5,492	1,852	3.0	
	경기남양주	9	19,788	1,851	10.7	1	3,070	1,852	1.7	
	안산시	11	64,653	1,851	34.9	1	6,945	1,852	3.7	
	경기용인	10	19,391	1,851	10.5	1	5,115	1,852	2.8	
	경기시흥	8	19,235	1,851	10.4	1	6,014	1,852	3.2	
	경기평택	7	8,306	923	9.0	1	1,444	926	1.6	2015.7.1개소
	소 계	109	299,702	—	166.4	11	63,938	—	35.3	
강원	강원도	9	19,031	1,851	10.3	1	4,393	1,852	2.4	
	강원동부	10	17,889	1,851	9.7	1	3,000	1,852	1.6	
	강원원주	9	18,718	1,851	10.1	1	5,584	1,852	3.0	
	강원남부	7	—	—	—	1	—	—	—	2015.11.9 개소로 업무량 산출제외
	소 계	35	55,638	—	30.1	4	12,976	—	7.0	
충북	충청북도	12	49,941	1,851	27.0	1	11,177	1,852	6.0	
	충북북부	10	21,645	1,851	11.7	1	2,294	1,852	1.2	
	충북남부	7	19,632	1,851	10.6	1	6,134	1,852	3.3	
	소 계	29	91,218	—	49.3	3	19,605	—	10.6	
충남	충청남도	11	29,213	1,851	15.8	1	6,620	1,852	3.6	
	충남남부	8	18,767	1,851	10.1	1	5,758	1,852	3.1	
	충남서부	8	15,851	1,851	8.6	1	4,230	1,852	2.3	
	소 계	27	63,830	—	34.5	3	16,608	—	9.0	
전북	전라북도	11	29,216	1,851	15.8	1	7,848	1,852	4.2	
	전북서부	12	41,687	1,851	22.5	1	6,271	1,852	3.4	
	전북동부	8	23,525	1,851	12.7	1	6,210	1,852	3.4	
	소 계	31	94,429	—	51.0	3	20,329	—	11.0	
전남	전라남도	9	23,926	1,851	12.9	2	5,284	1,852	2.9	
	전남서부권	10	32,461	1,851	17.5	2	3,959	1,852	2.1	
	전남중부권	12	33,392	1,851	18.0	2	5,683	1,852	3.1	
	소 계	31	89,779	—	48.5	6	14,926	—	8.1	
경북	경북남부	10	15,992	1,851	8.6	1	1,174	1,852	0.6	
	경북북부	9	23,408	1,851	12.6	2	3,404	1,852	1.8	
	경북동부	9	27,669	1,851	14.9	1	3,821	1,852	2.1	
	경북서부	10	16,867	1,851	9.1	1	1,718	1,852	0.9	
	소 계	38	83,935	—	45.3	5	10,117	—	5.5	
경남	경상남도	16	63,317	1,851	34.2	1	5,206	1,852	2.8	
	경남서부	9	31,025	1,851	16.8	1	2,484	1,852	1.3	
	김해시	5	10,024	1,408	7.1	1	1,459	1,413	1.0	2015.3.27개소
	소 계	30	104,366	—	58.1	3	9,149	—	5.2	
제주	제주도	8	17,725	1,851	9.6	1	3,009	1,852	1.6	
	서귀포시	8	10,594	1,851	5.7	1	2,822	1,852	1.5	
	소 계	16	28,319	—	15.3	2	5,831	—	3.1	
전국기준(2015년)		522	1,315,575	1,851	710.7	61	256,727	1,852	138.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07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지표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8개소가 증설되면서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에는 36.0%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13년 10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 학대처벌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 관계부처 협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확대를 통해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로 상승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8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86.7%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이는 기존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면서 신고·발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연도 \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2001년	2,606 (63.1)	–	1,527 (36.9)	4,133 (100.0)	–	
2002년	2,946 (71.7)	–	1,165 (28.3)	4,111 (100.0)	-0.5	
2003년	3,536 (71.0)	–	1,447 (29.0)	4,983 (100.0)	21.2	
2004년	4,880 (69.7)	–	2,118 (30.3)	6,998 (100.0)	40.4	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소 확대
2005년	5,761 (72.0)	–	2,239 (28.0)	8,000 (100.0)	14.3	
2006년	6,452 (72.5)	–	2,451 (27.5)	8,903 (100.0)	11.3	
2007년	7,083 (74.7)	–	2,395 (25.3)	9,478 (100.0)	6.5	
2008년	7,219 (75.4)	77 (–)	2,351 (24.6)	9,570* (100.0)	1.0	
2009년	7,354 (79.0)	101 (1.1)	1,854 (19.9)	9,309 (100.0)	-2.7	
2010년	7,406 (80.5)	89 (1.0)	1,704 (18.5)	9,199 (100.0)	-1.2	
2011년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10.3	
2012년	8,979 (82.1)	34 (0.3)	1,930 (17.6)	10,943 (100.0)	7.9	
2013년	10,857 (83.0)	43 (0.3)	2,176 (16.6)	13,076 (100.0)	19.5	
2014년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36.0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5년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8.0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중복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중복신고라는 용어로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 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 유형을 접수한 사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신고가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으로 용어 및 그 의미가 변경됨.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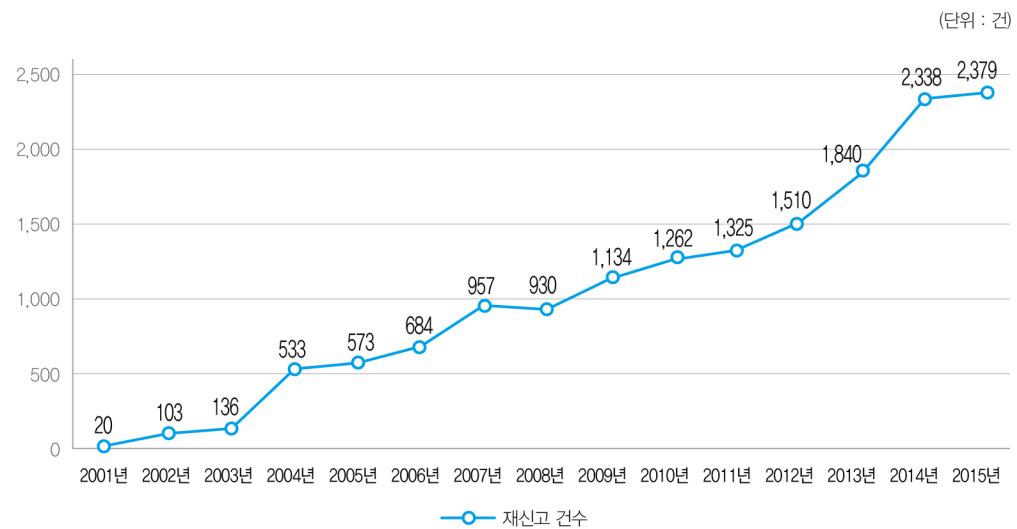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발생 현황은 〈표 7-2〉와 같다.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된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사례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로 구분된다.

재신고 사례수는 2001년 20건에서 2015년 2,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도 2001년 0.5%에서 2013년 1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3.1%, 12.4%로 2015년에 전년 대비 1%포인트 가량 낮아진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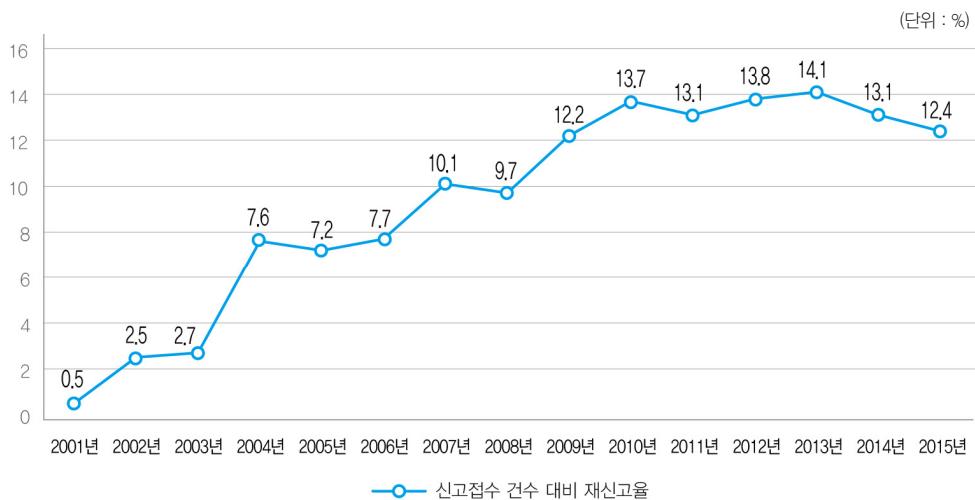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접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17,782	19,203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1,325	1,510	1,840	2,338	2,379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13.1	13.8	14.1	13.1	12.4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01년 686건에서 2015년 4,900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비 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년 36.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5.1%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는 2014년과 대비 하여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0.4%포인트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고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7-3〉과 같이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3년까지 가장 높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4.7%로 전년도 대비 5%포인트가 하락하였다. 2015년에는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3.6%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교 직원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신고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2014년에는 13.2%, 2015년 13.0%로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부모가 2009년까지 가장 높은 신고비율을 보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나타내었다. 아동이 신고한 비율은 201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는 2013년도에 비해 2.6%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8%포인트가 상승하여 전체 신고율 중 9.0%를 차지하였다.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연도	연도별 신고자 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134(5.1)	149(5.0)	190(5.4)	280(5.7)	431(7.5)	611(9.5)	771(10.9)	887(12.3)	547(7.4)	535(7.2)	594(7.1)	732(8.2)	716(6.6)	1,988(13.2)	2,172(13.0)
	의료인	51(2.0)	59(2.0)	83(2.3)	102(2.1)	126(2.2)	114(1.8)	157(2.2)	105(1.5)	98(1.3)	83(1.1)	88(1.1)	89(0.9)	93(0.9)	123(0.8)	137(0.8)
	시설종사자*	285(10.9)	238(8.1)	181(5.1)	226(4.7)	222(3.8)	217(3.3)	374(5.3)	426(5.9)	—	—	—	—	—	—	—
	이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358(4.9)	425(5.7)	338(4.1)	424(4.7)	403(3.7)	275(1.8)	257(1.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0(0.2)	260(0.4)	240(0.3)	280(0.3)	110(0.1)	240(0.2)	460(0.3)
	보육교직원	—	—	—	—	—	—	—	—	76(1.0)	152(2.1)	178(2.1)	166(1.8)	223(2.1)	273(1.8)	309(1.9)
	유치원교직원강사	—	—	—	—	—	—	—	—	43(0.6)	66(0.9)	40(0.5)	84(0.9)	20(0.2)	430(0.3)	680(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0.0)	15(0.3)	23(0.4)	32(0.5)	26(0.4)	24(0.3)	18(0.2)	16(0.2)	6(0.1)	13(0.1)	7(0.1)	26(0.2)	31(0.2)
	소방구급대원	—	—	—	—	—	—	3(0.0)	6(0.1)	11(0.2)	6(0.1)	10(0.1)	16(0.2)	11(0.1)	28(0.2)	22(0.1)
	응급구조사	—	—	—	—	—	—	—	—	—	—	—	0(0.0)	0(0.0)	2(0.0)	0(0.0)
	의료기사	—	—	—	—	—	—	—	—	—	—	—	4(0.0)	6(0.1)	0(0.0)	0(0.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	—	—	—	—	—	—	—	41(0.6)	47(0.6)	45(0.5)	39(0.4)	8(0.1)	2(0.0)	12(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	51(0.6)	75(0.7)	20(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0.2)	7(0.1)	13(0.2)	13(0.1)	13(0.1)	10(0.1)	5(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	—	—	—	142(1.9)	141(1.9)	199(2.4)	233(2.6)	191(1.8)	174(1.2)	285(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16(8.3)	392(13.3)	575(16.3)	738(15.1)	805(14.0)	1,038(16.1)	953(13.4)	941(13.0)	975(13.3)	796(10.6)	1,169(14.0)	904(10.1)	1,055(9.7)	700(4.7)	602(3.6)
	이동복지전담공무원	—	—	—	—	—	—	—	—	—	—	—	—	102(1.1)	234(2.2)	104(0.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	157(1.7)	336(3.1)	151(1.0)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15(0.2)	17(0.2)	30(0.2)
	간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21(0.2)	17(0.2)	18(0.1)
	다문화기죽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27(0.3)	27(0.2)	20(0.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	—	—	—	—	—	—	—	—	—	—	34(0.4)	46(0.4)	78(0.5)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	—	—	—	—	—	—	—	123(1.4)	160(1.5)	183(1.2)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	45(0.5)	37(0.3)	14(0.1)
	아이돌봄미	—	—	—	—	—	—	—	—	—	—	—	—	—	0(0.0)	9(0.1)
	취약계층 이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	—	—	—	—	—	—	—	—	—	—	—	—	73(0.5)	298(1.8)
	소 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2,704 (32.5)	3,316 (36.9)	3,706 (34.1)	4,358 (29.0)	4,900 (29.4)
비신고의무자	부 모	772(29.6)	591(20.1)	673(19.0)	990(20.3)	1,073 (18.6)	1,165 (18.1)	1,294 (18.3)	1,311 (18.2)	1,356 (18.4)	1,374 (18.6)	1,411 (16.9)	1,433 (16.0)	1,426 (13.1)	1,991 (13.3)	3,048 (18.3)
	이웃,친구	685(26.3)	757(25.7)	843(23.8)	921(18.9)	933(16.2)	886(13.7)	856(12.1)	845(11.7)	805(10.9)	861 (11.6)	991 (11.9)	970 (10.8)	1,065 (9.8)	1,202 (8.0)	1,040 (6.2)
	친인척	241(9.3)	242(8.2)	367(10.4)	373(7.6)	481(8.3)	500(7.7)	471(6.7)	502(6.9)	468(6.4)	488 (6.6)	461 (5.5)	452 (5.0)	397 (3.7)	536 (3.6)	452 (2.7)
	경 찰	104(4.0)	164(5.6)	221(6.3)	338(6.9)	357(6.2)	340(5.3)	275(3.9)	322(4.5)	416(5.7)	302 (4.1)	314 (3.8)	425 (4.7)	724 (6.7)	2,204 (14.7)	846 (5.1)
	종교인	—	36(1.2)	49(1.4)	47(1.0)	74(1.3)	99(1.5)	77(1.1)	54(0.7)	54(0.7)	54 (0.7)	53 (0.6)	45 (0.5)	28 (0.3)	20 (0.1)	27 (0.2)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90(3.0)	114(3.2)	506(10.4)	823(14.3)	980(15.2)	1,165 (16.5)	1,176 (16.3)	1,356 (18.4)	1,562 (21.1)	1,856 (22.3)	1,689 (18.8)	2,632 (24.2)	3,486 (23.2)	3,590 (21.6)
	낯선 사람	—	—	4(0.1)	114(2.3)	80(1.4)	148(2.3)	89(1.2)	70(1.0)	71(1.0)	69 (0.9)	55 (0.7)	92 (1.0)	103 (0.9)	193 (1.3)	305 (1.8)
	이동분인	40(1.5)	56(1.9)	52(1.5)	65(1.3)	80(1.4)	71(1.1)	50(0.7)	73(1.0)	88(1.2)	115 (1.6)	135 (1.6)	158 (1.8)	171 (1.6)	628 (4.2)	1,500 (9.0)
	익 명	—	11(0.4)	13(0.4)	13(0.3)	41(0.7)	26(0.4)	11(0.1)	61(0.8)	80(1.1)	6 (0.1)	40 (0.5)	12 (0.1)	14 (0.1)	98 (0.7)	134 (0.8)
	형제·자매	—	—	—	—	—	—	—	—	34 (0.5)	44 (0.6)	47 (0.6)	63 (0.7)	45 (0.4)	110 (0.7)	231 (1.4)
	기 타	78(3.0)	161(5.5)	170(4.8)	152(3.1)	212(3.7)	225(3.5)	512(7.2)	416(5.8)	359 (4.9)	241 (3.2)	258 (3.1)	324 (3.6)	546 (5.0)	199 (1.3)	578 (3.5)
	소 계	1,920 (73.7)	2,108 (71.6)	2,506 (70.9)	3,519 (72.1)	4,154 (72.1)	4,440 (68.8)	4,799 (67.8)	4,830 (66.9)	5,015 (68.2)	5,116 (69.1)	5,621 (67.5)	5,663 (63.1)	7,151 (65.9)	10,667 (71.0)	11,751 (70.6)
	계	2,606 (100.0)	2,946 (100.0)	3,536 (100.0)	4,880 (100.0)	5,761 (100.0)	6,452 (100.0)	7,083 (100.0)	7,219 (100.0)	7,354 (100.0)	7,406 (100.0)	8,325 (100.0)	8,979 (100.0)	10,857 (100.0)	15,025 (100.0)	16,651 (100.0)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이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이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이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우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기죽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이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 2014년 9월 29일 이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봄미, 취약계층 이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이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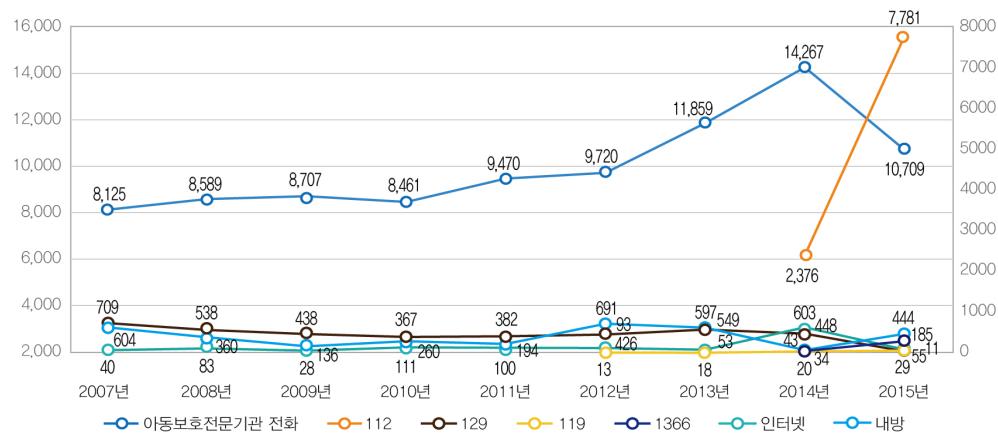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로는 주로 전화라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된 비율이 55.7%로 전년 대비 24.5%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 112를 통한 신고접수된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27.1%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은 폐지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이 되면서 112를 통한 신고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연도	구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화*	112	129	119	1366	인터넷	내방	계
2007년		8,125 (85.7)	—	709 (7.5)	—	—	40 (0.4)	604 (6.4)	9,478 (100.0)
2008년		8,589 (89.7)	—	538 (5.6)	—	—	83 (0.9)	360 (3.8)	9,570 (100.0)
2009년		8,707 (93.5)	—	438 (4.7)	—	—	28 (0.3)	136 (1.5)	9,309 (100.0)
2010년		8,461 (92.0)	—	367 (4.0)	—	—	111 (1.2)	260 (2.8)	9,199 (100.0)
2011년		9,470 (93.3)	—	382 (3.8)	—	—	100 (1.0)	194 (1.9)	10,146 (100.0)
2012년		9,720 (88.8)	—	426 (3.9)	13 (0.1)	—	93 (0.8)	691 (6.3)	10,943 (100.0)
2013년		11,859 (90.7)	—	549 (4.2)	18 (0.1)	—	53 (0.4)	597 (4.6)	13,076 (100.0)
2014년		14,267 (80.2)	2,376 (13.4)	448 (2.5)	20 (0.1)	34 (0.2)	603 (3.4)	43 (0.2)	17,791 (100.0)
2015년		10,709 (55.7)	7,781 (40.5)	11 (0.1)	29 (0.2)	185 (1.0)	55 (0.3)	444 (2.3)	19,214 (100.0)

(단위 : 건)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2007년부터 2014년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91로 신고접수 되었고, 2014년 9월 29일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수치임.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표 7-5〉와 같이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에 2,10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사례가 2015년에는 11,715건으로 약 5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여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4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도 전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09.29.)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됨에 따라 피해아동 발견율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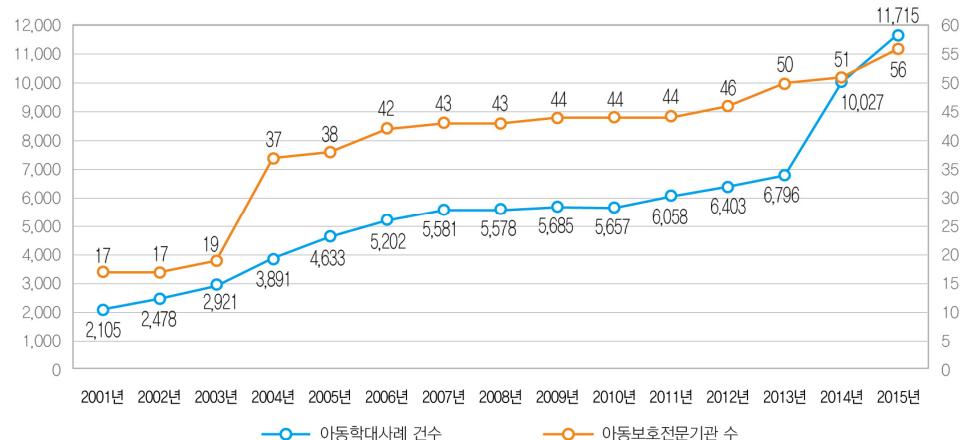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1 아동학대 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16.8
02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56
	증가 기관수	-	2	18	1	4	1	-	1	-	-	2	4	1	5	

(단위 : 건)

(단위: 개소)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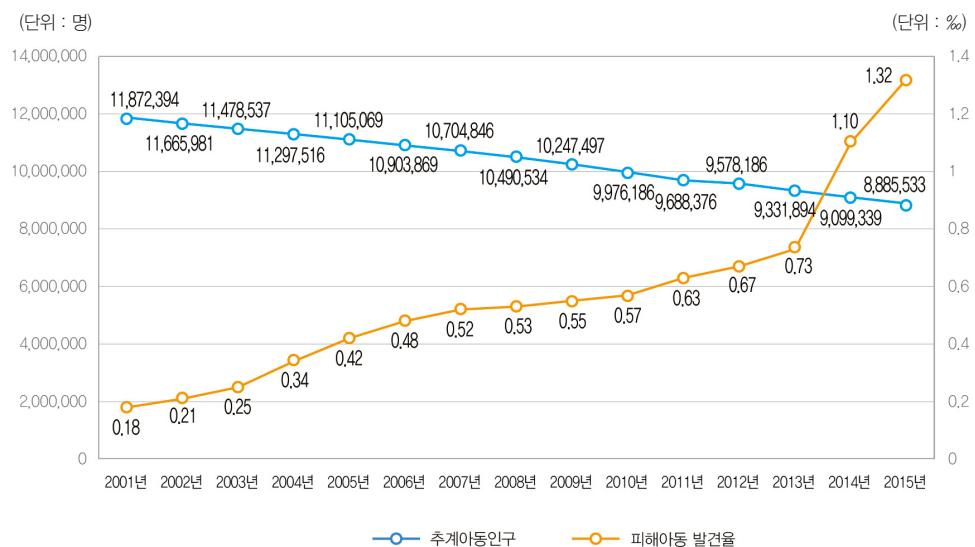
〈표 7-6〉과 같이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비율을 산출한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4년에 약 0.4%포인트 증가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도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인력 증원으로 인해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8,885,533	
아동학대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피해아동 발견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0.63	0.67	0.73	1.10	1.32	

* 통계청(www.kosis.kr), 2015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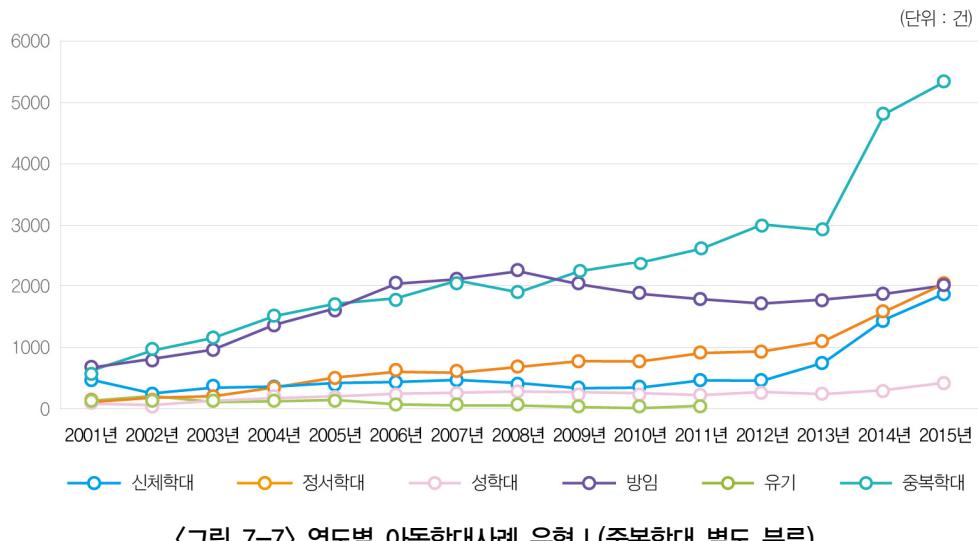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7-7>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중복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5.6%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임은 2008년 40.1%의 높은 분포를 보인 이후, 2015년(17.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정서학대는 2001년 5.4%에 불과했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17.5%로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연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계
2001년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100.0)
2002년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100.0)
2003년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921 (100.0)
2004년	364 (9.4)	350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3,891 (100.0)
2005년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100.0)
2006년	439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100.0)
2007년	473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0)	2,087 (37.4)	5,581 (100.0)
2008년	422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0)	1,895 (34.0)	5,578 (100.0)
2009년	338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100.0)
2010년	348 (6.1)	773 (13.7)	258 (4.6)	1,870 (33.1)	14 (0.2)	2,394 (42.3)	5,657 (100.0)
2011년	466 (7.7)	909 (15.0)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0)
2012년	461 (7.2)	936 (14.6)	278 (4.3)	1,713 (26.8)	—	3,015 (47.1)	6,403 (100.0)
2013년	753 (11.1)	1,101 (16.2)	242 (3.6)	1,778 (26.2)	—	2,922 (43.0)	6,796 (100.0)
2014년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	4,814 (48.0)	10,027 (100.0)
2015년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	5,347 (45.6)	11,715 (100.0)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유형을 〈표 7-8〉과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 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2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정서학대는 2001년 9.0%로 낮은 수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40.7%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되고 정서학대가 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서학대도 염연한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과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법·제도적 변화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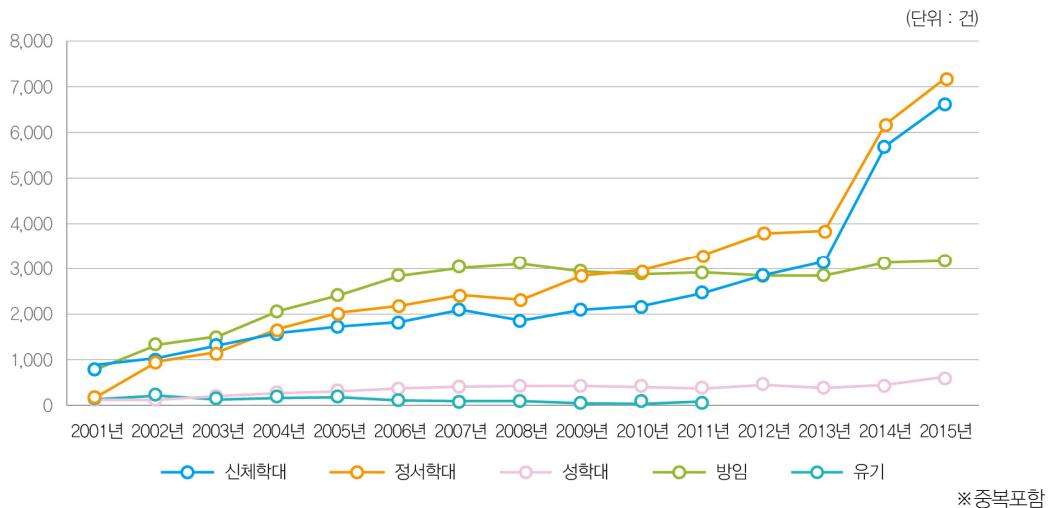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

연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2001년		890 (41.8)	192 (9.0)	116 (5.4)	797 (37.5)	133 (6.3)	2,128 (100.0)
2002년		1,039 (28.4)	961 (26.3)	119 (3.2)	1,329 (36.3)	212 (5.8)	3,660 (100.0)
2003년		1,315 (30.3)	1,172 (27.1)	203 (4.7)	1,514 (35.0)	126 (2.9)	4,330 (100.0)
2004년		1,587 (27.5)	1,680 (29.2)	266 (4.6)	2,071 (35.9)	160 (2.8)	5,764 (100.0)
2005년		1,728 (25.9)	2,034 (30.5)	305 (4.6)	2,416 (36.4)	176 (2.6)	6,659 (100.0)
2006년		1,827 (24.9)	2,182 (29.8)	372 (5.1)	2,842 (38.8)	106 (1.4)	7,329 (100.0)
2007년		2,095 (26.1)	2,420 (30.1)	409 (5.1)	3,018 (37.6)	92 (1.1)	8,034 (100.0)
2008년		1,857 (23.8)	2,315 (30.0)	424 (5.0)	3,105 (40.0)	94 (1.2)	7,795 (100.0)
2009년		2,095 (25.1)	2,847 (34.1)	426 (5.1)	2,939 (35.2)	43 (0.5)	8,350 (100.0)
2010년		2,182 (25.8)	2,974 (35.1)	400 (4.7)	2,878 (34.0)	32 (0.4)	8,466 (100.0)
2011년		2,464 (26.9)	3,312 (36.3)	368 (4.0)	2,919 (31.9)	85 (0.9)	9,148 (100.0)
2012년		2,858 (28.8)	3,785 (38.1)	446 (4.5)	2,849 (28.7)	—	9,938 (100.0)
2013년		3,160 (30.9)	3,843 (37.6)	380 (3.7)	2,848 (27.8)	—	10,231 (100.0)
2014년		5,699 (36.9)	6,176 (40.0)	447 (2.9)	3,136 (20.3)	—	15,458 (100.0)
2015년		6,661 (37.7)	7,197 (40.7)	629 (3.6)	3,175 (18.0)	—	17,662 (100.0)

※ 중복포함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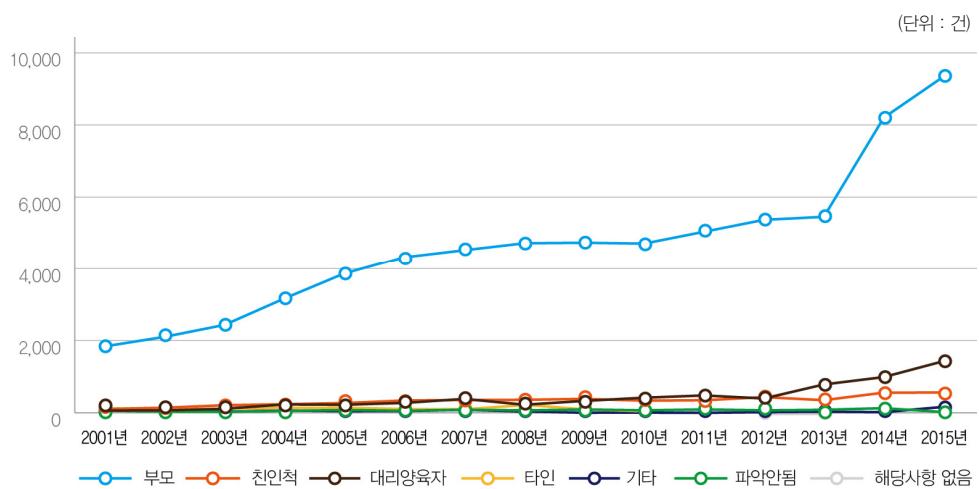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7-9〉와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2015년에 처음으로 80% 미만인 79.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간주하던 과거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여 아동학대는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12.2%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에는 보육교직원(3.6%)이 대리양육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관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모	친부	1,174 (55.8)	1,432 (57.8)	1,607 (55.0)	2,111 (54.3)	2,554 (55.1)	2,739 (52.7)	2,788 (50.0)	2,855 (51.2)	2,867 (50.4)	2,797 (49.4)	2,855 (47.1)	3,013 (47.1)	2,790 (41.1)	4,531 (45.2)	5,368 (45.8)	
	친모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0)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605 (28.3)	1,708 (30.2)	1,963 (32.4)	2,090 (32.6)	2,383 (35.1)	3,211 (32.0)	3,475 (29.7)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74 (1.2)	108 (1.6)	189 (1.9)	236 (2.0)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144 (2.1)	242 (2.4)	237 (2.0)	
	양부	8 (0.4)	5 (0.2)	6 (0.2)	9 (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14 (0.2)	17 (0.2)	17 (0.1)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15 (0.2)	17 (0.2)	15 (0.1)	
	소 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 (83.1)	5,370 (83.9)	5,454 (80.3)	8,207 (81.8)	9,348 (79.8)	

(계속)

		연도	(단위 : 건, %)														
관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친인척	친조부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74 (1.2)	58 (0.9)	69 (0.7)	96 (0.8)	
	친조모	48 (2.3)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135 (1.3)	112 (1.0)	
	외조부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8 (0.1)	17 (0.2)	28 (0.2)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54 (0.5)	52 (0.4)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150 (2.2)	229 (2.3)	201 (1.7)	
	형제·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26 (0.4)	55 (0.5)	73 (0.6)	
소 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337 (6.0)	349 (5.8)	435 (6.8)	351 (5.2)	559 (5.6)	562 (4.8)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86 (1.3)	146 (1.5)	158 (1.3)	
	유치원교직원	-	-	-	-	-	-	-	-	-	-	-	-	31 (0.5)	35 (0.5)	99 (1.0)	
	초·중·고교 직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31 (0.5)	145 (1.4)	234 (2.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11 (0.2)	80 (0.8)	64 (0.5)	
	보육교직원	-	-	-	-	-	-	-	-	-	-	-	-	110 (1.7)	217 (3.2)	295 (2.9)	
	시설 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99 (1.5)	362 (5.3)	177 (1.8)	296 (2.5)	
	기타시설 종사자	-	-	-	-	-	-	-	-	-	-	-	20 (0.3)	27 (0.4)	29 (0.3)	22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7 (0.1)	
	위탁부	-	-	-	-	-	-	-	-	2 (0.1)	3 (0.1)	5 (0.1)	0 (0.0)	2 (0.0)	5 (0.0)	8 (0.1)	
	위탁모	-	-	-	-	-	-	-	-	7 (0.1)	5 (0.1)	8 (0.1)	3 (0.0)	11 (0.2)	7 (0.1)	5 (0.0)	
	베이비시터	-	-	-	-	-	-	-	-	-	-	-	6 (0.1)	4 (0.1)	7 (0.1)	7 (0.1)	
소계		64 (3.0)	67 (2.7)	113 (3.9)	234 (6.0)	225 (4.9)	275 (5.3)	386 (6.9)	225 (4.0)	331 (5.8)	419 (7.4)	482 (8.0)	397 (6.2)	786 (11.6)	990 (9.9)	1,431 (12.2)	
타인	아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60 (0.9)	51 (0.8)	73 (0.7)	85 (0.7)	
	낯선 사람	-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53 (0.9)	32 (0.5)	48 (0.7)	34 (0.5)	51 (0.5)	102 (0.9)	
	소 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143 (2.6)	169 (3.0)	134 (2.4)	115 (2.0)	92 (1.5)	108 (1.7)	85 (1.3)	124 (1.2)	187 (1.6)	
기타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85 (1.3)	129 (1.3)	166 (1.4)	
	파악안됨	-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20 (0.3)	32 (0.5)	18 (0.2)	21 (0.2)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3 (0.0)	3 (0.0)	-	-	-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11,715 (100.0)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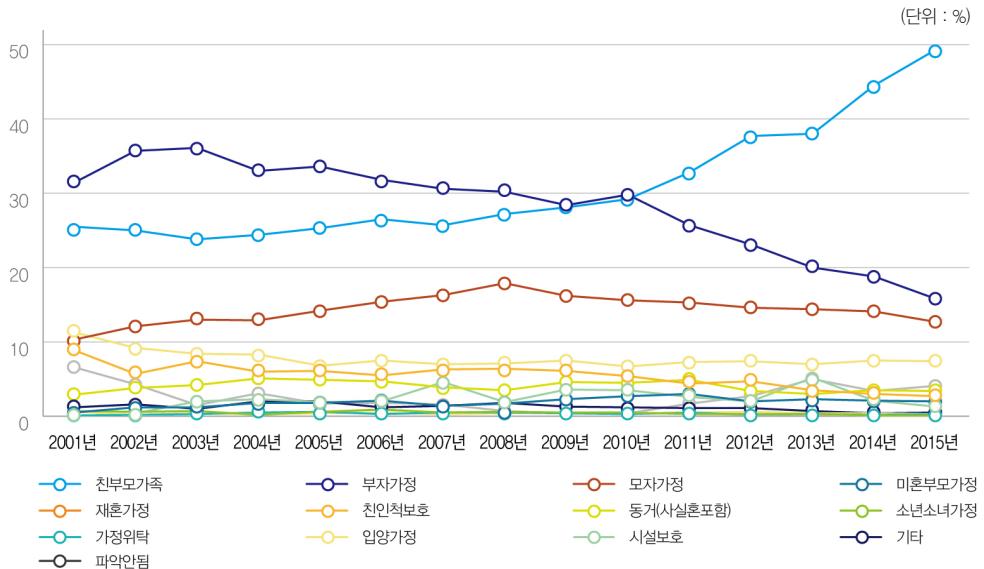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표 7-10>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거의 절반인 49.3%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의 경우 2008년까지는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절반 정도인 15.8%로 나타났다.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족유형	연도	536 (25.5)	619 (25.0)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1,654 (29.2)	1,988 (32.8)	2,415 (37.7)	2,581 (38.0)	4,458 (44.5)	5,779 (49.3)
친부모 기족 외 형태	부자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0)	1,55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1,684 (29.8)	1,559 (25.7)	1,480 (23.1)	1,360 (20.0)	1,887 (18.8)	1,855 (15.8)
	모자가정	217 (10.3)	299 (12.1)	380 (13.0)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881 (15.6)	927 (15.3)	935 (14.6)	981 (14.4)	1,414 (14.1)	1,483 (12.7)
	미혼부모 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2.3)	150 (2.6)	180 (3.0)	131 (2.0)	154 (2.3)	208 (2.1)	240 (2.0)
	재혼가정	238 (11.3)	228 (9.2)	246 (8.4)	322 (8.3)	317 (6.8)	389 (7.5)	390 (7.0)	395 (7.1)	429 (7.6)	380 (6.7)	441 (7.3)	475 (7.4)	473 (7.0)	750 (7.5)	869 (7.4)
	친인척보호	187 (8.9)	142 (5.7)	217 (7.4)	235 (6.0)	283 (6.1)	284 (5.5)	353 (6.3)	358 (6.4)	347 (6.1)	303 (5.3)	266 (4.4)	303 (4.7)	238 (3.5)	297 (3.0)	320 (2.7)
	동거 (사실혼포함)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252 (4.5)	294 (4.9)	220 (3.4)	201 (3.0)	353 (3.5)	403 (3.4)
	소년소녀 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28 (0.5)	21 (0.3)	22 (0.3)	20 (0.3)	10 (0.1)	7 (0.1)
	소 계	1,389 (66.0)	1,692 (68.3)	2,075 (71.0)	2,623 (67.4)	3,156 (68.1)	3,528 (67.8)	3,681 (65.9)	3,769 (67.5)	3,736 (65.7)	3,678 (65.0)	3,688 (60.9)	3,566 (55.7)	3,427 (50.4)	4,919 (49.1)	5,177 (44.2)
대리 양육 형태	가정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14 (0.6)	26 (0.3)	26 (0.5)	20 (0.4)	15 (0.3)	28 (0.4)	13 (0.2)	21 (0.3)	24 (0.2)	31 (0.3)
	입양가정	13 (0.6)	5 (0.2)	13 (0.4)	13 (0.3)	17 (0.4)	26 (0.5)	19 (0.3)	25 (0.4)	26 (0.5)	25 (0.4)	30 (0.5)	37 (0.6)	27 (0.4)	39 (0.4)	34 (0.3)
	시설보호	—	10 (0.4)	57 (2.0)	90 (2.3)	88 (1.9)	102 (2.0)	254 (4.6)	104 (1.9)	204 (3.6)	196 (3.5)	155 (2.6)	127 (2.0)	356 (5.2)	208 (2.1)	155 (1.3)
	소 계	16 (0.7)	20 (0.8)	78 (2.7)	123 (3.1)	134 (2.9)	142 (2.8)	299 (5.4)	155 (2.8)	250 (4.5)	236 (4.2)	213 (3.5)	177 (2.8)	404 (5.9)	271 (2.7)	220 (1.9)
기 타		25 (1.2)	40 (1.6)	29 (1.0)	76 (2.0)	92 (2.0)	60 (1.1)	77 (1.4)	102 (1.8)	75 (1.3)	68 (1.2)	67 (1.1)	70 (1.1)	46 (0.7)	43 (0.4)	58 (0.5)
파악안됨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92 (1.6)	37 (0.7)	25 (0.4)	21 (0.4)	102 (1.7)	175 (2.7)	338 (5.0)	336 (3.4)	481 (4.1)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11,715 (100.0)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본 절에서는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추계를 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학대 사례는 2001년부터 해당 년도까지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다시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로 집계된 반면, 2014년과 2015년의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로 집계되었다.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표 7-11〉과 같이 2012년 914건에서 2015년 1,2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재학대 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4.3%에 해당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 10% 내외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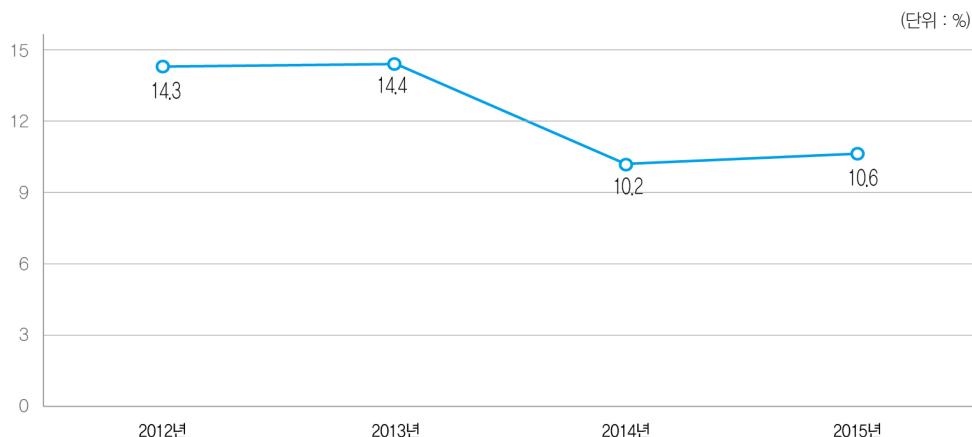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단위 : 건. 명)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재학대 사례 건수		914	980	1,027	1,240
(재학대 아동수)		(826)	(489)	(873)	(1,072)
재학대 사례 비율		14.3	14.4	10.2	10.6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 비율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유형을 〈표 7-12〉와 같이 살펴보면 2013년까지 매년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4과 2015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학대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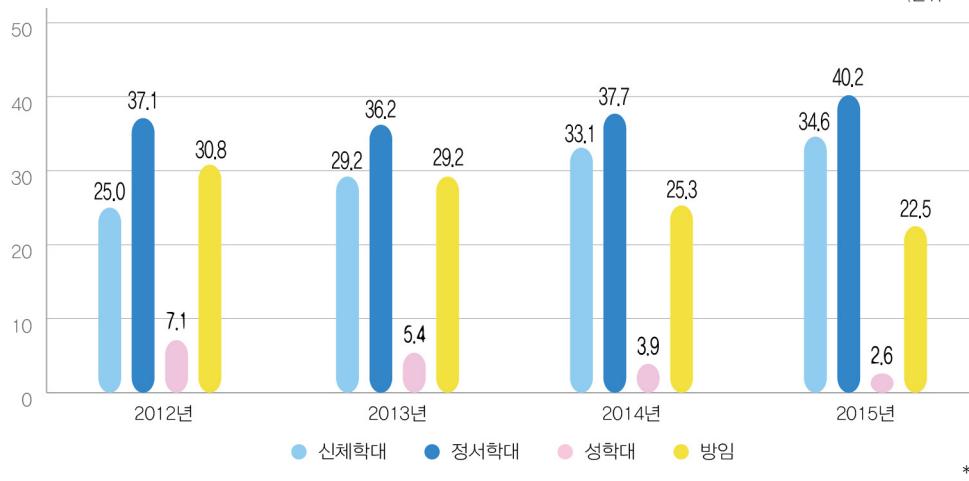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학대유형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체학대	361 (25.0)	440 (29.2)	515 (33.1)	676 (34.6)
정서학대	536 (37.1)	545 (36.2)	587 (37.7)	785 (40.2)
성학대	102 (7.1)	81 (5.4)	61 (3.9)	51 (2.6)
방임	445 (30.8)	440 (29.2)	393 (25.3)	439 (22.5)
계	1,444 (100.0)	1,506 (100.0)	1,556 (100.0)	1,951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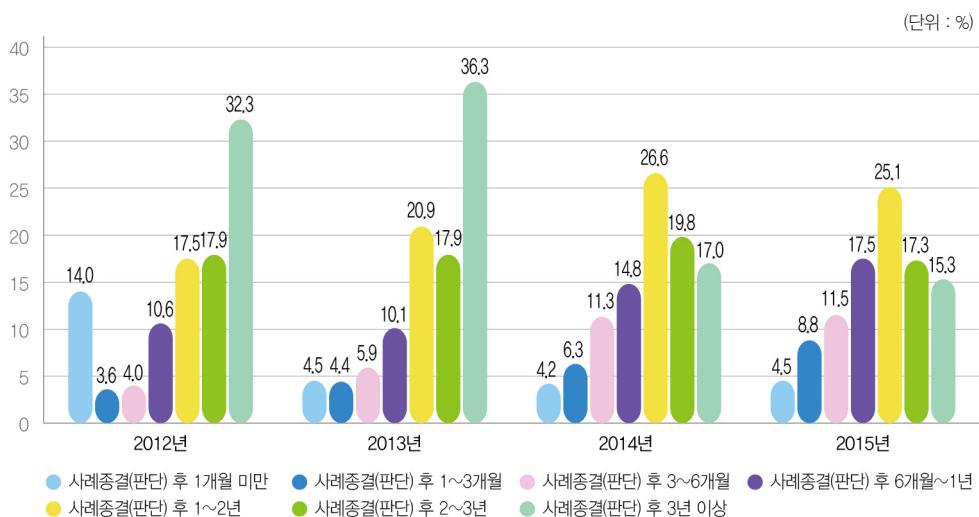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표 7-13>과 같이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초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이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최초 아동학대사례 판단 이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비율이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례판단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단위 : 건, %)

연도 발생시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 미만	128 (14.0)	44 (4.5)	43 (4.2)	56 (4.5)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3개월	33 (3.6)	43 (4.4)	65 (6.3)	109 (8.8)
사례종결(판단) 후 3개월~6개월	37 (4.0)	58 (5.9)	116 (11.3)	142 (11.5)
사례종결(판단) 후 6개월~1년	97 (10.6)	99 (10.1)	152 (14.8)	217 (17.5)
사례종결(판단) 후 1년~2년	160 (17.5)	205 (20.9)	273 (26.6)	311 (25.1)
사례종결(판단) 후 2년~3년	164 (17.9)	175 (17.9)	203 (19.8)	215 (17.3)
사례종결(판단) 후 3년 이상	295 (32.3)	356 (36.3)	175 (17.0)	190 (15.3)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 2013년부터 재학대 사례의 통계추출 기준을 사례종결이 아닌 사례판단으로 변경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재하였음.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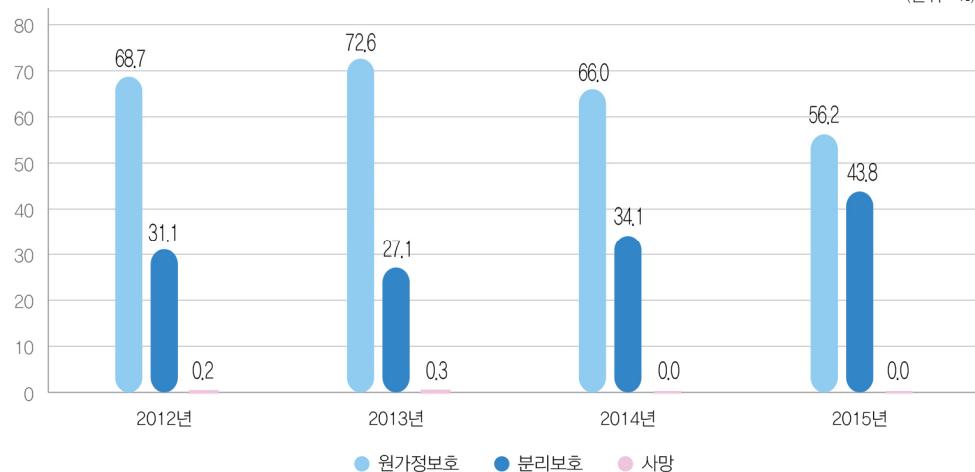
연도별로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7-14>와 같이 살펴보면 2014년까지 원가정보호율이 약 70% 이내 수준이었고, 분리보호율은 30% 이내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원가정보호율은 9.8%포인트 감소, 분리보호율은 9.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분리보호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동이 사망에 이른 건수는 2014년부터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원가정보호	628 (68.7)	711 (72.6)	678 (66.0)	697 (56.2)
분리보호	284 (31.1)	266 (27.1)	349 (34.1)	543 (43.8)
사망	2 (0.2)	3 (0.3)	0 (0.0)	0 (0.0)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단위 : %)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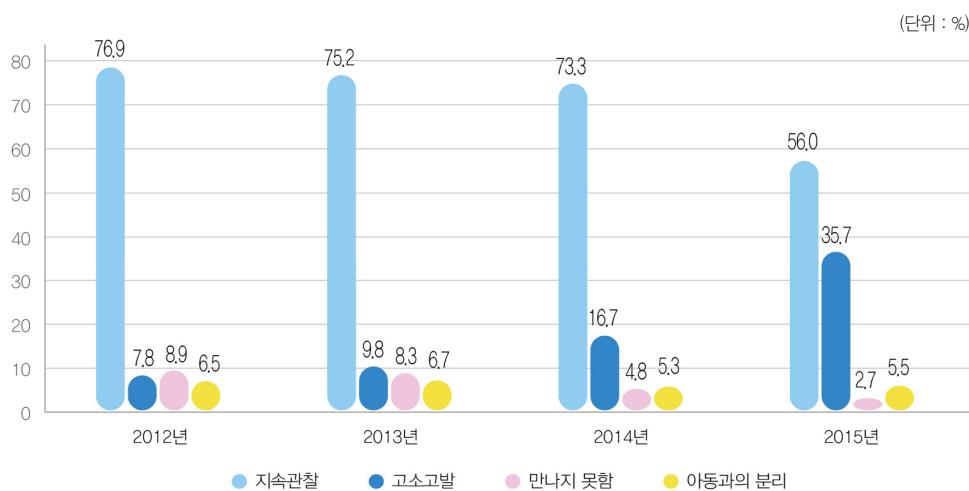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7-15>와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지속 관찰 비율이 17.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고소·고발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약 19%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인 사건처리가 포함되면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학대 사례는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속관찰	703 (76.9)	737 (75.2)	753 (73.3)	695 (56.0)
고소·고발*	71 (7.8)	96 (9.8)	171 (16.7)	443 (35.7)
만나지 못함	81 (8.9)	81 (8.3)	49 (4.8)	34 (2.7)
아동과의 분리	59 (6.5)	66 (6.7)	54 (5.3)	68 (5.5)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그림 7-16>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2014년과 2015년의 고소·고발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에 따라 고소 및 고발 외의 사건처리에 대한 수치까지 합쳐진 값임.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사망은 아동학대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5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아래의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정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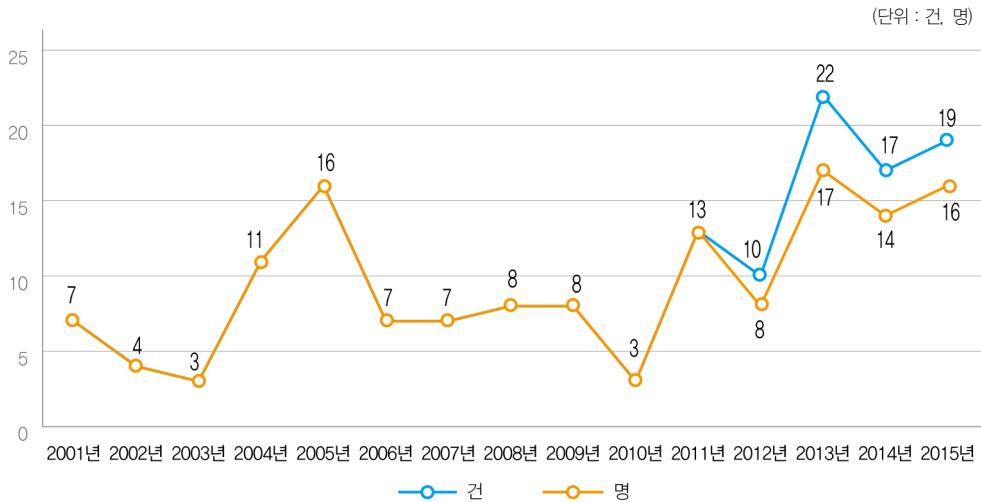
또한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시 18세 미만의 또 다른 아동이 학대가정 내에 있을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및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포함한 모든 아동사망사건에 대해 아동 사망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아동사망사례조사팀*이 상설 조직화되어 아동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및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명)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건수 (명수)	7 (7)	4 (4)	3 (3)	11 (11)	16 (16)	7 (7)	7 (7)	8 (8)	8 (8)	3 (3)	13 (13)	10 (8)	22 (17)	17 (14)	19 (16)	155 (142)

* 미국에는 CDR(Child Death Review)가 조직되어 있어 법 집행관, CPS 담당자, 검사/변호사, 검시관, 공중보건사, 소아과 의사/가정의학과 의사,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동의 사망을 조사하고 다른 아동의 사망을 예방,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활동을 함.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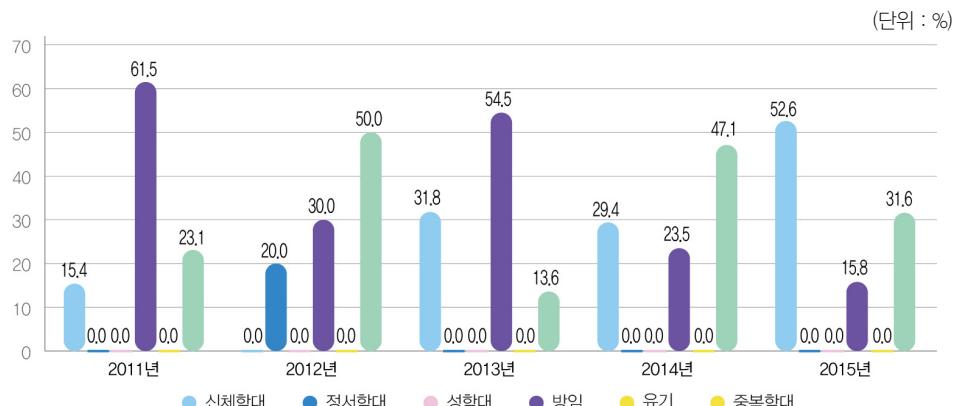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표 7-17〉과 같이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에는 신체학대가 52.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체학대	2 (15.4)	0 (0.0)	7 (31.8)	5 (29.4)	10 (52.6)
정서학대	0 (0.0)	2 (20.0)	0 (0.0)	0 (0.0)	0 (0.0)
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방임	8 (61.5)	3 (30.0)	12 (54.5)	4 (23.5)	3 (15.8)
유기*	0 (0.0)	—	—	—	—
중복학대	3 (23.1)	5 (50.0)	3 (13.6)	8 (47.1)	6 (31.6)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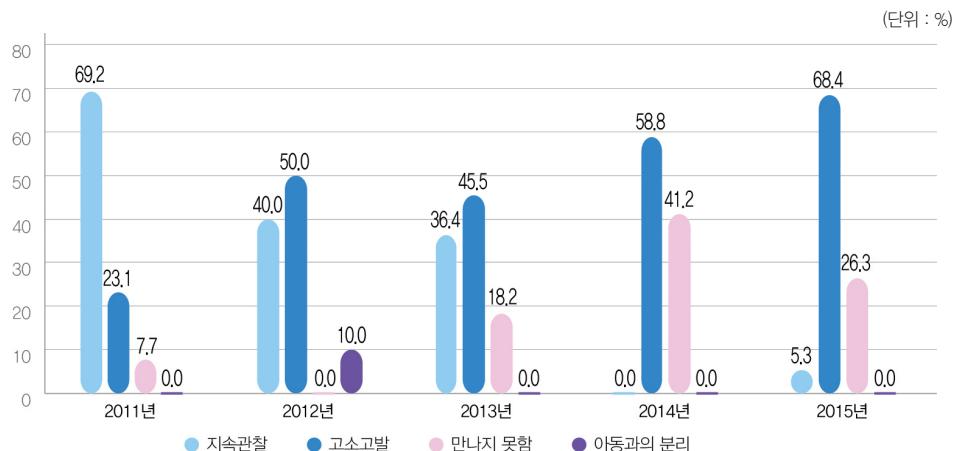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7-18〉과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소·고발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전년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9.6%포인트 증가한 68.4%를 차지하였다.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연도 조치결과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속관찰	9 (69.2)	4 (40.0)	8 (36.4)	0 (0.0)	1 (5.3)
고소·고발	3 (23.1)	5 (50.0)	10 (45.5)	10 (58.8)	13 (68.4)
만나지 못 함	1 (7.7)	0 (0.0)	4 (18.2)	7 (41.2)	5 (26.3)
아동과의 분리	0 (0.0)	1 (10.0)	0 (0.0)	0 (0.0)	0 (0.0)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1) 시도/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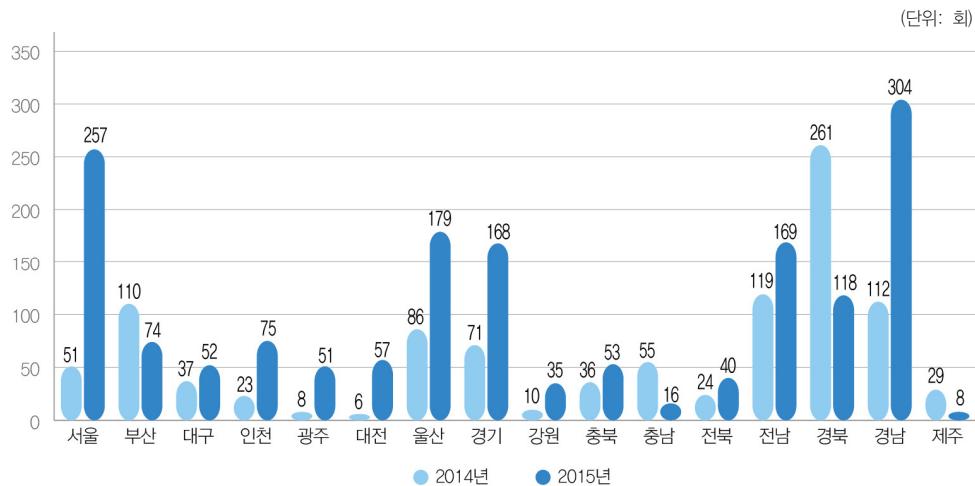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표 7-19〉와 같다. 2015년의 교육실적은 총 1,656회, 수강 인원수는 총 212,503명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한 지역은 경남이 304회(18.4%), 서울이 257회(15.5%), 울산이 179회(10.8%) 순으로 높았다. 경남은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강 인원수가 36,106명(17.0%)으로 교육 횟수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가 32,367명(15.2%), 서울이 23,604명(11.1%) 순으로 높았다. 2015년에는 2014년의 교육실적과 대비하여 교육 횟수는 59.5%가 증가하였고, 수강 인원수는 10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교육 횟수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대전으로 전년도에 비해 850.0%가 증가하였고, 이어 광주가 53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

지역	연도	2014년		2015년	
		교육 횟수	수강 인원수	교육 횟수	수강 인원수
서울		51 (4.9)	10,157 (9.9)	257 (15.5)	23,604 (11.1)
부산		110 (10.6)	21,470 (20.9)	74 (4.5)	12,405 (5.8)
대구		37 (3.6)	8,038 (7.8)	52 (3.1)	5,004 (2.4)
인천		23 (2.2)	3,323 (3.2)	75 (4.5)	13,112 (6.2)
광주		8 (0.8)	2,002 (1.9)	51 (3.1)	7,403 (3.5)
대전		6 (0.6)	363 (0.4)	57 (3.4)	5,599 (2.6)
울산		86 (8.3)	5,383 (5.2)	179 (10.8)	15,249 (7.2)
경기		71 (6.8)	11,846 (11.5)	168 (10.1)	32,367 (15.2)
강원		10 (1.0)	570 (0.6)	35 (2.1)	4,480 (2.1)
충북		36 (3.5)	8,381 (8.2)	53 (3.2)	12,704 (6.0)
충남		55 (5.3)	2,240 (2.2)	16 (1.0)	4,530 (2.1)
전북		24 (2.3)	1,102 (1.1)	40 (2.4)	6,296 (3.0)
전남		119 (11.5)	5,963 (5.8)	169 (10.2)	15,842 (7.5)
경북		261 (25.1)	12,543 (12.2)	118 (7.1)	12,480 (5.9)
경남		112 (10.8)	5,754 (5.6)	304 (18.4)	36,106 (17.0)
제주		29 (2.8)	3,607 (3.5)	8 (0.5)	5,322 (2.5)
계		1,038 (100.0)	102,742 (100.0)	1,656 (100.0)	212,503 (100.0)

*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은 2014년에 처음 취합함.



〈그림 7-20〉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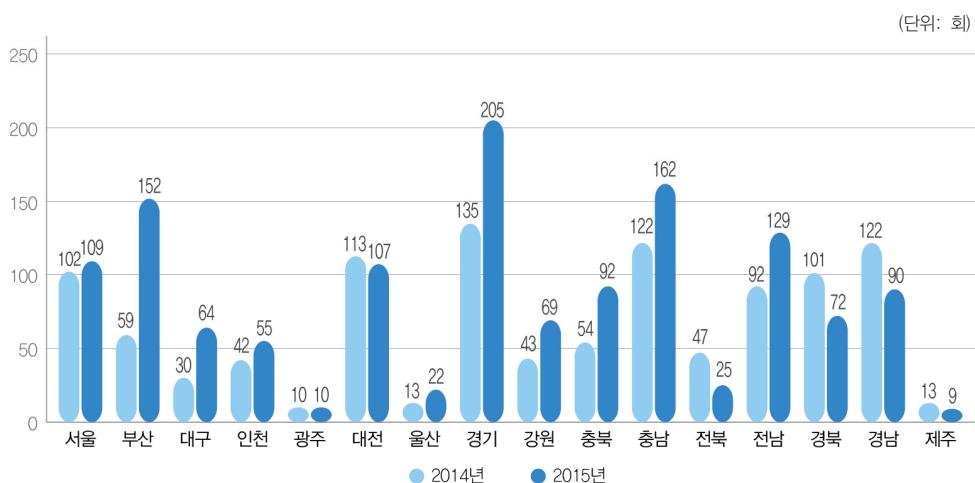
2) 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표 7-20〉과 같다. 2015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372회, 수강 인원수는 총 214,941명이다.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05회(14.9%)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충남과 부산이 각각 162회(11.8%), 152회(11.1%)를 진행하였다. 신고의무자 수강 인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교육 횟수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34,066명(15.8%)이었고, 충남이 24,183명(11.3%) 순으로 많았다. 2015년에는 2014년의 교육실적과 대비하여 교육 횟수는 25.0% 가 증가하였고, 수강 인원수는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교육 횟수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부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57.6%가 증가하였고, 이어 대구가 1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0〉 연도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

지역	연도	2014년		2015년	
		교육 횟수	수강 인원수	교육 횟수	수강 인원수
서울		102(9.3)	29,120(14.3)	109(7.9)	23,379(10.9)
부산		59(5.4)	11,793(5.8)	152(11.1)	12,030(5.6)
대구		30(2.7)	11,416(5.6)	64(4.7)	13,313(6.2)
인천		42(3.8)	9,283(4.6)	55(4.0)	11,329(5.3)
광주		10(0.9)	2,081(1.0)	10(0.7)	3,637(1.7)
대전		113(10.3)	10,529(5.2)	107(7.8)	10,650(5.0)
울산		13(1.2)	5,101(2.5)	22(1.6)	9,103(4.2)
경기		135(12.3)	48,591(23.8)	205(14.9)	34,066(15.8)
강원		43(3.9)	3,187(1.6)	69(5.0)	10,893(5.1)
충북		54(4.9)	4,887(2.4)	92(6.7)	13,182(6.1)
충남		122(11.1)	17,168(8.4)	162(11.8)	24,183(11.3)
전북		47(4.3)	6,116(3.0)	25(1.8)	2,672(1.2)
전남		92(8.4)	10,220(5.0)	129(9.4)	18,829(8.8)
경북		101(9.2)	10,709(5.3)	72(5.2)	7,510(3.5)
경남		122(11.1)	19,612(9.6)	90(6.6)	16,534(7.7)
제주		13(1.2)	3,929(1.9)	9(0.7)	3,631(1.7)
계		1,098(100.0)	203,742(100.0)	1,372(100.0)	214,941(100.0)



〈그림 7-21〉 연도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부 록

1. 용어집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3. 2014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부 록

1. 용어집

신고접수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고접수(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46조).
- **112**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로 통합 운영됨. 신고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요청을 함.
- **1577-139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음.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신고접수함.
- **129** :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 **내방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아동** :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 **학대행위자** :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자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동일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사례
- **일반상담(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 **재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동일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여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였으나 사례판단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 **사례판단** :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 현장조사 시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는 척도이며, 이를 통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 **(자체)사례회의** :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회의.
- **사례전문위원회의** :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사례판단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조기지원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 **일반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 **피해아동 발견율** :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천 명 당 피해아동 수(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수).
- **친부모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모부자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포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 **양부·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위탁부·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 **초기조치결과** : 아동학대로 사례판단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 **최종조치결과** :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 **제14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아동 본인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피해아동의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제15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청구함.
-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피해아동의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
- **피해아동보호명령**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 **격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 **장기보호** :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 **타기관의뢰**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 **지속관찰** :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사건처리**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 **형사처벌**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 **집단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서비스.
- **기관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
- **주변인 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을 의미하며, 주변인이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을 제외한 사람.
-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 **일시보호서비스** :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서비스.

- **고소·고발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학대 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6년 8월 기준, 57개소)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06228)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 (8개소)	서울특별시 이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06362)	www.child.seoul.go.kr	02-2040-4242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종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장안동) (02520)	dbnawoori.seoul.kr	02-2247-1391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한빌딩 2층 (가양동) (07523)	gangseo.goodneighbors.kr	02-3665-5183~5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은암동)(03472)	eunpyeong.goodneighbors.kr	02-3157-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인빌딩) (07413)	yongdungpo.goodneighbors.kr	02-842-0094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티운힐빌딩) (02833)	seongbuk.goodneighbors.kr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www.mapo.sc.or.kr	02-422-139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5796)	gangdong.goodneighbors.kr	02-474-1391
부산 (3개소)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서구 끼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49240)	adong.busan.go.kr	051-240-6300
	부산광역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전시 903호 (48101)	dbchild.saem.or.kr	051-715-1391
	부산광역시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 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 406호(46536)	sbchild.saem.or.kr	051-711-1391
대구 (3개소)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수성구,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2층 (41906)	www.dg1391.or.kr	053-422-1391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42742)	ndaegu.goodneighbors.kr	053-623-1391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산격동) (41539)	www.sosdb1391.or.kr	053-710-1391

(계속)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인천 (3개소)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22134)	www.icchild.sc.or.kr	032-434-1391
	인천광역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 (계산동, 삼환1빌딩) (21050)	ninchon.goodneighbors.kr	032-515-1391
	인천광역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21545)	-	032-424-1391
광주 (1개소)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61966)	cyber1391.or.kr	062-385-1391
대전 (1개소)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어็ด마을로 156(중촌동) (34803)	edaejeon.goodneighbors.kr	042-254-6790
울산 (1개소)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울산광역시중구성안3길21 (성안동)(44421)	www.ulsan.sc.or.kr	052-245-9382
경기 (11개소)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영화동) (16272)	suwon.goodneighbors.kr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11652)	ujeongbu.goodneighbors.kr	031-874-910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13306)	sungnam.goodneighbors.kr	031-756-1391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10518)	goyang.goodneighbors.kr	031-966-1391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14539)	www.bucheon.sc.or.kr	032-662-2580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봉마로 1334, 4층 (봉담읍, 송현빌딩) (18303)	hwaseong.goodneighbors.kr	031-227-1310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 (금곡동, 다남빌딩) (12239)	www.nyj1391.or.kr	031-592-9818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 (고잔동, 슈마프리자) (15458)	www.ansan.sc.or.kr	031-402-0442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 (구갈동) (16977)	yongin.goodneighbors.kr	031-275-6177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대야동, 2층) (14911)	siheung.goodneighbors.kr	031-316-1391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 (소사동) (17877)	-	031-652-1391

(계속)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강원 (4개소)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흥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 (후평1동) (24257)	www.1391.org	033-244-1391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5번길 33 2층 (교동, 빙트빌딩 2층) (25515)	www.kd1391.or.kr	033-644-1391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26482)	wonju.goodneighbors.kr	033-766-1391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25735)	donghae.goodneighbors.kr	033-535-5391
충북 (3개소)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6-1 (율량동) (28332)	cheongju.goodneighbors.kr	043-216-1391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 (청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27152)	www.1391sos.kr	043-645-9078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29039)	www.cbnb1391.org	043-731-3685
충남 (3개소)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31140)	chonan.goodneighbors.kr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32974)	nonsan.goodneighbors.kr	041-734-6640~1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흥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신경리 903) (32263)	hongseong.goodneighbors.kr	041-635-1106
전북 (3개소)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필달로 77(서서학동) (55099)	jeonju.goodneighbors.kr	063-283-1391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54595)	iksan.goodneighbors.kr	063-852-1391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55751)	namwon.goodneighbors.kr	063-635-1391~3
전남 (3개소)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57935)	www.e1391.or.kr	061-753-5125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58615)	mokpo.goodneighbors.kr	061-285-1391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3층(송월동) (58263)	jnjb.goodneighbors.kr	061-332-1391

(계속)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북 (4개소)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 (성건동) (38133)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율세동) (36692)	www.ad1391.org	054-853-1391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 (대감동) (37685)	pohang.goodneighbors.kr	054-284-1391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 (송정동 80-1 하나빌딩) (39276)	gumi1391.or.kr	054-455-1391
경남 (3개소)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51292)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향양군, 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52773)	www.gnw1391.or.kr	055-757-139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 (부원동) (50924)	www.gh1391.or.kr	055-322-1391
제주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63084)	www.jj1391.or.kr	064-712-1391~2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 (서귀동) (63593)	www.sgp1391.org	064-732-1391

3. 2014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강원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소계	103	3	6	2	8	3	0	1	0	0	13	26	4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증계
강원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소계	0	2	1	6	3	0	0	5	0	0	0	8	194

〈표 2-11〉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유형**

(단위 : 건, %)

신고 경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경기 소 계	3,331(77.8)	112(2.6)	1(0.0)	3,444(80.4)	724(16.9)	4(0.1)	104(2.4)	5(0.1)	4,281(100.0)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경기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7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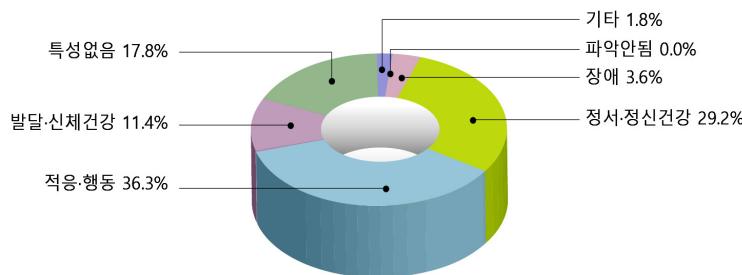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0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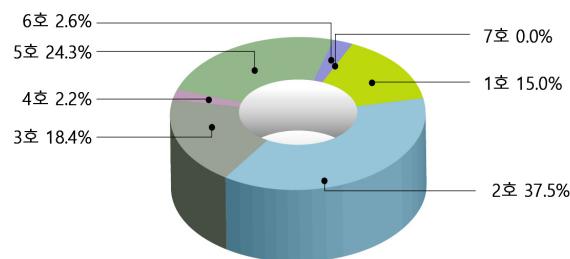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구분	연도	(단위 : 건, %)
	2014년	
지속관찰	0 (0.0)	
고소·고발 ¹⁾	10 (58.8)	
타기관 의뢰	0 (0.0)	
만나지 못 함	7 (41.2)	
아동과의 분리	0 (0.0)	
계	17 (100.0)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그림 4-29〉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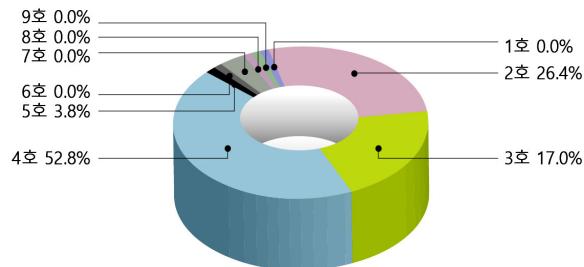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71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4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61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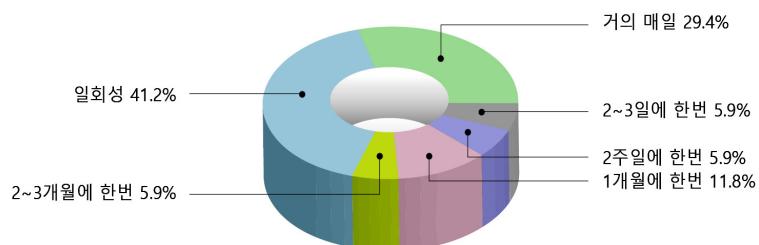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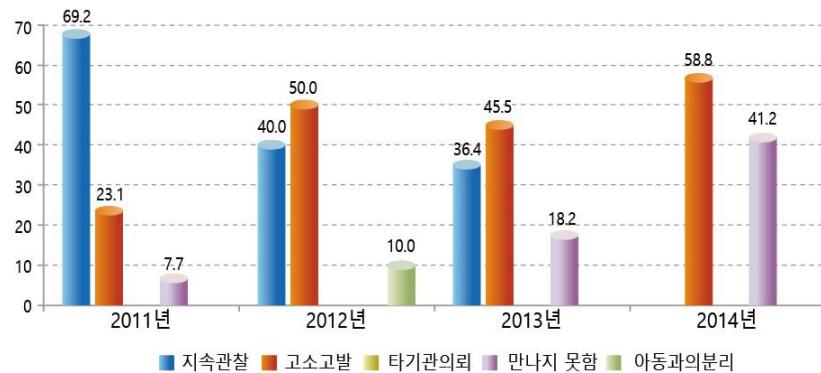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64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86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9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



*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71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인쇄일 : 2016년 9월

발행일 : 2016년 9월

발행인 :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편집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김상진, 김민진, 최정애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Tel:02-558-1391)
